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취·창업능력개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연구

연구책임자	장 명 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위촉연구원	이 옥 경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I. 서론 ● 0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
제2절 선행연구 중 취·창업관련 부분 검토	5
제3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6
제4절 연구방법	7
제5절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	8
제6절 기대효과	9

II. 결혼이민여성 취·창업능력개발의 이론적 배경 ● 11

제1절 결혼이민여성 인적자원개발의 이론적 배경	13
1. 다문화사회의 전개	13
2. 우리 사회에서의 '다문화' 관련 논의	14
3. 우리 사회의 다문화정책의 동향과 문제점	15
4. 결혼이민여성의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	18

제2절 결혼이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분포	20
1. 전국 결혼이민여성의 현황	20
2. 서울시 결혼이민여성의 현황	25
제3절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실태	32
1. 월평균 가구소득	32
2. 직장생활	33
3. 취업	38
4. 경제활동 욕구 및 지원서비스 이용실태	40
제4절 소결	43

III.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정책 현황 ● 47

제1절 중앙정부 지원정책	49
1. 일반지원정책 현황	49
2.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 정책	60
제2절 서울시 지원정책	71
1. 일반지원정책 현황	71
2.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 사업	75
제3절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지원 사례	78
1. 사회적 기업형태 : 오가니제이션 요리(하자센터)	78
2. 사회적 일자리: Talk, Play, Learn 사업(사단법인 부산여성사회교육원) ..	80
3. 시민단체 사업: 한하늘 한땅 캠페인 사업(YWCA)	82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다문화멀티마켓사업(청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85

제4절 시사점 88

IV.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교육 실태분석 ● 89

제1절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교육 현황과 진단 91

- 1. 조사개요 91
- 2. 설문 조사 결과 93

제2절 결혼이민여성 취·창업교육 경험과 진단 128

- 1. 인터뷰 조사 개요 128
- 2. 인터뷰 조사의 주요 결과 131

제3절 시사점 154

V. 결혼이민여성 적합 직종과 교육프로그램개발 ● 159

제1절 결혼이민여성의 적합 직종 개발 161

- 1. 적합 직종 개발의 필요성 161
- 2. 적합 직종과 업종에 대한 예시 162

제2절 적합 직종 프로그램 개발 168

- 1. 결혼이민여성 다문화 강사 양성 프로그램 168
- 2.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교육프로그램 177

제3절 시사점 190

VI.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을 위한 정책 제언 ● 191

제1절 취·창업지원정책의 현황과 지향점	193
제2절 정책 추진전략	196
1.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 관련 조례 개정	196
2. 추진체계 구축	199
3. 취·창업관련 기관들의 연계강화	201
제3절 취·창업지원을 위한 정책제언	203
1.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개선점	203
2. 적극적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	207
3. 교육과 훈련의 현장성 강화	211
4. 지속발전 가능한 적합 직종·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213
5. 체계적, 전문적 창업지원 구축	216
6.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을 위한 One - Stop 시스템 구축	218
7.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 연계	220
8. 다문화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	220

참고문헌 ● 223

부록 ● 235

1. 기관담당자 대상 설문지	237
2. 결혼이민여성 대상 설문지	245

● 표 목차

표 II-1	결혼이민자 증가 추이	21
표 II-2	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	22
표 II-3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별 현황	23
표 II-4	초·중·고 재학중인 결혼이민자 자녀수	24
표 II-5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	25
표 II-6	서울시 결혼이민자 출신국적별 현황	26
표 II-7	자치구별 결혼이민여성 출신국적 분포(2009년도)	28
표 II-8	서울시 자치구별 결혼이민자 현황	31
표 II-9	출신국적별 월평균 가구소득	33
표 II-10	출신국적별 직업 유무	34
표 II-11	구직경로	35
표 II-12	출신국적별 1주일 평균 근로시간	35
표 II-13	출신국적별 월평균 개인소득	36
표 II-14	출신국적별 취업동기	39
표 II-15	출신국적별 희망직종	41
표 II-16	지원서비스 이용률 (복수응답)	42
표 II-17	출신국적별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 직장 알선에 대한 필요도	44
표 III-1	중앙부처별 소관업무	50
표 III-2	중앙부처별 주요 정책	50
표 III-3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정책과제	57
표 III-4	법무부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08-'12)	58
표 III-5	'09년도 중앙부처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정책 및 관련정책	60
표 III-6	시도별 결혼이민여성 및 센터운영현황	62
표 III-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내용(2008, 2009년도)	63
표 III-8	'08년도 취·창업관련 지원사업 현황	64
표 III-9	취·창업지원사업 추진체제도	65

표 III-10	'09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취·창업지원사업 현황	66
표 III-11	여성부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내용	70
표 III-12	서울시 다문화가족정책 지원내용	72
표 III-13	'09년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내용	72
표 III-14	서울시 다문화가족 한울타리 정책과제별 단위 사업	74
표 III-15	'08년도 자치구의 취·창업지원 사업	76
표 III-16	'09년도 자치구 취·창업지원사업	76
표 IV-1	조사개요	91
표 IV-2	기관유형별 설문지 배부 및 응답기관	92
표 IV-3	주요 조사 내용	92
표 IV-4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여부	93
표 IV-5	기관유형별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여부	94
표 IV-6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시기	95
표 IV-7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 내용	96
표 IV-8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현황	97
표 IV-9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예산현황	100
표 IV-10	일반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에의 참여여부	102
표 IV-11	기관유형별 일반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에의 참여 여부	102
표 IV-12	일반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참여 시기	103
표 IV-13	일반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 내용	104
표 IV-14	일반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에의 참여 현황	107
표 IV-15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시 애로사항(1, 2순위)	109
표 IV-16	참여 결혼이민여성의 애로사항(1, 2순위)	111
표 IV-17	타 기관과 협력 시 애로사항(1, 2순위)	113
표 IV-18	참여 결혼이민여성의 애로사항(1, 2순위)	115
표 IV-19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이 없는 이유(1, 2순위)	116
표 IV-20	기관유형별 향후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계획	118
표 IV-21	프로그램 실시(또는 강화)에 필요한 지원(1, 2순위)	119

【 표 IV-22 】 프로그램 추진 시 주축 기관	121
【 표 IV-23 】 인터뷰 조사개요	128
【 표 IV-24 】 인터뷰 대상자 일반적 특성	129
【 표 IV-25 】 참여 프로그램 일반현황 및 취업자 근무조건	130
【 표 V-1 】 결혼이민여성들의 적합 직종 및 업종	162
【 표 V-2-1 】 신규자의 기본과정 (60시간) 개요	171
【 표 V-2-2 】 교과목 - 1. 다문화 이해	172
【 표 V-2-3 】 교과목- 2. 다문화의 차이 및 다양성	173
【 표 V-2-4 】 교과목- 3. 문화교육방법론	174
【 표 V-2-5 】 교과목- 4. 다문화감수성 강화	175
【 표 V-3-1 】 신규자의 기본과정 (80시간) 개요	179
【 표 V-3-2 】 교과목 - 1. 산후조리의 이해	181
【 표 V-3-3 】 교과목 - 2. 서비스 직업 교육	182
【 표 V-3-4 】 교과목 - 3. 산모도우미의 역할과 직업윤리	183
【 표 V-3-5 】 교과목 - 4.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	184
【 표 V-3-6 】 교과목 - 5. 산모·신생아 및 가족에 대한 이해	185
【 표 V-3-7 】 교과목 - 6. 산모 돌보기	186
【 표 V-3-8 】 교과목 - 7. 신생아 돌보기	187
【 표 V-3-9 】 교과목 - 8.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188
【 표 V-3-10 】 교과목 - 9. 안전	189
【 표 V-3-11 】 교과목 - 10. 업무 기록 및 보고	189
【 표 VI-1 】 결혼이민여성 적합 직종 및 업종	216

● 그림 목차

■ 그림 II-1	■ 국제혼 증가 추이(전국)	20
■ 그림 II-2	■ 국제결혼 증가 추이(서울시)	25
■ 그림 II-3	■ 근로만족도	37
■ 그림 II-4	■ 직장생활에 따른 어려움 1, 2순위	38
■ 그림 II-5	■ 미취업사유	40
■ 그림 II-6	■ 지원서비스 필요도	43
■ 그림 III-1	■ ‘따뜻한 다문화 사회 만들기’사업	52
■ 그림 IV-1	■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시기	95
■ 그림 IV-2	■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 내용	96
■ 그림 IV-3	■ 연도별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현황 ..	98
■ 그림 IV-4	■ 직종별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현황(참여지수) ..	99
■ 그림 IV-5	■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예산현황	100
■ 그림 IV-6	■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의 세부내용(복수응답) ..	101
■ 그림 IV-7	■ 일반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참여 시기	103
■ 그림 IV-8	■ 일반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 내용	105
■ 그림 IV-9	■ 연도별 일반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에의 참여 현황 ·	108
■ 그림 IV-10	■ 직종별 일반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현황(참여지수) ..	108
■ 그림 IV-11	■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시 애로사항(1, 2순위) ..	110
■ 그림 IV-12	■ 참여 결혼이민여성의 애로사항(1, 2순위)	111
■ 그림 IV-13	■ 타 기관과의 협력 경험(복수응답)	112
■ 그림 IV-14	■ 타 기관과 협력 시 애로사항(1, 2순위)	114
■ 그림 IV-15	■ 참여 결혼이민여성의 애로사항(1, 2순위)	115
■ 그림 IV-16	■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이 없는 이유(1, 2순위) ..	117
■ 그림 IV-17	■ 향후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분야 ..	118
■ 그림 IV-18	■ 프로그램 실시에 필요한 지원(1, 2순위)	120
■ 그림 IV-19	■ 향후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필요 지원(1순위)	120

■ 그림 IV-20	프로그램 추진 시 거점기관	122
■ 그림 IV-21	프로그램 참여 시 필요한 기초 소양(복수응답)	123
■ 그림 IV-22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 성공요인(복수응답)	124
■ 그림 IV-23	현재 취업 가능한 적합 직종(복수응답)	125
■ 그림 IV-24	향후 취업 가능한 유망직종(복수응답)	126
■ 그림 IV-25	현재 창업 가능한 아이템(복수응답)	126
■ 그림 IV-26	향후 창업 가능한 아이템(복수응답)	127
■ 그림 IV-27	취·창업 지원프로그램상의 어려움(1순위)	137
■ 그림 IV-28	결혼이민여성 적합 직종(우선 취업가능 직종)	149
■ 그림 IV-29	결혼이민여성 적합 직종(향후 취업가능 직종)	150
■ 그림 IV-30	결혼이민여성 창업아이템(우선 창업가능 아이템)	152
■ 그림 IV-31	결혼이민여성 창업아이템(향후 창업가능 아이템)	152
■ 그림 VI-1	정책지향점	195
■ 그림 VI-2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지원체계	201
■ 그림 VI-3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관련기관들의 연계	202
■ 그림 VI-4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One-Stop 추진 체계	219

■ 연구요약

I 서론

연구 필요성

-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현재 외국인 체류자가 전체 인구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인구 구성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결혼 증가추세는 특히 두드러져 보임.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국제결혼은 1%에 지나지 않았으나 현재 전체 결혼의 11%가 넘어 일반적인 결혼형태가 되었으며 초기에는 중국출신이 대부분이었으나 베트남, 일본, 필리핀, 몽골, 태국, 러시아 등의 순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여성의 이주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2006년부터 우리 사회는 다양한 다문화가족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결혼이민여성들은 언어문제, 경제문제, 가족간의 갈등,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언어문제를 제외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커다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으로 보호에서 자립자활로 정책전환 필요함
- 따라서 결혼이민여성들의 높은 취업욕구에 부응하고 다양한 인적자원과 잠재적 발전가능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 여성인력개발기관들간의 협력체계구축, 적합 직종개발, 네트워크 강화,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조 등 다각적인 면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취·창업을 위한 정책지원과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함.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결혼이민여성들이 우리사회의 주체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수요건인 경제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취·창업 지원정책 내지 교육지원현황을 파악하고, 이민여성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적합직종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예시하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취·창업지원정책을 제시하여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연구 내용

- 결혼이민여성들의 분포현황의 변화와 지역적 특이성을 알아봄.
-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결혼이민여성 지원정책과 취·창업지원정책의 현황을 성인 지적 시각에서 분석함.
- 서울시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관련기관의 실무담당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현황, 애로점, 적합 직종 및 업종, 향후 계획 등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지원방안을 연구함.
- 취·창업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혹은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에 취·창업에 대한 욕구, 교육 참여시 애로점, 수요 등을 통해 취·창업교육프로그램 개발시 이를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함.
- 취·창업에 대한 기관조사와 심층면접 조사를 바탕으로 적합 직종으로 나타난 직종에 대해 알아보고 대표적인 취업교육프로그램을 예시함.
- 서울시 결혼이민여성들의 사회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취·창업 지원정책의 지향점, 추진체계구축, 지원정책의 세부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함.

연구방법

- 기초통계 수집 및 문헌연구
 - 전국 및 서울지역 내 결혼이민여성관련 기초 통계 수집 및 현황분석
 - 결혼이민여성 취·창업관련 논문 및 자료집, 단행본, 정책연구보고서 검토
 -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 관련기관의 결혼이민여성 관련행정자료 수집 및 분석
-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에 대한 설문조사
 - 조사대상: 서울지역 내 결혼이민자 또는 다문화가족지원 사업기관의 종사자
 - 조사규모: 90개 기관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간: 2009. 4. 28 - 2009. 5. 25
 - 조사내용: 경제활동지원프로그램 지원 현황 및 운영, 향후 적합 직종아이템 등
- 결혼이민여성 그룹 심층면접
 - 조사대상: 취·창업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서울거주 결혼이민여성
 - 조사규모: 관련기관 실무담당자들이 추천한 결혼이민여성 20명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인터뷰
 - 조사기간: 2009. 6. 3 - 6. 13

- 조사내용: 결혼이민여성 프로그램 참여 경험, 취업자 근무환경, 적합 직종 및 창업 아이템 등

- 자문회의
- 정책토론회

기대효과

-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취·창업교육실태 등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사회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정책 제시
-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안정적인 사회정착 도모

II 결혼이민여성 취·창업능력개발의 이론적 배경과 현황

결혼이민여성들 대부분은 경제적 기대감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했으나 현재 대부분이 월 가계소득이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가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제활동의 욕구가 강함. 그러나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결혼이민여성 지원정책은 한국어교육 등 초기정착을 위한 지원이 대부분이며 취·창업을 위한 지원정책은 미미한 상태이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취·창업지원정책도 이들의 취업욕구나 능력에 따른 다양한 지원이기보다는 다문화강사, 통·번역사, 원어민 강사 등 몇 가지 특화 직종에 한정되어 있어 이들의 교육수준과 인적자원의 다양성을 고려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취·창업교육이 필요함.

또한 기존 인적자원개발 개념과 정의 및 활동영역을 그대로 결혼이민여성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며 오히려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음. 왜냐하면 이는 남성중심적이어서 여성인적자원개발이 갖는 한계점에 인종차이에서 오는 어려운 점이 부가되며 이들이 처한 제반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성인지적, 다문화적 시각에서 보다 심도있고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체계가 요구됨.

결혼이민여성의 현황을 보면 2009.7. 현재 149,853명이며 이중 21.7%인 32,558명이 서울에 거주하며 국적별로는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몽골 순임. 자치구에 따른 분포는 영등포구가 3,494명으로 가장 많으며 구로, 관악, 금천, 강서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자치구에 따라 국적별 분포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중국출신은 영등포구, 금천구, 구로구이며, 베트남 출신은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일본은 서초구, 강남구, 필리핀 출신은 양천구, 강서구, 성북구 등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 결혼이민여성의 18.7%만이 취업을 하고 있으며 미취업여성 중 78%가 취업을 원하나 언어문제, 자녀돌봄 문제, 알맞은 취업자리가 없어서 등으로 취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취업을 하여도 100만원 이하의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동, 편견과 차별문제로 시달려 근로만족도가 낮은 편임.

결혼이민여성들이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이루고 미래 지향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은 기본이며 이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현재 가장 시급히 지원되어야 함.

III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지원정책 현황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지원정책은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체육부, 여성부, 노동부, 농수산식품부 등 8개 부서가 기능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중복시행되는 면이 있으며 초기적응지원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임.

최근 국가브랜드 위원회가 5대 중점 과제 중 다문화포용, 외국인 배려 등을 내걸고 통합적인 다문화가족지원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따뜻한 다문화사회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을 넣고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사업에서 취·창업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법무부는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서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취·창업지원을 하며, 노동부와 여성부도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

사업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함.

서울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자치구 등에서 개별적으로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창업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미미한 상태이며 2010년부터 ‘한울타리 플랜’의 4개 과제 중 하나로 다문화가정 경제사회적 역량강화를 채택하고 취·창업지원사업을 핵심과제로 지원할 예정임.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확보, 시행기관 확대, 교육내용이나 수준의 다양화·체계화, 취·창업관련기관들간의 연계시스템 구축 등 많은 부분이 지원되어야 함.

현재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지원사업은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을 받거나, 결혼이민여성 지원 시민단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주가 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일정부분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 이 중 어느 유형이 더 좋다고 보다는 각각의 장점을 살려 보다 많은 결혼이민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모색되어야 함.

IV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교육 실태 분석

서울시 취·창업교육관련 90개 기관에서 지난 3년간 결혼이민여성들만을 대상으로 취·창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거나 하고 있는 기관은 16.2%에 지나지 않았으며, 교육내용은 다문화강사, 요리, 제과제빵, 정보화교육, 네일아트, 원어민강사, 통·번역, 바리스타 등임. 교육수료율은 97.6%로 매우 높았으나 취업률은 18.7%에 지나지 않아 매우 저조한 상태임. 결혼이민여성들이 많이 참여한 프로그램으로는 다문화강사, 정보화교육, 원어민 강사, 요리, 제과제빵 순이며 교육 내용구성은 기술교육, 현장실습, 직업의식교육, 자격증취득 등으로 나타남.

일반여성 교육프로그램에 결혼이민여성들이 참여한 경우는 14.5%로 매우 낮았으며 교육직종으로는 이/미용, 요리, 제과제빵, 양재, 네일아트, 홈패션, 케어복지 순으로 나타남. 교육수료율은 74.5%이며 취업률은 19.7%로 낮게 나타나 취업을 위한 민·관의 연계가 요구됨.

취·창업교육에 참여한 결혼이민여성들의 심층면접 결과 프로그램의 참여 경로는 대부분 지인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혹은 지역사회복지관의 종사자 소개이며 참여 동기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취업필요성에 의한 것이며 직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일상 생활이나 자녀교육이 도움이 되기 위해 또는 향후 모국으로 돌아가 창업을 하기 위함도 있음.

프로그램 운영시 실무자가 느끼는 어려움으로는 결혼이민여성의 모집, 취·창업아이템발굴, 공간확보, 예산확보 등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이민여성 대상 프로그램 참여시 여성들이 느끼는 애로점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프로그램의 난이도, 수강료 비용부담, 가사와 양육부담 등이며, 일반 여성대상 프로그램 참여시에는 동료학습자간, 강사와의 관계,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의 부재 등도 어려운 점으로 나타남. 따라서 교육내용, 수강자 특성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는 결혼이민여성만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분석됨.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을 위해서는 기관간의 연계가 필요하나 현재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그 이유로는 ‘협력할만한 기관의 정보가 없어서’, ‘협력을 주도할 구심기관이 없어서’ 등으로 나타남. 협력을 위한 거점기관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기관 등으로 나타났으며 컨소시엄 방식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기관의 연계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취업가능한 직종으로는 다문화강사, 외국어강사, 산모도우미, 보육도우미, 통·번역사, 단순노무직 등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유망직종으로는 다문화강사, 외국어 강사, 통·번역사, 상담사, 관광가이드로 나타남. 현재 창업가능한 아이템으로는 다문화음식점, 네일아트샵, 외국어강사 파견사업, 이/미용샵 등이며 향후 창업가능한 업종으로는 다문화음식점, 네일아트샵, 산모도우미 등 케어복지사업, 인터넷쇼핑몰 등으로 나타나 이를 정책수립시 고려할 필요 있음.

향후 관련기관의 35.5%만이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지원은 예산확보, 취업가능한 수요처 및 창업아이템발굴,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등으로 나타남. 취·창업성공요인으로는 모국어와 한국어 구사, 가족의 지원과 지지, 적합한 직종선택과 구직의지, 자신감 등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정책수립시 반영할 필요 있음.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적합 직종이나 아이템 발굴 교육프로그램개발 예산확보, 자녀돌봄문제지원, 맞춤형 교육지원 및 정보제공, 성평등한 직장환경 조성, 교육운영방법의 다양화, 사회적 처우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함. 또한 다문화에 대한 서울시민의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함.

V 결혼이민여성 적합 직종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취·창업 교육후 취·창업으로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 결혼이민여성들의 적합 직종이나 업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여러 사항을 고려하면 이들에게 특화될 수 있는 직종이 있으나 이에 앞서 개인적인 능력, 학력, 성향, 기업체 수요, 모국에서의 직업, 성격, 희망육구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등을 통해 나타난 적합직종으로는 다문화강사, 통·번역사, 원어민 외국어 강사, 산모도우미, 의류 수선사, 한국어보조강사, 계약직 공무원, 커피전문점 바리스타, 제과제빵사, 인터넷쇼핑몰 운영자, 지역특산물 제조사 등이 있음.

이 중에서도 현재 가장 취업가능성이 높은 직종으로 나타난 다문화강사와 산모도우미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음. 다문화강사는 여러 기관에서 각각의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결혼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산모도우미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이므로 모범이 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제시가 필요함에 따라 이 직종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음.

VI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을 위한 정책 제언

취·창업지원정책의 지향점

-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수립시 동화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성인 지적 관점에서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주체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정책수립 필요함.
- 취·창업지원정책은 서울시 다문화가족증장기계획 하에 장기적 지원이 필요함.
- 취·창업능력개발을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교육지원을 단계별로 다각적, 체계적, 복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취·창업능력개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적합 직종을 개발하고 국적, 거주지역, 가족유형 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야 함.
- 결혼이민여성의 인적자원개발은 사회변화에 따라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이루어져 함.
-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취·창업지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변화를 수반하는 사회활동도 지원하는 등 쌍방향 지원이 필요함.

정책 추진전략

-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 관련 조례 개정
 -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
 -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호
 - 서울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제7호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 서울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제5조, 제14조 제6항, 제15조 제4항
- 추진체계구축
 - 서울시와 자치구에 다문화가족 전담팀 신설
 - 서울시 다문화가족정책 협의회 신설
- 취·창업관련기관들의 연계강화
 - 취·창업관련기관의 긴밀한 연계 : 거점기관구축, 컨소시엄구성 등
 - 민·관·학 협력네트워크 강화

서울시 취·창업지원을 위한 정책제언

- 취·창업프로그램 운영 개선점

- 한국어 교육 고급반 내지 취업반 신설
- 교육비용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도입
- 지역적 특색을 살린 교육프로그램 특화
- 보육문제 해결: 아이돌보미 제도 활용
- 직무소양교육 내지 의식교육 강화
- 결혼이민여성 가족의 이해와 협조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
- 적극적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
 -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안
 - 여성발전기금 중 일정부분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지원 사업에 지원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활용
 - 자격취득장려금제 도입
 - 취·창업설계상담과 교육훈련수첩제도 활용
 - 자격증 취득시험의 보완
- 교육과 훈련의 현장성 강화
 - 인턴제도 도입
 - 액션러닝의 도입
 - 창업보육 및 창업부스 등 인큐베이팅 활성화
- 지속발전가능한 적합 직종·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적합한 직종개발: 다문화강사/ 원어민 강사/ 통·번역사/ 아이돌보미/ 산모도우미/ 계약직 공무원 등
 - 전문가 수준의 직업군 취업연계
- 체계적 전문적 창업지원구축
 - 체계적인 창업지원 시스템
 - 창업자금의 지원
 - 자활공동체 운영
-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을 위한 ONE-STOP 시스템 구축
-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화로 연계
- 다문화에 대한 사회인식제고
 - 인식전환을 위한 시민홍보
 - 유관업종 취·창업자간의 네트워크 구축지원
 - 취·창업 성공모델 발굴

I

서론

I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이주와 이동은 시대적 현안으로서 한국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사회도 현재 외국인 체류자가 전체 인구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인구 구성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결혼 증가추세는 특히 두드러져 보인다. 국제결혼의 일반화는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예측되지 못했던 것으로, 당시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결혼은 전체 결혼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 경우에도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간의 결혼이 주를 이루었고,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은 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현저히 증가하여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간의 결혼을 앞지르기 시작했고, 2000년대 이후에는 그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지면서 현재는 11%가 넘어 일반적인 결혼의 한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결혼이민여성의 국적은 주로 중국 조선족, 중국한족이 절반을 넘고, 베트남, 일본, 필리핀, 몽골, 태국, 러시아 등의 순이며, 이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여성의 이주화(Feminization of Migration)라는 특징과 국가 간, 지역 간의 불균등한 경제적 발전에 기인할 뿐 아니라 그 안에는 인종, 계급, 젠더 등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거주하면서 사회적으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발전에 참여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사회화(Re-socialization), 재문화화(Re-culturalization)가 필요하며, 이는 단지 결혼이민여성 개인이나 가족단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로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결혼이민여성은 외국인과의 결혼을 위해 국경을 넘은 이동, 언어문제, 심리 부적응, 문화차이, 국적을 기초로 한 시민권 제도, 경제적 어려움, 낮은 생활환경, 가족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한국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상황으로 인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언어문제를 제외하고는 가장 커다란 어려움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이 국제결혼을 택한 이유는 잘 사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서,

본국 가족의 경제적 지원 등 경제적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함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상황은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서울시 결혼이민여성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국생활의 어려움으로 언어문제, 경제적 어려움, 한국문화이해, 자녀문제 등이 있으며 월평균 가구소득도 과반수 이상이 200만원 이하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소득이 없는 가구도 5% 이상이 되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 대다수가 자녀양육비, 생계유지, 생활비 보충 등을 위해 취업을 원하고 있으나 취업률은 매우 낮아 직업이 있는 경우가 18.5%에 그치고 대부분 직업이 없는 상태이며, 취업을 해도 월 임금이 50-100만원 미만으로 저임금과 언어문제, 자녀돌보기, 장시간 근로, 차별과 편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2006년을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일정부분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없이 단순히 문제해결식으로, 또한 부처 간 경쟁적으로 시행되는 경향이 있어 부작용을 낳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지원정책은 초기적응을 위한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체험 등 일부 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결혼이민여성들의 다양한 욕구의 미반영, 일회성, 중복적 지원, 관련 부처 간 연계부족, 전담조직과 담당인력 부족, 추진체계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결혼이민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취·창업을 위한 지원정책은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그 내용도 결혼이민여성이 지니고 있는 언어능력을 살릴 수 있는 직업교육을 제외하고는, 그들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잠재력 등을 개발하고 훈련시키는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단순히 몇 가지의 직종에 한정되어 교육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결혼이민여성의 인적자원개발은 수요에 대한 부합성, 서비스의 전문성, 포괄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며 직업교육 후 이들을 취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수요처를 발굴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주체로서의 정착을 지원하고 이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높은 취업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다양한 인적 자원과 잠재적 발전가능성 등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확보, 여성인력개발기관들 간의 협력 체계 구축, 적합 직종개발, 네트워크 강화,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조 등 다각적인 면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취·창업을 위한 정책지원과 시스템구축을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제2절 선행연구 중 취·창업관련 부분 검토

결혼이민여성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인권문제, 가정폭력문제, 다문화가족정책 등 포괄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으며 결혼이민여성들의 사회정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제사회적 역량강화 및 취·창업능력개발 등과 같은 자립을 위한 분야는 거의 연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이제까지 이루어진 결혼이민여성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취·창업에 대한 욕구는 많으나 이에 대한 교육훈련이나 지원체계는 아직 미미한 상태여서 미취업상태가 대부분이라는 현황만이 파악되고 있다. 선행연구 중 취·창업과 관련된 경제수준, 경제활동, 취업하려는 욕구, 희망직종 등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이민여성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거의 100-200만원 미만이 과반수를 차지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학실, 충청북도 여성결혼이민자 실태조사, 2008; 김은숙 외, 강원도 결혼이민자 지역사회적응 지원 실태조사 연구, 2006; 김영주, 충남국제결혼가족 실태 및 지원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2006; 설동훈 외,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지원정책방안 연구, 2006; 장명선, 서울시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체계구축방안 연구, 2008). 결혼이민여성의 과반수 이상이 전업주부이고, 미취업여성 중 거의 대부분이 취업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취업하려는 이유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자녀 교육비 충당’ 등 생활비 보충을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이 원하는 직종은 본국에서의 직업과 관련이 있는 것, 장기간 훈련과 훈련비용이 소요되는 전문직보다는 특별한 교육이 없어도 바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직종을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주로 다문화강사, 통·번역사, 음식관련업, 방과 후 교사, 서비스업 등 자녀양육에 방해가 되지 않는 아르바이트 형식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창업을 위한 지원서비스로는 취·창업알선, 자격증 취득, 창업교육 등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결혼이민여성들의 경제생활이나 취업욕구 등 일반적인 부분에 대한 현황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을 뿐 취·창업 실태나 이에 대한 욕구, 적합한 직종개발, 지원정책 등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창업 실태를 일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취·창업을 위한 법제도정비 및 지원정책을 제시하여 이들의 경제사회역량강화를 통해 우리 지역사회에 주체로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결혼이민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경제 사회적 역량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는 정책은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이해 등 초기적응단계 지원에만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이 사회 주역으로서 가장 필요한 경제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한 취·창업에 대한 지원은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즉, 사회적 연계망과 정보접근의 용이성을 위해 정보화교육, 직업기술교육 등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이것이 직업교육이나 일자리 알선 등 적극적인 서비스지원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창업을 위해서는 직업교육지원만이 아니라 한국어교육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며 가정의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고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이들을 ‘그들이’ 아닌 ‘우리로’ 인정하고 ‘지원’에서 ‘공생’을 넘어 평등한 동반자로서의 ‘통합’으로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더욱이 결혼이민여성의 인적자원개발은 기존의 인적자원개발에서 오는 어려움과 인종차별 나아가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 성인지적 다문화적 관점에서의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자원과 잠재적 능력을 개발·향상시켜야 한다는 이중의 어려움이 있다.

즉 언어소통상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등에서 오는 제한과 가족 간의 이해부족, 사회적 편견 등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원개발을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방안이 요구된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들의 인적자원개발기관들은 이들이 처한 현상, 다문화에 대한 이해 등이 필요하며 교육프로그램 개발, 서비스 콘텐츠, 전문적인 역량 등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하기 어렵고 특히 결혼이민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결혼이민여성들이 우리사회의 주체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수요건인 경제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취·창업 지원정책 내지 교육지원현황을 파악하고, 결혼이민여성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적합직종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예시하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취·창업지원정책을 제시하여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과 서울시의 결혼이민여성들의 분포현황의 변화와 지역적 특이성을 알아본다.

둘째,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결혼이민여성 지원정책과 취·창업지원정책의 현황을 성인지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셋째, 서울시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관련기관의 실무담당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현황, 애로점, 적합 직종 및 업종, 향후 계획 등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지원방안을 연구한다.

넷째, 취·창업교육에 참여한, 혹은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에 창업에 대한 욕구, 교육 참여시 애로점, 수요 등을 통해 취·창업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이를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

다섯째, 취·창업에 대한 기관조사와 심층면접 조사를 바탕으로 적합 직종으로 나타난 직종에 대해 알아보고 대표적인 취업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한다.

여섯째, 서울시 결혼이민여성들의 사회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취·창업지원정책의 지향점, 추진체계구축, 지원정책의 세부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제4절 연구방법

서울시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교육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경제적 자립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초통계자료 분석, 문헌연구, 결혼이민여성 취·창업관련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취·창업교육에 참여경험이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의 그룹면접을 실시한다. 이 외에 조사·분석한 내용을 관련 학계전문가, 실무자 등과의 자문회의를 거쳐 보다 발전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기초통계 수집 및 문헌연구

- 전국 및 서울지역 내 결혼이민여성관련 기초 통계 수집 및 현황분석
- 결혼이민여성 취·창업관련 논문 및 자료집, 단행본, 정책연구보고서 검토
-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 관련기관의 결혼이민여성 관련행정자료 수집 및 분석

○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에 대한 설문조사

- 조사대상: 서울지역 내 결혼이민자 또는 다문화가족지원 사업기관의 종사자
- 조사규모: 90개 기관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간: 2009. 4. 28 - 2009. 5. 25
- 조사내용: 경제활동지원프로그램 지원 현황 및 운영, 향후 적합 직종아이템 등

- 결혼이민여성 그룹 심층면접
 - 조사대상: 취·창업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서울거주 결혼이민여성
 - 조사규모: 관련기관 실무담당자들이 추천한 결혼이민여성 20명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인터뷰
 - 조사기간: 2009. 6. 3 - 6. 13
 - 조사내용: 결혼이민여성 프로그램 참여 경험, 취업자 근무환경, 적합 직종 및 창업 아이템 등
- 자문회의
- 정책토론회

제5절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

본 연구는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능력개발을 통한 경제적 자립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현재 결혼이민여성 인적자원개발 관련기관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한 교육현황에 대해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해당기관의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실무담당공무원의 자문을 구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구청 등은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서울시에 있는 사회복지관 모두를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

그러나 현재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창업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많지 않고, 사전조사를 통해 취·창업과 관련된 기관들을 선별해 설문대상에 포함시켰으므로 커다란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민여성 대상 심층면접은 취·창업교육에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민성들의 교육참여 경험을 통해 취·창업교육의 지향점을 찾고자 가능한 한 많은 대상자를 포함시키려 했으나 대상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면접자의 수가 적은 데서 오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면접 결과 거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6절 기대효과

-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취·창업교육실태 등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사회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정책 제시
-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안정적인 사회정착 도모

II

결혼이민여성 취·창업능력개발의
이론적 배경

II 결혼이민여성 취·창업능력개발의 이론적 배경

제1절 결혼이민여성 인적자원개발의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사회의 전개

한국은 1990년대 초까지도 외국인 주민이 0.1%에 불과할 정도였으나 산업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이주노동자의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된 이후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단기간 내에 이주민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회 변화를 겪었다. 또한 19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로 취급되어 사회적 관심에서 배제되었던 국제결혼, 특히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은 1990년대 중반부터 현저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결혼 형태의 하나이며 이러한 증가추세로 보면 2050년에는 15%가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¹⁾ 이러한 국제결혼의 증가세는 1998년 개정 국적법 시행을 계기로 한국계 중국인이 대세를 이루던 국제결혼 대상자가 점차 필리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로 다양하게 전환되면서 ‘한민족’을 전제로 한 사회 구성에 일대 변화가 가시화되었다.

결혼이민여성은 일시적인 체류자로 간주되던 기존의 이주노동자와는 달리 한국사회에 상당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거주하면서 한국사회와 전면적인 관계맺음이 기대되는 ‘최초의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등장은 이주자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본격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이주민 자녀들이 학교 등 공적인 영역에 등장하면서 한국사회 구성원의 자격요건으로 당연시 되어 오던 ‘혈통’에 대한 전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결혼이민여성의 인권 침해와 생활 적응상의 어려움, 불안정한 가족관계 등의 문제, 자녀의 발달상의 문제 가능성 등에 대한 시민사회와 정부, 언론의 대응이 급진전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1) 장래인구추계 및 외국인 증가추세예측시 2020년에는 체류외국인 비율이 5%, 2030년에는 6.3%, 2040년에는 7.7%, 2050년에는 9.7%로 증가할 것으로 추측되며 결혼이민자의 수도 증가하여 2030년 12.3%, 2040년 14%, 2050년에는 15.2%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차용호(2008),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이민학회 후기학술대회 자료집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 사회는 단일민족에 기초한 사회 구성의 전제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다인종’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은 향후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수용성과 정부의 정책, 이주민의 대응 양상 등에 따라 이주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2. 우리 사회에서의 ‘다문화’ 관련 논의

‘다문화’는 매우 다의적인 개념으로 폭넓고 다양한 가치들을 반영하는 이념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회현상을 지칭하는 기술적인 개념인 동시에 특정한 사회 구성을 목표로 한 이념적 지향을 의미한다. 즉,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계기는 민족적, 문화적 단일성에 대해 의문과 문제 제기를 하는 집단이 나타나고, 이들의 권리와 사회통합문제가 대두되게 된다.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단일민족성에 대한 믿음이 강했던 한국사회가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다문화사회’로 전환되는 것에는 결혼이민여성의 증가가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다문화사회란 사회를 이루는 기본원리로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이를 증진해가는 것이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며, 나아가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들이 서로 다른 문화와 이를 기초로 한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켜 가려는 움직임을 일정부분 인정하는 특징이 있다. 물론 다문화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의 이상과 실재를 단일한 틀로 규정할 수는 없으나, 국가를 특정 민족이나 집단이 소유하는 것이 아닌 모든 시민에게 속해 있는 것으로 보고, 이주민을 비롯한 소수집단의 구성원을 주류 사회에 일방적으로 동화시키거나 배제하려는 국민형성정책이 아닌 집단별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조정에 가려는 흐름은 공통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다양한 민족 집단이 존재하는 가운데 사회적, 민족적, 문화적 단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하면서 모든 다문화사회가 다문화주의의 이념적 지향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며, 각기 다른 지향을 토대로 다양성에 접근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결국 다문화주의는 다문화사회가 채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일 뿐, 그 자체가 다양성에 대한 완성된 접근방법이나 정답은 아니며 오히려 다분히 논쟁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에 대해 다문화주의가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단일문화주의와 정면으로 대치될 뿐 아니라, 국가의 사회구성이나 발전 단계에 따라 사회통합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다문화주의를 둘러싸고 국가와 국민 간에, 계층 간에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다.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주의는 이와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는 이주문제와 함께 다수결 민주주의의 한계, 배타적인

민족 및 국민정체성의 허구성, 가부장적인 발전 패러다임과 같은 문제와 함께 민주주의의 심화와 확장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형성된 것은 이주노동자가 아닌 결혼이민 여성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며, 사실 다문화사회란 무엇인가에 심도 깊은 논쟁을 거치지 않고 정부가 ‘열린 다문화사회’를 정책 목표로 제시하면서 그것이 피상적인 모토 수준에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결론이 내려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다문화’ 논의는 폭넓은 참여와 이해, 논의과정을 거쳐 일정한 방향으로 수렴되어 가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즉 아무런 준비나 경험없이 다문화사회를 맞이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상적인 차원에서 진단되고 해결책이 모색되어짐에 따라 인권, 노동권, 시민권, 소수자권 등의 증진이라는 민주주의의 심화와 확장과는 거리가 먼 상태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에 대한 논의는 민주주의와 여성주의의 논의와 상관없이 어느 한 면에서는 자유주의·남성주의 담론에 머무르면서 가부장체제에서 서로 대등하지 못한 집단들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사회로의 현실은 다문화담론 부재와 함께 다문화주의의 남용에도 불구하고,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비-이민 전통국가이자 혈통주의와 ‘단일민족’에 대한 강한 신념을 유지해오면서 제도적으로도 혈통과 민족적 단일성을 근거한 패러다임에 젖어 있는 한국사회가 민족적, 문화적으로 상이한 결혼이민여성을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3. 우리 사회의 다문화정책의 동향과 문제점

가. 다문화정책의 동향

결혼이민여성의 증가로 인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사회통합은 다양한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 환경 속에서 구성되고 변화하는데, 우리 사회는 사회적 관심 형성의 계기 자체가 정부 정책에 의해 마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부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다문화주의는 일종의 열려 있는 텍스트이며 이를 현실화시킨 국가의 정책과 목표 또한 다양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다문화주의와 멀어지는 결과를 낳기도 하므로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정치적 개입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현재의 다문화정책을 보면, 이미 ‘다문화사회’가 공식적 정책의제로 통합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책 목표로까지 채택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06년 4월 정부가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과 열린 다문화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정책계획에서 ‘다문화사회’를 비전이나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주자를 오직 일시적 체류자로만 인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은 출입국 관리에만 한정시켜 왔던 정부가 국제결혼의 급증과 함께 결혼이민여성과 그 자녀의 사회적응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되자 ‘다문화사회’의 가치를 내걸고 이주자 관련 정책의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우리 사회의 다문화관련 정책의 경과 현황을 살펴보면

첫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제3차 종합지원 대책인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은 1, 2차 대책에서 다룬 ‘체류지원 및 생활안정대책’ 중 미흡한 부분과 정보제공·취업·보건의료서비스 지원내용을 보강하였으며,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관리체계 및 국가적 차원의 여성결혼이민자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교육방안을 포함하여 7대 주요 과제 및 26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였다. 둘째, 교육인적자원부가 다문화가정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 한국을 문화적 용해의 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셋째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는 2006년 5월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정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2009년 제 1차 외국인 정책기본계획(08 - '12)을 수립하였다. 이 기본계획은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중장기적 종합적 관점에서 국가경쟁력강화, 사회통합, 이민행정구현, 외국인 인권옹호를 위해 13개의 중점과제, 72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여성부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결혼이민여성과 북한이탈주민여성들을 정책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초기적응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과 브릿지 프로그램 개발, 지역여성문화자원의 생산적 가치 증진, 성인 지적 문화정책 추진기반 구축 등을 세부과제로 정하였다.

다섯째, 보건복지가족부가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할 다문화가족정책을 제시하였다. 다문화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결혼준비기, 가족형성기, 자녀양육기, 자녀교육기, 가족역량강화기, 가족해체시 등으로 나누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을 체계화, 확대 다양화하여 7대 정책과제에 21개 세부추진과제, 66개 세부사업내용을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2006년을 계기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급진전되고 있으나, 그 목표로 표방되고 있는 ‘다문화사회’가 지향하는 바는 불분명하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정책을 살펴보면 한국사회의 다문화정책은 특정한 이념적 지향을 내포하기 보다는 오히려 결혼이민여성이나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같이 몇몇 이주민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제도나 사업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다문화사회의 이면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은 더욱 배제되고 차별받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민여성들도 한국 남성의 가부장적 성적 편견에 방치되고 있으며 온정주의적 다문화가정의 대상이 됨으로서 더욱 주변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한 국가 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고 독자성을 인정하지는 입장으로서의 ‘다문화주의’ 이념을 표방하면서 결혼이민여성들에게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을 강화하는데 지원서비스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등 제시된 ‘다문화주의’의 기본 방향과는 모순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다문화사회로서의 한국사회에 대한 진단과 향후 방향에 대한 이해와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념과 정책이 급조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정책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정책은 특정한 이념과는 무관한, 어떤 면에서는 모순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다문화정책의 문제점

현재 추진 중인 결혼이민여성과 관련된 다문화정책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선 다문화정책이 일관된 방향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사회적 당면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결혼이민여성들이 국가나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라기보다는 별도의 교육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온정적 수혜자 즉 요보호대상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 결혼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은 초기적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사회로의 동화지향성의 성격이 강하다. 즉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을 돕고 결과적으로 동화를 촉진하는데 일방적인 초점을 두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의 다양성과 요구를 반영하기 보다는 이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요구에 충실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넷째, 결혼이민여성들의 다양한 문화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존중하기 보다는 부계·부권중심의 가족중심주의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진정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결혼이민여성들은 ‘그들’이 아닌 ‘우리’로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들을 존중하고 경제사회적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통합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결혼이민여성 정책은 단기적인 아닌 장기적인 시각에서, 공생통합의 시각에서,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을 위한 상호교육과 이해 등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한 법정책의 수립과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결혼이민여성들이 시혜적 대상이 아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면서 우리와 함께 공생하는 존재로 더 나아가 평등한 동반자로서 통합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와 정책추진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4. 결혼이민여성의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

가. 결혼이민여성의 인적자원개발

결혼이민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적 역량강화가 중요하므로 이들의 인적자원개발이 중점과제로 떠오른다. 이들의 인적자원개발은 다문화사회에서의 국가발전과 경쟁력 향상의 핵심요소가 될 뿐 아니라 개인의 성과와 삶의 질 향상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더욱이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여성 인적자원개발은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결혼이민여성들의 인적자원개발과 이를 취·창업으로 연결하는 것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이는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게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즉 결혼이민여성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경제적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것은 다문화사회 정착단계를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하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관련정책이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인적자원개발의 개념과 정의 및 활동영역을 그대로 결혼이민여성의 인적자원개발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며 오히려 결혼이민여성의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결혼이민여성의 인적자원 개발은 여성인적자원개발이 갖는 한계점에 인종차이에서 오는 어려운 점이 더 부가되고 이들이 처한 환경 즉, 언어미숙, 문화차이, 가족이해 부족 등에 대한 제반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존의 인적자원개발은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노동의 성별분업과 이분법적 성역할의식이 매우 뚜렷한 조직문화와 조직개발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성차별적인 결과를 낳으므로,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는 성 중립적인 관점이 아닌 성 평등적인 관점에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결혼이민여성들은 내국인과는 다른 여러 환경요건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성인적자원개발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들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게 되므로, 다문화적 시각에서 보다 심도있고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나. 결혼이민여성의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

결혼이민여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을 도모하고 이를 취·창업과 연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하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결혼이민여성들의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문화가정 절반 이상이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가정이므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미취학자녀들을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보내지 못하고 집에서 돌보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한국어에 미숙한 엄마와 같이 어린 자녀들이 있다 보니 적기에 언어적 자극을 못 받아 언어발달지체 현상이 나타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둘째, 결혼이민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택한 이유는 경제적인 기대감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잘사는 나라에서 살고 싶은 욕구, 모국 가족에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는데 이들이 처한 경제적 현실은 매우 열악하고, 취·창업에 대한 욕구가 높으나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현재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해지고 결혼이민여성의 지원정책은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이해 등 초기적응단계 지원정책이 대다수이며,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직업교육지원, 정보화교육 등은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그러나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중앙이나 지자체의 지원 하에 관련기관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지자체, 여성인력개발기관, 복지관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프로그램은 결혼이민여성들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고려하여 이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교육의 초점을 두기보다는 다문화강사, 통·번역사, 원어민강사 등 몇 가지 특화직종에 한정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들의 교육수준과 인적자원의 다양성 등을 고려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취·창업기술교육지원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결혼이민여성들의 인적자원개발은 다문화사회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21세기는 여성인적자원개발이 필수적인데 그중에서도 세계화의 경향에 따라 나타난 결혼이민여성들이 지닌 다양성과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미래 국제사회에서의 중요한 경쟁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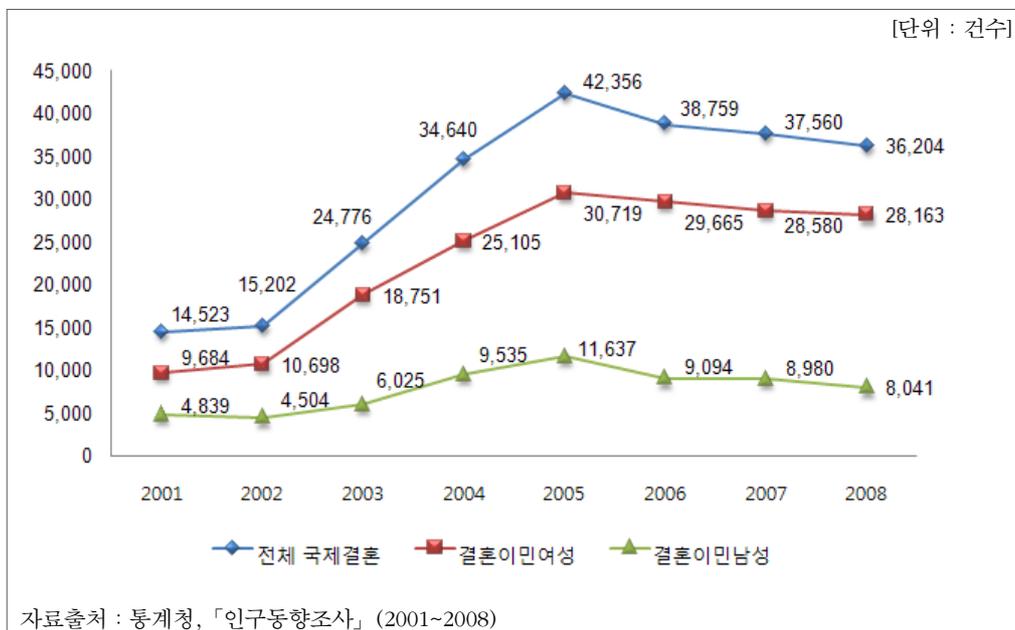
제2절 결혼이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분포

1. 전국 결혼이민여성의 현황

가. 결혼이민여성의 증가 추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국제결혼의 증가는 2000년 이후부터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나 현재는 일반적인 결혼의 한 형태가 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의 국제결혼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II-1]과 같이 국제결혼의 경우 2001년 14,523건에서 2005년 42,356건으로 그 혼인건수가 약 3배 가량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5년을 기점으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특히 결혼이민여성 혼인의 경우 2001년에 9,684건에서 2005년 30,719건으로 3배 이상 꾸준히 증가하다가 역시 2005년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매년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감소 추세는 미미한 수준이며, 2001년과 2008년을 비교했을 때 역시 3배가량 증가한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결혼이민여성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주된 혼인형태가 되고 있다.



Ⅱ 그림 II-1 Ⅱ 국제혼 증가 추이(전국)

한편, 16개 시·도별 결혼이민자의 증가 추이는 살펴보면 [표 II-1]과 같다. 즉,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실태조사」에 따르면, 2009년 7월 현재 전국의 결혼이민자 수는 혼인귀화자를 포함하여 총 167,090명이며, 이는 2008년 144,385명보다 15.7%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의 거주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 44,760명(26.8%), 서울시 39,275명(23.5%), 인천시 10,486명(6.3%)으로 수도권지역에 전체 결혼이민자 수의 과반수 이상(56.6%)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08년도 서울은 36,532(25.3%), 경기 39,395명(27.3%), 인천 8,291명(5.7%)의 58.3% 보다는 약간 떨어졌으나 수도권에 과반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것은 별 차이가 없다.

또한 결혼이민여성은 149,863명으로 결혼이민자 수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의 이주화’현상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 분포를 보면 경기도 39,134명(26.1%) 서울 32,558명(21.7%), 인천광역시 9,244명(6.2%)로 수도권에 과반수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표 II-1 결혼이민자 증가 추이

(단위 : 명, %)

구 분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포함)		결혼이민자 증감수	증감률 (전년도 대비)	2008년 결혼이민자 분포	2009년 결혼이민자 분포	2009 결혼이민 여성 수	2009 분포비율
	2008년	2009년						
전국	144,385	167,090	22,705	15.7	100.0	100.0	149,863	100
서울특별시	36,532	39,275	2,743	7.5	25.3	23.5	32,558	21.7
부산광역시	7,287	7,526	239	3.3	5.1	4.5	6,933	4.6
대구광역시	4,436	4,965	529	11.9	3.1	2.9	4,557	3
인천광역시	8,291	10,486	2,195	26.5	5.7	6.3	9,244	6.2
광주광역시	2,807	3,267	460	16.4	1.9	1.9	3,081	2.1
대전광역시	3,032	3,623	591	19.5	2.1	2.2	3,328	2.2
울산광역시	2,431	2,950	519	21.3	1.7	1.8	2,787	1.9
경기도	39,395	44,760	5,365	13.6	27.3	26.8	39,134	26.1
강원도	3,636	4,188	552	15.2	2.5	2.5	3,987	2.7
충청북도	4,160	4,927	767	18.4	2.9	2.9	4,677	3.1
충청남도	5,874	8,003	2,129	36.2	4.1	4.8	7,637	5.1
전라북도	4,947	6,743	1,796	36.3	3.4	4.0	6,545	4.4
전라남도	5,919	7,290	1,371	23.2	4.1	4.4	7,146	4.8
경상북도	6,503	8,057	1,554	23.9	4.5	4.8	7,764	5.2
경상남도	7,934	9,586	1,652	20.8	5.5	5.7	9,125	6.0
제주도	1,201	1,444	243	20.2	0.8	0.9	1,350	0.9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실태조사」 (2008, 2009) 재구성

전년도 대비 결혼이민자 증감수를 보면, 경기도가 5,365명으로 1년 사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울시 2,743명, 인천시 2,195명, 충청남도 2,129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년도 대비 결혼이민자 증감률의 경우, 전라북도와 충청남도가 각각 36.3%, 36.2%로 1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천시가 2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 조선족이 32.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국한족, 베트남, 필리핀, 일본, 몽골 순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최근의 특징은 베트남 결혼이민여성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2 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계	중국	중국 조선족	베트남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계	167,090 (100%)	48,698 (29.1)	53,754 (32.2)	30,779 (18.4)	5,364 (3.2)	517 (0.3)	9,799 (6)	481 (0.3)
구분	남부아	중양아	미국	러시아	몽골	태국	기타	기타
계	2,084 (1.2)	2,126 (1.3)	1,623 (0.1)	1,039 (0.6)	2,503 (2)	2,242 (1.3)	6,081 (4)	

출처 : 행정안전부 외국인 실태조사 자료(09.07) 재구성

나. 자녀의 증가 추이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가정 자녀들도 2009년 107,689명으로 2008년에 비해 거의 2배가 증가한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영유아시기인 0-3세가 44,560명으로 가장 많으며, 4-6세가 19,840명이며 초등학교 취학연령은 28,922명, 중등학교 취학연령은 8,082명, 고등학교 취학연령은 6,645명으로 미취학연령의 자녀가 가장 많아 보육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연령이 높아지므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에서의 여러 서비스 제공도 지원되어야 하며, 글로벌 차원에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들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II-3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연령	전체	남아	여아
	107,689(100)	54,890(51.0)	52,799(49.0)
만0-3세	44,560(41.3)	22,667(41.3)	10,956(20.80)
만4-6세	19,480(18.1)	9,890(18.0)	6,584(12.5)
만7-9세	15,322(14.2)	7,514(13.7)	5,980(11.3)
만10-12세	13,600(12.6)	6,672(12.1)	6,381(12.1)
만13-15세	8,082(7.5)	4,187(7.6)	3,895(7.4)
만16-18세	6,645(6.2)	3,410(6.2)	3,235(6.1)

출처 : 행정안전부 외국인실태조사 자료(2009.7 자료 재구성)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수는 2005년 6,121명이었는데 2008에는 18,778명으로 3배정도 증가하였다.

이 중 초등학교가 84.2%, 중학교 11.7%, 고등학교 4%로 초등학교 비율이 월등히 높은 상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20.7%), 서울(12%), 전남(10%), 경남(8.2%), 충남(7.9%)순이며, 부모국적별로는 일본(41.0%), 중국(22.3%), 필리핀(14.3%)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2) 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24,867명 정도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할 연령인데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료에 의하면 재학생 수가 18,778명이므로 75% 정도만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20% 이상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원인과 이유를 알아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외국인 근로자 자녀 : 1,402명 ('07년 대비 15.9% 증가)

- 학교급별 비율 : 초 70.0%, 중 22.4%, 고 7.6%
- 지역별 비율 : 서울(38.2%), 경기(30.6%), 전북(8.0%), 경남(7.7%) 등
- 부모국적별 비율 : 몽골(26.2%), 일본(22.0%),

구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5	995		352		227		1,574	
2006	1,115	12.0	215	△39.0	61	△73.1	1,391	△11.6
2007	755	△32.3	391	81.9	63	3.3	1,209	△13.0
2008	981	29.9	314	△19.7	107	69.8	1,402	15.9

※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 재학 현황은 파악되나, 체류·신분 문제 등으로 인해 미취학 상태인 학교밖 취학연령대 아동에 대한 파악은 어려운 실정

【 표 II-4 】 초·중·고 재학중인 결혼이민자 자녀수

구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5	5,332		583		206		6,121	
2006	6,795	27.4	924	58.5	279	35.4	7,998	30.6
2007	11,444	68.4	1,588	71.9	413	48.0	13,445	68.1
2008	15,805	38.1	2,213	38.9	760	84.0	18,778	39.6

※ 모가 외국인인 경우가 90.2%(16,937명)로 대부분을 차지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자료

다. 결혼이민여성의 이혼증가 추이

결혼이민여성은 언어문제, 경제문제, 가족간의 이해 문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혼건수가 2002년 1.2%에서 2008년 9.7%로 증가하였다. 2008년 총 이혼건수는 총 11만 6천 5백건으로 2007년보다 6.1% 감소했으나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이혼은 11,255건으로 2,584건 증가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30%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와의 이혼은 전년대비 2,255건 증가하여 39.5%의 증가세를 나타냈고, 한국인 처와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은 329건 증가해 11%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와의 높은 이혼율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이혼한 부부의 평균 동거기간이 12.8년임에 비해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처와의 평균동거기간은 2.7년으로 매우 짧아서 가족해체후의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인 문제, 자녀문제 등이 사회문제화 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가정생활에 대한 상담, 부부상담, 이혼상담 등을 할 수 있는 상담센터가 필요하다. 현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일부기관에서 상담을 하고 있으나 인력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지역에 상담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상담센터 설립이 요구된다.

【 표 II-5 】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

(단위 :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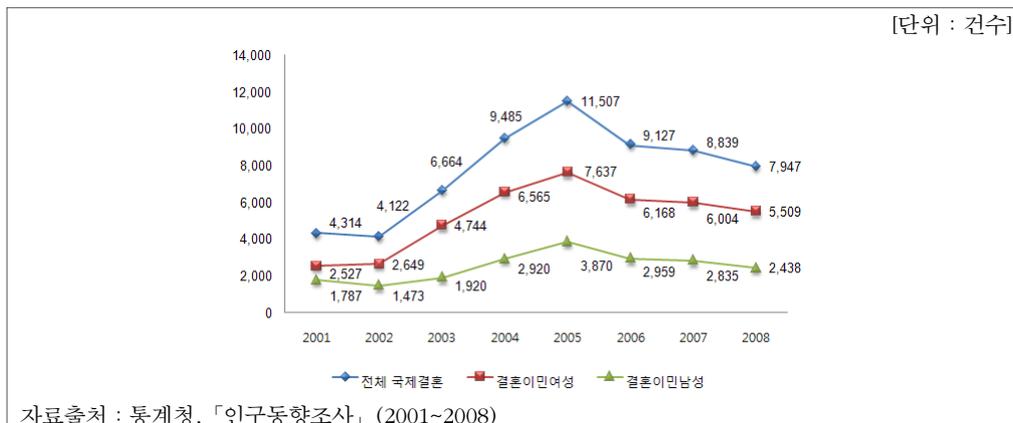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이혼건수	144,910	166,617	138,932	128,035	124,524	124,072	116,535
외국인과의 총 이혼	1,744	2,012	3,300	4,171	6,136	8,671	11,255
외국인 처의 경우	380	547	1,567	2,382	3,933	5,707	7,962
외국인 남편의 경우	1,364	1,465	1,733	1,789	2,203	2,964	3,293
총 이혼대비 구성비	1.2%	1.2%	2.4%	3.3%	4.9%	7.0%	9.7%

출처 : 2008년 이혼통계 결과 재분석, 통계청

2. 서울시 결혼이민여성의 현황

가. 결혼이민자 증가추이

서울시의 국제결혼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II-2]와 같다. 즉, 2001년 4,314건에서 2005년 11,507건으로 그 혼인건수가 약 3배로 증가했으며 2006년에 20% 이상 급격히 감소한 후 그 진행속도가 둔화되기는 했으나 지속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성별로 살펴 보면, 결혼이민여성도 2001년에 2,527건에서 2005년 7,63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가 역시 2005년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매년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감소추세는 미미한 수준이며, 2001년과 2008년을 비교했을 때 전국의 추이보다는 낮지만 역시 2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그 수치는 결혼이민남성 혼인의 2배 이상이다.



【 그림 II-2 】 국제결혼 증가 추이(서울시)

서울시는 거주 결혼이민자수는 2009년 7월 현재 총 39,275명이며, 이 가운데 82.9%인 32,558명이 결혼이민여성이며, 17.1%인 6,717명만이 결혼이민남성으로서 ‘여성이주화’ 현상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이를 출신국적별로 살펴보면, 남녀 결혼이민자 모두 중국 출신자가 많은데, 특히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전체 결혼이민여성의 76.7%가 중국 출신자로 서울시 거주 결혼이민여성 10명 중 약 8명이 조선족 내지 한족출신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 9.3%(3,042명), 일본 3.5%(1,149명), 필리핀 3.0%(991명), 태국 1.0%(31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국가의 출신자는 2.9%인 959명에 이르고 있다.

서울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수의 증가수치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 2,743명 증가하여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증가수치이며 결혼이민남성들은 오히려 34명이 줄어들었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여성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거의 증가수치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6 서울시 결혼이민자 출신국적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중국	대만	일본	몽골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 네시아	미국	러시아	기타
전체('08)	36,532	28,175	1,515	1,158	362	1,657	743	212	64	637	211	1,798
전체('09)	39,275	29,653	160	1,340	458	3,094	1,042	318	66	703	230	2,211
비율	100	76	0.4	3.4	1.2	7.9	2.7	0.8	0.2	1.8	0.6	5.4
증가수	2,743	1,478	-1,355	182	96	1,437	299	106	2	66	19	413
남성('08)	6,754	4,409	739	174	26	57	63	10	8	347	19	902
남성('09)	6,717	4,685	38	191	17	52	51	2	8	407	14	1,252
증가수	-34	276	-701	17	-9	-5	-12	-8	0	60	-5	-350
여성('08)	29,778	23,766	776	984	336	1,600	680	202	56	290	192	896
여성('09)	32,558	24,968	122	1,149	441	3,042	991	316	58	296	216	959
증가수	2,780	1,202	-654	165	105	1,442	311	114	2	6	24	63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실태조사」 재구성(2009.07)

나. 자치구별 결혼이민여성 거주분포

[표 II-7]에서 나타나듯 2009년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은 영등포구 3,494명으로 가장 많으며 구로구(2,949명), 관악구(1,943명), 금천구(1,678명)으로 나타났다. 출신국적 분포를 살펴보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정책수립 시 지역에 따른 차별화가 필요하다. 우선 중국 출신(조선족 포함) 결혼이민여성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영등포구로 전체 중국 출신자(24,968명) 가운데 3,107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구로구 1,901명, 관악구 1,542명, 금천구 1,431명의 순으로 중국 출신 결혼이민여성의 분포도는 서남권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여성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동대문구로 전체 베트남 출신자(3,042명)는 거의 모든 자치구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동대문구, 영등포구, 중랑구, 구로구 등 동북권과 서남권에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

일본 출신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전체 1,149명 가운데 7.5%인 86명이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송파구, 강서구, 관악 등에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여성 991명 중 7.3%인 73명이 강서구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관악구, 양천구, 은평구 등 서남권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다시 자치구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 국적비율로 살펴보면 중국출신 결혼이민여성의 거주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영등포구로 88.9%이며, 그 다음으로는 금천구 85.3%, 구로구 84.7%, 광진구 81.2% 순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 10명 중 8명은 중국 출신자로 나타났다.

서울시 거주 결혼이민여성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베트남 출신의 경우는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베트남 결혼이민여성의 비율이 14.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성북구 13.2%, 강북구 12.8%, 은평구 12.0%에서 높게 나타난다.

일본 출신 결혼이민여성의 거주비율은 서초구(8.5%)와 강남구(8.3%)에서 높았으며, 동대문구(6.3%)와 용산구(6.2%)에서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여성의 경우는 양천구에서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성북구 4.6%, 강서구 4.5%, 도봉구와 은평구에서 각각 4.2% 순으로 높았다.

3) 서울특별시 5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분류한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관련 각종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그 분류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심권 : 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 3개 구
- 동북권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등 8개 구
- 서북권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등 3개구
- 서남권 :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등 7개 구
- 동남권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 4개 구

이를 정리해 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국 출신 결혼이민여성의 경우는 영등포구와 금천구, 구로구 등과 같은 서남권 지역에,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여성의 경우는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등과 같은 동북권 지역에 거주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 출신 결혼이민여성의 경우는 서초구, 강남구 등과 같은 동남권 지역에,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여성의 경우는 양천구, 강서구 등 서남권 지역과 성북구, 도봉구 등 동북권 지역에 거주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들의 국적에 따라 적합 직종의 커다란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나 영향은 미치므로 각 지역에서 취·창업프로그램을 개발 시 차별성을 두어 개발하는 것이 정책의 효과 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II-7 자치구별 결혼이민여성 출신국적 분포(2009년도)

(단위 : 명,%)

구분	전체	중국	대만	일본	몽골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 네시아	미국	러시아	기타
서울시	32,558 (100.0)	24,968 (76.7)	122 (0.4)	1,149 (3.5)	441 (1.3)	3,042 (9.3)	991 (3.0)	316 (1.0)	58 (0.2)	296 (0.9)	216 (0.7)	959 (2.9)
종로	677 (100.0)	502 (74.1)	2 (0.3)	17 (2.5)	15 (2.2)	65 (9.6)	15 (2.2)	6 (0.9)	0 (0.0)	19 (2.8)	4 (0.6)	32 (4.7)
중구	595 (100.0)	419 (70.4)	7 (1.2)	23 (3.9)	22 (3.7)	60 (10.1)	9 (1.5)	7 (1.2)	0 (0.0)	9 (1.5)	9 (1.5)	30 (5.0)
용산	874 (100.0)	569 (65.1)	7 (0.8)	54 (6.2)	11 (1.2)	73 (8.3)	31 (3.5)	9 (1.0)	0 (0.0)	28 (3.2)	37 (4.2)	55 (6.3)
성동	1,186 (100.0)	912 (76.9)	7 (0.6)	23 (1.9)	23 (1.9)	130 (11.0)	37 (3.1)	14 (1.2)	0 (0.0)	7 (0.6)	8 (0.7)	25 (2.1)
광진	1,433 (100.0)	1,164 (81.2)	1 (0.1)	46 (3.2)	15 (1.0)	111 (7.7)	39 (2.7)	7 (0.5)	3 (0.2)	5 (0.3)	8 (0.5)	34 (2.4)
동대문	1,368 (100.0)	936 (68.4)	1 (0.1)	86 (6.3)	29 (2.1)	195 (14.2)	38 (2.8)	18 (1.3)	2 (0.1)	7 (0.5)	10 (0.7)	46 (3.4)
종랑	1,602 (100.0)	1,211 (75.6)	6 (0.4)	35 (2.2)	46 (2.9)	176 (11.0)	51 (3.2)	23 (1.4)	3 (0.2)	0 (0.0)	10 (0.6)	41 (2.5)
성북	1,133 (100.0)	756 (66.7)	6 (0.5)	49 (4.3)	30 (2.6)	150 (13.2)	52 (4.6)	19 (1.7)	2 (0.2)	15 (1.3)	8 (0.7)	46 (4.1)
강북	1,197 (100.0)	865 (72.3)	3 (0.2)	37 (3.1)	37 (3.1)	153 (12.8)	39 (3.2)	19 (1.6)	2 (0.2)	3 (0.2)	4 (0.3)	35 (2.9)
도봉	929 (100.0)	694 (74.7)	2 (0.2)	34 (3.6)	20 (2.1)	93 (10.0)	39 (4.2)	9 (1.0)	3 (0.3)	2 (0.2)	3 (0.3)	30 (3.2)
노원	1,204 (100.0)	906 (75.2)	4 (0.3)	55 (4.6)	10 (0.8)	121 (10.0)	36 (3.0)	7 (0.6)	1 (0.1)	6 (0.5)	3 (0.2)	55 (4.6)
은평	1,324 (100.0)	961 (72.6)	5 (0.4)	53 (4.0)	20 (1.5)	159 (12.0)	56 (4.2)	15 (1.1)	3 (0.2)	4 (0.3)	14 (1.0)	34 (2.6)

구분	전체	중국	대만	일본	몽골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 네시아	미국	러시아	기타
서대문	772 (100.0)	509 (65.9)	18 (2.3)	47 (6.1)	12 (1.5)	84 (10.9)	25 (3.2)	13 (1.7)	4 (0.5)	10 (1.3)	9 (1.2)	41 (5.3)
마포	1,024 (100.0)	728 (71.1)	5 (0.5)	54 (5.3)	14 (1.4)	99 (9.7)	28 (2.7)	12 (1.2)	4 (0.4)	9 (0.9)	11 (1.1)	60 (5.8)
양천	1,192 (100.0)	892 (74.8)	2 (0.2)	53 (4.4)	12 (1.0)	116 (9.7)	60 (5.0)	8 (0.7)	2 (0.2)	9 (0.7)	5 (0.4)	33 (2.8)
강서	1,622 (100.0)	1,245 (76.7)	10 (0.6)	66 (4.1)	12 (0.7)	145 (8.9)	73 (4.5)	14 (0.9)	4 (0.2)	3 (0.2)	9 (0.5)	41 (2.5)
구로	2,245 (100.0)	1,901 (84.7)	2 (0.1)	36 (1.6)	9 (0.4)	169 (7.5)	58 (2.6)	17 (0.7)	3 (0.1)	6 (0.3)	7 (0.3)	37 (1.6)
금천	1,678 (100.0)	1,431 (85.3)	1 (0.1)	19 (1.1)	18 (1.1)	116 (6.9)	37 (2.2)	12 (0.7)	3 (0.2)	3 (0.2)	8 (0.5)	30 (1.8)
영등포	3,494 (100.0)	3,107 (88.9)	6 (0.2)	46 (1.3)	17 (0.5)	190 (5.4)	50 (1.4)	11 (0.3)	3 (0.1)	15 (0.4)	7 (0.2)	42 (1.2)
동작	1,057 (100.0)	817 (77.3)	4 (0.4)	35 (3.3)	10 (0.9)	96 (9.1)	35 (3.3)	15 (1.4)	2 (0.2)	7 (0.7)	2 (0.2)	34 (3.2)
관악	1,943 (100.0)	1,542 (79.3)	8 (0.4)	62 (3.2)	14 (0.7)	164 (8.4)	62 (3.2)	12 (0.6)	4 (0.2)	7 (0.4)	10 (0.5)	58 (3.0)
서초	496 (100.0)	335 (67.5)	2 (0.4)	42 (8.5)	8 (1.6)	19 (3.8)	20 (4.0)	3 (0.6)	0 (0.0)	37 (7.4)	3 (0.6)	27 (5.4)
강남	698 (100.0)	444 (63.6)	4 (0.6)	58 (8.3)	9 (1.3)	52 (7.4)	18 (2.6)	7 (1.0)	1 (0.1)	59 (8.4)	14 (2.0)	32 (4.6)
송파	1,376 (100.0)	990 (71.9)	8 (0.6)	67 (4.9)	15 (1.1)	153 (11.1)	50 (3.6)	25 (1.8)	4 (0.3)	22 (1.6)	8 (0.6)	34 (2.5)
강동	1,439 (100.0)	1,132 (78.7)	1 (0.1)	52 (3.6)	13 (0.9)	153 (10.6)	33 (2.3)	14 (1.0)	5 (0.3)	4 (0.3)	5 (0.3)	27 (1.9)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실태조사」 (2009.7) 재구성

다. 자치구별 결혼이민자 증가추이와 성별분포

[표 II-8]은 서울시 자치구별 결혼이민자 증가 추이와 성별분포를 나타낸 현황표이다. 먼저 서울시 자치구별 결혼이민자 거주분포를 살펴보면, 2009년 현재 결혼이민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영등포구로 4,404명(11.2%)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구로구 2,912명(7.4%), 관악구 2,396명(6.1%), 금천구 2,076명(5.3%), 강서구 1,913명(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시 5대 권역 가운데 양천구와 동작구를 포함한 서남권 지역에 서울시 결혼이민자의 41.8%가 거주하고 있다.

다음으로 전년도 대비 서울시 결혼이민자의 증감률을 보면, 결혼이민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강동구로 2008년 당시 456명에서 2009년 현재 1,668명으로 265.8%의 증가

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양천구가 큰 증가율을 보였는데, 2008년 456명에서 2009년 1,423명으로 역시 212.1%의 급격한 증가율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동대문구 78.2%, 성북구 35.4%, 관악구 34.0%, 마포구 22.2%의 순으로 결혼이민자 증가율이 높았다. 반면, 결혼이민자의 수가 오히려 감소한 지역도 몇몇 있었는데, 광진구가 2008년 당시 2,441명에서 2009년 현재 1,675명으로 가장 큰 폭(31.4%)으로 감소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성동구 24.5%, 서대문구 22.9%, 은평구 15.8%, 서초구 11.4% 등의 순으로 감소율을 나타냈다.

한편,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2009년 현재 결혼이민여성의 수가 결혼이민남성의 수보다 약 5배 가량 많은 가운데, 특히 결혼이민여성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영등포구로 나타났다. 즉, 영등포구에 3,494명의 결혼이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 거주 결혼이민여성의 10.7%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 다음으로는 구로구 2,245명(6.9%), 관악구 1,943명(6.0%), 금천구 1,678명(5.1%), 강서구 1,622명(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 결혼이민자 추이와 같은 것으로 역시 양천구와 동작구를 포함한 서남권 지역에 서울시 결혼이민여성의 40.6%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결혼이민자의 성별 증감률을 살펴볼 때, 결혼이민여성의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강동구로 2008년 377명에서 2009년 1,439명으로 281.7%의 증가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양천구가 2008년 386명에서 2009년 1,192명으로 20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동대문구가 77.2%, 중구 73.5%, 성북구 61.8%, 마포구 51.7% 등의 순으로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결혼이민여성의 수가 감소한 지역으로는 광진구가 2008년 당시 1,930명에서 2009년 현재 1,433명으로 가장 큰 폭(25.7%)으로 감소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서대문구가 24.8%, 성동구 22.7%, 서초구 13.3%, 은평구 12.7% 등의 순으로 감소율을 나타냈다.

표 8 서울시 자치구별 결혼이민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8년 (혼인귀화자포함)			2009년 (혼인귀화자포함)			결혼이민자 증감률 (전년도 대비)		2009년 결혼이민자 분포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여성	계	여성
총계	36,532	6,754	29,778	39,275	6,717	32,558	7.5	9.3	100.0	100.0
종로	911	153	758	824	147	677	-9.5	-10.7	2.1	2.1
중구	625	282	343	716	121	595	14.6	73.5	1.8	1.8
용산	1,127	327	800	1,253	379	874	11.2	9.2	3.2	2.7
성동	1,861	327	1,534	1,405	219	1,186	-24.5	-22.7	3.6	3.6
광진	2,441	511	1,930	1,675	242	1,433	-31.4	-25.7	4.3	4.4
동대문	914	142	772	1,629	261	1,368	78.2	77.2	4.1	4.2
중랑	1,920	206	1,714	1,812	210	1,602	-5.6	-6.5	4.6	4.9
성북	969	269	700	1,312	179	1,133	35.4	61.8	3.3	3.5
강북	1,348	165	1,183	1,330	133	1,197	-1.3	1.2	3.4	3.7
도봉	1,039	126	913	1,041	112	929	0.2	1.7	2.6	2.8
노원	1,588	271	1,317	1,483	279	1,204	-6.6	-8.6	3.8	3.7
은평	1,784	268	1,516	1,502	178	1,324	-15.8	-12.7	3.8	4.1
서대문	1,188	161	1,027	916	144	772	-22.9	-24.8	2.3	2.4
마포	1,001	326	675	1,223	199	1,024	22.2	51.7	3.1	3.1
양천	456	70	386	1,423	231	1,192	212.1	208.8	3.6	3.7
강서	1,582	200	1,382	1,913	291	1,622	20.9	17.4	4.9	5.0
구로	2,949	629	2,320	2,912	667	2,245	-1.2	-3.2	7.4	6.9
금천	2,101	348	1,753	2,076	398	1,678	-1.2	-4.3	5.3	5.1
영등포	3,999	877	3,122	4,404	910	3,494	10.1	11.9	11.2	10.7
동작	1,421	245	1,176	1,307	250	1,057	-8.0	-10.1	3.3	3.2
관악	1,788	306	1,482	2,396	453	1,943	34.0	31.1	6.1	6.0
서초	702	130	572	622	126	496	-11.4	-13.3	1.6	1.5
강남	816	141	675	850	152	698	4.2	3.4	2.2	2.1
송파	1,546	195	1,351	1,583	207	1,376	2.4	1.8	4.0	4.2
강동	456	79	377	1,668	229	1,439	265.8	281.7	4.2	4.2

출처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실태조사」(2008, 2009) 재구성

제3절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실태

1. 월평균 가구소득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⁴⁾, 결혼이민여성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표 II-9]과 같다. 즉, 100만원~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9.9%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200만원~300만원 미만이 21.6%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족 전체의 월수입이 50만원~100만원 미만이거나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도 각각 7.4%와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형편이 매우 열악한 경우는 총 14.4%에 이르며, 결국 월 2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보이는 경우는 전체의 45.5%인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월평균 가구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경우도 22%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데, 결혼이민여성들 가운데 가족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혼이민여성의 출신국적별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비교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즉 중국 조선족 출신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족은 23.7%인 반면, 베트남과 필리핀 출신의 경우는 각각 5.2%, 3.3%에 불과해 출신국 별로도 특색을 보인다. 또한 필리핀 출신의 경우 ‘소득이 없다’는 응답이 15.1%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을 ‘잘 모른다’는 응답이 중국 한족과 베트남 출신의 경우에서 각각 30.0%, 32.8%로 상대적으로 많아 결혼결정 당시 소득에 대한 정확한 정보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결혼을 생활하면서 부부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4) 이하의 내용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자세한 내용은 장명선, 이옥경 (2008)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참조

표 II-9 출신국적별 월평균 가구소득

(단위: 원, %)

구분	사례수	월평균 가구소득(%)								
		소득 없다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잘 모르겠다
합계	842	7.0	1.2	7.4	29.9	21.6	4.8	3.3	1.1	23.8
중국조선족	72	6.9	1.4	5.6	38.9	20.8	18.1	5.6	0.0	2.8
중국한족	190	7.4	0.5	3.2	25.3	25.8	5.3	1.6	1.1	30.0
일본	82	4.9	0.0	9.8	34.1	24.4	6.1	7.3	0.0	13.4
베트남	252	4.4	0.8	7.5	31.0	23.8	1.6	3.2	0.4	27.4
필리핀	119	15.1	5.0	14.3	22.7	6.7	0.8	2.5	0.0	32.8
캄보디아	41	4.9	0.0	0.0	41.5	24.4	12.2	0.0	0.0	17.1
기타	86	5.8	0.0	9.3	30.2	23.3	2.3	4.7	7.0	17.4

2. 직장생활

가. 직업유무

실태조사결과 결혼이민여성 중 직업이 있는 경우는 18.5%에 불과한 반면, 직업이 없는 경우는 81.2%로 나타나 결혼이민여성 10명 중 8명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⁵⁾ 이는 2007년 기준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여성취업률 48.9%와 서울시 여성취업률 49.6%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⁶⁾

이를 출신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조선족 출신 결혼이민여성의 직업을 가진 경우가 27.8%로 가장 높은 반면, 대부분의 다른 국적을 가진 여성들은 거의 직업이 없는 비율이 80%를 넘어 비슷한 실정이다. 아마도 이는 중국조선족은 다른 국적을 가진 여성들보다 한국어에 능통하므로 직업을 가진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5) 동 실태조사에서는 '직업이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학생(1.1%)과 전업주부(64.1%), 무직자(16.0%)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6)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2008)

표 II-10 출신국적별 직업 유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직업 유무(%)		
		직업 있음	직업 없음	무응답
합계	842	18,5	81,2	0,2
중국조선족	72	27,8	72,2	0,0
중국한족	190	11,1	88,9	0,0
일본	82	25,6	74,4	0,0
베트남	252	14,3	85,7	0,0
필리핀	119	19,3	80,7	0,0
캄보디아	41	14,6	85,4	0,0
기타	86	33,7	64,0	2,3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그 직종을 살펴보면, 전업주부(64.1%)와 무직인 경우(16.0%)를 제외하고는 기술/생산직(3.9%)과 강사/교사직(3.9%)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출신국적별로는 기술/생산직의 경우 캄보디아 출신(7.3%)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강사/교사직의 경우는 일본 출신(12.2%)과 필리핀 출신(9.2%)이 많다.

나. 구직경로

결혼이민여성의 구직경로는 모국인 친구·이웃의 소개로 인한 경우가 21.8%로 가장 많으며, ‘한국인 친구·이웃의 소개(13.5%)’와 ‘가족 및 친척의 소개(13.5%)’, ‘인터넷, 신문, 지역 정보지 등(11.5%)’, ‘민간 직업알선기관(8.3%)’ 순으로 많아 대부분 사적인 경로를 통해 구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공공 행정기관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3.8%에 불과해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공공기관의 활발한 활동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간의 긴밀한 연계 등이 요구된다.

【 표 II-11 】 구직경로

구분	사례수	비율(%)
합계	156	100.0
한국인 친구·이웃의 소개로	21	13.5
모국인 친구·이웃의 소개로	34	21.8
가족 및 친척의 소개로	21	13.5
외국인 상담소를 통해	4	2.6
공공 행정기관의 소개를 통해	6	3.8
민간 직업알선기관을 통해	13	8.3
인터넷, 신문, 지역 정보지 등을 통해	18	11.5
기타	24	15.4
무응답	15	9.6

다. 근로시간

직업이 있는 결혼이민여성의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표 II-12]과 같다. 즉, 근로시간이 1~17시간인 경우가 30.1%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36~44시간(16.0%), 45~53시간(16.0%), 54시간(16.0%), 18~35시간(14.7%)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는 법정근로시간인 44시간(2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을 초과하여 일하는 경우가 전체의 32.0%를 차지하는 것으로, 결혼이민여성들이 정규직이기보다는 임시직,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표 II-12 】 출신국적별 1주일 평균 근로시간

구분	사례수	평균 근로시간(%)					
		1~17시간	18~35시간	36~44시간	45~53시간	54시간 이상	무응답
합계	156	30.1	14.7	16.0	16.0	16.0	7.1
중국조선족	20	30.0	10.0	15.0	25.0	15.0	5.0
중국한족	21	33.3	9.5	9.5	14.3	23.8	9.5
일본	21	47.6	23.8	4.8	14.3	4.8	4.8
베트남	36	22.2	16.7	11.1	16.7	19.4	13.9
필리핀	23	47.8	17.4	17.4	0.0	17.4	0.0
캄보디아	6	0.0	16.7	33.3	16.7	33.3	0.0
기타	29	17.2	10.3	31.0	24.1	10.3	6.9

한편, 결혼이민여성의 직업유형별로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결혼이민여성이 비교적 많이 종사하는 기술/생산직의 경우 54시간 이상의 근로 비율이 33.3%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강사/교사직의 경우는 그 직업의 특성상 1~17시간의 근로비율이 57.6%로 월등히 높아 결혼이민여성들이 선호하는 다문화강사 등의 직종이 아르바이트 형식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월평균 개인소득

직업이 있는 결혼이민여성의 월평균 개인소득을 보면, 50~100만원 미만이 41.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100~150만원 미만(21.8%), 50만원 미만(14.1%), 150~200만원 미만(5.8%) 순으로 나타나 100만원 이하가 55.8%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국적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필리핀 출신의 경우 원어민 강사로 활동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100-150만원 미만의 비율의 타 국적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캄보디아나 중국조선족 출신의 경우 50-100만원 미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13 출신국적별 월평균 개인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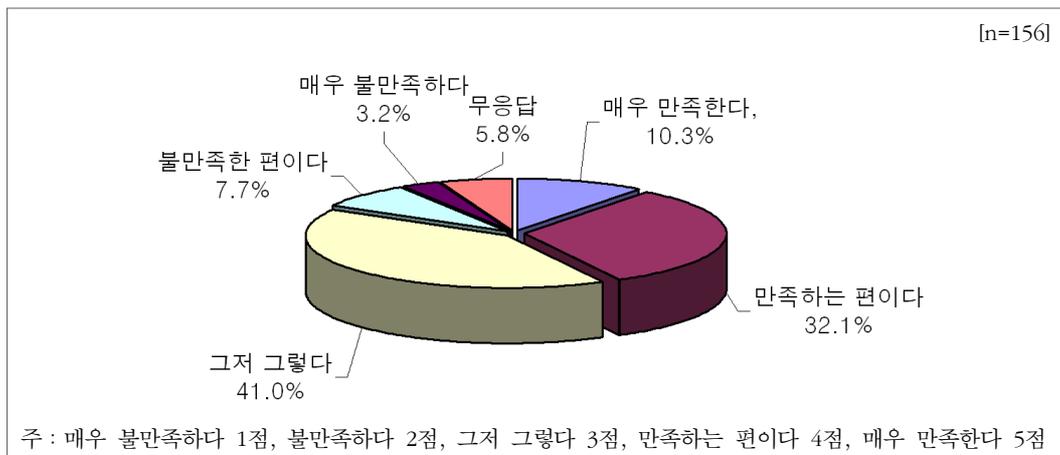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월평균 개인소득(%)								
		소득없음	50만원미만	50~100만원미만	100~150만원미만	150~200만원미만	200~250만원미만	250~3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	무응답
합계	156	5.8	14.1	41.7	21.8	5.8	1.3	2.6	0.6	6.4
중국조선족	20	5.0	5.0	50.0	30.0	5.0	0.0	0.0	0.0	5.0
중국한족	21	4.8	9.5	47.6	19.0	9.5	0.0	0.0	0.0	9.5
일본	21	0.0	33.3	42.9	19.0	4.8	0.0	0.0	0.0	0.0
베트남	36	13.9	8.3	41.7	19.4	5.6	5.6	0.0	0.0	5.6
필리핀	23	8.7	13.0	26.1	34.8	8.7	0.0	0.0	0.0	8.7
캄보디아	6	0.0	0.0	66.7	16.7	0.0	0.0	16.7	0.0	0.0
기타	29	0.0	20.7	37.9	13.8	3.4	0.0	10.3	3.4	10.3

직업이 있는 결혼이민여성이 월수입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관리한다’는 경우가 57.7%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나와 배우자가 함께 관리한다’는 경우가

17.9%로 나타난다. 한편, 결혼이민여성이 자신의 직업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배우자가 관리하는 경우는 14.1%이며, ‘배우자의 부모님이 관리한다’는 경우도 3.8%로 나타난다. 이처럼 결혼이민여성이 스스로 얻은 수입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경우(17.9%)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경우 인권 및 노동력 착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마. 근로만족도

직업이 있는 결혼이민여성의 근로만족도는 [그림 II-3]과 같다. 즉, 만족한다는 경우가 전체의 42.4%(‘매우 만족한다’ 10.3% + ‘만족하는 편이다’ 32.1%)로 불만족하다 10.9%(‘매우 불만족하다’ 3.2% + ‘불만족한 편이다’ 7.7%)보다 4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저 그렇다’는 응답비율 역시 41.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 결국 근로만족도는 척도 치 점수로 환산할 때 평균 3.41점(5점 척도)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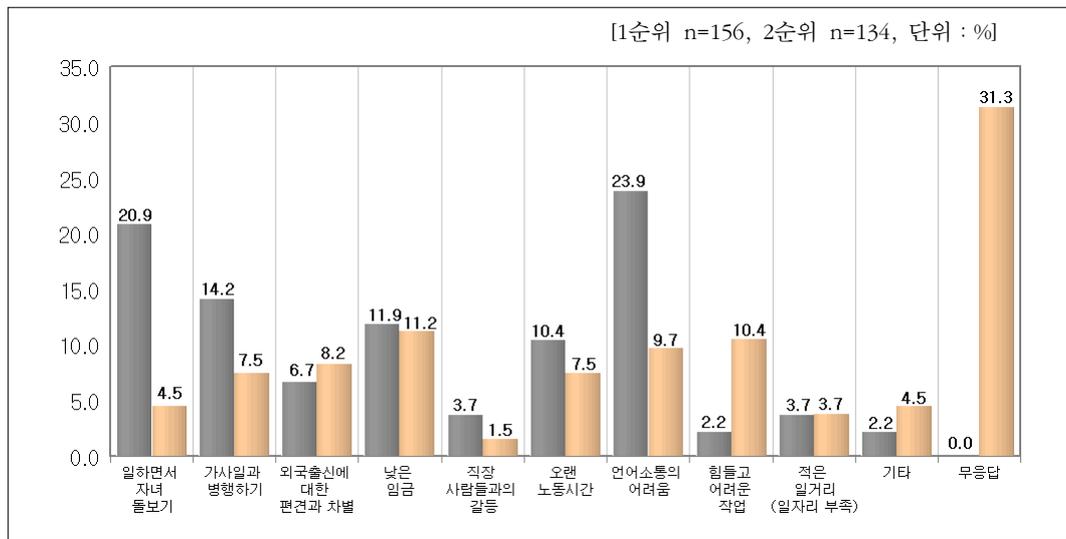


Ⅱ 그림 II-3 Ⅱ 근로만족도

바. 직장생활에 따른 어려움

직업이 있는 결혼이민여성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림 II-4]와 같이 나타난다. 어려움의 1순위로는 ‘언어소통의 어려움’이 23.9%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하면서 자녀돌보기(20.9%)’, ‘가사일과 병행하기(14.2%)’, ‘낮은 임금(11.9%)’,

‘오랜 노동시간(10.4%)’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또한, 2순위로 꼽은 어려움으로는 ‘낮은 임금’이 11.2%로 가장 많고, ‘힘들고 어려운 작업’ 10.4%, ‘언어소통의 어려움’ 9.7%, ‘외국출신에 대한 편견과 차별’ 8.2%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결국 결혼이민여성의 직장 생활에 따른 어려움은 주로 일-가정 양립과 불안정한 근로환경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림 II-4 ■ 직장생활에 따른 어려움 1, 2순위

3. 취업

가. 취업동기

미취업 결혼이민여성의 77.7%이상이 취업을 원하며 그 동기는 ‘생활비 보충’이 26.3%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족의 생계유지’ 20.5%, ‘자녀의 양육비 충당’ 16.0%, 등 생활비 보충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자기발전을 위해’ 11.5%, ‘모국 가족에게 송금하기 위해’ 9.0%로 나타났다.

【 표 II-14 】 출신국적별 취업동기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취업동기(%)								
		자녀의 양육비 총당	가족의 생계유지	장래 노후 대비	생활비 보충	자기발전을 위해	모국가족에게 송금하기 위해	여가시간 활용	기타	무응답
합계	156	16.0	20.5	7.7	26.3	11.5	9.0	3.8	1.3	3.8
중국조선족	20	5.0	25.0	10.0	40.0	5.0	5.0	5.0	0.0	5.0
중국한족	21	19.0	9.5	4.8	14.3	33.3	0.0	9.5	4.8	4.8
일본	21	33.3	9.5	0.0	38.1	14.3	0.0	4.8	0.0	0.0
베트남	36	11.1	27.8	8.3	11.1	5.6	30.6	0.0	0.0	5.6
필리핀	23	21.7	8.7	13.0	34.8	8.7	0.0	8.7	4.3	0.0
캄보디아	6	0.0	50.0	0.0	16.7	16.7	16.7	0.0	0.0	0.0
기타	29	13.8	27.6	10.3	31.0	6.9	3.4	0.0	0.0	6.9
χ^2 -검정	$\chi^2=79.431, p\text{-value}=.003$									

나. 미취업 사유

직업이 없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면, ‘자녀와 집안일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라는 경우가 34.3%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어가 서툴러서(31.9%)’, ‘내게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서(15.4%)’, ‘배우자와 가족의 반대로(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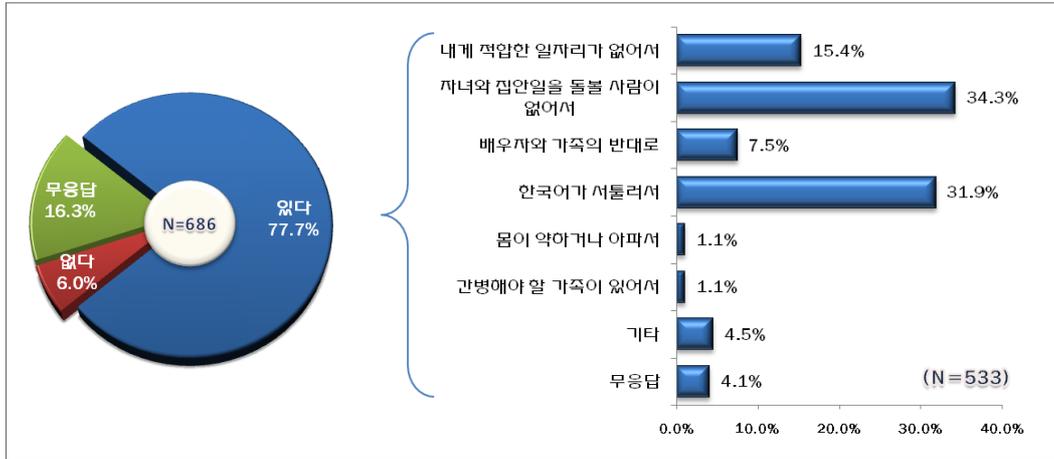


그림 11-5 미취업사유

다. 향후 취업의사

미취업 결혼이민여성 중 77.7%가 취업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거주기간별로 보면 3-5년 미만의 경우에 취업할 의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직종으로는, 강사/교사직 희망이 18.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판매/영업직(17.8%), 기술/생산직(13.5%), 서비스직(11.6%), 관리/사무직(9.2%)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출신국적별로 희망직종을 분석해 보면, 일본 출신(35.4%)과 필리핀 출신(42.9%)은 강사/교사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베트남 출신은 판매/영업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27.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캄보디아 출신은 기술/생산직을 희망하는 경우가 36.0%로 가장 많고, 중국 한족 출신(20.7%)은 서비스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타 국적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 표 II-15 】 출신국적별 희망직종

(단위: %)

구분	사례수	희망직종(%)								
		관리/ 사무직	판매/ 영업직	서비스직	기술/ 생산직	배송/ 운전직	간호/ 의료직	강사/ 교사직	건설/ 노무직	기타
합계	533	9.2	17.8	11.6	13.5	0.2	3.9	18.4	3.6	21.8
중국조선족	38	13.2	15.8	18.4	13.2	0.0	5.3	21.1	0.0	13.2
중국한족	116	10.3	15.5	20.7	15.5	0.0	5.2	18.1	0.0	14.7
일본	48	14.6	12.5	8.3	2.1	0.0	8.3	35.4	0.0	18.8
베트남	185	5.9	27.6	7.0	15.7	0.5	0.5	3.8	8.1	30.8
필리핀	77	2.6	7.8	3.9	7.8	0.0	9.1	42.9	3.9	22.1
캄보디아	25	16.0	8.0	20.0	36.0	0.0	0.0	0.0	4.0	16.0
기타	44	18.2	13.6	13.6	9.1	0.0	2.3	27.3	0.0	15.9
x 2-검정	x 2=210.693, p-value=.000									

4. 경제활동 욕구 및 지원서비스 이용실태

가. 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동 실태조사에 참여한 결혼이민여성의 사회복지제도 및 지원서비스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한국어교실’의 이용률이 9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1순위가 ‘언어문제’이므로 당연한 결과이다. 이에 비해 ‘취업상담 및 직업알선’의 이용률(38.1%)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관련기관들이 아직 취·창업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 등의 사업이 아직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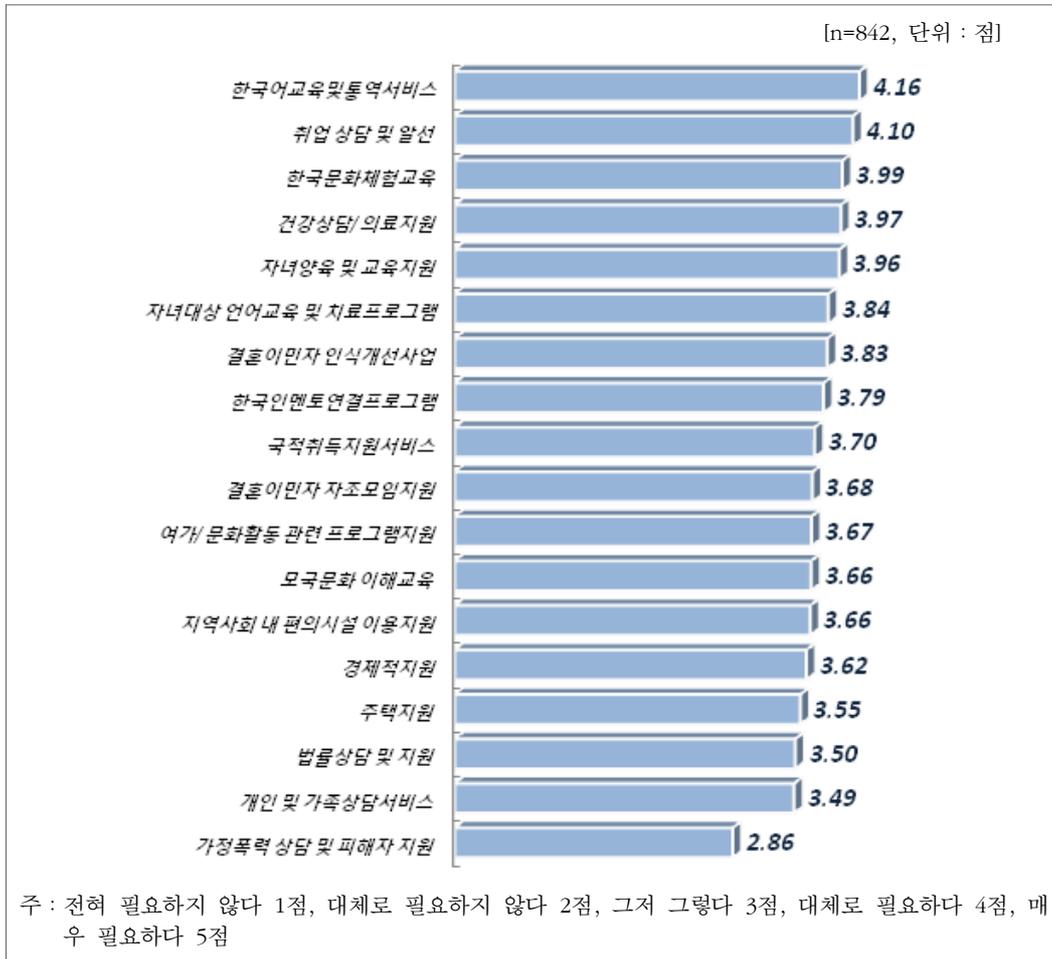
【 표 II-16 】 지원서비스 이용률 (복수응답)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비율(%)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442	52.5
한국어교실	773	91.8
한국문화체험 및 교육	650	77.2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399	47.4
법률상담 및 지원	334	39.7
의료상담 및 지원(임신 및 출산 지원 포함)	421	50.0
성폭력, 가족폭력상담	277	32.9
취업상담 및 직업알선	321	38.1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418	49.6
국적취득 관련 정보제공 및 지원	390	46.3

나. 지원서비스 필요도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지원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알아본 결과, 결혼이민여성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서비스는 ‘한국어교육 및 통역서비스’(4.16점)와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 직장 알선’(4.10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국어교육 및 통역서비스’의 경우는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지원서비스로 일상적인 가정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욕구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두 번째로 높은 필요도를 보인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 직장 알선’의 경우는 한국에서 직업을 갖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가족의 생계유지 및 생활비와 자녀의 양육비를 보충하기 위한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 그림 II-6 ■ 지원서비스 필요도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 직장 알선’에 대한 결혼이민여성과 그 한국인 배우자의 필요도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필요하다’는 경우가 72.3% (‘매우 필요하다’ 40.7% + ‘대체로 필요하다’ 31.6%)로 ‘필요하지 않다’는 경우 7.6% (‘전혀 필요하지 않다’ 3.3% +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4.3%)보다 64.7%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결혼이민여성의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 직장 알선’에 대한 필요도 점수는 5점 척도 중 4.10점으로 높게 나타난다.

결혼이민여성의 출신국적별로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 직장 알선’에 대한 필요도를 분석해보면, 중국 한족 출신에서 4.3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중국 조선족 출신(4.28점)과 베트남 출신(4.15점)에서도 4점을 넘어 이들 집단의 취업욕구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II-17 】 출신국적별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 직장 알선에 대한 필요도

구분	사례수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 직장 알선에 대한 필요도(%)								5점 척도 평균
		필요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필요하다			무응답	
		전혀	대체로	소계		대체로	매우	소계		
합계	842	3.3	4.3	7.6	13.3	31.6	40.7	72.3	6.8	4.10
중국조선족	72	2.8	1.4	4.2	9.7	34.7	47.2	81.9	4.2	4.28
중국한족	190	2.1	3.7	5.8	12.1	20.5	53.2	73.7	8.4	4.30
일본	82	2.4	1.2	3.7	25.6	37.8	31.7	69.5	1.2	3.96
베트남	252	3.2	5.2	8.3	9.1	32.1	42.5	74.6	7.9	4.15
필리핀	119	4.2	5.0	9.2	17.6	42.0	25.2	67.2	5.9	3.84
캄보디아	41	2.4	14.6	17.1	14.6	29.3	34.1	63.4	4.9	3.82
기타	86	7.0	2.3	9.3	12.8	32.6	36.0	68.6	9.3	3.97

이를 결혼기간별로 살펴보면, ‘필요하다’는 경우는 3년~5년에서 80.2%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점수로 환산해 보면, 3년~5년에서 4.13점으로 가장 높고, 1년~3년에서도 4.12점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결혼기간이 1년~5년 사이에 있는 집단에서 취업욕구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제4절 소결

우리 사회는 2000년 이후 결혼이민여성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사회로의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별다른 논쟁이나 담론을 거치지 않고 정부의 주도하에 다문화사회가 정책목표가 되면서 피상적인 모토수준에서 다문화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래 다문화주의는 일종의 열려있는 텍스트이며 이를 현실화시키는 국가의 정책과 목표는 다양하여 각 국가마다 다른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을 계기로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다문화정책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이주노동자는 제외된 채 결혼이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처음에는 온정주의에 기반한 가부장적-문화동화주의적 성격의 정책이 강했으나 그 후 성인지적-문화동화주의적 성격의 정책도 취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성인지적-문화양립적인 정책은 소수에 불과하나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들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취·창업과 연결시켜 그 지역의 주체로서 사회경제적 역량강화를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결혼이민여성의 거주현황을 보면 전체 결혼이민여성 149,853명 중 21.7%인 32,558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이며, 성별로 보면 서울시 결혼이민자의 90% 정도가 결혼이민여성이므로 여성의 이주화 현상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2008년도 비해 결혼이민여성은 2,780명이 증가한 반면 남성결혼이민자는 34명이 줄어들었으며 결혼이민여성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몽골 순이다. 서울시 거주 결혼이민여성들의 분포는 자치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영등포구가 3,494명으로 가장 많으며 구로, 관악, 금천, 강서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전년도 대비 결혼이민여성의 변화추이를 보면 강동구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양천구, 동대문구, 성북구, 관악구, 마포구 등이 증가하였고 광진구, 성동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초구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에 따라 국적별 분포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중국출신이 많은 지역은 영등포구, 금천구, 구로구이며, 베트남 출신은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일본은 서초구, 강남구, 필리핀 출신은 양천구, 강서구, 성북구 등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 수립시 이를 고려하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결혼이민여성들의 생활실태를 살펴보면 언어문제, 문화적 차이, 자녀양육문제, 차별문제, 가족 간의 갈등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언어문제를 제외하고는 가장 시급한 것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결혼이민여성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결혼이민자 가구의 절반정도가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하이며 취업을 한 여성들은 18.7%에 불과한데 미취업 여성 중 78% 정도가 취업을 원하나 언어문제, 자녀 돌봄 문제, 알맞은 취업자리가 없는 등의 이유로 취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취업을 하여도 언어소통의 어려움, 가사와 자녀양육문제, 오랜 노동시간, 월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과 편견과 차별문제에 시달려 근로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취업 동기는 생활비 보충, 가족의 생계유지, 자녀의 양육비 충당 등 생활비 보충이 주이며 향후 희망직종으로는 강사/교사직이 가장 높으며 지원서비스 욕구도는 한국어교육을 제외하고는 취업상담 및 알선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정착을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이 시급한데 기존의 인적자원개발을 그대로 결혼이민여성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며 오히려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남성중심적이어서 여성인적자원개발이 갖는 한계점에 인종차이에서 오는 어려운 점이 부가되며 이들이 처한 제반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성인지적, 다문화적 시각에서 보다 심도있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결혼이민여성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이루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취·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III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정책
현황

III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정책 현황

제1절 중앙정부 지원정책

1. 일반지원정책 현황

우리 사회는 결혼이민자 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⁷⁾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중앙부처별로 대책을 강화 추진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에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우선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07.0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08.06),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법률('08.09) 등을 제정하여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⁸⁾,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가정학생교육지원방안('08.11), 보건복지가족부는 다문화가족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08.11),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08.12)를 수립하였다.⁹⁾

또한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부, 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8개 부처가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기능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여성들을 최전선에서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6년 21개로 시작하여 현재 100개로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지역별로 통합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¹⁰⁾

8개 부처는 지원사업을 보면 한국어교육, 사회적응, 취업교육, 보건사업, 종합사업 등 5개 분야에서 46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도 크게 증가하였다. '07년도 105억 원에서 '09년도 420억으로 4배 정도가 증가하였으나¹¹⁾ 2-3년 이내 다문화사회로의 진

7) 국제결혼건수가 2000년에는 11,605건, 2005US 42,356건, 2008년 36,204건으로 다수 감소추세에 있으나 도시지역 국내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등의 국제결혼 증가 등으로 당분간 현행유지가 예상된다.

8) 자세한 내용은 장명선(2008), 서울시 다문화가족실태 및 지원구축방안 연구, 53-78면 참조

9) 자세한 내용은 위의 책 78-83면 참조

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06년 21개, 07년 38개, 08년 80개, 09년 100개로 확대되었으며 지방비로 운영되는 19개가 있다.

11) 법무부(103.31억원), 지식경제부(26억원), 노동부(157.12억원), 교육과학기술부(329.80억원), 행정안전부(24.29억원), 문화체육관광부(58.65억원), 보건복지가족부(345.50억원), 여성부(40.87억원), 농림수

입이 본격화될 것을 예상됨에 따라 사회통합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Ⅲ-1 중앙부처별 소관업무

법무부	복지부	교과부	행안부	문화부	여성부	노동부	농식품부
외국인 정책과	다문화 가족과	교육복지 정책과	자치행정과	문화예술 교육팀	권익기획과	외국인력 정책과	농촌사회 여성팀
외국인	다문화 가족	다문화가정 자녀 및 일반학생	외국인	외국인, 일반국민	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외국인정책 총괄	다문화가족 지원 총괄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교육지원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생활정책 지원	다문화성 제고, 한국어교재 개발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취업지원 직업상담 및 훈련	영농교육

표 Ⅲ-2 중앙부처별 주요 정책

부 처	주 요 정 책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정책 총괄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원칙 설정(정책 프로그램 표준화 등) 이민자의 입국·체류·귀화 허가 등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정책 수립 한국어교육, 다국어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응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국제결혼 중개업 관리 및 결혼예정자 사전준비 지원
교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개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재, 교사 매뉴얼, 언어-인지 진단도구, 다문화 이해 관련 콘텐츠 개발 등 교대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및 다문화 학습동아리 구성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 및 기초학습 지원, 체험활동 등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및 자녀교육 관련 정보, 상담 제공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 및 교사 연수 지원 일반학생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지원
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기반 마련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생활안정 지원 외국인주민 생활정책 지원 교육 등

산식품부(4억원), 중소기업청(21.30억원) 등이다. '09년도에 '08년도 대비 예산액이 30% 이상인 부처는 여성부(32.72%), 노동부(39.5%), 교육과학기술부(66.97%), 보건복지가족부(112.26%)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정책위원회(2009), 2009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참조

부처	주요 정책
문화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교재 개발·보급, 전문강사 양성 등 한국어교육의 전문성 제고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민인식개선 및 제고 다문화관점의 문화콘텐츠 개발
여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여성의 인권보호 및 자활 지원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이주여성쉼터, 이주여성자활공간터 운영, 이주여성 특화 교육훈련과정 운영
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직업상담 및 훈련
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이주여성 농업인 영농기술교육

가.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대외인지도를 높여야 한다는¹²⁾ 판단 하에 5대 중점 과제로 국제사회 기여확대, 첨단기술과 제품 홍보, 매력적인 문화관광, 다문화포용 외국인 배려,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등을 역점분야로 선정했다.¹³⁾ 또한 우리 사회가 추구해 나갈 추진 10대 과제¹⁴⁾ 중 ‘따뜻한 다문화사회 만들기’ 과제를

12) 위원회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브랜드 가치가 낮은 원인을 국제사회에의 기여 미흡, 거주 관광지로서의 매력 부족, 글로벌 시민의식 결여, 수출상품의 중저가 이미지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13)

연번	구분	내용
1	국제사회 기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협력 및 인적교류 확대 - 글로벌 이슈에 대한 주도적 참여
2	첨단기술과 제품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기업 브랜드 간 선순환체계 구축 - 대한민국 명품 발굴, 브랜딩, 홍보
3	매력적인 문화·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식, 한국어, 한류, 태권도 한국적 콘텐츠의 세계화 - 차별화된 문화·관광자원 개발 및 체계적 홍보 - 외국인관광객 만족도 제고
4	다문화 포용, 외국인 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제고(교육 홍보 강화) - 교육·의료·주거·언어 등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 세계와의 소통 강화
5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에티켓 생활화 - 건전한 해외관광, 친절, 청결, 질서 등의 문화 확산 - 해외진출 기업·국민의 사회적 책임강화

14) 10대 과제로는 ① 한국과 함께 하는 경제발전, ② 세계학생교류 ③ 해외봉사단 통합브랜딩 ④ 재외동포 통합 네트워크 구축 ⑤ 한국어 해외보급 확대 및 태권도 명품화 ⑥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⑦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발굴 및 홍보 ⑧ 따뜻한 다문화사회 만들기 ⑨ 디지털로 소통하는 대한민국 만들기 ⑩ 국가브랜드 지수 개발 운영 등이 있다.

선정했다. 이 내용을 보면 다문화가족의 성공적인 정착과 사회통합 실현으로 한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 인프라 강화,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자녀 성장지원 강화 등을 추구한다. 세부지원 정책으로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한 통합지원 인프라구축,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One-Stop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역량강화, 다문화가족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육성, 성공한 직업인으로 자리매김하는 결혼이민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이 있다.

위원회는 현재 탈법상품화된 국제결혼이 양산되고, 유사중복 지원정책이 많아 자원예산이 낭비되며, 자녀언어발달 지원서비스가 부족하고 결혼이민자의 일자리 발굴이나 직업교육이 미흡하고 가족 간의 갈등이 심각해 이혼율이 증가하며 지원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이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통합적인 ‘다문화가족지원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Ⅰ 그림 Ⅲ-1 Ⅰ ‘따뜻한 다문화 사회 만들기’ 사업

-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조성,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
 - 결혼당사자의 신상정보 제공의무화, 중개업체의 탈 불법행위단속 강화, 중개업체의 피해자 보호방안마련
 - 혼인의 진정성, 건강한 가족형성, 사회통합을 포함하는 등 결혼사증 심사기준 강화
 - 사증발급 시 의무적으로 실태 조사하는 국가의 수를 1개국에서 23개국으로 확대, 결혼사증 신청 서류에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확인서 등 추가 등 사증발급심사강화
 - 지자체의 국제결혼비용 지원 사업 폐지하도록 유도

- 영주권전치주의 제도도입 적극 검토
 - 결혼이민자가 체류만을 위한 무분별한 국적취득을 제한하기 위해 영주권전치주의 도입, 국적관련 전산망 연계강화 등 절차를 합리화하여 신속하게 처리
-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배우자 가족교육 강화
 - 한국어교육을 위해 사회통합이수제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 이해 사업의 상호연계강화
 - 다양하고 내실 있는 배우자 등 가족교육 확대
-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교육에 지원정책 확대
 - 보육시설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문화언어지도사를 배치하고 시설 미이용 영유아를 위한 희망유아교육사 배치확대
 - 결혼이민자 통·번역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이중언어 교실의 설치, 단계적으로 확대, 방과후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해 학교에 수준별 보충프로그램 강화
- 적합 직종개발 확대, 직업상담 훈련 및 취업알선 강화
 - 결혼이민자 진로설계지원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직업교육 훈련과 취업알선도 강화
 - 결혼이민자 채용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 가정폭력 피해자 이주여성자활공간 설치, 가족해체로 방치된 자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마련
- 다문화정책 추진체계 재정비, 다양한 인프라를 확충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운영하여 정책의 총괄 조정기능 강화
 - 외국인 주민이 많은 시군구부터 전담부서설치 확대하여 지자체의 총괄조정기능강화
 - 지원예산을 현행 복권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예산확보

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으므로 중앙 각 부처의 다문화가족정책이 중복시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총체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조정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따라서 부서간의 전문영역을 정하여 정책을 시행해 나가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10월 결혼이민자와 자녀 등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4대 정책목표와 3대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4대 정책목표는 정책대상별로 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과 자립역량강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유지,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육성, 국민의 다문화사회 이해증진이다. 3대 정책추진 방향은 결혼이민자와 자녀, 배우자 등 가족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책의 체계화, 가족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민·관 협력을 통한 효율적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다. 세부 대책은 다문화가족 생애주기에 맞추어 7대 정책과제, 21개 세부 추진과제, 66개 세부사업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진과제의 주요 특징은 가족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배우자교육, 가족통합교육, 부모자녀프로그램 등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체계화하고 확대·다양화했으며, 다문화가정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 양육 보육 및 성장지원정책에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여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인 의사소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통·번역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대책은 서비스등록 제공 시스템 정립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핵심진달체제로 확대 설치, 다양한 기관간의 연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와 중복을 방지해 사업효율화와 수요자 체감도를 제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별에 따른 정책과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결혼준비기

- 결혼중개 탈법장비 및 결혼예정자 사전준비 지원, 결혼중개과정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신상정보 사전제공 의무규정 신설 등 법령개정을 추진
- 중개업체와 이용자 간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표준약관을 제정
- 결혼이민자 사전정보제공프로그램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을 연계하여 사전프로그램 이수
- 결혼이민자 입국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
- 국적별 자조모임과 연계해 초기통역 정서지원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진행
- 한국인 국제결혼 예비배우자 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해 지자체 연계 협력 강화
- 혼인신고 시 해당 지자체에서 배우자교육 프로그램 안내 및 참여 독려 안내 리플렛 배포 등 추진

○ 가족형성기

- 결혼이민자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지원

-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 통·번역요원 파견시스템을 구축
- 보건복지콜센터에 외국어 가능인력을 채용해 다국어 상담 및 연계서비스를 실시
- 통·번역서비스 실시 시범보건소를 확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 요원 파견서비스로 부모 또는 학교 등에서 요청 시 부모상담을 위한 통역요원 파견
- 다문화가족의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위해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국적 미 취득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적용 시 자활사업 적용대상도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외국인에 대한 긴급지원제도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임신, 자녀양육 중인 결혼이민자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이민자 전체로 적용범위 확대

○ 자녀양육기

- 다문화가족 자녀 임신출산, 양육지원, 다문화가족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산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출산가정에서 중산층가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임신부 영유아를 위한 영양지원, 교육프로그램을 전국 보건소에 확대 추진
- 부모-자녀 간 자긍심 향상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보급
- 다문화가족 영유아에 대한 보육지원 강화를 위해 일정소득 이하의 다문화가족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을 검토
-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을 중심으로 마을회관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 보육시범지역을 지정, 보육시설에서의 다문화프로그램을 강화

○ 자녀교육기

- 문화 아동청소년 학습발달 및 역량개발지원, 취학 전 영유아 언어발달 지원
- 보육시설 중심으로 다문화아동 대상 한국어교육 등 특별활동 실시
- 언어치료사를 보육시설 등에 파견하여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언어치료 지원
- 방과후 인프라를 활용한 학습 성장 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방과 후 다문화 특화시설로 활용
- 다문화아동 청소년 이중언어 역량개발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언어별 교육강사를 양성하여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청소년이용기관에 파견

- 드림 스타트 서비스 대상자 중 빈곤 다문화 가정 아동 집중 사례관리를 통해 개별 욕구와 상황에 맞는 보건복지 교육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가족역량강화기

- 결혼이민자 경제자립역량강화, 결혼이민자 취·창업지원을 위해 지역 및 인적자원 특성을 고려한 결혼이민자 적합 직종을 개발
- 직업훈련을 강화하며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취업전담 지원기관 및 정부기관 지자체간 일자리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
- 다문화가족을 정책주체로 참여하게 하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 제고를 위해 중앙 및 지자체 차원의 다문화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활성화
- 중앙차원에 다문화가족 생활불편 해소창구를 개설하며 결혼이민자의 자원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참여 활성화

○ 가족해체시

- 해체다문화가족 자녀 및 한부모 가족 보호 지원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이혼 사유 및 이혼 후 문제 실태 파악
- 무연고 방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CYS-Net을 활용한 신속발견체계 구축
- 다문화아동청소년 전담동반자를 육성해 전담보호

○ 전단계

- 다문화사회 이행을 위한 기반 구축
- 체계적 서비스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등록 서비스관련 시스템을 구축
- 한국어교육, 산전후 건강관리, 자녀양육지원 등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이메일, 전화, 자원봉사인력을 활용하는 안내시스템 구축

이러한 정책지원방향은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농촌지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등 지역 인프라간 프로그램 지원연계로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한다.

또한 민·관협력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단체 기업 등과 연계한 멘토링서비스,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지자체 - 민간단체 - 기업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업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생애주기별 다문화가족정책은 가족해체시 등이 있어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일부 비판이 있으나 결혼이민여성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정책을 보다 실질적이고 심도있게 추진하여 결혼이민여성의 정책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체계적, 단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표 Ⅲ-3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정책과제

주기별	정책과제	세부 추진과제
결혼준비기	결혼중개 탈법 방지 및 결혼예정자 사전준비 지원	- 국제결혼 탈법방지 및 결혼당사자 인권보호 - 결혼이민예정자 사전정보제공 - 한국인 예비배우자 사전교육
가족형성기	결혼이민자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지원	- 결혼이민자 의사소통 지원 - 다양한 생활정보 제공 - 다문화가족 생활보장 -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위기 예방
자녀양육기	다문화가족 자녀 임신·출산·양육지원	- 임신·출산 지원 - 부모의 자녀양육 능력배양 - 영유아 보육·교육강화 - 부모·자녀 건강관리
자녀교육기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발달 및 역량개발강화	- 아동 언어·학습·정서 발달지원 - 아동·청소년 역량개발 지원 - 빈곤·위기 아동·청소년지원 - 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
가족역량 강화기	결혼이민자 경제·사회적 자립역량강화	- 결혼이민자 경제적 자립 역량강화 - 결혼이민자 사회연계 강화
가족해체시	해체 다문화가족 자녀 및 한부모 가족 보호지원	- 한부모 가족 지원 - 요보호 아동지원
전 단계	다문화사회 이행을 위한 기반구축	- 사업추진체계 정비 - 대국민 다문화 인식제고

다. 법무부

법무부는 전 세계적 인구이동의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도 체류 외국인의 증가 및 다양화,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의 순유출 상황이 지속되고 결혼이민자 등 국내 정착 이민자 증가로 인해 다문화사회 진입 등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중장기적, 종합적이며 적시성 있는 정책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3조에 의거해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08-'12)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의 정책목표는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질 높은 사회통합, 질서있는 이민행정구현, 외국인 옹호 등이다. 이 계획은 4개의 정책목표아래 13개의 중점과제가 있으며 각 세부과제는 [표 III-4]와 같다.

【 표 III-4 】 법무부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08-'12)

정책목표	중점과제	세부과제
적극적인 이민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	- 우수인재에 대한 입국문호확대 - 국가차원의 우수인재 유치지원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력도입	- 지역별, 직종별 수요를 고려한 숙련기능인력의 확보 - 기업수요와 사회비용을 고려한 단순기능인력 도입
	외국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조성	- 외국인 체류지원강화 - 외국인을 위한 종합적 생활환경 개선
질높은 사회통합	다문화에 대한이해증진	- 다문화이해교육 및 홍보강화 - 참여 및 소통강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	-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지원 -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지원 -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조성
	결혼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학습 및 학교생활 지원 - 사회적응 지원 및 자립능력배양
	동포의 역량강화를 위한 환경조성	- 동포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법적 지위와 제도정비 - 국내체류 동포처우개선
질서있는 이민행정 구현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 불법체류 감소를 위한 기반 구축 - 외국인 집단거주지 관리 강화 - 합법체류 외국인의 체계적 관리
	국가안보차원의 국경 및 외국인 정보관리	- 신속하고 빈틈없는 국경 및 위험외국인 관리 - 국경관리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
	건전한 국민확보를 위한 국적업무 수행	- 국적업무의 신속성 전문성 확보 - 귀화허가 시 검증기능 강화
외국인 인권옹호	외국인 차별방지 및 권익보호	- 외국인에 대한 차별 등 인권침해 방지 - 피해외국인에 대한 구제강화
	외보호과정의 외국인 인권보장 강화	- 보호관련 적법절차 준수 - 고충상담 등 애로사항 해결지원 - 보호시설의 물적 인적 인프라 개선
	선진적 난민인정 지원시스템 구축	-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난민인정체계구축 - 난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강화

라. 노동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의하면 노동부는 4개의 목표아래 20개 세부과제를 펴나가고 있다. 정책내용을 보면 취업지원강화, 고용절차 간소화 및 안정적 고용여건 강화, 고용비용의 합리화, 고충상담 및 법률서비스 지원강화,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건강보호 강화, 입국 전 취업정보 제공, 동포 취업관리 강화, 방문취업동포에 대한 취업지원, 고용주에 대한 지도점검 등이다. 노동부의 취·창업지원정책을 주로 이주노동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지원은 소극적인 편이다.

마.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국제결혼 다문화가정의 자녀수의 증가에 따라¹⁵⁾ ‘다문화가정교육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에는 다문화가정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우리 국민의 다문화주의 의식제고,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정지원 협력체계구축 지원, 학교의 다문화가정 자녀지원기능강화,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을 위한 교사역량강화,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다문화 교육요소 반영,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확대,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이중 언어 학습지원, 불법체류자 자녀의 신분안정을 위한 부처협의 추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바. 여성부

여성부는 국제결혼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보호시설확대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주여성쉼터 확대 및 이주여성자활공간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국제결혼부부 등 교육대상 확대로 안정된 가정생활지원, 교육이수자에 대한 사증 우선발급 등 인센티브 검토,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에 설치하고, 이주여성상담원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주여성쉼터를 확대하여 1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주여성자활공간터를 신설하여 폭력피해이주여성과 그 아동의 거주 및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여 자립을 도모할 예정이다.¹⁶⁾

15) 국제결혼가정 자녀 : 18,778명 ('07년 대비 39.6% 증가)

- 학교급별 비율 : 초 84.2%, 중 11.7%, 고 4%로 초등학교 재학생 비율이 월등히 높음
- 지역별 비율 : 경기(20.7%), 서울(12%), 전남(10%), 경남(8.2%), 충남(7.9%)
- 부모국적별 비율 : 일본(41.0%), 중국(22.3%), 필리핀(14.3%) 등

16) 이 계획의 일환으로 우선 서울 남부여성발전센터 내에 폭력피해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가 건립 중에 있다.

2.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 정책

가.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 산하의 외국인정책위원회의 다문화가족지원개선 종합대책에 의하면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사회적 역량강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인권증진을 강화하고자 한다. 우선 다문화강사, 원어민강사, 통·번역사 등 특화된 일자리를 발굴·확대하며, 농촌거주 결혼이민자의 영농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직업상담 훈련 및 취업알선 강화로는 결혼이민자 진로설계 지원프로그램을 2010년까지 개발완료하고, 2011년부터는 고용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보급, 운영하며 고용지원센터에서 1:1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여 결혼이민여성 채용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관련기관 간 즉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새로일하기 센터, 고용지원센터 등 관련기관간의 정보공유연계를 강화한다. 각 부처의 지원서비스를 직접적인 취·창업지원정책과 관련지원정책으로 나무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다.([표 III-5] 참조)

【표 III-5】 '09년도 중앙부처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정책 및 관련정책

부처	사업내용	세부내용	취·창업 지원정책	취·창업관련 지원정책
법무부	- 자조모임 지원	- 자조모임지원		√
보건복지 가족부	- 교육과정에서의 다문화이해교육강화	- 초등학교 고학년 및 교원대상실시		√
	-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체험학습장 운영	- 다문화이해교육프로그램		√
	- 다문화교육강사 확충	- 다문화프로그램 기획자 및 다문화강사 양성과정 확대	√	
	- 자조모임지원	- 자조모임지원		√
	- 결혼이민자의 자립모델 개발 보급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 취·창업지원모델개발보급, - 취업교육 및 취업정보제공강화	√	
	- 생활농업인으로서의 정착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영농기술교육	√	
	- 결혼이민자 통·번역 핫라인 시스템 구축	- 통·번역전담인력 채용,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	
행정 안전부	외국인 주민생활지원교육실시	- 한국문화이해 및 취업안내교육		√
여성부	- 취약계층지원	- 이주여성 취·창업사업지원	√	
	- 폭력피해이주여성자활공간터 설치 운영	- 폭력피해이주여성 직업훈련 자활공간제공	√	

부처	사업내용	세부내용	취·창업 지원정책	취·창업관련 지원정책
농림수산 식품부	- 이주여성농업인 1대 1 맞춤형 영농교육	- 우수한 여성농업인력 양성	v	
노동부	- 취업실태 파악 및 관리 강화 * 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임	- 외국인근로자 취업실태 파악 및 관리 강화	v	
	- 입국전 취업정보 제공	- 취업정보 제공		v
교육과학 기술부	- 교육과정에서 다문화이해교육 강화	- 다문화이해 교육		v
	- 다문화교육 지원체제 강화	- 다문화이해 교육		v

출처 : 2009 중앙부처 시행계획, 외국인정책위원회 재편성

나.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는 결혼이민여성의 사회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해 한국어교육, 생활정보제공, 상담서비스 등 조기적응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용지원센터 등 취업전담 지원기관 및 정부·지자체 간 일자리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결혼이민자들을 통·번역 전문인력, 이중언어 강사로 양성하고 수준별로 일자리를 연계하고 있다. 통·번역 인력은 수준별로 결혼이민자 대상 초기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원어민 외국어강사·다문화강사·문화해설사로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 해외환자유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농기술교육을 확대하여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교육을 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06년 21개소로 출발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현재 전국에 100개소가 설치되었다.¹⁷⁾ 결혼이민자 수, 지역적 거리, 분포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 센터를 지정하나 1개 센터당 결혼이민여성의 수는 전체적으로는 1,498명이며 이보다 더 많은 지역으로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대도시며 대체로 지방에 많이 분포되어 강원이 498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대도시에 센터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17) 2006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21개소로 출발하였으며, 2007년에는 38개소 확대하여 한국어교육,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2008년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80개소가 운영되었으며 2009년에는 100개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 표 III-6 】 시도별 결혼이민여성 및 센터운영현황

구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거주 자수	149,853	32,558	6,933	4,557	9,244	3,081	3,328	2,787	39,134	3,987	4,677	7,637	6,545	7,146	7,764	9,125	1,350
비율	100	21.7	4.6	3.0	6.2	2.1	2.2	1.9	26.1	2.7	3.1	5.1	4.4	4.8	5.2	6.0	0.9
센터 수	100	4	4	4	3	2	2	2	10	8	7	7	9	13	13	11	1
센터 1개당 결혼 이민 자수	1,498	8,139	1,733	1,139	3,081	1,547	1,664	1,393	3,913	498	666	1,091	727	549	597	829	1,350

‘08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은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이해교육, 가족교육, 가족상담, 자조집단 운영 등의 필수사업 및 정서지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다문화인식개선, 자녀지원 등 특화사업을 실시하였다. ‘09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80개소에서 100개소로 증가하고 상근종사자를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였으며 한국어교육,¹⁸⁾ 다문화이해교육, 가족

18)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08년도에 실시한 한국어교육 현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목적 :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고 안정적 조기정책 지원
- 대상 : 결혼이민자
- 내용 : 문화를 이해하고 생활언어를 익힐 수 있도록 체계적인 단계별 한국어 교육 실시
- 과정 : 5단계과정 : 기초반, 초급, 중급, 고급, 한국어능력대비반, 회화반 등이 개설되어 있다.
- 방법 : 수준별 운영, 지역특성 및 센터의 역량에 따라 수준별 운영
레벨테스트를 통해 상급으로 단계향상하거나 수료
한국어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전문강사 위주로 수업 진행
한국어 능력이 뛰어나고 교수 가능한 결혼이민자를 보조강사 및 주강사로 선정, 결혼이민자들의 통역 및 지원
- 운영현황 : 수준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급반이 145개 강좌로 전체 강좌의 31.3% 차지, 연간 111,198명 수강
기초반은 118개 강좌로 전체 강좌의 25.5% 차지, 연간 81,530명 수강
중급반은 116개 강좌로 전체 강좌의 25.0% 차지, 연간 82,060명 수강
고급반은 42개 강좌로 전체 강좌의 9.1% 차지, 연간 22,188명 수강
한국어 능력시험대비반은 16개 강좌, 회화반은 4개강좌, 기타 맞춤형 강좌는 22개 반에 불과함
- 문제점 : 취·창업을 위해서는 고급반, 한국어능력시험 대비반, 회화반 등의 고급수준 내지 취업대비반등의 강좌가 많이 개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상태임.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재개발 필요
교육수준의 향상, 교수의 강의의 질 확보
보다 많은 결혼이민자들을 보조강사로 활용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사회적 역량강화 원거리 여성을 위한 이동수단 필요성 제기 및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참석할 수 없는 가정
에 대한 지원필요
각 수준에 맞는 한국어교재 개발, 고급과정 교재 제작 필요

교육, 상담 등에 취·창업지원사업, 통·번역서비스자조모임 등이 추가되었다.

표 III-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내용(2008, 2009년도)

08년도		사업과제	09년도		사업과제	비고
' 08년 도	필수사업	한국어교육	' 09년 도	기본사업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이해교육			다문화이해교육	
		가족교육			가족교육	
		상담			상담	
		자조집단			취·창업지원사업	처음으로 도입
	특화사업	정서지원		기타사업	통·번역서비스자조모임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자원봉사단(멘토링운영)	
		다문화인식개선			다문화인식개선사업	
전문인력양성		홍보사업				

가) '08년도 취·창업지원 사업

'08년도에는 취·창업지원 사업은 특화사업 중에서 센터가 자체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종류로는 컴퓨터 정보화교육, 직업교육, 다문화강사양성교육, 통·번역사 교육, 상담원양성 교육 등이 있으며¹⁹⁾ 이를 통해 취·창업에 대한 인력인프라 구축 및 결혼이민자들의 자금

○ 서울시 한국어교육 수준별 운영현황

- 총 29개 강좌개설(동대문 7, 동작 10, 성북구 7, 영등포구 5)
- 수준별 개설강좌를 보면 기초반 4, 초급반 12, 중급8, 고급2 회화반 1로 취·창업에 필요한 고급이나 회화반, 한국어능력시험 대비반이 적은 상태임

19) ① 컴퓨터 정보화교육

- 총 64개소에서 운영하였으며 연간 5,942시간 29,073명 참여
- 원주시 센터가 300시간으로 가장 많이 운영
- 서울은 동작구 48, 성북구 255시간 운영 연인원 622명

② 직업교육

- 총 26개소에서 운영 연간 2,736시간 연인원 9,092명 참여
- 김제시 센터가 432시간 운영으로 가장 많이 운영
- 서울은 동대문구가 24시간 운영하였으며 연인원 8명

③ 다문화강사 양성교육

- 총 33개소에서 연 3,109시간 6,832명 참여
- 전라남도 센터가 1,470시간 가장 많이 운영하고 2,500명 참여
- 서울은 동대문구 66시간, 동작구 48시간, 성북구 30시간, 영등포구 18시간 운영하여 모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참여

④ 통·번역사 양성교육

- 총 3개소에서 46시간 운영- 울산, 아산시, 김해시 등

심 고취향상을 도모하였다.

【 표 III-8 】 '08년도 취·창업관련 지원사업 현황

사업내용	연인원	개소	비율	비고
컴퓨터/ 정보화교육	29,073	64	39	
직업교육	9,092	26	12.2	
다문화강사양성교육	6,832	33	9.2	
통·번역사 양성교육	337	3	0.5	
상담원양성교육	536	4	0.7	
자녀학습	18,237	31	24.4	자녀역량강화에 속함
기타	10,459	37	14	
합계	74,566	198	100	

출처: 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 내부자료

나) '09년도 취·창업사업

'09년도에 처음으로 취·창업사업이 기본사업으로 되면서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지원사업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취·창업과 연관된 사업이기보다는 대부분이를 위한 관련사업이 행해지고 있어 취·창업지원사업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이들 사업의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목표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의 취·창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가진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강화 하고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문화가족으로 가질 수 있는 강점을 강화하여 다문화강사 및 통·번역사, 상담원 등으로 양성하여 건강한 가족으로 거듭나도록 역량을 향상시킨다.

⑤ 상담원양성교육

- 총 4개소에서 182시간 운영-울산, 아산시, 안동시, 양산시 등
- 총 이용자는 4,476명이며 이중 결혼이민자는 3,607명으로 전체의 80.6%. 결혼이민여성이 3,606명, 남성은 1명
- 이용자를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태국, 몽골, 캄보디아 순으로 나타남

○ 내용

다문화가족 취·창업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통·번역 자조모임 운영 - 직업 기초 소양 교육(지역 특성고려) - 취업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 취·창업 적합자에 대한 취·창업 연계
----------------	--

- 취·창업지원상담
 - 센터내방, 방문교육 대상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취·창업에 대한 욕구파악 및 취·창업관련 기초상담 실시
- 해당지역의 취·창업가능 일자리 탐색 및 개별센터에서 추진 가능한 직종 분석
- 취·창업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취·창업을 원하는 결혼이민자의 수요 및 일자리 제공 가능한 지역 기업 특성을 감안한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수립 실시(영농기술교육, 정보화교육, 취업능력향상교육)
- 센터내 교육프로그램 활용 또는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 실시
- 취·창업연계 및 알선 프로그램
 - 해당지역의 일자리 제공기관과 결혼이민자 연계활동
 - 지속적 취·창업자 상담 및 정보제공(자조모임 운영 등)
- 결혼이민자 한국어강사 및 가정폭력상담원 양성, 다문화강사 및 원어민 강사양성, 통·번역사 양성, 컴퓨터교육, 운전면허교육, 직업교육 등

■ 표 III-9 ■ 취·창업지원사업 추진체계도



○ 방법

- 취·창업 교육 대상자 조건 - 한국어 중급이상 이수자
- 직업기초소양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 필수

- 취·창업교육 및 연계는 센터에서 직접 실시 또는 연계추진
(단 유관기관 연계 시 대상자 사후 관리는 센터에서 실행)
- 취·창업교육 및 연계는 1회기성 프로그램은 지양하며 계획 수립 시 목적과 목표가 취업임
- 진행방법 : 체험, 교육, 체험과 교육 통합방법
- 취·창업교육 내 자조모임 운영

표 III-10 '09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취·창업지원사업 현황

지역	센터	구분	영역	방법	프로그램명
서울 특별시	동작구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기본 사업	다문화가족 취·창업 교육	통합	잡(job)자날자6_다문화강사파견
					잡(job)자날자5_다문화강사양성교육
					잡(job)자날자4_산모도우미파견
					잡(job)자날자3_산모도우미양성교육
대구 광역시	달서구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기본 사업	다문화가족 취·창업 교육	통합	다문화가족 취·창업교육-다문화홍보교사(Rainbow Mom)양성
					다문화가정 취·창업교육-영어지도사 양성
					다문화가족 취·창업교육-다언어(영어)교육
					다문화가족 취·창업교육-기초소양교육, 원어민강사교육
대전 광역시	대전중구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기본 사업	다문화가족 취·창업 교육	교육	결혼이민자 수공예강좌
					나도 감독!
울산 광역시	울산남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기본 사업	다문화가족 취·창업 교육	통합	다문화가족직업교육(기초소양교육-2)
					다문화가족직업교육(원어민 강사 양성)
					다문화가족직업교육(다문화사회전문강사양성)
					다문화가족직업교육(국적별 공연팀)
					다문화가족직업교육(기초소양교육-1)
					다문화가족직업교육(직업선택도검사)
					다문화가족직업교육(다문화강사양성교육)
					다문화가족직업교육(네일아트)
					다문화가족직업교육(요리교육)
					다문화가족직업교육(컴퓨터교육)
경기도	고양시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기본 사업	다문화가족 취·창업 교육	교육	취·창업교육4_컴퓨터교실
					취·창업교육1_통·번역사 양성과정

지역	센터	구분	영역	방법	프로그램명
경기도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사업	다문화가족 취·창업 교육	회의	취·창업교육5_결혼이민자 자조모임
				통합	취·창업교육7_취업상담및연계
					취·창업교육2_원어민동화구연지도사 과정
강원도	원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사업	다문화가족 취·창업 교육	교육	외국인운전면허교실
				통합	희망고리(취업연계)
					비즈공예
					웰빙 '떡' 만들기
	다문화강사조직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사업	다문화가족 취·창업 교육	교육	통역사 양성과정반
					정보화 교육
				체험	DIY 인형만들기
					동화책 만들기반
					네일아트반
				통합	자동차운전면허증반
	홍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사업	다문화가족 취·창업교육	교육	다문화가족 취·창업 교육(한국어강사 양성교육-방문지도사)
					다문화가족 취·창업 교육(직업기초소양교육)
					다문화가족 취·창업 교육(한국어강사양성교육)
					다문화가족 취·창업 교육(컴퓨터교실-초급반)
다문화가족 취·창업 교육(수공예교실)					
다문화가족 취·창업 교육 (컴퓨터교실-중급반)					
통합				다문화가족 취·창업 교육(홍천 다문화영화제 영상대학 기초교육 및 스텝)	
충청북도	보은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사업	다문화가족 취·창업교육	교육	직업기초소양교육
					다문화가족 직업교육-다문화 동화구연
	청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사업	다문화가족 취·창업교육	교육	다문화가족 취·창업지원-취·창업자 연계교육
					다문화가족 취·창업지원-창업희망자 직업교육
	충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사업	다문화가족 취·창업교육	교육	취·창업캐릭터 만화그리기 교실
					취·창업드라이빙 스쿨운전면허교재 공부

지역	센터	구분	영역	방법	프로그램명
충청 북도	영동군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기본 사업	다문화가족 취·창업 교육	통합	다문화자활자립공동체
					결혼이민자자립기반 사업
충청 남도	공주시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기본 사업	다문화가족 취·창업교육	교육	2009 취·창업직업교육 "달려라 무지개" -운전면허교육
	금산군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기본 사업	다문화가족 취·창업교육	통합	다문화가족직업교육(직업교육)
					정보화 교육
	부여군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기본 사업	다문화가족 취·창업교육	교육	유아영어지도사
				통합	직업 기초 소양교육
	아산시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기본 사업	다문화가족 취·창업교육	교육	근혈실무 마사지 이론과정
					다문화가족 취·창업단
					근혈실무 마사지 과정
	서천군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기본 사업	다문화가족 취·창업교육	교육	취·창업교육(홈패션)
				통합	취·창업교육(생활요리)
취·창업교육(운전면허교육)					
청양군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기본 사업	다문화가족 취·창업교육	교육	국가별자조모임(컴퓨터활용교육)	
				배우자자조모임(영농기술교육등)	
				원동기, 운전면허 취득교육(나를 찾아가는 길)	
태안군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기본 사업	다문화가족 취·창업교육	통합	다문화베이커리	
경상 북도	경산시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기본 사업	다문화가족 취·창업 교육	교육	ITQ한글자격증대비 예비반(1차)
				통합	ITQ한글자격증과정반2차
					샌드위치및밀반찬가게창업
	구미시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기본 사업	다문화가족 취·창업 교육	교육	취·창업교육(다문화강사양성교육)
				통합	취·창업교육-운전면허(이론+실기반), 운전면허(이론반)
취·창업교육(컴퓨터활용교육반)					
		취·창업교육(간호조무기초과정)			
경상 남도	마산시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기본 사업	다문화가족 취·창업 교육	체험	취·창업-이미지메이킹
					취·창업-패션페인팅, 악세사리 체험
				통합	취·창업-홈패션, 양재의류수선반
취·창업-원어민교사 교재교구 제작연구 모임					

출처 : 전국다문화가족지원사업단 내부자료

현재 100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행해지고 있는 취·창업지원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중 22개 센터가 직접적인 취·창업지원사업을 행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취업, 창업을 위한 사업과 이를 위한 기초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대부분이 취업지원사업인데 직종으로는 대체로 산모도우미, 다문화강사, 원어민강사, 네일아트, 요리사, 통·번역사, 수공예품, 동화구연, 옷수선사, 이/미용, 간호조무사, 제과제빵, 홈패션, 마사지사 등이 있으며 창업으로는 제과제빵, 샌드위치 및 반찬가게 등에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었다. 취·창업을 위한 기초지원내용은 직업기초 소양교육, 컴퓨터교육, 운전면허, 한글자격증과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지역의 결혼이민자의 영농정착지원 강화에는 생활농업인으로서의 정착지원 강화, 여성결혼이민자의 영농정착지원 등이 있으며 관련부서로는 보건가족복지부, 농식품부 등이 있다. 농촌지역에서는 영농기술교육, 영농컨설팅, 영농기반 지원 등 농촌지역정착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 노동부

노동부는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09년도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지원에서는 103개 사업 중 결혼이민여성의 일자리는 3건에 지원을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안산 YWCA의 결혼이민자 자립강화 프로그램, 전주의 전북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사업, 청주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취업촉진을 위한 인력양성프로그램 사업 등이다.(노동부 보도자료, 2009.3.17)

또한 국적 미취득자나 고용보험 가입경력이 없는 외국인인 정부의 직업훈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생활정착을 위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도 실업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10만 여명이 다양한 정부지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노동부 보도자료 2009.8.5).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이민자는 가까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훈련상담, 구직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면 된다.

마. 여성부

여성부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생활공간터를 우선적으로 서울에 설치하면서 폭력피해 이주 여성들과 동반아동들의 거주와 숙식제공 및 취·창업에 대한 한국어교육, 직업교육 등을 시킬 예정이다. 이 공간터에서 2년간 머무르면서 취·창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취업한 경우 그룹홈²⁰⁾과 연결하여 결혼이민여성들이 우리 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일하기 센터 50개를 지정하였는데 이 중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한 취·창업교육을 시키는 곳으로는 울산, 안산, 전주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제천 여성문화회관이 있으며, 취약계층의 여성일자리 제공을 위해 11억 원을 지정하면서 다문화강사 양성, 취업 징검다리 프로그램, 다문화교실 등의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다.

■ 표 III-11 ■ 여성부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내용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찾아가는 다문화교실	- 이주여성 및 경력단절여성 사회적 서비스 일 자리 창출 - 지속적 다문화교육 콘텐츠 확산 및 모범모델 제시	- 찾아가는 다문화교실 - 다문화수공예창작교실 -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창출
방과후 다문화강사양성 및 파견	- 이주여성들 일자리 창출 - 다문화교육콘텐츠 개발 - 방과후 학교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다문화에 대한 효과적인 이해 도모	- 방과후 학교 전문강사로 양성 - 강사양성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운영 -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공교육 현장보 급을 통해 다문화인식개선
결혼이민여성 징검다리 프로그램	- 결혼이민여성 일자리 제공 - 취업직종확대, 기업연계 일자리 확장 - 사회서비스로 공공의 책임수행	- 직업교육 이수한 결혼이민여성 직업활동 체험 - 취업 전 직무능력 향상, 공동체성 강화, 직업 기초능력 향상

출처: 여성부 내부자료

20) 서울시는 2009년 11월 결혼이민자 그룹홈하여 쉼터에서 있다가 취업을 하였거나 취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이민여성들에게 생활공간터를 제공하여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제2절 서울시 지원정책

1. 일반지원정책 현황

서울시는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대책담당관, 경쟁력강화본부, 고용창업담당관실에서 다문화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특히 결혼이민여성 지원정책은 저출산대책담당관에서 담당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치구, 민간기관 등에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쟁력강화본부에서는 글로벌센터를 운영하여 외국인 및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각종 정보 제공, 생활지원, 국제교류,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합상담, 다문화가정자녀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빌리지센터를 5개소(연남, 역삼, 서래마을, 한남, 이촌)에 두고 있다.

고용창업담당관실에서는 외국인근로자센터 4개소(성동, 금천, 녹번복지관, 성내복지관)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정책담당관에서는 거주외국인 건강검진 실시, 전염성질환 진료비 지원,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입원 및 수술비 지원 등을 한다. 문화정책과에서는 서울방문 및 거주외국인 한국문화체험 등을 하고 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개소(동대문, 성북, 영등포, 동작, 송파)²¹⁾는 한국어교육, 다문화이해교육, 가족교육, 상담, 다문화가족직업교육 등 기본사업과 기타사업을 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다문화관련서비스 내용을 16개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시행된 사업은 사회적응, 한국어교육, 종합사업, 보건사업, 취업교육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데 사회적응지원 사업만이 평균보다 높으며 나머지 사업들은 전국 평균에 못 미쳐 결혼이민자지원정책사업이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미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서울이 갖는 결혼이민자들의 특성도 있으나 결혼이민자의 거주분포율이 높은 만큼 더 다양한 서비스나 정책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 다문화가족정책 중 가장 주력해야 할 취업교육 부분은 가장 낮은 비율인 동시에 전국 평균의 절반정도밖에 못미치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즉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실태조사에 의하면 서울시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창업에 대한 욕구도는 다른 지방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취업지원교육은 평균의 절반 정도밖에 못 미치는 실정이므로 어느 지역보다도 취·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나 서비스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된다.

21) 국비여부에 상관없으며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동대문, 성북, 영등포, 동작, 송파, 용산 등 6개소이다.

【 표 III-12 】 서울시 다문화가족정책 지원내용

구분		한국어교육	취업교육	종합사업	사회적응	보건사업	기타
'08	전국	13.1	6.9	8.9	53.5	6.3	11.3
	서울	9.2	4.2	5.0	66.2	3.8	11.5
'09	전국	13.3	7.8	13.0	47.9	6.0	11.9
	서울	11.4	4.0	7.5	60.7	6.0	10.4

출처: 결혼이민여성 지원서비스에 대한 보복부 내부자료 재구성

서울시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방문교육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주여성쉼터 2개소를 운영하며, 다문화가정 e-배움 캠페인, ‘우리 한가족, 행복 배달부’ 소식지 발간,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 실시, 생활코디네이터 사업실시, 다문화가족 문화공연 지원사업, 외국인 자원상담원 양성, One-Stop 상담실 운영, 다문화가정 언어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정책협의회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조례제정, 민간단체 특화사업 지원, 다문화가족 홈페이지 구축, 다문화가족 생활정보지 발행, 다문화가족지원기관 정보지 발간, 다문화관련 포럼개최, 다문화가족 정보화교육 실시 등이다.

【 표 III-13 】 '09년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한국어 및 가족교육, 상담, 정보제공, 방문교육 등 기본사업, 기타 사업 실시
방문교육사업실시	한국어교육, 아동양육지원, 상담서비스 실시
다문화가정 e-배움 캠페인	한국어 사이버교육 실시
소식지 발간	건강가정지원센터소식지 지면에 ‘우리 한가족 행복배달부’ 발행
국제결혼정보제공프로그램 실시	국제결혼정보 제공
생활코디네이터 사업실시	다문화가족 및 지역거주 여성을 활용한 멘토를 양성하여 사업실시
다문화가족문화공연 지원사업	다문화가족과 지역가족봉사단 등 연합동아리 활동하는 센터를 대상으로 공모
이주여성쉼터 운영(2개소)	여성폭력피해자 및 그 동반자녀 보호
외국인 자원상담원양성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들 대상으로 자원상담원 소양교육 및 상담교육과 토론 진행
One-Stop 상담실 운영	기존적인 정보 및 지식제공을 위한 기초상담과 피해를 입은 외국인의 문제해결 및 권리구제를 위한 상담실시
다문화가정언어지원사업	다문화가정자녀언어발달검사, 부모교육, 언어지도교육 등

사업명	사업내용
다문화가족정책협의회 운영	전문가, 유관기관 단체장으로 구성된 정책자문 및 정보공유 등 협조체계 구축
다문화가족지원조례제정	조례제정
민간단체 특화사업지원	자녀양육 등 특화사업지원
다문화가족 홈페이지 구축	서울시 관련정보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다국어홈페이지
다문화가족 생활정보지 발행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리플렛을 제작하여 구청에 비치
다문화가족지원기관 정보지 발간	다문화가족지원기관간의 정보공유를 위한 정보지
다문화관련 포럼개최	다문화가족정책방향도출 위한 포럼
다문화가족정보화교육 실시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대상으로 정보화교육 실시

가. 서울시 다문화가족 ‘한울타리 플랜’

최근 서울시는 다문화가족의 급증과 이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과 사회적 통합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한울타리 플랜’을 마련하였다.

이 플랜의 기본방향은 다문화가족이 시혜자가 아니라 지역사회주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우리 사회 일원으로 시민과 한울타리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 다문화가족의 욕구를 반영하여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한 것이다.²²⁾

한울타리 플랜 추진배경은 국제결혼에 대한 사전정보 및 이해부족으로 준비없이 결혼함으로써 문화적 차이, 언어소통문제 등으로 인해 가족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것이 가족해체로 이어지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과반수 이상이 100-200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결혼이민자여성 대부분이 취업을 희망하나 언어소통의 어려움, 자녀양육 문제 등으로 취업하기 힘들고 최근 이혼율 증가 등으로 부부갈등 및 가족상담 등 상담지원서비스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한울타리 플랜의 내용을 보면 우선 다문화가족 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으로서 다문화가족단계를 건강한 다문화가정 준비, 다문화가정 생활정착 지원, 다문화가정 경제사회적 역량강화,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다문화가정 등 4대 과제를 주요 과제로 삼고 핵심과제를 나무어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하였다.

22) 서울시는 올해 다문화가족 전문학자, 실무자,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3개월 동안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물로 한울타리 플랜을 마련하였다.

둘째,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역량강화지원정책을 마련하였다.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사업을 핵심사업으로 하여 권역별로 여성인력개발기관에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관련기관간의 연계시스템도 구축할 것이다.

셋째,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을 위해 한국어교육 고급반과 취·창업대미반을 설치하고 산모도우미 사업을 지원하고 아이돌보미제도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거나 방과후 교사 등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할 예정이다.

넷째, 다문화가족정책에 결혼이민여성들이 목소리를 집어넣기 위해 다문화가족 거버넌스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우선 다문화가족 전문가, 학자,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책자문, 조정 심의 기능을 하고 자치구의 실무담당자와 결혼이민자로 ‘무지개포럼단’을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족정책을 제안하고 모니터링 하도록 하였다. 또한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WISE단은 근로환경 생활환경 등에서 안전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 등에 대해 점검함으로써 다문화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한다.

표 III-14 서울시 다문화가족 한울타리 정책과제별 단위 사업

정책과제	단위사업	추진시기
1.건강한 다문화가정 준비	1-1 국제결혼 준비학교(핵심)-에비배우자	'09년 하반기 예정
2. 다문화가정 생활정착 지원	2-1 결혼이민여성 출산지원(핵심) - 각국별 출산문화 DVD보급, 산모도우미지원 (러빙맘운영)	2010년 예정
	2-2 통·번역 자원봉사단 운영	'09년 하반기 예정
	2-3 한국어 특화반 운영 : 고급반 및 취업반	"
	2-4 다문화가족 아이돌보미 지원(핵심)	2010년 예정
	2-5 자녀학습지원 Happy Mate 운영(방과후교실)	'09년 하반기 예정
	2-6 생활정보지 발행	"
3. 다문화가정 경제사회적 역량강화	3-1 문화유적지 순례 프로그램 실시	"
	3-2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사업 - 무지개 집(job)재(핵심)	"
	3-3 다문화가족 상담지원 강화 - 다문화 한울타리상담센터 운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상담원 배치	2010년 예정

정책과제	단위사업	추진시기
3. 다문화가정 경제사회적 역량강화	3-4 다문화가정 건강관리지원(정신클리닉 운영 등)	'09년 하반기 예정
	3-5 이주여성 자활지원시설 운영(여성정책담당관)	"
4.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다문화가정	4-1 서울시 다문화정책협의회(위원회) 운영	"
	4-2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무지개 포럼단' 운영(핵심)	"
	4-3 시민인식 개선사업 실시 - 어린이집 종사자 다문화이해교육 실시(보육담당관) - 공무원 다문화교육과정 운영(인재개발원)	2010년 예정
	4-4 다문화 한울타리 문화공연단 운영	'09년 하반기 예정
	4-5 결혼이민자를 위한 'wise'단 운영	2010년 예정

출처 : 서울시 보도자료

2.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 사업

1) 현황

서울시와 자치구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08년 총 290개 사업이 '09년도에는 210개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일회성이고 중복적인 사업이 많으며 예산비중도 낮은 편이며 취·창업을 위한 기초적인 사업을 펼쳤다.

'08년도에는 5개 자치구 기관에서 취·창업사업이 이루어졌으며 '09년도에는 7개 자치구 기관에서 취·창업지원이 진행되어 조금씩 늘고 있는 실정이나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그러나 2010년 '한울타리 플랜'에서는 4개 사업영역의 하나로 경제사회적 역량강화부분이 들어가 취·창업부분에 대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무지개 잡(job)자'사업을 핵심사업으로 하고 서울시를 4-5개 영역으로 나누어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창업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남부여성발전센터 내에 폭력피해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를 건립해 폭력피해를 당한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취·창업교육을 지원하고 이들을 취업으로 연계해 자립의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 표 III-15 】 '08년도 자치구의 취·창업지원 사업

자치구	시행기관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규모	성격
동대문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강사양성교육	다문화강사양성교육(필리핀, 중국, 일본, 베트남)	구비 - 320	결혼 이민여성 - 32명	정기적
		다문화가정취업교육	패션매장취업 및 창업준비과정	0	결혼 이민여성 - 1명	정기적
		다문화강사양성교육 및 파견	다문화강사양성 및 파견(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국비 - 4,500		
도봉구	구청	컴퓨터교실	컴퓨터기초 및 인터넷활용	시도 - 384, 시군구 - 384	결혼 이민여성 - 20명	정기적
노원구	구청	정보화교육	컴퓨터기초 및 인터넷활용	시군구 - 400	결혼 이민여성 - 50명	정기적
송파구		컴퓨터교육	컴퓨터교육 및 인터넷활용		결혼 이민자 - 50명	정기적
		조리사반	조리사자격증 취득반	시군구 - 3,660		정기적
		의류수선	의류선	시군구 - 1,340	결혼 이민자 - 15명	정기적
동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엄마는 선생님	다문화강사양성		결혼 이민자 - 2명	정기적
		funfun컴퓨터교실	컴퓨터교육	국비 - 121, 시도 - 121	결혼 이민자 - 39명	정기적
		네일아트	손관리 및 네일아트교육을 통한 여가활동 및 역량강화	시군구 - 336, 기타 - 1,000	결혼 이민자 - 15명	정기적

【 표 III-16 】 '09년도 자치구 취·창업지원사업

자치구	수행기관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주기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정보화교육	컴퓨터기초활용 및 인터넷활용법	국비-250, 시군구비-250	결혼 이민자 - 15명	일회성
동대문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취·창업교육	다문화가족직업교육	국비-1,200		정기적
		다문화인식개선사업	다문화강사양성 및 파견	국비-240	결혼 이민자 - 10명	정기적

자치구	수행기관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주기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컴퓨터교육	컴퓨터교육	국비-37 시비-37	결혼 이민자 - 30명	정기적
동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잡(job)자 날자	이미용전문기술함양, 다문화강사양성	국비-850 시비-850	결혼 이민자 - 50명	정기적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컴퓨터교육	취업에 도움이 되는 컴퓨터입문	0	결혼 이민자 - 50명	정기적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원어민강사양성교육	원어민강사교육법과정	시군구-5,000	결혼 이민자 - 12명	정기적
노원구	구청	정보화교육	컴퓨터기초 및 인터넷활용	시군구-400	결혼 이민자 - 50명	정기적
마포구	구청	정보화교육	인터넷검색, 취업을 위한 컴퓨터활용능력배양	시군구-1,800	결혼 이민자 - 30명	정기적

출처: 서울시 내부자료 재구성

2) 취·창업교육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서울시는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가지고 있다.

우선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결혼이민자의 취·창업지원 사업이 '08년도에 비해 '09년도에 증가하기는 했으나 사업건수나 예산에서 매우 미미한 상태이다. 그러나 서울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은 다른 지역에 사는 결혼이민여성들보다 취업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요구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취·창업지원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시행기관 확대가 필요하다. 사업시행기관이 '08년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청에서 '09년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고는 있으나 일부 기관들만 참여함으로써 모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창업지원 사업에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으로 시행기관이 확대되어야 하며 자치구에 있는 여성회관이나 사회복지기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내용이나 수준의 다양화·체계화가 필요하다.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 사업이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원사업의 내용이 다양하지 못하고 주로 다문화강사, 원

어민강사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한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한국어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나 취·창업에 필요한 고급반이나 취업준비반은 개설되지 않고 기초반이나 초급반이 대부분이며, 컴퓨터교육도 취업을 위한 것보다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도를 익히는 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보다 체계적이고 심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취·창업을 위해서는 한국어교육이나 컴퓨터 교육내용이나 수준이 다양화되고 단계별로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관련기관과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교육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고용지원센터, 기술학교, 전문대학 등 관련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직무기초소양 등의 이론적 수업을 하고 여성인력개발기관이 기술적 교육, 취업의 연계는 모든 기관들이 공동으로 하는 등 각 기관마다 전문적인 영역을 담당하면서 연계를 강화하여야 취·창업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지원 사례

현재 결혼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취·창업지원사업을 유형에 따라 나누면 사회적 기업, 사회적 일자리 형태의 지원사업과 시민단체가 지원하는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주축이 된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유형들은 상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장단점을 비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또한 여러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향후 취·창업지원정책의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사회적 기업형태 : 오가니제이션 요리(하자센터)

가. 사업의 취지와 목적

하자센터 청소년과 여성이 주축이 되어 사회적 기업 오가니제이션 요리를 시작하였다.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여성가장이나 저소득층 여성들과 결혼이민여성들의 결합은 동등한 관계맺기와 수평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글로벌 마인드를 익히게 되고, 다세대, 다문화가 어우러져 공동의 미션과 구체적인 일을 함께 해냄으로써 결혼이민여성은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의미가 있고, 주체를 이루는 큰 축으로서 건강한 조직문화를 이루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이 청소년, 여성가장, 다문화이주여성이 모여 조화롭게 배우며 더불어 일하는 공동체의 목적이다.

나. 사업내용

- 요리트레이닝 : 한국요리의 기초가 필요한 이주여성에게 오가니제이션 요리의 전문 요리사들이 직접 지도
 - 참여이주여성 : 8명이며 이중 4명을 오가니제이션에서 고용함
- 카페트레이닝 : 정기적인 교육과정에 커피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더불어 카페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사이드메뉴의 교육과 실습까지 다양화
 - 참여이주여성 : 3명이며 이 중 1명은 오가니제이션에서 고용함
- 다문화이주여성 자녀돌봄 사업
 - 목 적 : 다문화이주여성 고용 안정화 및 자립 지원
 - ※ 서울시 보육비 기준 70%, 오가니제이션 요리 고용인의 경우 교육비 지원

다. 타기관 지원사업과의 차별성

- 외적 가치: 다문화요리 연구와 개발 주도하고 보급하며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한다.
- 내적 가치: 가르치면서 배우며 여성의 삶과 함께 하는 일터, 돌봄이 있는 새로운 가족공동체 형성

라. 사업성과

- 누적 참여자 수 : 총 21명(2008년 7월~현재)
 - 전체 참여자 분석 : 인도네시아 4명(19%), 필리핀 3명(14%), 베트남 8명(38%), 러시아 2명(10%), 중국 2명(10%), 일본 1명(5%), 키르키즈스탄 1명(5%)
- 현재 참여자 수 : 총 11명(52% : 고용인 5명, 교육생 6명)
 - 고용인 분석 : 인도네시아 1명, 필리핀 1명, 베트남 2명, 러시아 1명
 - 교육생 분석 : 중국 2명(33%), 일본 1명(17%), 베트남 1명(17%), 러시아 1명(17%), 키르키즈스탄 1명(17%)
 - 수료자수 : 4명(19% : 3개월 이상 교육 참여자)
 - 중간 탈락자수 : 5명(24% : 개인사정으로 참여 중단)
 - 취·창업자 수 : 5명(24% : 전원 오가니제이션 요리 자체 고용)

다. 사업방향에 대한 제언

- 홍대 앞 다문화레스토랑 오픈했는데 이는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한 교육과 취업, 여성친화적 고용환경 구축의 결정관으로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 창출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오가니제이션 요리의 교육생 및 고용인 출신의 개인 창업을 지원하고, 오가니제이션 요리의 전문 인력의 결합으로 사회적 기업으로서 사회서비스의 전국적 확대의 롤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2. 사회적 일자리: Talk, Play, Learn 사업(사단법인 부산여성사회교육원)

가. 사업의 취지와 목적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어 우리사회에서 안정적인 취업을 하지 못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소지가 있는 결혼이민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양질의 저렴한 외국어교육 위해 결혼이민여성들을 교육시킨 후 초등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주민자치센터, 1 대 1 초급 외국어 회화, 일반 회화 모둠 등 외국어 교육을 원하는 다양한 피교육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원어민강사를 연결함으로써 결혼이민여성들의 자립을 도모한다.

- 지역의 교육문화 기업으로 자립
- 취업취약계층 경제참여 유도
-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복지 실현

나. 사업내용

- 참여인원 -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연계해 취업을 희망하는 필리핀인·중국인을 이력서와 면접을 통해 17명 선발(중국인 11명, 필리핀인 6명)
- 강사양성교육
 - 기 간 : 2008년 12월 ~ 2009년 2월 (약 200시간)
 - 대 상 : 선발된 17명의 원어민
 - 내 용 : 교과과정은 일반과정(30시간), 심화과정(20시간), 교양과정(6시간) 이수 후, 총괄평가와 수업실기능력평가

- ※ 절대평가를 기준으로 B+(85점)이상을 획득하면 수료
- ※ 신규과정으로(일반, 심화) 이후 수료자 보충과정 강좌도 개설계획

○ 교육과정

- 일반과정: 외국어교육학, 한국학, 참관, 실습 등 총 30시간
- 심화과정: 언어학, 교육학, 한국학, 실습 등 총 20시간
- 보충교양과정: 아동발달과정의 이해, 심리이해, 놀이지도 등 총 6시간
- 현장실습: 방과후 학교 / 지역아동센터 등

다. 타 기관 지원사업과의 차별성

1) 각 지역의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진행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주민자치센터 : 각 지역의 결혼이민여성을 추천
- 각 대학교, 외국어학과, 취업관련기관 등: 석박사 과정생들이 양성과정 프로그램에 자원봉사로 강의함
- 지역아동센터 / 평생교육기관 등: 교육후 우선 배치하여 실습하도록 함
- 교육청 / 부산지역초등학교 등: 교육 후 지도사 우선 배치

2) 경쟁력 확보

- 강사 자질 증명하는 인증서 발급
- 공인기관이 인정하는 강사 인증시스템 개발
- 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하여 강의에 대한 개선점 피드백

라. 사업성과

- Talk, Play ,Learn 사업은 모델 발굴형 사업으로, 한국인 관리자 3인(프로그램개발·관리 담당자 1인, 회계담당자 1인, 홍보·마케팅 담당자 1인)과 필리핀인 10인, 중국인 7인으로 2008년 12월 1일 시작했음.
- 12월과 1월 두 달간의 교육과정과 3월 한 달간 각 지역의 지역아동센터에 나가 실습하는 과정을 거친 후, 이후 17인 중 양성과정 성적이 80점 이상이 되지 않는 필리핀여성 2명이 제외되고 신규로 2명이 추가되어 3월부터는 개인과외와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중소기업 등으로 영어와 중국어를 가르치는 외국어지도사로 활동을 시작함.
- 지난 2009년 5월 30일 6개월 동안 모델 발굴형으로 진행되었던 본 사업을 부산시 교육청과 연계한 지역 연계형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지속하고 있음²³⁾.

다. 사업방향 및 발전방안, 제언

- 본 프로그램 참여자인 여성결혼이민자(이하 외국어 지도사)가 강의하기를 원하는 교육을 우선 배정
- 외국어 지도사의 개인일정과 강의 일정을 조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
- 외국어 지도사가 매 출강 시 활용할 수 있는 강사용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지역 내 다른 외국어 교육기관과의 연계 강화

3. 시민단체 사업: 한하늘 한땅 캠페인 사업(YWCA)

가. 사업의 취지와 목적

결혼이민여성의 증가에 따라 YWCA는 제36회 전국대회, 2006년 제2차 연합위원회를 통해 ‘여성의 인권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주력운동으로 결정하고 결혼이민여성 지원사업에 집중하기로 결의함. 이것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몇몇 회원 Y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결혼이민여성 지원사업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함. YWCA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결혼이민여성과 함께 하는 ‘한하늘 한땅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2007년은 ‘결혼이민여성의 자기발견’을, 2008년은 ‘결혼이민여성의 소통’을, 2009년은 ‘결혼이민여성의 자립’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사업내용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년 ~ 2009년
- 장 소 : 55개 지역 YWCA본부 및 154개 부속시설
- 대 상 : 결혼이민여성 및 가족, 지역주민
- 참여인원 : 약 3,000여 명(매년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함)
- 목 표
 - 결혼이민여성의 한국 생활 적응 능력 향상
 - 결혼이민여성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자치력 생성
 - 가족 및 사회구성원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 확산

23) 현재 영어수업의 경우 총67건(과외50건, 중소기업 1건, 종합사회복지관 4건, 그룹과외12건), 중국어의 경우 22건(개인과외18건, 주민자치센터 3건, 그룹과외 1건)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 결혼이민여성 관련 이해관계자의 인식과 태도 변화
- 바람직한 기업-민간단체 사회공헌협력모델 확산

2) 결혼이민여성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욕구 충족시켜 결혼이민여성의 정서적 사회적 안정을 꾀함. 또한 취업 취약계층인 결혼이민여성에게 체계적인 직업활동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배출, 결혼이민여성 직업 훈련생들의 교육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며,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디딤돌, 사회적 자원 활용 극대화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함.

3) 2009년 사업추진 내용

가) 연구사업

- 결혼이민여성 직종 매뉴얼 제작(2~5월)
 - 직업능력소양교육 / 한국어강사 / 생활정착지원상담원 / 바리스타 / 지역특산물 제조사(떡) / 의류수선사 / 다문화교육
- 정책연구 및 콘텐츠 개발(연중)

나) 교육 및 활동지원(연중)

- 결혼이민여성 직업능력 소양교육(징검다리프로그램)
 - 직업능력소양교육을 위한 강사교육
 - 결혼이민여성 직업능력 향상교육 실시(26개 지역)
 - : 라이프플랜 설계 통한 자기인식강화
 - : 문화적 다양성과 차별성 인식, 한국의 산업과 노동시장 이해, 직업인으로서의 소양교육 및 권리알기, 가정경제 이해, 직업관, 직업윤리, 직업가치 등 직업 기초능력 점검, 자신의 흥미영역과 강점, 걸림돌 찾기, 나의 직업적 능력 진단, 생애 진로시간 전망 등 6회 교육 실시
 - : 지역 - 26개 지역 실시²⁴⁾

다) 취업교육(5~11월)

- 직업에 대한 이해교육 및 취업훈련

24) 고양(5.~7.), 광주(6.4~6.9, 7.7~7.14), 남양주(6.9~7.14), 남원(5.27~7.1), 논산(5.7~), 대구(5), 목포(5.15~5.27), 부천(4.1~4.3), 사천(5.22~6.26), 서귀포(5.26~6.12), 서울(5.12~5.28), 성남(5.18~6.22), 순천(5.18~6.27), 안동(6.1~8.30), 안양(5.28~7.2), 여수(5.25~6.29), 울산(6), 의정부(5.18~6.15), 전주(9), 진주(5.6~5.15), 진해(6.3~7.15), 창원(5.12~6.2), 청주(10.12~), 춘천(5.18~6.8), 포항(6.1~6.12), 하남(6.3~6.19)

- '결혼이민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 한국 거주 5년 이상 된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취업교육을 실시

광주 : 의류수선원 영어강사교육/ 논산 : 다문화강사 / 대구 : 천연비누 및 화장품, 양초교육, 홈베이킹, 인터넷쇼핑몰 -> 창업모델개발 / 목포 : 의류수선사, 생활정착지원상담원 / 부천 : 산모신생아도우미교육 / 사천 : 포크아트사 -> 창업모델 / 서귀포 : 한국어강사양성과정 / 서울 : 네일아트 / 성남 : 다문화강사 / 순천 : 미용 / 안양 : 생활정착지원상담원 / 여수 : 한국어교사 양성 / 울산 : 바리스타 / 의정부 : 네일아트 / 전주 : 다문화강사 / 진주 : 생활정착지원상담원, 의류수선원 / 창원 : 의류수선 및 홈패션 / 청주 : 산모신생아돌보미교육 / 춘천 : 의류수선사 / 포항 : 의류수선사

라) 자조활동(연중)

- 결혼이민여성 네트워크 통한 자치력 및 지도력 향상
- 기대효과 : 결혼이민여성 간 상담, 정보교류 및 자기역량강화 등

마) 취업보고회

바) 한하늘 한땅 소식지 발간

사)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사업 “꿈을 잡(job)아라”(7~12월)²⁵⁾

라. 사업성과

- 대한 YWCA는 2007년 44개 회원, 2008년 47개 회원, 2009년에는 50개 회원 YWCA와 더불어 결혼이민여성과 함께 하는 ‘한하늘 한땅 캠페인’을 펼치고 있음.

25) 총 8개 직종의 사회서비스 제공

- 생활정착지원상담원(안양) : 결혼이민여성 가정 방문을 통한 생활정착지원
- 한국어 보조강사(여수) : 결혼이민여성 혹은 외국인 대상 한국어교실과 문화교실 운영 기관 파견 하여 보조강사로 활동
- 영어강사(광주) :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원어민 강사 파견
- 다문화강사(전주)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다문화교육 실시
- 바리스타(울산) : 복지관, 시설 등에 커피 등 기호식품 제공
- 의류수선원(진주) : 지역내 의류 수선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수선
- 네일아트(서울) : 손톱손질을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
- 이미용원(순천) : 시설파견 통해 커트, 퍼머 등 이미용 서비스 제공
- 천연화장품제조사(대구) : 가정폭력, 성매매 쉼터, 여성복지관 등 교육 및 서비스 제공
- 포크아트(사천) : 가정폭력, 성매매 쉼터, 여성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방과후학교 어린이 지도 등 교육 및 서비스 제공

- 2007년은 ‘결혼이민여성의 자기발견’을, 2008년은 ‘결혼이민여성의 소통’을, 2009년은 ‘결혼이민여성의 자립’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 한하늘 한땅 캠페인은 가족, 회원, 시민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가족소통프로그램을 비롯한 지역사회 참여활동, 자조모임 구성 등 결혼이민여성들이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07년에는 389명, 2008년에는 767명, 2009년에는 600여명 등 총 1,700여 명의 결혼이민여성이 참여했음.
- 결혼이민여성의 취업 희망직종을 토대로 상담원, 전문강사(외국어강사, 한국어강사, 다문화강사), 지방자치단체 계약직 공무원, 계기검침원과 안전점검원, 지역특산물제조사, 바리스타, 의류수선사 7개 직종을 개발하고, 보고회 및 취업설명회를 가짐.
- 군산, 여수, 전주 3개 회원YWCA에서 ‘다문화강사 양성교육’을 진행하여 결혼이민여성들이 직접 강사로 활동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여성부의 지원으로 「어린이집의 다문화 교육 과정 개발과 결혼이민여성의 다문화 교육강사 활용사업」을 시행했고, 아이코리아와 공동으로 다문화 교육과정을 개발해 전국 회원YWCA 어린이집에 보급했음.

마. 사업방향 및 발전방안, 제언 등

각 직종업무 관련 협회들과 양해각서(MOU)를 맺어 이들의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2009년에는 결혼이민여성의 자기역량강화를 위해 기초능력향상교육, 취업교육, 경제·금융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취업설명회와 결혼이민여성 취업 성공사례집을 발간하여 보급함.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다문화멀티마켓사업(청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 사업의 취지와 목적

청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멀티마켓사업’은 최근 급증하는 결혼이민여성 및 이주노동자, 유학생을 위한 다문화생필품, 다문화식당, 다문화토산품 판매를 결합하여 이주민전용 자활공동체인 멀티마켓을 운영함으로써 그 시너지효과로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 저소득 이주여성의 자활의욕 및 자활자립기반 마련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나. 사업내용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년 2월 ~ 12월
- 사업명 : 다문화멀티마켓(사업단명 : “뒀다 무지개”)
- 목적 : 저소득 이주여성 자활의욕 고취 및 자활자립기반 마련
- 사업목표 :
 - 공동체성의 형성, 합리적 운영구조, 안정적인 수익구조, 개인의 발전과 전망 등 각 영역에 대한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하여 빈곤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자활공동체의 형성과 자활을 도모하여 소득 향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협동에 의한 매출, 자산의 공동소유, 이익의 공동분배가 이루어지는 더불어 살아가는 경제공동체 전형 창출

2) 세부추진 내용

- 뒀다 무지개는 다섯 개의 틀로 이루어져 있는데, ① 무지개 시루(식당업), ② 무지개 고리(민속공예단), ③ 무지개 나라(마켓), ④ 무지개 소리(통·번역), ⑤ 무지개 다리(다문화강사)
- 다문화 식당 운영 및 생필품 판매, 토속품 판매, 그에 따른 역량강화교육을 내용으로 한 무지개 시루(식당업)와 무지개 나라(마켓) 운영중²⁶⁾

다. 타 기관과의 차별성

- 뒀다 무지개의 무지개 시루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결혼이민자 관련 기관 등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이주여성 대상 창업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결혼이민여성들로 구성된 무지개 시루는 다양한 각 국의 음식 메뉴를 선보이면서 이주여성 자신들의 잠재능력 개발과 역량 강화를 통해 또 다른 발돋움을 하기 위한 징검다리역할을 수행함.

라. 사업성과

태국, 일본, 중국, 몽골 등 다양한 국가의 결혼이민여성들 5명이 무지개시루를 운영하고 있음. 현재 한국인이 무지개 시루의 매니저를 하고 있지만 이주여성들이 한국의 창업과 가게운영의 기틀을 잡고 그들 스스로가 운영의 뜻을 갖게 되도록 하기 위해 매일 음식의 창의적인 개발과 자국의 음식연구 등을 통하여 나날이 발전하고 있음.

마. 향후 발전방향의 개선점

- 뗏다 무지개는 2011년 3월까지 사회적 기업 인증 기준에 도달하여 사회서비스 체계 공형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비전을 두고 있음. 즉, 그 단계별 비전으로는 1단계(2009년) 체계 준비기를 거쳐 2단계(2010년)에서는 체계 안정 및 성정을 도모하고, 3단계(2011년)에는 사회적기업화를 이루는 것임.
-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이들의 기술력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공동 체성 함양 및 경영기반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소득보장

26)

구분	사업내용	세부내용	비고
다문화멀티마켓운영	식당운영	- 7개국 음식 :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몽골	- ethnic food(민족 고유음식) 취급 - 점심, 저녁(단체 주문 시) 운영
	생필품판매	- 다문화생필품 취급 : 조미료, 향신료, 양념, 약세서리, 의류, 소품 등	- 나라별 물품 취급
	토산품판매	- 다문화토산품 취급 : 공예품, 민속품, 약세서리	- 나라별 특산품 취급
참여자교육	음식조리교육	- 7개국 음식조리교육 :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몽골	- 다양한 다문화 음식 조리교육
	심성교육	- 친절교육/공동체교육	- 서비스 질적 향상
	공동체운영교육	- 사무처리 교육 : 회계처리, 컴퓨터	- 기본능력배양
홍보	사업단 홍보	- 다각적 홍보매체 이용 : 전단지, 언론, 무료시식행사, 방문 홍보	- 사업단,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방문
고객모집	고정고객모집	- 일일 고정고객 : 100명 이상 확보	- 이주여성회원, 실무자, 자원봉사자, 이주민가족 등
사업연계	이주민 전용 멀티마켓	- 공동체 회의장 개설 : 다각적 다문화물품 매장으로 확대	- 사업 확장
조사사업	고객만족도	- 고객서비스 확대 : 가족회원 특별서비스, 단체회원 특별 행사	- 고객 변화와 새로운 관심 반영

제4절 시사점

결혼이민여성 증가에 따른 지원정책은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교과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부, 노동부, 농수산식품부 등 8개 부서가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기능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중복시행되는 면이 있으며 대체로 결혼이민여성의 초기적응지원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내지 결혼이민여성들의 정책욕구도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서비스가 요구된다.

최근에 국가브랜드위원회가 5대 중점 과제 중 하나라 다문화포용, 외국인 배려 등을 내걸고 통합적인 ‘다문화가족지원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따뜻한 다문화사회 만들기’ 과제에서 결혼이민자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여 결혼이민여성의 성공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사업에서 취·창업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외국인 정책기본계획에서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취·창업지원을 하고 노동부와 여성부도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사업에서 이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시작단계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시도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예산, 인력, 사업내용 등 여러 면에서 아직은 미미한 단계라 할 수 있다. 주로 결혼이민여성 관련지원사업을 해 온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사회적 일자리나 사회적 기업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공기관도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취·창업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사업을 확대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 2010년 ‘한울타리 플랜’의 4대 과제 중 다문화가정 경제사회적 역량강화를 채택하고 한국어교육 중 고급반과 취업준비반의 개설하고 여성인력개발기관 등에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산모도우미사업을 벌이고 아이돌보미제도의 이용을 용이하게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성인지적 시각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과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며 단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위한 법제도나 추진체계를 갖추고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요건인 경제적 역량강화는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취창업지원사업을 해 온 단체 등과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민·관·학의 긴밀한 연계를 형성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에는 결혼이민여성을 지역의 주체로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보는 다문화적 인식의 변화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수립되고 지원되어야 한다.

IV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교육 실태분석

IV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교육 실태분석

제1절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교육 현황과 진단

1. 조사개요

가. 조사개요

본 조사는 서울시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관련기관의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취·창업지원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거나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운영 또는 다문화 관련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관의 종사자로 한정하였다. 또한 조사방식은 전문조사기관에 의한 전수조사 방식이 아닌 유의표집에 의한 표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90개 기관 중 74개의 기관담당자가 응답하였다.

■ 표 IV-1 ■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서울지역 내 결혼이민자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기관의 종사자
조사규모	90개 기관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일자	2009. 4. 28. - 5. 25.
분석도구	SPSS 12.0k

표 IV-2 기관유형별 설문지 배부 및 응답기관

구 분	배부기관 (기관수)	응답기관		
		기관수	응답률	구성비율
지방자치단체	25	20	80.0	27.0
여성인력개발센터	19	16	84.2	21.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5	100.0	6.8
건강가정지원센터	22	18	81.8	24.3
사회단체 및 학교	19	15	78.9	20.3
전체	90	74	82.2	100.0

나. 주요 조사내용

본 조사에서는 서울지역 내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함은 물론, 유관기관의 사업담당자가 인지한 결혼이민여성의 프로그램 참여시 어려웠던 점, 결혼이민여성에게 적합한 유망직종 및 창업아이템 등을 함께 조사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과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표 IV-3 주요 조사 내용

구 분	내 용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일반적 현황	- 운영여부 - 프로그램 현황(2006년 이후) : 프로그램 내용, 운영시기, 참여자수, 수료자수, 취·창업자수, 예산지원기관 등 - 프로그램 세부내용
	- 참여여부 - 프로그램 현황(2006년 이후) : 프로그램 내용, 운영시기, 참여자수, 수료자수, 취·창업자수 등
취·창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운영 시 애로사항(1순위, 2순위) - 참여 결혼이민여성의 애로사항(1순위, 2순위) - 타 기관과의 협력 경험 - 타 기관과 협력 시 애로사항
	- 참여 결혼이민여성의 애로사항(1순위, 2순위) -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이 없는 이유(1순위, 2순위) - 향후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계획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제반 여건	- 프로그램 실시 시 필요한 지원(1순위, 2순위) - 프로그램 추진 시 거점기관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 요소	- 프로그램 참여 시 필요한 기초 소양 -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 성공요인 - 적합 직종 및 창업 아이템

2. 설문 조사 결과

가. 취·창업지원프로그램의 일반적 현황

1) 결혼이민여성 대상 지원프로그램 운영 현황

서울지역에서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거나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운영 또는 다문화 관련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여성인력개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단체 및 학교 등의 기관종사자에게 소속기관에서 결혼이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 현황 및 세부내용을 알아보았다.

가)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여부

결혼이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거나 또는 과거(지난 3년간)에 운영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6.2%인 12개 기관만이 해당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3.8%인 62개 기관은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사업이 '09년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본사업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적은 기관만이 취·창업능력개발 사업을 행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드러났으며 그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 표 IV-4 ■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여부

구 분	사례수	%
전 체	74	100.0
현재 운영하고 있다	10	13.5
운영했던 적이 있다	2	2.7
운영한 적이 없다	62	83.8

이를 기관유형별로 분석해보면 [표 IV-5]와 같다. 즉,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지역 내 5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 반면, 기초지자체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자체의 경우, 이번 조사가 해당 프로그램

의 직접 수행 방식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자체수행 사업보다 민간위탁이나 지원보조 사업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여성인력개발기관의 93.7%, 건강가정지원센터의 83.3%, 사회단체 및 학교의 80.0%가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우리사회의 다문화가족정책이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 표 IV-5 】 기관유형별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여부

구 분	사례수	현재운영하고 있다		운영했던 적이 있다		운영한 적이 없다	
		빈도	%	빈도	%	빈도	%
전 체	74	10	13.5	2	2.7	62	83.8
지방자치단체	20	0	0.0	0	0.0	20	100.0
여성인력개발기관	16	0	0.0	1	6.3	15	93.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5	100.0	0	0.0	0	0.0
건강가정지원센터	18	2	11.1	1	5.6	15	83.3
사회단체 및 학교	15	3	20.0	0	0.0	12	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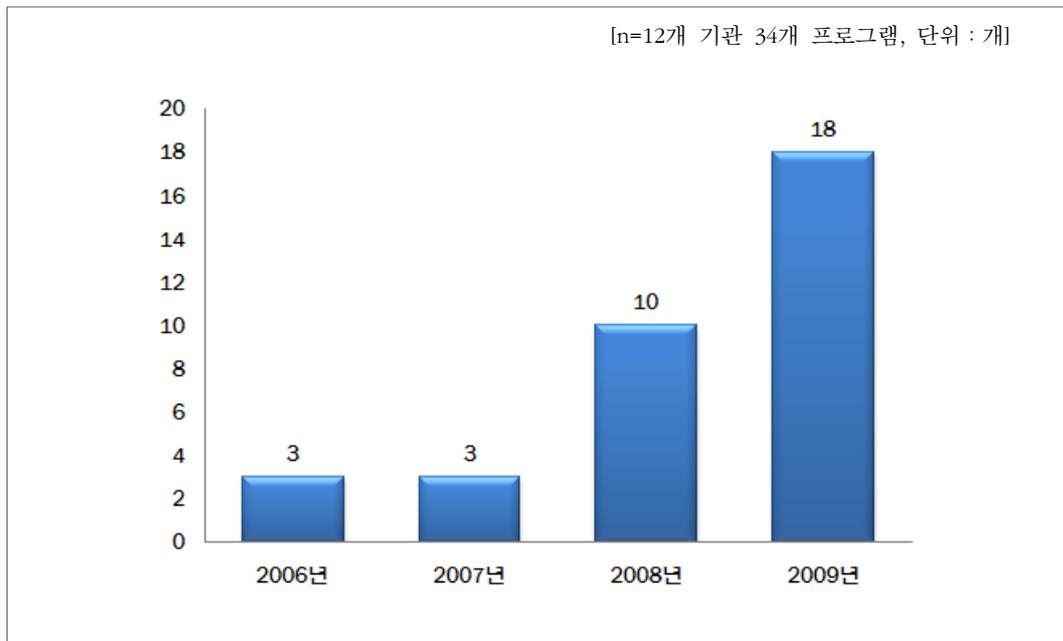
나)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현황

결혼이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거나 과거(지난 3년간)에 운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2개 기관²⁷⁾의 총 34개 프로그램을 운영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3개(8.8%), 2008년에는 10개(29.4%), 2009년 현재는 18개(52.9%)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이 2006년에 비해 2009년 현재 6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7) 설문조사결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개소(동대문구, 성북구, 영등포구, 동작구, 송파구)이며 건강가정지원센터 3개소(도봉구, 동대문구), 사회단체 및 학교 3개소(나섬공동체,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오가니제이션요리) 등이며, 운영을 했던 기관으로는 은평여성인력개발기관, 용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다

【 표 IV-6 】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시기

구 분	사례수	%
전 체	34	100.0
2006년	3	8.8
2007년	3	8.8
2008년	10	29.4
2009년	18	52.9



【 그림 IV-1 】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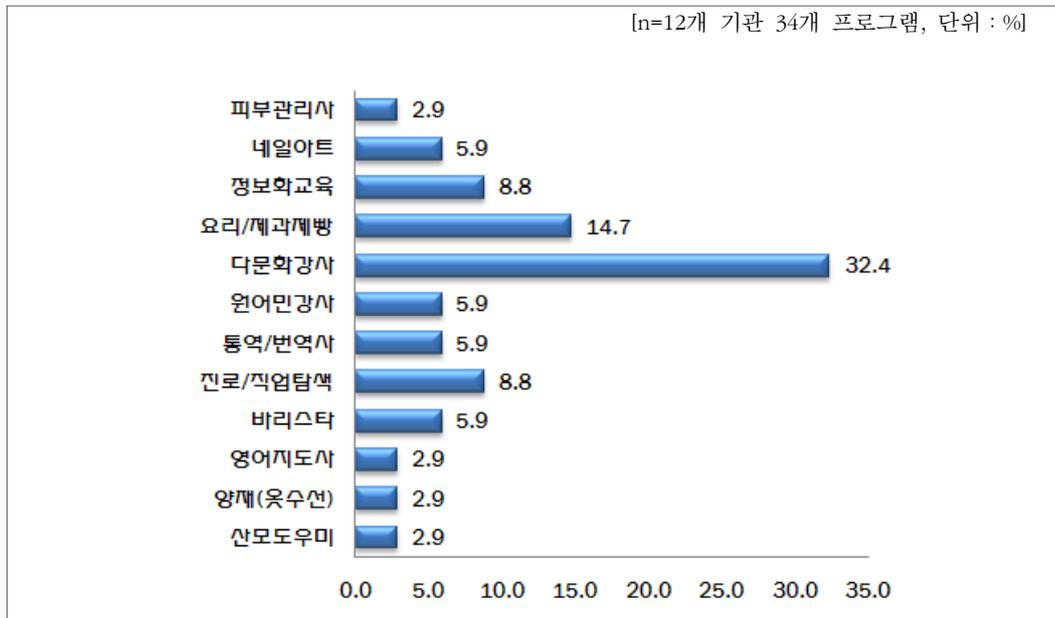
또한, 결혼이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거나 과거에 운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관들의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다문화강사양성 프로그램이 32.4%(11개 프로그램)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요리/제과제빵 14.7%(5개 프로그램), 정보화교육과 진로/직업탐색이 각각 8.8%(3개 프로그램), 네일아트와 원어민 강사, 통역/번역사, 바리스타가 각각 5.9%(2개 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참여하고 있는 기관수에 비하면 취·창업 내용은 다양한 편이다. 그 중에서도 결혼이민여성들에게 특화직종인 다문화강사가 제일 많고, 원어민강사, 통·번역사 순이며,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 본격적인 취·창업지원프로그램 사업이라기 보다는 이제 막 지원하고 있

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창업에 대한 욕구도조사 분석을 통해 이들의 인력자원개발 차원에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된다.

【 표 IV-7 】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 내용

[n=12개 기관 34개 프로그램]

구 분	사례수	%
전 체	34	100.0
피부관리사	1	2.9
네일아트	2	5.9
정보화교육	3	8.8
요리/제과제빵	5	14.7
다문화강사	11	32.4
원어민강사	2	5.9
통역/번역사	2	5.9
진로/직업탐색	3	8.8
바리스타	2	5.9
영어지도사	1	2.9
양재(옷수선)	1	2.9
산모도우미	1	2.9



【 그림 IV-2 】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 내용

한편,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이민여성의 수와 취업연계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한 결과 [표 IV-8]과 같이 나타났다. 즉, 2006년 이후 운영된 34개의 프로그램(12개 기관)에 참여한 결혼이민여성은 총 516명으로 프로그램 당 평균 약 15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3년간(2006년~2008년) 결혼이민여성의 전체 수료율과 전체 취업률을 살펴보면, 전자의 경우는 총 203명이 수료하여 평균 97.6%의 높은 수료율을 나타낸 반면, 후자의 경우는 단지 38명만이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 평균 18.7%의 낮은 취업률을 보였다. 매년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결혼이민여성의 수와 수료자 수,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결혼이민여성의 대부분이 해당 프로그램을 수료하는데 비해 취업률은 상당히 낮아 취업 가능한 수요처 및 취업연계 시스템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취업자 수/수료자 수를 보면 2006년에는 11%였으나 2007년 14%, 2008년에는 21.54% 증가하여 긍정적이라 보이나 2007년 보고서²⁸⁾에 의하면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일반교육 프로그램의 취업률이 37.35%,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취업률은 67.4%라는 점과 비교해 보면 매우 낮은 편이다. 따라서 기업체와 같은 수요처 발굴의 어려움 등 그 원인을 찾아내 이를 위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결혼이민여성들의 언어상의 문제, 정보부족, 문화적 차이, 수요처 발굴 등의 여러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맞춤형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교육 후 취·창업과의 연계를 위해서 어느 한 기관의 노력으로는 부족하고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모든 관련기관들이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하고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창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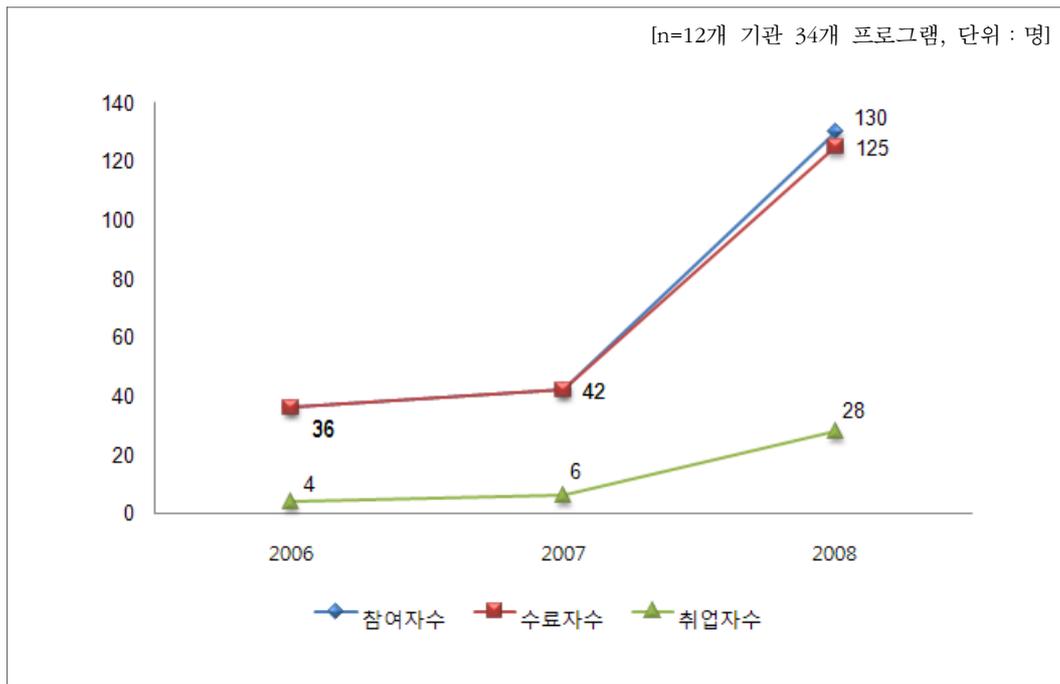
【표 IV-8】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현황

[n=12개 기관 34개 프로그램, 단위 : 명]

구분	전체		2006			2007			2008			2009		
	참여 자수	%	참여 자수	수료 자수	취업 자수									
전체	516	100.0	36	36	4	42	42	6	130	125	28	308	-	-
통역/번역사	40	7.8	0	0	0	0	0	0	20	15	3	20	-	-
정보화교육	95	18.4	21	21	0	0	0	0	60	60	0	14	-	-
다문화강사	164	31.8	8	8	4	19	19	6	35	35	22	102	-	-
산모도우미	3	0.6	0	0	0	0	0	0	0	0	0	3	-	-
피부관리사	10	1.9	0	0	0	0	0	0	0	0	0	10	-	-

28) 서울여성가족재단(2008),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평가 결과보고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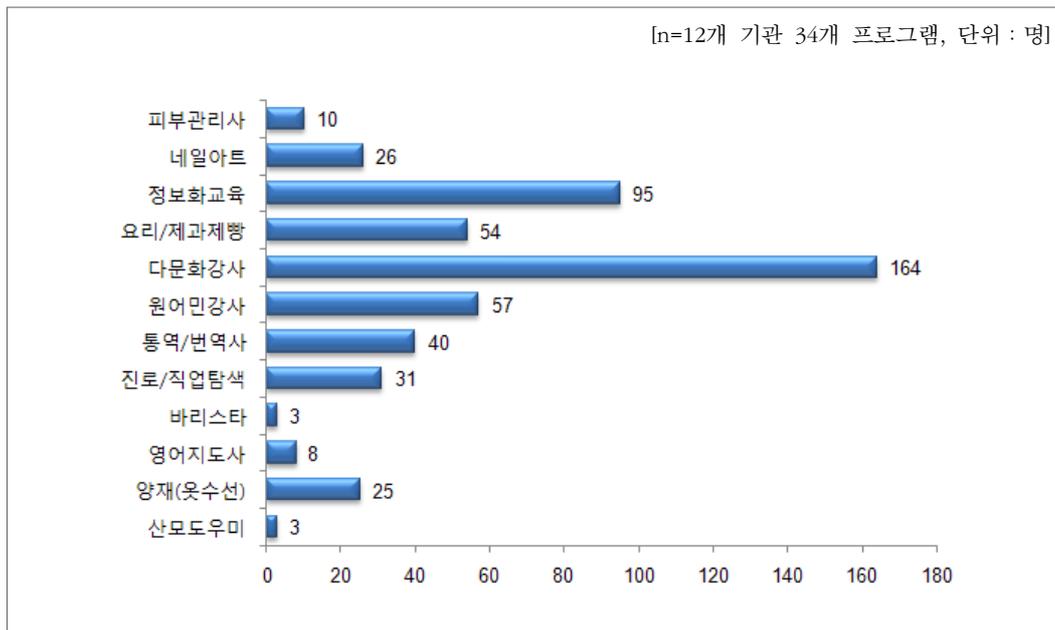
구분	전체		2006			2007			2008			2009		
	참여 자수	%	참여 자수	수료 자수	취업 자수									
양재(웃수선)	25	4.8	0	0	0	0	0	0	0	0	0	25	-	-
원어민강사	57	11.0	0	0	0	0	0	0	0	0	0	57	-	-
진로/직업탐색	31	6.0	7	7	0	23	23	0	1	1	0	0	-	-
네일아트	26	5.0	0	0	0	0	0	0	0	0	0	26	-	-
요리/제과제빵	54	10.5	0	0	0	0	0	0	13	13	3	41	-	-
바리스타	3	0.6	0	0	0	0	0	0	1	1	0	2	-	-
영어지도사	8	1.6	0	0	0	0	0	0	0	0	0	8	-	-



■ 그림 IV-3 ■ 연도별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현황

이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다문화강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이민여성이 164명(31.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보화교육 95명(18.4%), 원어민강사 57명(11.0%), 요리/제과, 제빵 54명(10.5%) 순으로 나타나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 내에서의 결혼이민여성 참여도에 따른 직종별 선호와 수요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다문화사회를 위해서는 다문화사회 이해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강의할 다문화강사가 요구되나, 현재 다문화강사는 정규직으로 발전시키기 보다는 아르바이트 식이므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기관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 등의 모든 단계에서 다문화이해교육을 강제화 시킬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가 되어야 하며 아르바이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낮은 보수문제도 제고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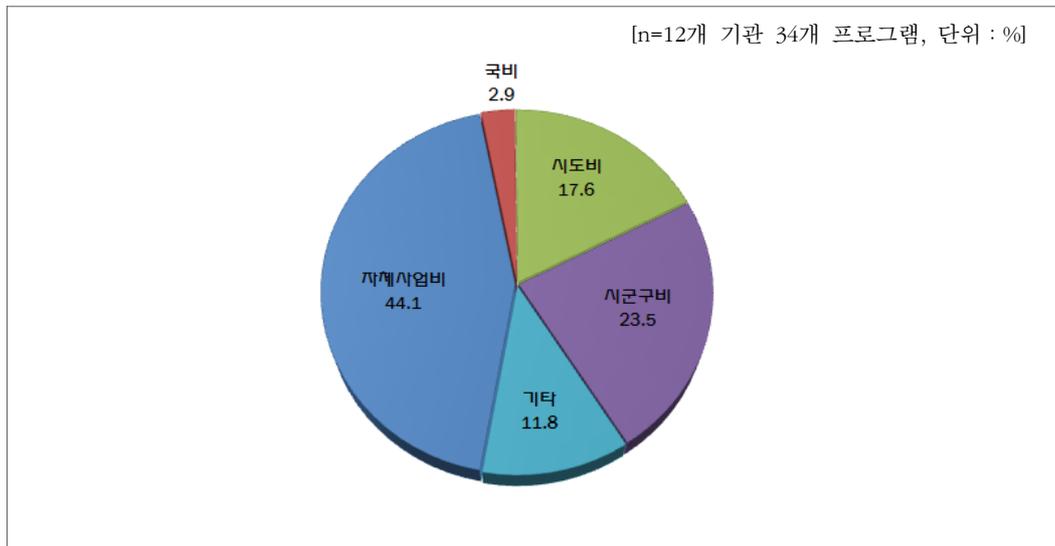
Ⅱ 그림 IV-4 Ⅱ 직종별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현황(참여자수)

2006년 이후 운영된 34개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의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총 230,500천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1개 프로그램 당 평균 약 6,780천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체사업비로 운영된 경우가 44.1%(15개 프로그램)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시·군·구비 23.5%(8개 프로그램), 시·도비 17.6%(6개 프로그램), 기타 11.8%(4개 프로그램), 국비 2.9%(1개 프로그램) 순으로 분석되었다. 기타의 경우는 평생교육원, 지역정보도서관, 평생교육진흥원, 한국여성재단 등이 지원을 하거나 연계한 것이었다. 이는 취·창업능력개발 사업에 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우리의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이 시민단체, 복지관 등을 시작으로 결혼이민여성 지역밀착형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혼이민여성 지원사업은 휴먼서비스이므로 지역밀착형으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취·창업을 위해서는 국가 내지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정책과 추진체계가 마련되어야 효과를 올릴 수 있다.

【 표 IV-9 】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예산현황

[n=12개 기관 34개 프로그램]

구분	사례수	%
전체	34	100.0
국비	1	2.9
시·도비	6	17.6
시·군·구비	8	23.5
자체사업비	15	44.1
기타	4	11.8



【 그림 IV-5 】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예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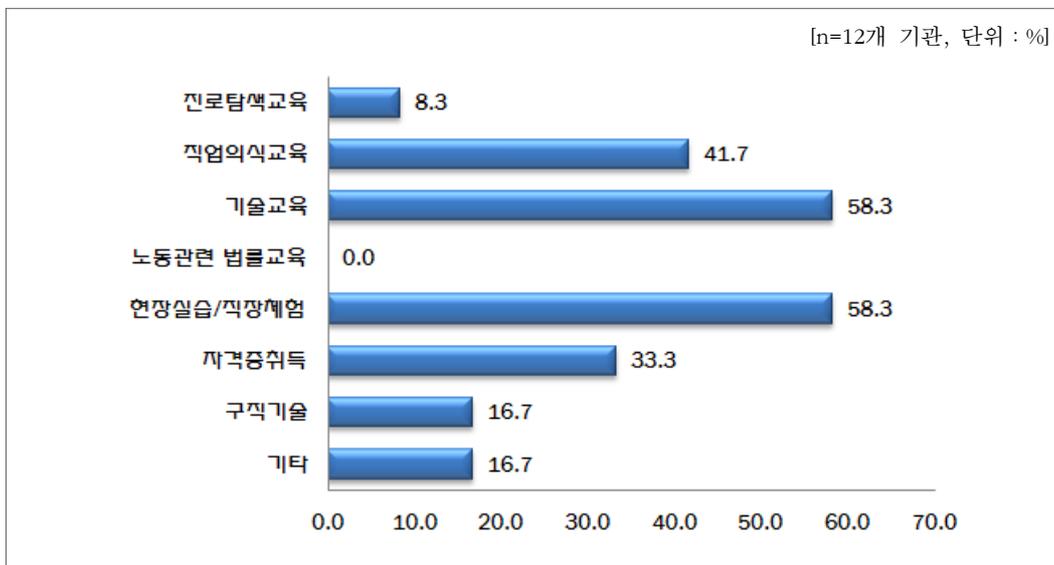
다) 프로그램의 세부내용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12개 기관의 내용을 보면 기술교육과 현장실습/직장체험이 각각 58.3%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업의식교육 41.7%, 자격증 취득 33.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로탐색교육은 8.3%에 불과했으며, 노동관련 법률교육은 전혀 이루어진 적이 없어 이에 대한 교육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취·창업교육프로그램보다 직업의식교육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의식의 차이가 있으나 취·창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 노동시장 내지 경제시장

에서 참여하고 내국인들과의 관계 속에 경쟁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업의식 교육에 대한 중점교육을 시켜 우리 경제시장의 흐름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결혼이민여성들이 교육 후 어렵게 직장을 구하고도 직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례가 많은 편이므로 직무기초소양 등 직장생활에 적응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취·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교육보다 현장경험이 풍부해야 하는데 이는 사업장에서 이들을 인턴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며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이해교육이 활성화되어 이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꺼이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 그림 IV-6 ■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의 세부내용(복수응답)

2) 결혼이민여성의 일반여성 대상 지원프로그램 참여 현황

본 조사는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참여 현황을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해 보기 위해,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없는 62개 기관의 사업담당자에게 일반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이민여성의 현황(2006년 이후)을 조사하였다.

가) 일반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참여여부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62개 기관

을 대상으로, 2006년 이후 결혼이민여성이 일반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14.5%인 9개 기관²⁹⁾에서만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을 뿐, 대부분의 기관(85.5%, 53개 기관)에서는 결혼이민여성이 참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V-10 ■ 일반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에의 참여여부

[n=62개 기관]

구 분	사례수	%
전 체	62	100.0
참여한 적이 있다	9	14.5
참여한 적이 없다	53	85.5

이를 기관유형별로 분석해보면 [표 IV-11]과 같은데, 즉 결혼이민여성이 일반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는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만 53.3%(8개 기관)로 가장 많았을 뿐,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거의 참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앞서 살펴본 [표 IV-5]의 기관유형별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여부와 비교 고찰해 보면, 결혼이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의 경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결혼이민여성이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한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여성인력개발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V-11 ■ 기관유형별 일반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에의 참여 여부

[n=62개 기관]

구 분	사례수	있다		없다	
		빈도	%	빈도	%
전 체	62	9	14.5	53	85.5
지방자치단체	20	0	0.0	20	100.0
여성인력개발기관	15	8	53.3	7	46.7
건강가정지원센터	15	0	0.0	15	100.0
사회단체 및 학교	12	1	8.3	11	91.7

29) 이 기관으로는 여성인력개발기관 7개소(금천, 남부, 동대문, 동작, 서부, 용산, 중랑), 여성능력개발원, 사회단체 및 학교 1개소(여성자원금고) 등이다.

나) 일반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에의 참여 현황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한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에 결혼이민여성이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9개 기관의 해당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2006년 이후 총 127개 프로그램에 결혼이민여성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참여시기별로 살펴보면 [표 IV-12]와 같다. 즉 2006년에는 15개(11.8%), 2007년에는 27개(21.3%), 2008년에는 39개(30.7%), 2009년 현재는 46개(36.2%)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한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에 결혼이민여성이 참여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므로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창업에 대한 필요나 욕구에 비해서는 미진한 상태이므로 참여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기관수에 비해 참여프로그램 수는 많으므로 결혼이민여성들이 참여하기 위한 환경 조성과 이를 위한 홍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표 IV-12 일반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참여 시기

[n=9개 기관 127개 프로그램]

구 분	사례수	%
전 체	127	100.0
2006년	15	11.8
2007년	27	21.3
2008년	39	30.7
2009년	46	3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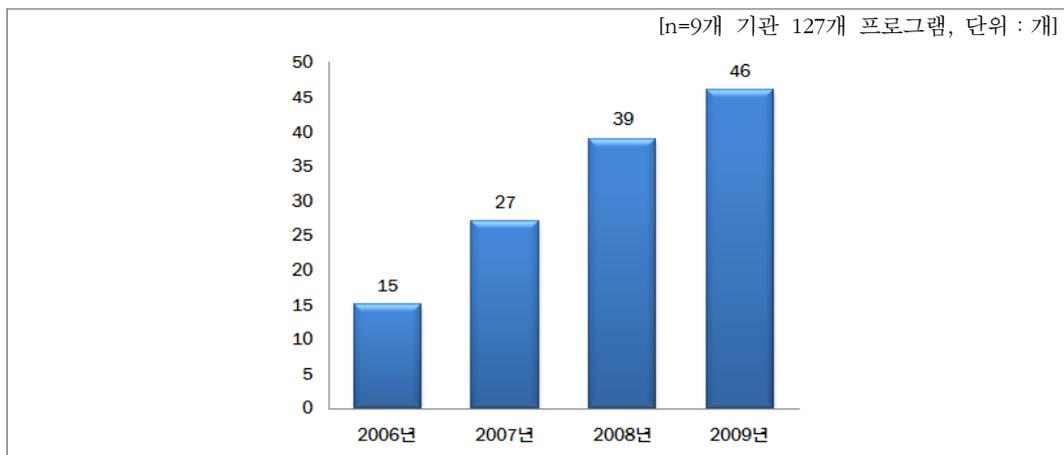


그림 IV-7 일반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참여 시기

한편, 결혼이민여성들이 참여한 일반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의 내용은 결혼이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내용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은 이/미용 관련 프로그램이 21.3%(27개 프로그램)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요리/제과제빵 12.6%(16개 프로그램), 미술/공예 11.8%(15개 프로그램), 양재(의류수선 등) 11.0%(14개 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화(컴퓨터, IT등)와 네일아트가 각각 7.9%(10개 프로그램)이었으며, 홈패션(자수 등)이 6.3%(8개 프로그램), 산후관리사와 간병인, 노인건강관리사 등과 같은 케어복지 관련 프로그램이 5.5%(7개 프로그램)로 나타났다. 한편 기타 프로그램으로는 바리스타, 부동산경매컨설턴트, 호텔룸어텐던트, 플로리스트, 경리실무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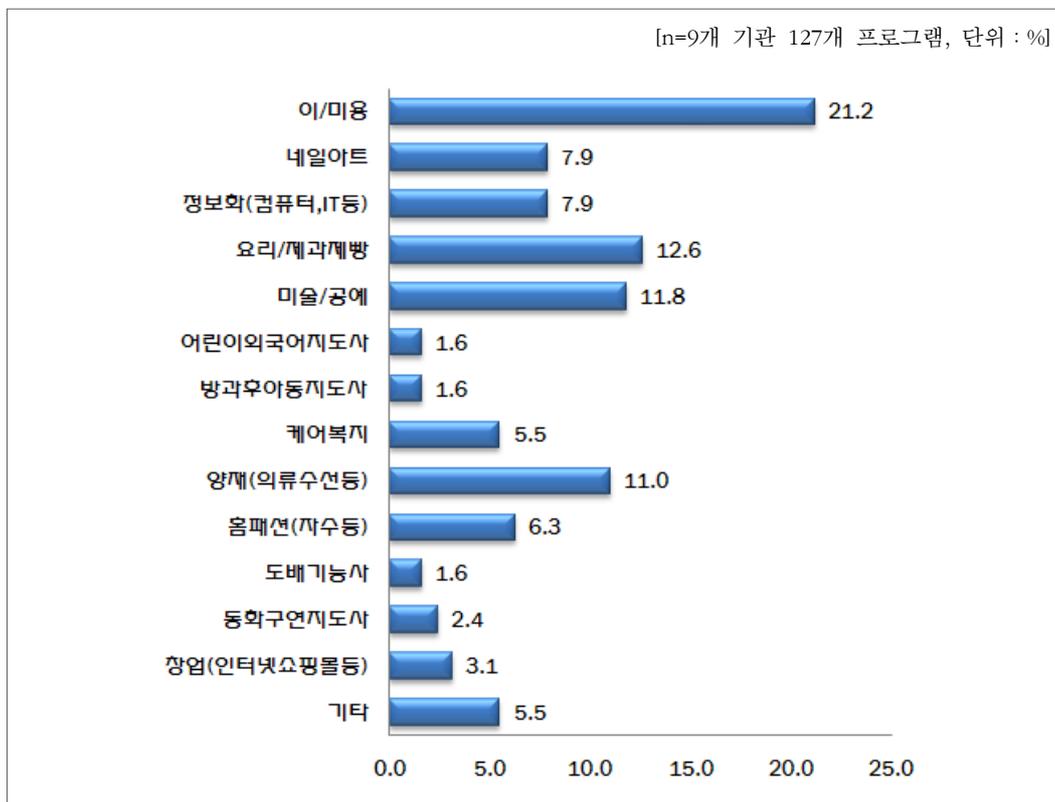
표 IV-13 일반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 내용

[n=9개 기관 127개 프로그램]

구 분	사례수	%
전 체	127	100.0
이/미용	27	21.2
네일아트	10	7.9
정보화(컴퓨터,IT 등)	10	7.9
요리/제과제빵	16	12.6
미술/공예	15	11.8
어린이외국어지도사	2	1.6
방과후아동지도사	2	1.6
케어복지	7	5.5
양재(의류수선 등)	14	11.0
홈패션(자수 등)	8	6.3
도배기능사	2	1.6
동화구연지도사	3	2.4
창업(인터넷쇼핑몰 등)	4	3.1
기타	7	5.5

결혼이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내용과 비교해 보면 보다 기술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이미용, 요리/ 제과제빵, 미술공예, 의

류수선 등과 같이 기술이 강조되는 직업군이 두드러진다. 이는 결혼이민여성들의 특성상 당연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이/미용 등은 자격증시험을 보아야 하는데 결혼이민여성들은 실기는 평균 수준이상이나 필기는 안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여성들과 같이 수업을 들으면 모르는 것을 도와줄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면도 있다. 다만 강의 수준이나 진행속도를 어느 정도로 수위조절을 할 것인가는 하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는 수업받는 사람들의 구성에 따라 다양하게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일반여성들과 같이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결혼이민여성들의 낙오율이 높은 원인을 찾아내 이에 대처하여야 하며, 일반여성들과 수업을 같이 듣는 것이 다문화사회에 대한 상호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그림 IV-8 ■ 일반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 내용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한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이민여성의 수와 취업연계 현황을 알아본 결과, 2006년 이후 운영된 127개의 프로그램(9개 기관)에 참여한 총 인원은 2,498명이었고, 이 가운데 결혼이민여성은 총 151명(6.0%)으로 프로그램 당

평균 1명(1.19명)정도만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또한, 지난 3년간(2006년~2008년)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이민여성의 전체 수료율과 전체 취업률을 살펴보면, 전자의 경우는 총 76명이 수료하여 평균 74.5%의 수료율을 나타낸 반면, 후자의 경우는 단지 15명만이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 평균 19.7%의 낮은 취업률을 나타냈다.

이는 결혼이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의 수료율은 97.6%인데 비해 일반여성들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결혼이민여성들이 참여하는 경우 수료율이 74.5%에 불과해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취업률은 전자가 18.7%이고 후자는 19.7%이므로 일반여성 교육프로그램 수료자들의 취업률인 37.35%의 절반정도에 미치는 수준으로 매우 낮다. 결혼이민여성들의 수료율이 낮은 것은 수업진행 속도가 따라가기 힘든 점이 있고, 일반여성들과 결혼이민여성들과의 소통상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므로 이 수치만으로 결혼이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취업률은 차이는 있으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결혼이민여성들이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일반여성과의 소통과 참여를 같이 하는 것이 다문화사회를 이해하고 진정한 사회적응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본인이 어느 과정에 참여하여 그 과정을 수료하는 것은 결혼이민여성들의 자신감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결혼이민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많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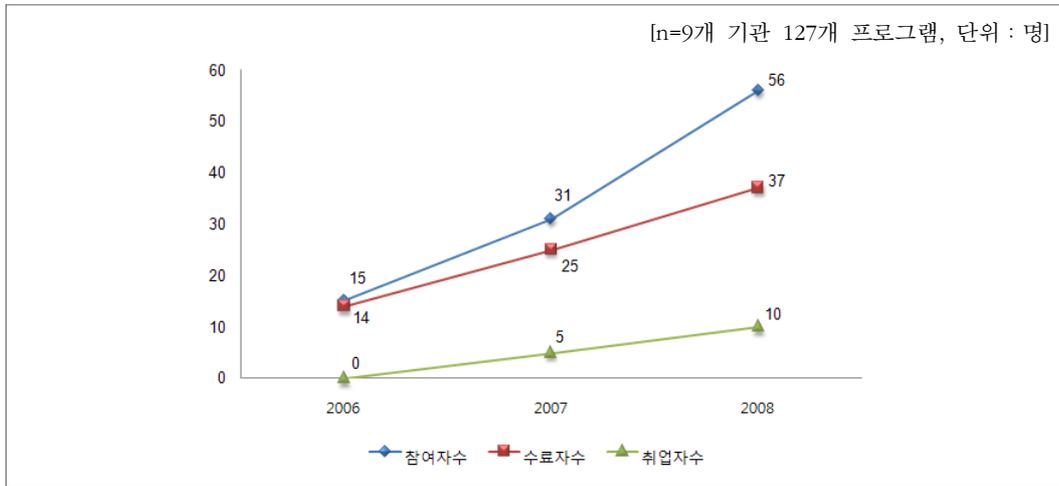
결혼이민여성들의 낮은 취업률은 이들을 위한 적합한 직종개발, 진정한 다문화사회로의 진행정도, 인식변화정도 등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결혼이민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수료율면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으나 교육내용에 따라 일반여성들과 같이 참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취·창업교육프로그램은 결혼이민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일반여성들의 교육프로그램에 결혼이민여성들이 참여시 이들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 이들이 어느 유형의 프로그램이든지 많이 참여하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표 IV-14 】 일반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에의 참여 현황³⁰⁾

[n=9개 기관 127개 프로그램,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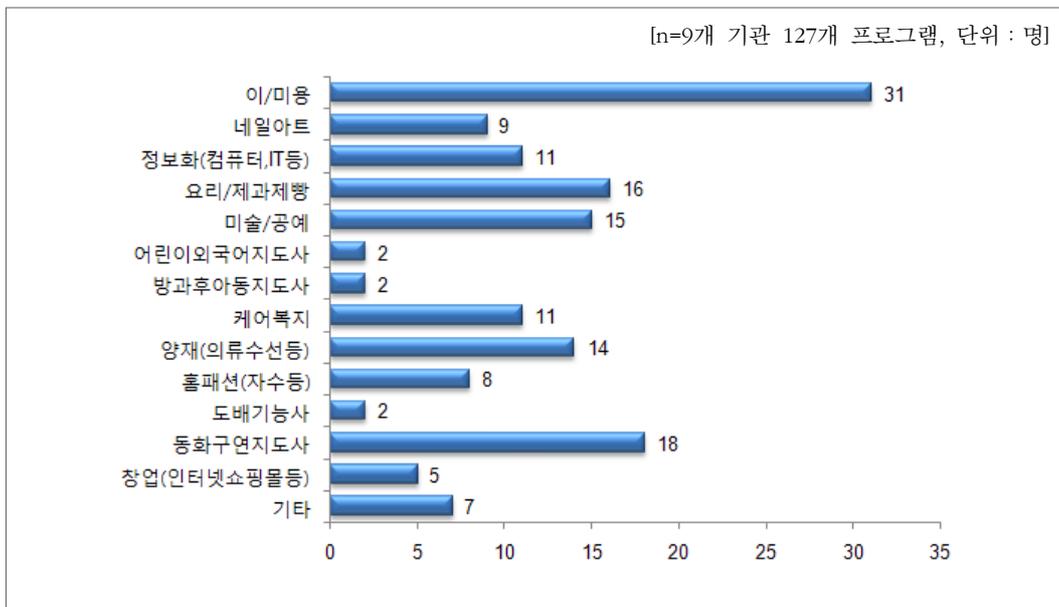
구분	전체		2006			2007			2008			2009		
	참여 자수	%	참여 자수	수료 자수	취업 자수									
전체	151	100.0	15	14	0	31	25	5	56	37	10	49	-	-
이/미용	31	20.5	2	2	0	5	5	1	5	4	0	19	-	-
네일아트	9	6.0	1	1	0	3	3	0	2	2	0	3	-	-
정보화 (컴퓨터,IT등)	11	7.3	2	2	0	5	4	2	2	2	1	2	-	-
요리/제과제빵	16	10.6	2	2	0	2	1	0	7	7	1	5	-	-
미술/공예	15	9.9	4	4	0	2	0	0	6	4	0	3	-	-
어린이 외국어지도사	2	1.3	0	0	0	0	0	0	1	1	0	1	-	-
방과후 아동지도사	2	1.3	0	0	0	1	1	0	0	0	0	1	-	-
케어복지	11	7.3	0	0	0	4	3	0	6	6	4	1	-	-
양재 (의류수선등)	14	9.3	2	2	0	2	1	0	4	4	0	6	-	-
홈패션 (자수등)	8	5.3	0	0	0	1	1	0	4	4	2	3	-	-
도배기능사	2	1.3	0	0	0	2	2	2	0	0	0	0	-	-
동화구연 지도사	18	11.9	1	1	0	1	1	0	16	2	2	0	-	-
창업(인터넷 쇼핑몰등)	5	3.3	0	0	0	2	2	0	0	0	0	3	-	-
기타	7	4.6	1	0	0	1	1	0	3	1	0	2	-	-

30)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한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의 참여자 가운데 결혼이민자만을 기준으로 참여자수, 수료자수, 취업자수를 재구성함.



■ 그림 IV-9 ■ 연도별 일반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에의 참여 현황

이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이/미용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이민자수가 31명(20.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동화구연지도사 18명(11.9%), 요리/제과제빵 16명(10.6%), 미술/공예 15명(9.9%), 양재(의류수선 등) 14명(9.3%) 순으로 나타나 결혼이민여성의 참여도에 따른 직종별 선호와 수요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그림 IV-10 ■ 직종별 일반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현황(참여자수)

나.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1) 결혼이민여성 대상 지원프로그램 경험

가) 프로그램 운영 시 애로사항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12개 기관의 사업담당자들에게 해당 프로그램 운영 시 가장 어려웠던 점 2가지를 우선순위대로 선택하게 하였다. 그 결과, 1순위로는 ‘프로그램에 참가할만한 결혼이민여성의 모집’이 어려웠다는 응답이 33.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프로그램을 운영할만한 공간의 확보’가 어려웠다는 응답이 16.7%로 나타나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지원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 점이 드러났다. 한편, 2순위로는 ‘취업 가능한 수요처 및 창업 아이템 발굴’이 어려웠다는 응답이 25.0%로 가장 많았으며, ‘프로그램에 참가할만한 결혼이민여성의 모집’과 ‘결혼이민여성의 학습의욕과 직업의식 고취’가 어려웠다는 응답이 각각 16.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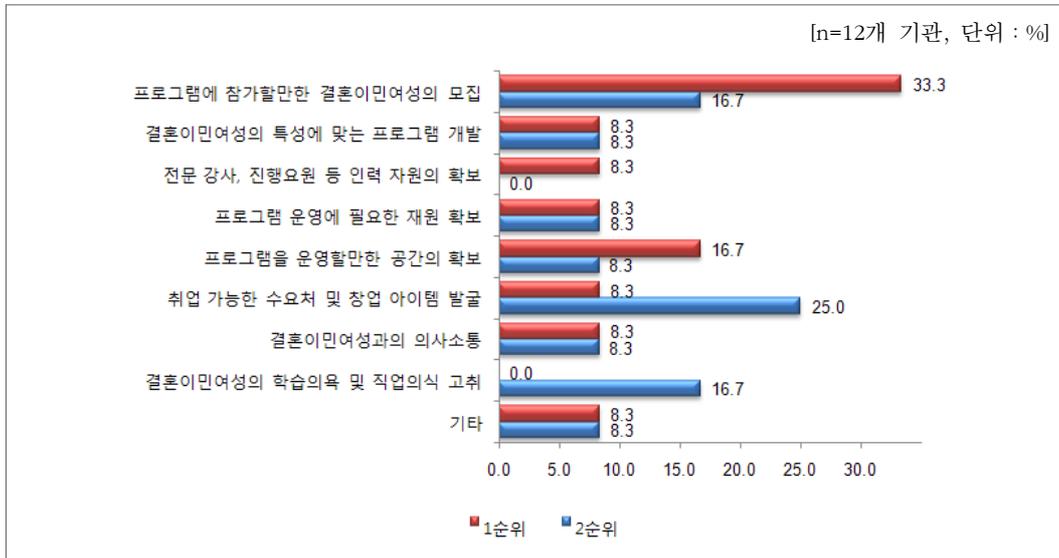
이를 종합해 보면(1순위+2순위),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사업담당자들이 가장 어려웠던 점은 ‘결혼이민여성의 모집(50.0%)’과 ‘취업처 및 창업아이템 발굴(33.3%)’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서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이 결혼이민여성들을 직접 대면하는 기관과 취·창업교육에 대한 경험이 많은 여성인력개발기관, 이들을 취·창업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기업, 소상공인지원센터, 고용지원센터 등 많은 기관들의 긴밀한 연계나 컨소시엄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되며 결혼이민여성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체 발굴이 중요하므로 공·사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 표 IV-15 ■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시 애로사항(1, 2순위)

[n=12개 기관]

구 분	1순위		2순위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2	100.0	12	100.0
프로그램에 참가할만한 결혼이민여성의 모집	4	33.3	2	16.7
결혼이민여성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1	8.3	1	8.3
전문 강사, 진행요원 등 인력 자원의 확보	1	8.3	0	0.0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원 확보	1	8.3	1	8.3
프로그램을 운영할만한 공간의 확보	2	16.7	1	8.3
취업 가능한 수요처 및 창업 아이템 발굴	1	8.3	3	25.0
결혼이민여성과의 의사소통	1	8.3	1	8.3
결혼이민여성의 학습의욕 및 직업의식 고취	0	0.0	2	16.7
기타	1	8.3	1	8.3



■ 그림 IV-11 ■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시 애로사항(1, 2순위)

나) 참여 결혼이민여성의 애로사항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이민여성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 우선 순위별로 조사했다. 그 결과, 사업담당자가 인지한 결혼이민여성의 애로사항 1순위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33.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내용의 난이도’ 25.0%, ‘수강료 등 비용 부담’ 16.7%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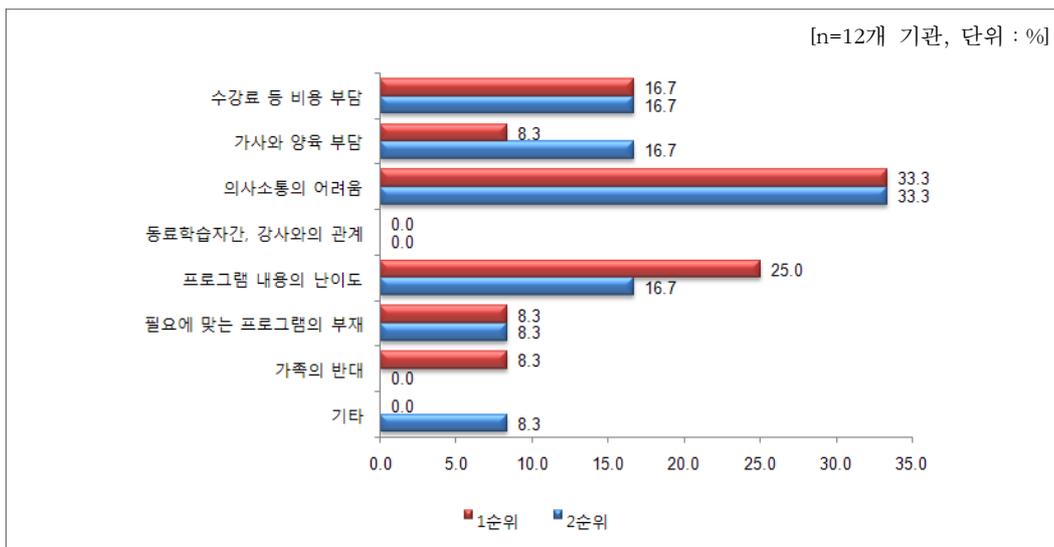
이는 2순위 응답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 결국 이를 종합해 보면(1순위+2순위), ‘의사소통의 어려움’(66.6%)과 ‘프로그램 내용의 난이도’(41.7%)와 같은 언어상의 문제가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이민여성들에게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표 IV-16 】 참여 결혼이민여성의 애로사항(1, 2순위)

[n=12개 기관]

구 분	1순위		2순위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2	100.0	12	100.0
수강료 등 비용 부담	2	16.7	2	16.7
가사와 양육 부담	1	8.3	2	16.7
의사소통의 어려움	4	33.3	4	33.3
동료학습자간, 강사와의 관계	0	0.0	0	0.0
프로그램 내용의 난이도	3	25.0	2	16.7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의 부재	1	8.3	1	8.3
가족의 반대	1	8.3	0	0.0
기타	0	0.0	1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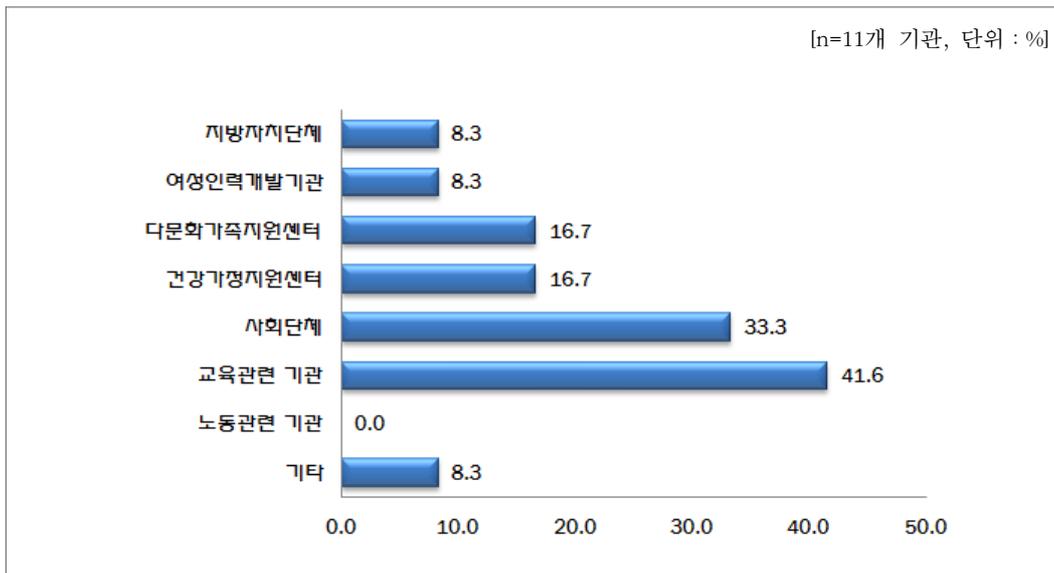
더불어, 일반적으로 열악한 경제상황에 처해 있고 가사와 양육을 주로 책임져야 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의 특성상 ‘수강료 등 비용 부담’(33.4%)과 ‘가사와 양육의 부담’(25.0%)이 클 수밖에 없으며, 이 역시 결혼이민여성들이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들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보육문제를 공식적인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언어미숙으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한국어교육 실시, 수강료가 무료인 경우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결혼이민여성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다양한 방안 모색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 그림 IV-12 】 참여 결혼이민여성의 애로사항(1, 2순위)

다) 타 기관과의 협력 경험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12개 기관의 사업 담당자들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다른 기관과 협력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관들과 연계를 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1개 기관(8.3%)을 제외하고는 11개 기관(91.7%)에서 협력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협력기관으로는 교육 관련 기관(학교, 지방교육청, 평생학습센터, 도서관 등)이 41.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단체(사회복지관, NGO, 종교단체 등)가 33.3%,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각각 16.7%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지원센터나 취업정보센터 등과 같은 노동 관련 기관과 협력한 경우는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전문적인 교육기능을 담당하는 지역 기관과 지역 차원의 종합복지기관인 사회복지관, 사회·종교단체 등과의 협력은 향후 지역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림 IV-13 ■ 타 기관과의 협력 경험(복수응답)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교육, 취업알선 등)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했지만 그것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그 결과, 1순위로는 ‘협력할만한 기관의 정보가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33.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관 자체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도 바빠서’라는 응답과 ‘지역 내 비전이나 사업목표를 공유할만한 기관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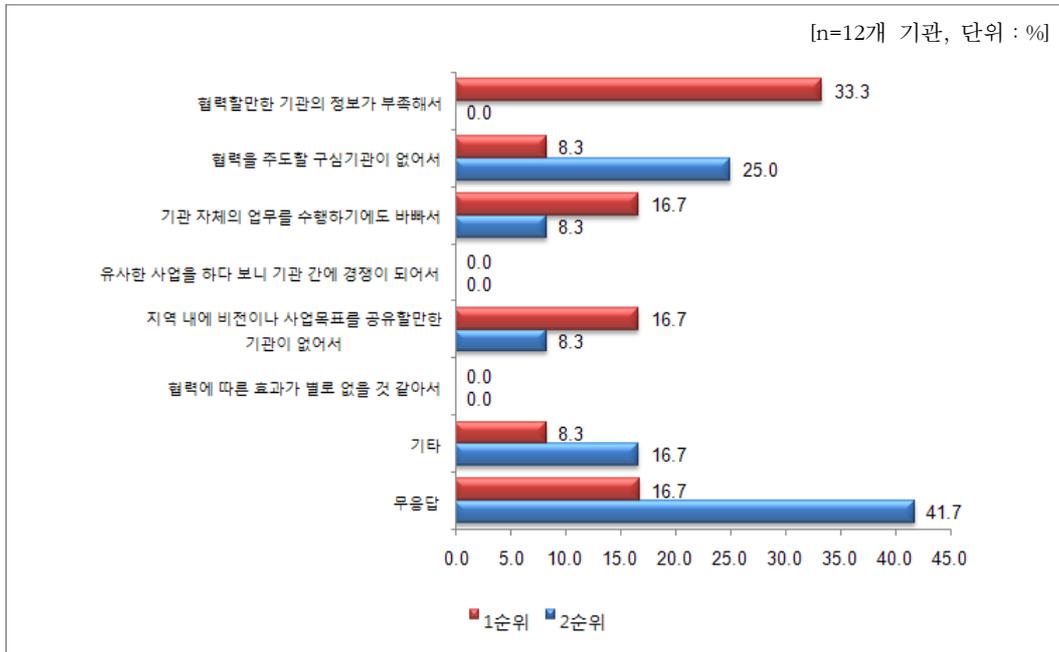
각각 16.7%로 나타났다. 2순위로는 무응답(41.7%)을 제외하고 ‘협력을 주도할 구심기관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25.0%로 가장 많았다. 결국, 기관 차원의 자원이나 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서비스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필요한 만큼 그것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관 자체 업무에 대한 부담과 개별사업 차원의 협력에만 집중하는 기관 내부의 한계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 체계적인 방향으로 협력을 추진하거나 주도할만한 거점기관 내지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는 기관의 외부적 한계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 표 IV-17 ■ 타 기관과 협력 시 애로사항(1, 2순위)

[n=12개 기관]

구 분	1순위		2순위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12	100.0	12	100.0
협력할만한 기관의 정보가 부족해서	4	33.3	0	0.0
협력을 주도할 구심기관이 없어서	1	8.3	3	25.0
기관 자체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도 바빠서	2	16.7	1	8.3
유사한 사업을 하다 보니 기관 간에 경쟁이 되어서	0	0.0	0	0.0
지역 내 비전이나 사업목표를 공유할만한 기관이 없어서	2	16.7	1	8.3
협력에 따른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0	0.0	0	0.0
기타	1	8.3	2	16.7
무응답	2	16.7	5	41.7

이를 종합해 보면 타 기관과의 협력 시 애로운 사항은 ‘협력할 만한 기관의 정보가 부족해서’, ‘협력을 주도할 구심기관이 없어서’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여성인력개발기관 등을 구심점으로 한 연계방안 모색이나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컨소시엄 형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 그림 IV-14 ■ 타 기관과 협력 시 애로사항(1, 2순위)

2) 일반여성 대상 지원프로그램 경험

가) 참여 결혼이민여성의 애로사항

일반여성 대상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이민여성들의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에 결혼이민여성이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9개 기관의 사업담당자들에게 그들이 인지한 결혼이민여성의 애로사항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1순위로는 ‘가사와 양육 부담’이라는 응답이 33.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수강료 등 비용 부담’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각각 22.2%로 나타났다. 그리고 2순위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동료학습자간, 강사와의 관계’라는 응답이 각각 33.3%로 많았고,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의 부재’라는 응답이 22.2%로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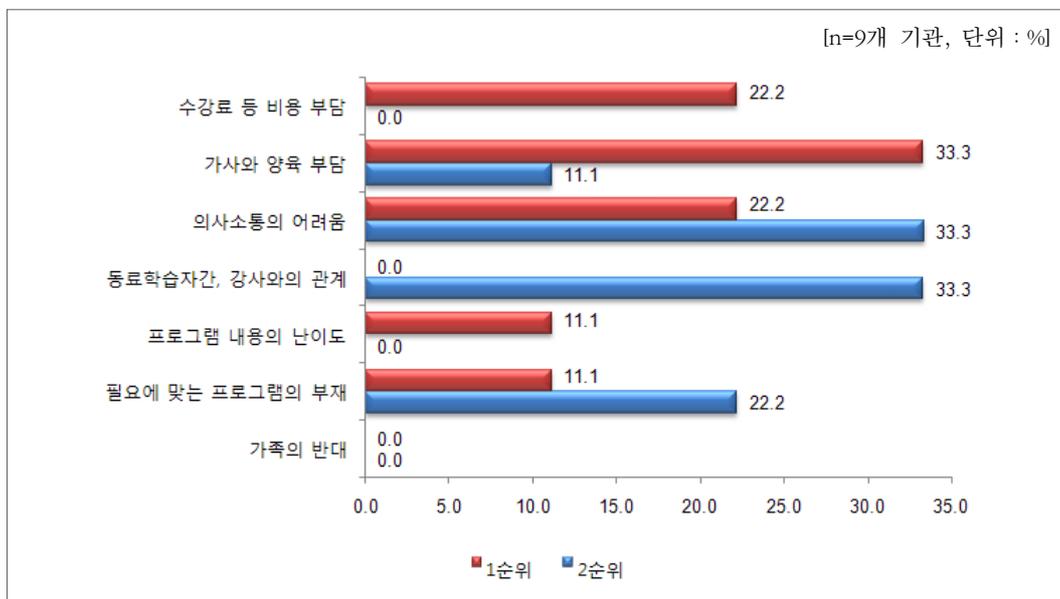
이를 종합해 보면(1순위+2순위), 역시 언어상의 문제인 ‘의사소통의 어려움’(55.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가사와 양육 부담’(44.4%)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교육에선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율을 보였던 ‘동료학습자간, 강사와의 관계(0.0%)’와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의 부재(16.6%)’라는 응답이 일반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의 경우에서는 각각 33.3%로 큰 비중을 차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결혼이민여성 대상 프로그램에서 ‘가족의 반대’

가 8.8%였는데 일반여성 대상 취·창업교육에서는 전혀 없어 강의를 듣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유형이 다른 것으로 분석된다. 즉 결혼이민여성대상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여성들은 입국한지 얼마 안 되는 여성들이며 일반여성 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 되어 어느 정도 한국어에 자신도 있는 여성들이라고 분석된다.

【 표 IV-18 】 참여 결혼이민여성의 애로사항(1, 2순위)

[n=9개 기관]

구 분	1순위		2순위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9	100.0	9	100.0
수강료 등 비용 부담	2	22.2	0	0.0
가사와 양육 부담	3	33.3	1	11.1
의사소통의 어려움	2	22.2	3	33.3
동료학습자간, 강사와의 관계	0	0.0	3	33.3
프로그램 내용의 난이도	1	11.1	0	0.0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의 부재	1	11.1	2	22.2
가족의 반대	0	0.0	0	0.0



【 그림 IV-15 】 참여 결혼이민여성의 애로사항(1, 2순위)

나)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이 없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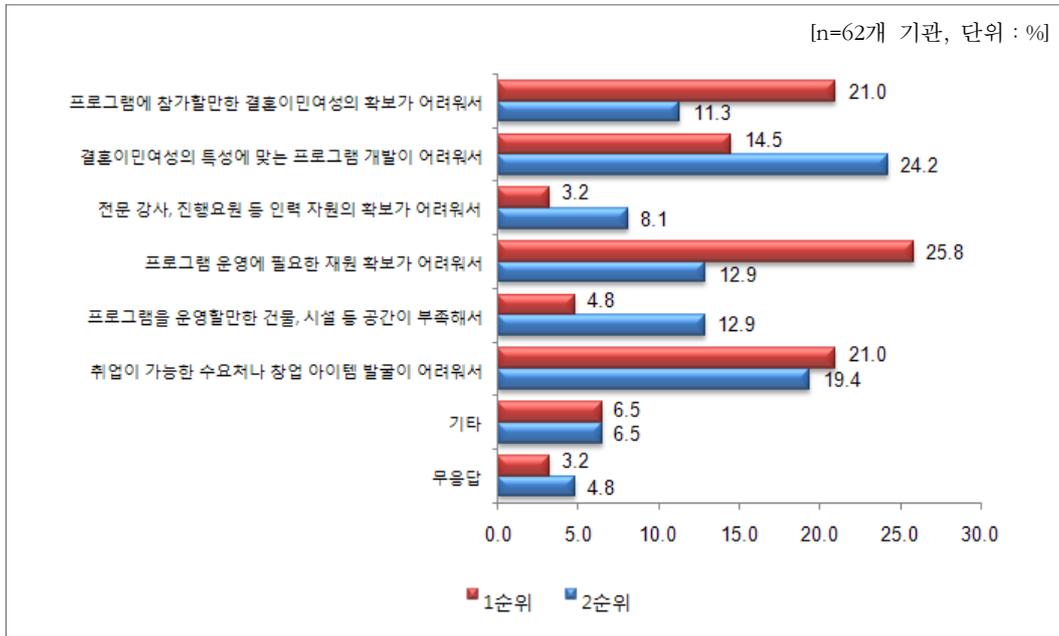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없는 62개 기관의 사업담당자들에게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이 없는 이유를 알아본 결과, 1순위로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원 확보가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25.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프로그램에 참가할만한 결혼이민여성의 확보가 어려워서’라는 응답과 ‘취업이 가능한 수요처나 창업 아이템 발굴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각각 21.0%로 나타났다. 2순위로는 ‘결혼이민여성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24.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취업이 가능한 수요처나 창업 아이템 발굴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19.4%로 나타났다.

표 IV-19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이 없는 이유(1, 2순위)

[n=62개 기관]

구 분	1순위		2순위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62	100.0	62	100.0
프로그램에 참가할만한 결혼이민여성의 확보가 어려워서	13	21.0	7	11.3
결혼이민여성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어려워서	9	14.5	15	24.2
전문 강사, 진행요원 등 인력 자원의 확보가 어려워서	2	3.2	5	8.1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원 확보가 어려워서	16	25.8	8	12.9
프로그램을 운영할만한 건물, 시설 등 공간이 부족해서	3	4.8	8	12.9
취업이 가능한 수요처나 창업 아이템 발굴이 어려워서	13	21.0	12	19.4
기타	4	6.5	4	6.5
무응답	2	3.2	3	4.8

이를 종합해 보면(1순위+2순위), ‘취업이 가능한 수요처나 창업 아이템 발굴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40.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결혼이민여성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어려워서’라는 응답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원 확보가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각각 38.7%,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가할만한 결혼이민여성의 확보가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32.3%로 나타나,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자원의 부족은 물론 결혼이민여성의 모집,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취업처 및 창업 아이템의 발굴 등에 기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V-16】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이 없는 이유(1, 2순위)

다) 향후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계획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없는 62개 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결혼이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한 경우는 35.5%에 불과했으며, 대부분(64.5%)은 운영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운영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지방자치단체에서 70.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66.7%, 여성인력개발기관 60.0%, 사회단체 및 학교 58.3%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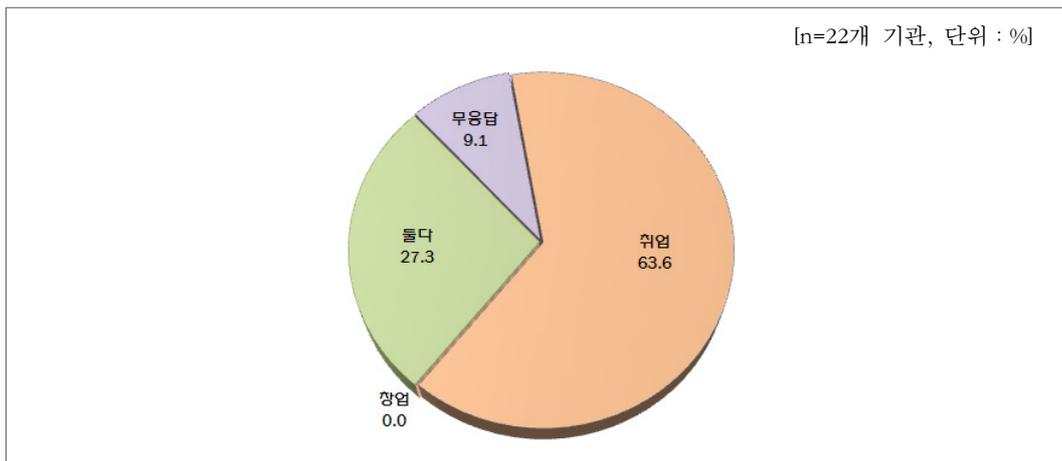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업담당자가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의 실시 가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리자급 이상의 직책인 것을 감안할 때, 사회적 요구와 정책적 결단, 제반 여건의 충족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러한 입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향후 결혼이민여성 대상 경제활동 지원사업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표 IV-20】 기관유형별 향후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계획

[n=62개 기관]

구 분	사례수	계획이 있다		계획이 없다	
		빈도	%	빈도	%
전 체	62	22	35.5	40	64.5
지방자치단체	20	6	30.0	14	70.0
여성인력개발기관	15	6	40.0	9	60.0
건강가정지원센터	15	5	33.3	10	66.7
사회단체 및 학교	12	5	41.7	7	58.3

한편,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22개 기관의 프로그램 운영 분야를 분석한 결과, 취업 관련 프로그램만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63.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취업과 창업 모두 운영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27.3%, 창업 관련 프로그램만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부분은 취업에 비해 인적자본, 기술, 실무경험, 자금력, 사회적응력 등 모든 면에서 아직은 불리한 조건을 가진 결혼이민여성들이 도전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결혼이민여성들의 심층면접결과를 분석한 결과 창업에 대한 욕구도도 매우 높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나 법제도정비, 지원체계 시스템 구축은 필요하다.



【그림 IV-17】 향후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분야

3)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 요구도

가) 프로그램 실시에 필요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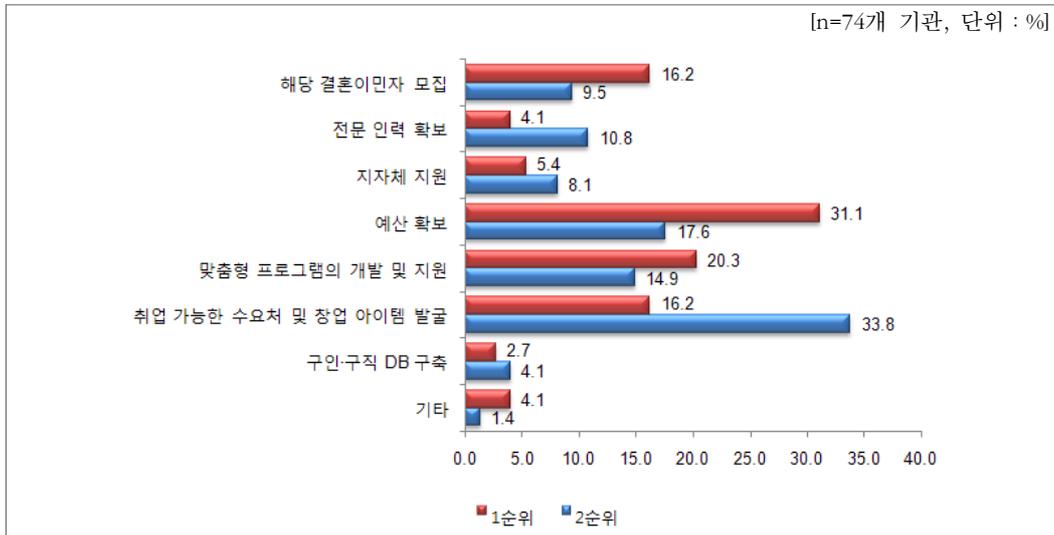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74개 기관의 사업담당자에게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혹은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필요한 지원 1순위로는 ‘예산 확보’가 31.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20.3%, ‘결혼이민자 모집과 취업 가능한 수요처 및 창업 아이템 발굴’이 각각 16.2%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로는 ‘취업 가능한 수요처 및 창업 아이템 발굴’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3.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역시 ‘예산 확보’가 17.6%,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14.9% 순으로 나타났다.

■ 표 IV-21 ■ 프로그램 실시(또는 강화)에 필요한 지원(1, 2순위)

[n=74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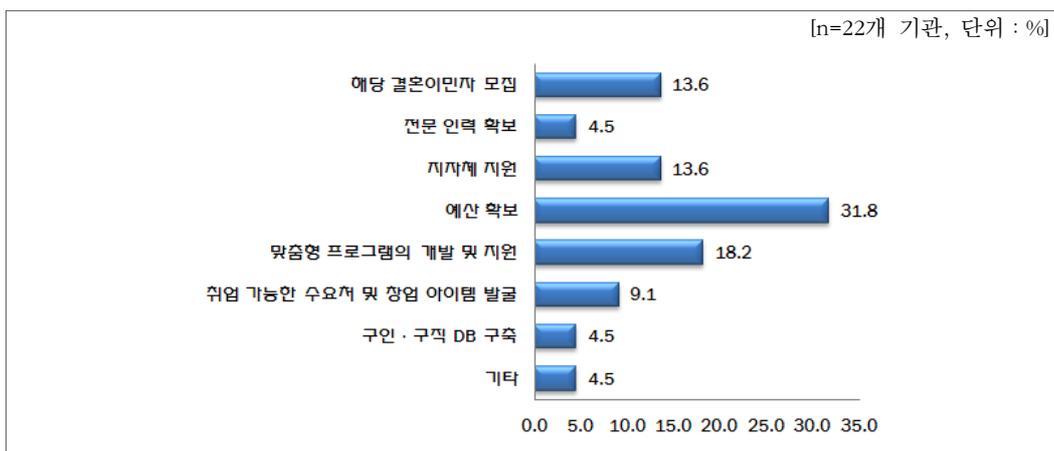
구 분	1순위		2순위	
	사례수	%	사례수	%
전 체	74	100.0	74	100.0
해당 결혼이민자 모집	12	16.2	7	9.5
전문 인력 확보	3	4.1	8	10.8
지자체 지원	4	5.4	6	8.1
예산 확보	23	31.1	13	17.6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15	20.3	11	14.9
취업 가능한 수요처 및 창업 아이템 발굴	12	16.2	25	33.8
구인·구직 DB 구축	2	2.7	3	4.1
기타	3	4.1	1	1.4

이를 종합해 보면(1순위+2순위),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전개하는 기관들이 ‘예산 확보’(48.7%)은 물론 ‘취업 가능한 수요처 및 창업 아이템 발굴’(50.0%),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35.2%)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그림 IV-18 ■ 프로그램 실시에 필요한 지원(1, 2순위)

한편, 향후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22개 기관의 욕구도와 교차 분석해 보면(1순위), 역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1.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18.2%), ‘결혼이민자 모집과 지자체 지원’(13.6%)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지원이 향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기관들에게 시급히 충족되어야 할 과제이며, 특히 예산 확보와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결혼이민자 모집 등의 경우는 프로그램 추진 여부에 관계없이 기관들에게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림 IV-19 ■ 향후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필요 지원(1순위)

나) 프로그램 추진 시 거점기관

결혼이민여성 대상 경제활동 프로그램을 추진함에 있어 주축 또는 거점이 되어야 할 기관이 있다면 어느 곳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거점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29.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지자체 산하기관 24.3%, 컨소시엄 방식에 따른 기관 14.9%, 고용지원센터나 취업정보센터와 같은 노동관련 기관 12.2%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네트워크 거점기관으로서 가능성이 높은 기관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관이므로 타 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비교적 높고 공동사업 추진 경험도 비교적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표 IV-22 프로그램 추진 시 주축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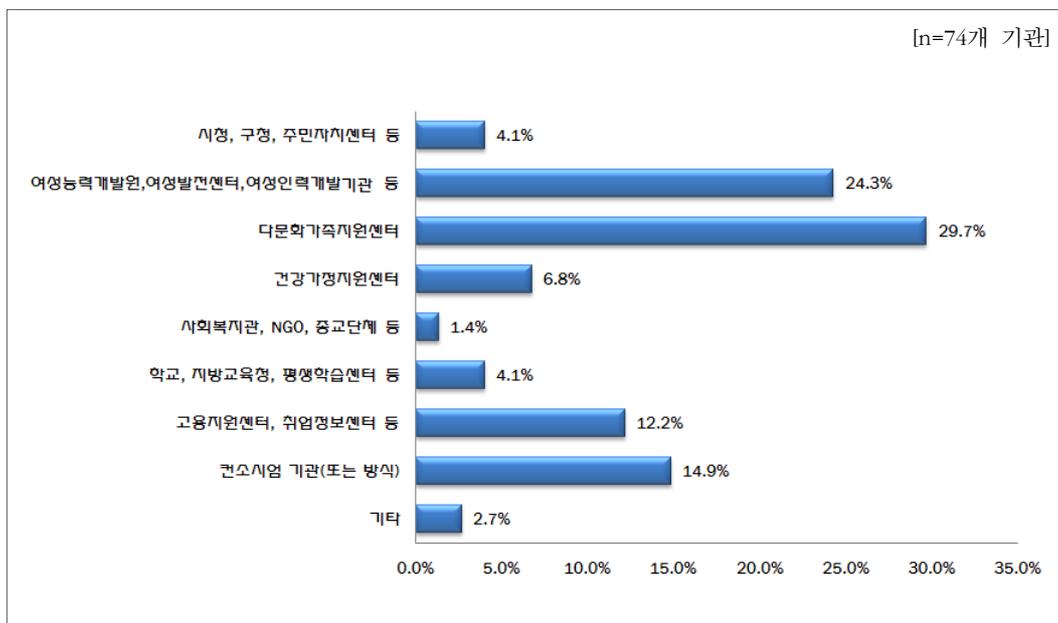
[n=74개 기관]

구 분	사례수	%
전 체	74	100.0
시청, 구청, 주민자치센터 등 지자체	3	4.1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지자체 산하기관	18	24.3
보건복지가족부 지정(또는 지자체 자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2	29.7
정부 및 지자체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5	6.8
사회복지관, NGO, 종교단체 등 사회단체	1	1.4
학교, 지방교육청, 평생학습센터 등 교육관련 기관	3	4.1
고용지원센터, 취업정보센터 등 노동관련 기관	9	12.2
상기 기관들의 연계를 통한 컨소시엄 기관(또는 방식)	11	14.9
기타	2	2.7

실제로 본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도 거의 모든 다문화가족지원센터(80.0%)는 다른 기관과 협력한 적이 있으며, 또 여성인력개발기관은 물론 건강가정지원센터, 정보도서관, 기업체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지자체 산하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경우

도 거점기관으로서 비교적 높은 지지를 얻었는데, 이는 타 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 뿐 아니라, 예산 확보 및 여성 친화적 취업프로그램 개발, 취업연계 측면에서 타 기관들보다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러한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컨소시엄 형태도 높게 나타나 어느 방식을 취하든 이들 기관들 간의 연계가 필요하고 보장되어야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창업을 효과적으로 지원 가능할 것이다.



■ 그림 IV-20 ■ 프로그램 추진 시 거점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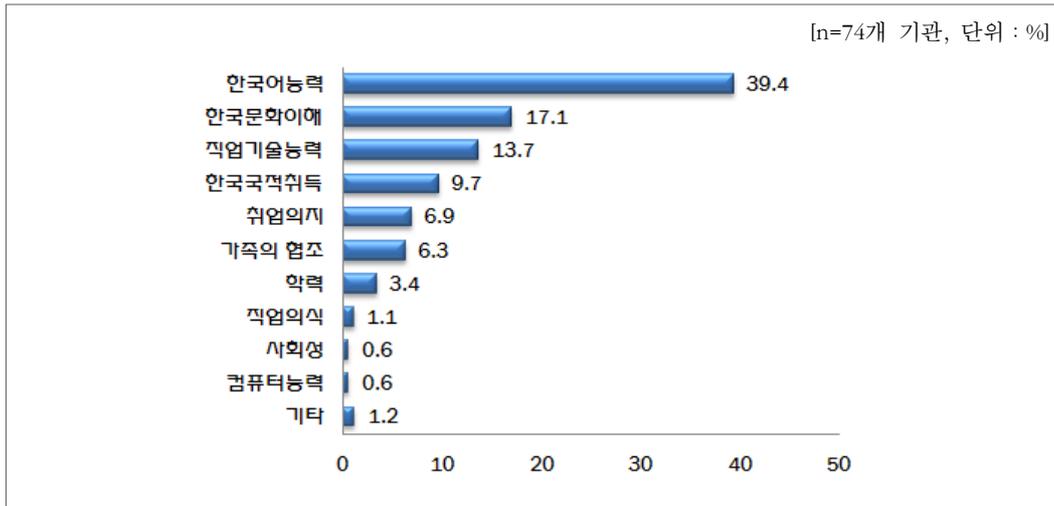
4)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 성공을 위한 요소

가) 프로그램 참여 시 필요한 기초 소양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74개 기관의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결혼이민여성이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갖추었으면 하는 태도나 자격, 기초 지식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자유응답식으로 물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응답이 39.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국문화 이해’ 17.1%, ‘직업기술능력’ 13.7%, ‘한국국적 취득’ 9.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의지가 강해야 한다’는 응답이 6.9%이었으며, ‘가족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6.3%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국어능력의 경우는 결혼이민여성이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 프로그램 내용이나 강사의 강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취업이나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의 특성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취업처 모두 한국어능력이 일정수준에 달한 결혼이민여성을 선호하는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 그림 IV-21 ■ 프로그램 참여 시 필요한 기초 소양(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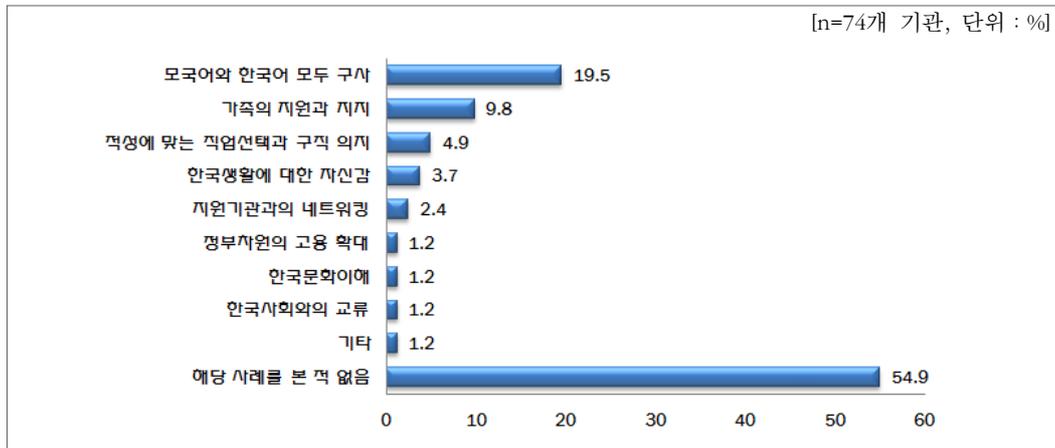
나)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 성공요인

한편, 74개 기관의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결혼이민여성이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사례를 주변에서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주요 성공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자유응답식으로 물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54.9%가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 성공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해 우리 사회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업이나 창업이 얼마나 어려운 현실인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창업 특히 결혼이민여성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개인 창업을 경우는 실제로 본 설문조사와 기관종사자 및 결혼이민여성 면접조사 시 단 하나의 성공사례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설령 창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라도 양육과 가사문제 등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만이 몇몇 발견됐을 뿐이다.

반면 결혼이민여성이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사례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5.1%로, 그 성공요인을 ‘모국어와 한국어 모두 구사’(19.5%), ‘가족의 지원과 지지’(9.8%), ‘적성에 맞는 직업선택과 구직 의사’(4.9%), ‘한국생활에 대한 자신감’(3.7%), ‘지원기관과의 네트워킹’(2.4%) 등으로 꼽았다. 결국 향후 이러한 제반 요소들이 갖추어졌을 때 결혼이민여성들이 우리사회에서 경제적 주체로서 제 역할과 역량을 발

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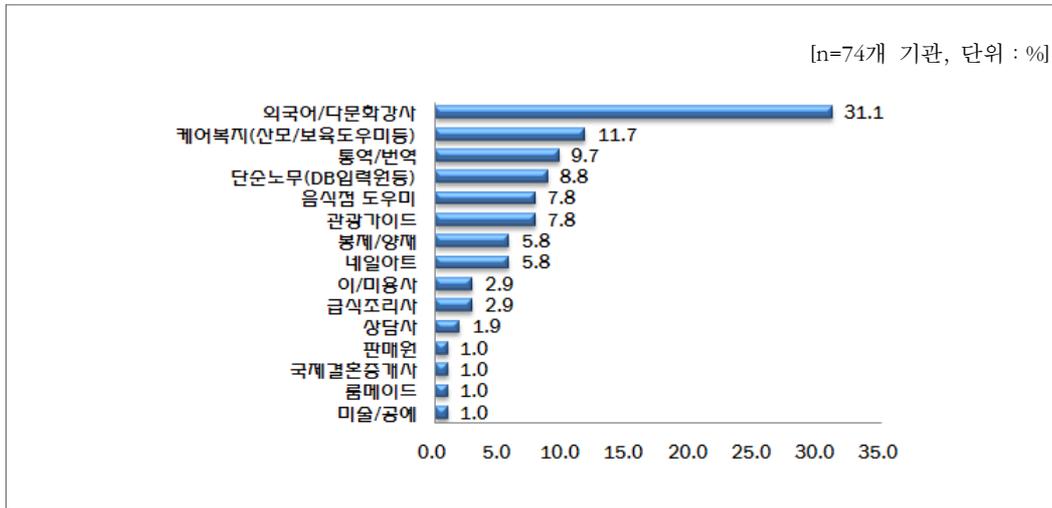


■ 그림 IV-22 ■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 성공요인(복수응답)

5) 적합 직종 및 창업 아이템

결혼이민여성들이 현재 취업 가능한 적합 직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외국어 및 다문화 강사’가 31.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산모도우미나 보육도우미와 같은 케어복지 관련 직종’이 11.7%, ‘통역/번역’ 9.7%, ‘DB입력원 등과 같은 단순노무직’ 8.8%, ‘음식점 도우미와 관광가이드’가 각각 7.8%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외국어 및 다문화강사의 경우는 해당 직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이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전개 중인 기관들을 중심으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결혼이민여성들의 모국어실력과 모국문화 지식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 적합 직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IV-24]에서 나타난 결혼이민여성의 미래 유망직종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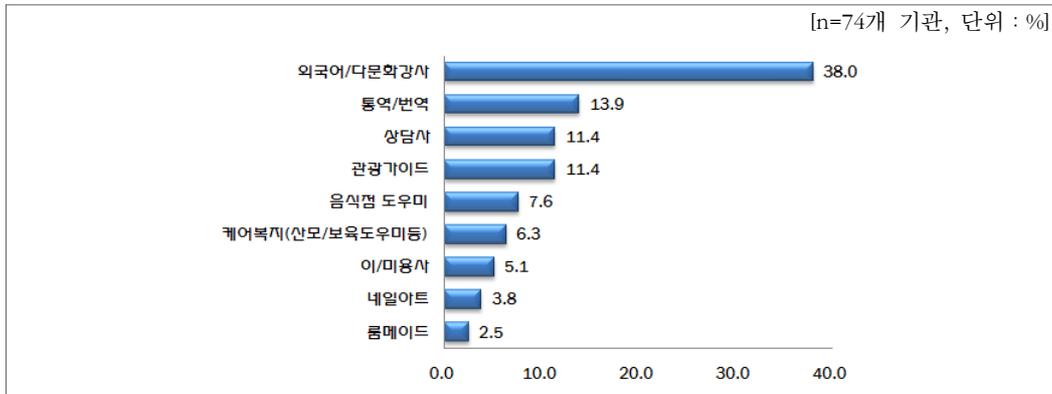
한편, 결혼이민여성들의 모국어실력을 활용할 수 있고 취업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통역/번역과 관광가이드가 적합 직종으로 추천된 반면, 케어복지 관련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음식점 도우미, 봉제/양재, 네일아트, 이/미용사, 급식조리사 등은 비교적 취업준비 기간이 짧고, 한국어 활용 비중이 낮은 편이며 여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종이라는 측면에서 추천되었다.



■ 그림 IV-23 ■ 현재 취업 가능한 적합 직종(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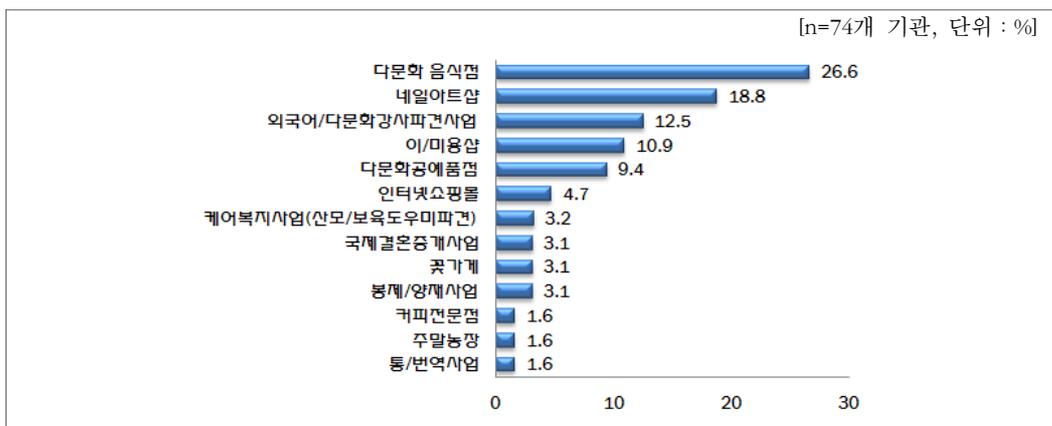
향후 결혼이민여성에게 유망한 직종으로는 역시 ‘외국어/다문화강사’가 38.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통역/번역’ 13.9%, ‘상담사’ 11.4%, ‘관광가이드’ 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현재 추천 직종과 비교 고찰해 보면, 전문직종이 높은 순위로, 노동 강도가 심한 직종은 낮은 순위로 바뀌는 등 직종 간 순위 변화만 있을 뿐, 직업 종류 면에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결혼이민여성의 적합 직종과 그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새로운 직종의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현재는 물론 향후 일정기간 동안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앞선 설문 결과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관들이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취·창업 아이템 발굴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에 기인한 제한된 직종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들이 현재 진출 가능한 직종은 발전 가능한 유망직종으로 활성화하는 한편, 결혼이민여성들이 자유롭고 다양한 선택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유망직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 그림 IV-24 ■ 향후 취업 가능한 유망직종(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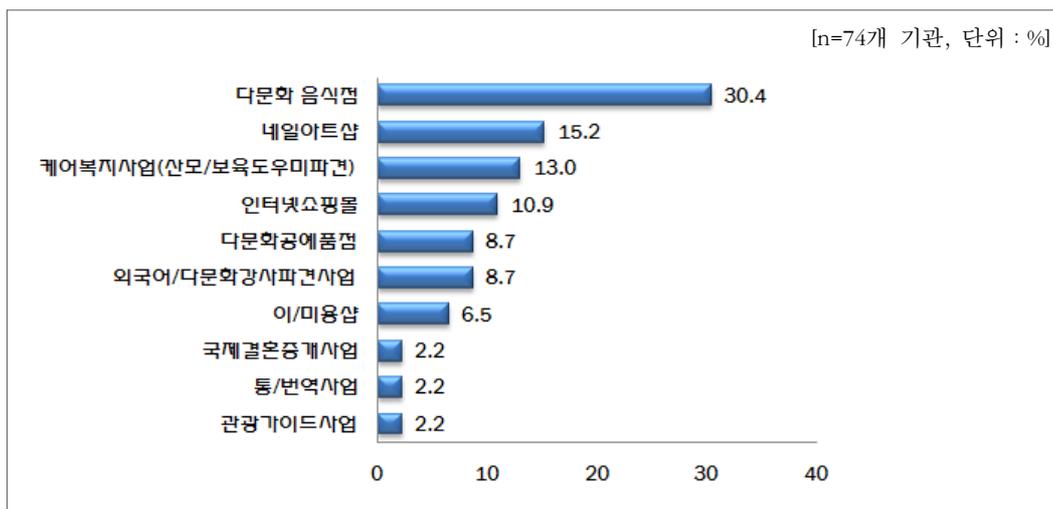
한편, 결혼이민여성들이 현재 창업 가능한 아이템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유응답식으로 알아보았다. 그 결과, ‘다문화음식점’이 26.6%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네일아트샵’ 18.8%, ‘외국어/다문화강사 파견사업’ 12.5%, ‘이/미용샵’ 10.9%, ‘다문화공예품점’ 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다문화음식점과 다문화공예품점, 외국어/다문화강사 파견사업 등은 모국어와 모국어문화를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 창업 가능한 아이템으로 추천되었다. 또한, 네일아트샵과 이/미용샵, 인터넷쇼핑몰 등은 비교적 창업자본이 크지 않아도 되고 기술부분이 중요시 되는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추천되었다. 인터넷쇼핑몰의 경우는 결혼이민여성의 모국에서 비교적 인기가 있는 한국 제품을 모국 현지에서 수출하는 한편, 모국의 제품은 한국에 역수출이 가능하고,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한국어 활용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낮다는 측면에서 추천되기도 하였다.



■ 그림 IV-25 ■ 현재 창업 가능한 아이템(복수응답)

향후 결혼이민여성에게 유망한 창업 아이템으로는 역시 ‘다문화음식점’이 30.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네일아트샵’ 15.2%, ‘케어복지사업’(산모/보육도우미파견) 13.0%, 인터넷쇼핑몰 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공예품점과 외국어/다문화강사 파견사업’은 각각 8.7%로 그 뒤를 이었다.

현재 추천 창업아이템과 비교해 볼 때, 이 역시 창업 종류 면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창업이 취업보다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이 많고, 개인적 사업 역량과 경험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여건 등에 따른 변수와 영향도 큰 만큼 결혼이민여성이 창업을 할 경우 한국어 활용과 자본 확보는 물론 사업적 역량과 사회·경제 관련 정보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들은 취업에 치중된 현재의 지원시스템에서 한걸음 나아가 결혼이민여성에게 적합한 창업아이템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 그림 IV-26 ■ 향후 창업 가능한 아이템(복수응답)

제2절 결혼이민여성 취·창업교육 경험과 진단

1. 인터뷰 조사 개요

가. 조사개요

본 연구는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 및 장애요인, 취업욕구, 취업 시 경로 및 근무조건, 직종 선택배경, 적합 직종 및 그 추천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취·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사회적 기업 등³¹⁾에서 취·창업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들로서 실무담당자들이 본연구의 취지에 맞는 여성들을 추천하여 선정하는 스노우볼(snowball sampling) 형식을 채택했다. 인터뷰 내용은 선행연구 검토와 관련기관 담당자 설문조사를 근거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 표 IV-23 ■ 인터뷰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취·창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서울시 거주 결혼이민여성
규모	결혼이민여성 20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사전 설문조사 후, 직종중심의 인터뷰 조사
조사내용	<p>[공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사회학적 특성 : 나이, 출신국가, 거주기간, 한국어 수준, 국적취득여부, 최종학력, 현재 직업 (출신국 직업), 자격증 유무 <p>[경제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일반현황 : 프로그램명(유형), 참여기간, 참여 경로, 프로그램 내용 - 프로그램 참여 경험 : 해당 프로그램 선택 동기, 프로그램 참여 시 장애요인, 프로그램의 문제점, 한국인과의 교육 경험, 필요한 지원 - 취업자 근무환경 : 취업처, 고용형태, 근무시간, 임금, 4대 보험 적용여부, 취업경로 및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과거 취업경험 포함), 필요한 지원 - 적합 직종 및 창업 아이템 : 우선 취업 가능한 직종, 우선 창업아이템, 장래 유망 직종, 장래 유망 창업아이템
조사일자	2009. 6. 3. - 2009. 6. 13.

31) 현황조사에 참여한 74개 기관 가운데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서울시 소재 5개 기관(동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송파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오가니제이션 요리 등)

나. 인터뷰 대상자 일반적 특성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기관의 추천에 의해 그룹별 인터뷰에 참여한 결혼이민여성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IV-24 인터뷰 대상자 일반적 특성

대상자	출신국가	나이	거주기간	학력	국적취득여부	한국어수준	직업 (출신국 직업)	자격증 유무 (분야)	자녀 (수)
A	필리핀	27세	5년	고졸	○	중	주부 (무직)	×	2
B	중국	35세	2년	대졸	×	중	주부 (사무직)	○ (비서)	1
C	필리핀	26세	4년	고졸	○	중	주부 (서비스직)	×	1
D	엘살바도르	30세	2년	대졸	×	중	주부 (컴퓨터프로그래머)	○ (컴퓨터)	0
E	중국	34세	8년	대졸	×	상	통·번역사 (교사)	×	2
F	베트남	28세	5년	고졸	×	중	통·번역사 (학생)	×	1
G	우즈베키스탄	32세	7년	대졸	○	상	통·번역사 (전기통신기술직)	○ (전기통신)	3
H	중국	38세	12년	고졸	○	상	통·번역사	○ (HSK)	2
I	몽골	30세	5년 5개월	대졸	×	중	다문화강사 (무용수)	×	2
J	베트남	23세	3년	고졸	×	중	다문화강사 (무직)	×	1
K	태국	37세	7년	고졸	○	중	다문화강사 (-)	×	2
L	중국	28세	4년	중졸	○	중	다문화강사 (서비스직)	×	1
M	베트남	29세	3년	중졸	×	하	급식조리사 (판매직)	×	1
N	러시아	31세	7년	고졸	×	중	바리스타 (무직)	×	1
O	필리핀	40세	10년	대졸	○	중	급식조리사 (가사도우미)	×	3
P	인도네시아	42세	15년	대졸	○	상	급식조리사 (비서)	×	3
Q	베트남	24세	2년 6개월	고졸	×	중	없음 (-)	×	0
R	베트남	27세	2년 6개월	고졸	×	중	없음 (미싱사)	×	0
S	일본	37세	14년	고졸	×	상	없음 (치위생사)	○ (치위생)	3
T	중국	29세	2년	고졸	×	중	없음 (-)	×	0

다. 참여 프로그램 일반현황 및 취업자 근무조건

본 인터뷰 대상자들이 참여한 취·창업 지원프로그램은 [표 IV-25]과 같으며, 관련 직종으로는 네일아트, 영어지도사, 통·번역사, 다문화강사, 급식조리사, 바리스타, 피부관리사 등이다. 이 가운데 통·번역사와 다문화강사, 급식조리사, 바리스타 등의 사례는 고용이 이루어져 있다. 대체적으로 사회적 일자리나 사회적 기업형태인 경우는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므로 아르바이트 형식인 다문화강사도 일정한 수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정비 필요하다.

■ 표 IV-25 ■ 참여 프로그램 일반현황 및 취업자 근무조건

대상자	취·창업 지원프로그램 현황			취업자 근무조건				
	참여프로그램	참여기간	참여경로	취업처	고용형태	근무시간	임금 (월평균)	4대보험 적용여부
A	네일아트자격증/ 어린이영어지도사	2009.3.~ 2009.12.	인터넷 광고와 지인 소개로	-	-	-	-	-
B	네일아트자격증	2009.3.~ 2009.12.	사회복지관 소개로	-	-	-	-	-
C	네일아트자격증/ 어린이영어지도사	2009.3.~ 2009.12.	한국어 배우려다 사 회복지관 소개로	-	-	-	-	-
D	네일아트자격증/ 어린이영어지도사	2009.3.~ 2009.12.	한국어 배우려고 인 터넷 검색하다 사회 복지관 소개로	-	-	-	-	-
E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	2009.3.~ 2009.12.	인터넷 구직정보 사 이트를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비정규직	주5일 (9시~18시)	87만원 (세후)	○
F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	2009.3.~ 2009.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에서 한국어 배우다 소개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비정규직	주5일 (9시~18시)	87만원 (세후)	○
G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	2009.3.~ 2009.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에서 통·번역자조 모 임, 다문화강사 양성 프로그램 등에 참여 했다가 센터 소개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비정규직	주5일 (9시~18시)	87만원 (세후)	○
H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	2009.3.~ 2009.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에서 통·번역자조 모 임, 다문화강사 양성 프로그램 등에 참여 했다가 센터 소개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비정규직	주5일 (9시~18시)	87만원	○
I	다문화강사양성	2009.1.~ 2009.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에서 한국어 배우다 선생님 소개로	어린이집	비정규직	2회 파견 (1시간)	15천원 (시간당 15천원)	×
J	다문화강사양성 통·번역사	2009.1.~ 2009.2./ 2009.4.~ 2009.6.	방문지도사 선생님의 소개로	어린이집	비정규직	1회 파견 (2시간)	3만원 (시간당 15천원)	×

대상자	취·창업 지원프로그램 현황			취업자 근무조건				
	참여프로그램	참여기간	참여경로	취업처	고용형태	근무시간	임금 (월평균)	4대보험 적용여부
K	다문화강사양성	2009.1.~ 2009.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선생님 소개로	어린이집, 유치원	비정규직	1회 파견 (2시간)	3만원 (시간당 15천원)	×
L	다문화강사양성	2008.4.~ 2009.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석하다 소개로	어린이집	비정규직	월1회 (1시간씩)	5~7만원 (1회당)	×
M	요리트레이닝	2008.7.~ 2008.12.	친구 소개로	오가니제이션 요리	비정규직	주5일 (9사~17시)	83.7만원	○
N	바리스타교육	2009.1.~ 2009.3.	지역사회복지관에서 한국요리를 배우다 선생님 소개로	오가니제이션 요리	비정규직	주5일 (9사~18시)	83.7만원	○
O	요리트레이닝	2008.10. ~2008.12.	친구 소개로	오가니제이션 요리	비정규직	주5일 (9사~17시)	83.7만원	○
P	요리트레이닝	2008.7.~ 2008.9.	지역사회복지관에서 한국요리를 배우다 선생님 소개로	오가니제이션 요리	비정규직	주5일 (9사~17시)	100만원	○
Q	피부관리사자격증	2009.2.~ 2009.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장님 소개로	-	-	-	-	-
R	피부관리사자격증	2009.2.~ 2009.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장님 소개로	-	-	-	-	-
S	피부관리사자격증	2009.2.~ 2009.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장님 소개로	-	-	-	-	-
T	피부관리사자격증	2009.2.~ 2009.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장님 소개로	-	-	-	-	-

2. 인터뷰 조사의 주요 결과

가. 프로그램 참여시기 및 경로

1) 지원프로그램 참여시기

결혼이민여성들에게 한국에 거주하면서 직업을 갖기 위해 취업이나 창업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면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물어보았다.

그 결과, 근래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있는 관련 지원프로그램이 대부분 처음이었으며, 몇몇 사례에서만 다문화강사나 한국어보조강사, 어린이 영어지도사와 같은 양성프로그램을 거쳐 현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에 참여한 결혼이민여성들의 평균 한국 거주기간이 약 6년(5.95년)정도이고, 대부분의 경우 몇 년 전까지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들의 취·창업 지원프로그램의 참여시기는 유의미해 보인다([표 IV-25] 참조). 이는 지난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실시한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³²⁾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 거주기간과 결혼기간이 3~5년인 결혼이민여성의 경우가 취업의사는 물론,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 직장 알선에 대한 필요도가 가장 높았다는 점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본다. 즉, 자녀를 둔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자녀가 어렸을 때는 자녀양육과 가사부담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를 간직한 채 사회적 진출을 미루다가 그 자녀가 일정 연령이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준비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시기가 결혼기간 3~5년 이후인 것이다.

한편, 최근 들어 결혼이민여성들이 취·창업 지원프로그램의 참여가 활발해지는 것은 결혼이민여성의 개인적 상황, 가족유형, 다문화가정의 생애주기별에 따른 요구이다. 따라서 2006년 4월 정부가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을 시작으로 다양한 다문화지원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며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취·창업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경우 2008년 10월,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를 그 목표 중 하나로 천명하면서 ‘결혼이민자의 경제·사회적 자립 역량강화’를 선정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09년 기본사업으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취·창업지원 사업(다문화가족 직업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2) 취·창업 지원프로그램 참여경로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적 지지망, 즉 이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는 매체는 대부분의 경우 가족을 포함한 주변 사람, 나아가 기관이나 단체, 대중매체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사실은 본 인터뷰의 취·창업 지원프로그램 참여경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표 IV-25] 참조). 즉, 인터뷰에 참여한 결혼이민여성의 대부분이 지인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혹은 지역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소개에 의해, 또는 인터넷 매체를 통한 사적 경로로 관련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한편, 자치구나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행정기관을 통해 참여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

32) 장명선(2008),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보의 접근성과 홍보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인터넷, 미디어매체 등을 이용한 이들 기관의 정보제공 및 홍보서비스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처음엔 시어머니의 소개로 종교단체와 여성발전센터 등에서 한국어와 컴퓨터를 조금 배웠을 뿐 취업교육을 받은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광고를 보고 여기서 영어지도사와 네일아트를 배우고 있어요.” (결혼이민여성 A)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 구직정보 사이트 등을 통해 정보 수집을 많이 했어요. 국적은 무관하고, 중국어 전문 인력을 찾는 데로 알아봤어요. 그러다 우연히 통·번역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와서 지원하게 되었고 합격해서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결혼이민여성 E)

“원래 꿈이 식당을 차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역 사회복지관에서 한국요리를 배우다가 그 곳 선생님께서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여기 브로슈어를 보여주셨어요. 관심이 좀 있어서 여기 와서 물어 보고 알아봤어요.” (결혼이민여성 P)

나. 취·창업 지원프로그램 참여 동기

1) 일반적 참여 동기

결혼이민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하는 것은 경제적 안정 등의 이유에서지만, 결혼 후에도 이들의 경제적 삶은 여전히 빈곤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경제활동도 언어 등의 어려움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도 서울시 다문화가정의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100~200만원 미만이 전체 응답자의 29.9%로 가장 많았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아예 없거나 100만원 미만인 다문화가정도 15.6%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이러한 경제적 빈곤상태는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진출을 촉발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어 생활비 보충 26.3%, 가족생계유지 20.5%, 자녀양육비 충당 16% 등으로 생활비보충이 62.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어 취업을 하는 것이 자아실현이나 사회·경제적 자존감 향상이라는 내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경제적 빈곤상황이라는 외적 동기에 의한다는 점, 그리고 체계적인 준비기간과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경제활동에 뛰어들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따라서 이들이 우리 사회의 지역 주체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취업욕구에 의하기 보다는 이들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 하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우선은 경제가 워낙 안 좋으니까 남편을 좀 도와주고 싶어서 (다문화강사) 시작했어요.” (결혼이민여성 I)
 “너무 힘들었어요. 신랑이 월급을 줬는데 너무 적어서 나도 돈 벌어야겠다는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참고 살았는데, 지금은 애들이 크니까 학교나 학원비 때문에 벌어야 할 것 같았어요. 시댁가족들한테도 돈을 드려야 할 때가 있고.....” (결혼이민여성 O)

2) 관련 직종별 참여 동기

본 인터뷰에는 네일아트, 영어지도사, 통·번역사, 다문화강사, 급식조리사, 바리스타, 피부관리사 등과 같은 직종의 취업자와 관련 지원프로그램 참가자가 참여했다. 이는 앞서 이루어진 선행연구 검토와 기관 현황조사를 근거로 결혼이민여성이 선호하고 이들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한 직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우선, 네일아트나 피부관리와 같은 이/미용 관련 직종은 결혼이민여성들의 선호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취업가능성이 높은 직종으로 꼽힌다. 이러한 직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자격증 과정에 참여한 결혼이민여성들은 대부분 초기에 네일아트 자체의 미적 요소나 이/미용에 대한 개인적 호감으로 취미삼아 시작하다가, 그것을 직업적인 관점에서 보고 한국에서 또는 향후 모국에서 창업을 하고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필기시험에서 한국어 미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대부분 이/미용과 같이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자격증 시험을 보완하여 자격시험지를 모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관심이 있어서 배우게 됐는데, 혹시라도 잘 배우면 한국에서 사는 동안 취업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 한국에서 일하기 힘들어지면 중국에 가서 강사로 네일아트를 가르치려고요. 지금 중국의 대도시에서는 네일아트가 한창 열풍이지만 소도시에서는 아직 이거든요.” (결혼이민여성 B)

“저는 어렸을 때부터 피부 마사지 같은 것을 좋아했어요. 이런 걸 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못 배웠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여기 센터에서 피부미용을 가르쳐 준다니 너무 하고 싶었어요.” (결혼이민여성 Q)

“전부터 관심은 있었어요. 나도 예뻐지고 싶고, 사람들에게 해주는 것도 좋아해서 기회가 생겼을 때 하게 되었어요.” (결혼이민여성 S)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미용일을 좀 배웠는데, 지금 여기서 배우면 앞으로 미용사도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금은 한국말도 잘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배워서 그냥 취직하고요, 앞으로 돈 벌면 나중에 미용샵이나 마사지사 같은 것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이민여성 T)

반면, 어린이 영어지도사 과정의 경우, 필리핀 등 영어권 출신의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관련 양성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자녀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결혼이민여성들의 자녀들에 대한 모성에 내지 관심은 매우 높아 취업도 자녀들의 양육이 끝난 지점에서 하기를 원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정규직보다는 아르바이트 등

을 더 선호하는 것은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기 보다는 직접 양육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방법을 배우려고요.” (결혼이민여성 A)

“우리 딸 때문에 하게 됐어요. 나중에 딸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배우려고요. 하지만 기회가 있으면 영어지도사라도 활동하고 싶어요.” (결혼이민여성 C)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사업은 한국어와 모국어로 통·번역이 가능한 결혼이민자들을 통하여 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에게 언어 지원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이다. 이 사업은 정착한 결혼이민자들에게는 사회 참여와 경제 활동의 기회를 주고, 초기 결혼이민자들에게는 자신의 모국어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09년 8월 현재 전국 88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160여명의 통·번역 전문 인력이 일정 수준의 월급여와 4대 보험을 지원받으며 해당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다. 본 인터뷰에 참여한 결혼이민여성들도 해당 교육과정을 거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활동 중인 현직 통·번역사로, 이들이 말하는 해당 지원프로그램에의 참여 동기는 다음과 같다.

“일단 중국어를 살리고 싶은 생각이었고요, 제 전공은 경영학이지만 그것은 한국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자격이고, 중국어 통·번역이라고 하면 경쟁에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했어요.” (결혼이민여성 E)

“모국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어서요. 그리고 취업을 하면 한국어 실력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결혼이민여성 G)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다 베트남 친구들을 만났는데,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문화도 잘 몰라서 시댁과 심한 갈등을 겪으며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시작하게 되었어요.” (결혼이민여성 F)

본 인터뷰에 참여한 통·번역사들의 경우 대부분 자신의 모국어를 활용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들과 경쟁하는데 있어 유리할 것이라는 인식 하에 통·번역사 양성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과 같은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는 한편, 통·번역사인 자신은 관련 활동을 통해 한국어 실력은 물론 직업적 역량을 키우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여성들을 비롯하여 다문화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자원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이해교육은 다문화 강사양성프로그램을 거친 다문화강사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업은 우리 사회에 다문화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나 결혼이민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역량강화에 이바지 하고 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은 해당 프로그램의 참여 동기는 자신의 모국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자신들을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보는 한국인들의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함과 무엇보다도 언어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들과의 소통이 어려운 상태에서 ‘엄마 나라의 문화는 이렇게 훌륭해’, ‘엄마도 가르칠 수 있어’ 라는 점 등을 보여주고 싶어서였다. 즉, 다문화강사 활동을 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의 경우 어린이들에게 모국의 문화를 올바르게 알려주고,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없애으로써 한국사회와 한국인의 인식 변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존경의 대상인 선생님이로 활동하면서 결혼이민여성 자신은 물론 그 자녀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이 커다란 참여동기가 되고 있다.

다문화강사는 결혼이민여성들의 특화직종이라 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다문화강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다문화사회로의 사회통합을 꾀할 수 있는 지름 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 다문화이해 교육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지침을 규정하고 그 비용을 일정기간 동안은 지자체가 보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에서 보다 전문적인 다문화이해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이해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적인 강사를 양육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들한테 우리나라를 소개시켜주면서 우리는 같은 사람인 것을 알려주고 싶었고, 제 아이를 한국인 아이들과 사이좋게 지내게끔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한국인 아이들이 알게 되면 한국인 부모들도 우리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문화강사를 하게 됐어요.” (결혼이민여성 I)

“저는 베트남문화를 한국 아이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엄마가 외국인인 우리 아이가 나중에 학교에 가면 친구들한테 부끄럽지 않고 “우리 엄마도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해서 시작했어요. 또 다문화강사가 되면 아이한테도 좋은데, 집에서 아이를 어떻게 교육하면 좋은지도 알 수 있어서 하게 됐어요.” (결혼이민여성 J)

“저는 자랑스러운 우리 태국문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결혼이민여성 K)

대부분의 결혼이민여성이 초기 한국생활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중의 하나가 한국 요리에 관한 문제인데, 이런 이유로 초기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정부의 다문화가족정책이나 지원사업도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 이해와 더불어 한국요리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인터뷰에 참여한 급식조리사와 바리스타의 경우도 처음에는 이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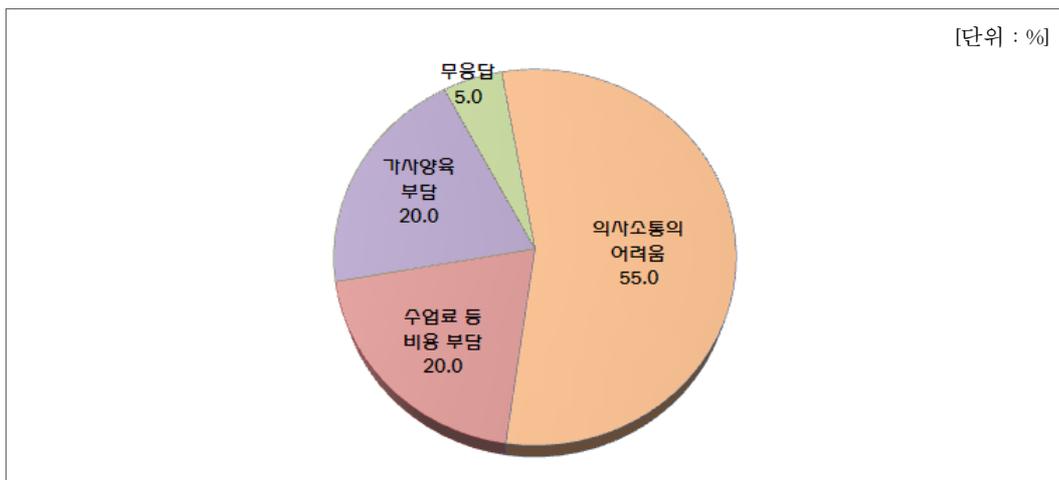
한 동기로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가, 점차 취업과 창업에 대한 직업적 비전을 두게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한식 메뉴를 중심으로 한 급식조리사와 같은 지원프로그램은 취업은 물론, 낮은 가정생활과 한국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혼이민여성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바리스타 과정의 경우 개인적인 선호도 있지만, 초급 바리스타 교육과정을 거친 후 특별한 학력, 면허, 자격 등이 없어도 취업과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한국 온지 3년 되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한국 요리 못하니까 우리 가족들한테 한국 요리 해주려고 시작하게 되었어요.” (결혼이민여성 M)
 “신랑이 식당을 하고 싶어 하는데, 나중에 식당을 하게 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결혼이민여성 O)
 “카페도 좋고요, 커피도 좋아했어요. 요리도 좋아서 지금 요리도 배우고 있지만, 나중에 카페를 운영하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결혼이민여성 N)

다.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장애요인

1)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상의 어려움

본 인터뷰에 참여한 결혼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취·창업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할 당시 경험했던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 결과(1순위),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55.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수업료 등 비용 부담’과 ‘가사양육 부담’이 각각 20.0%로 나타났다.



■ 그림 IV-27 ■ 취·창업 지원프로그램상의 어려움(1순위)

가) 의사소통의 어려움

한국어와 관련된 언어상의 문제는 취·창업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이민여성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한국어를 말하지 못한다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강의를 하는 강사와의 신뢰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결과로까지 확대되며 수강생들 간의 소통도 어렵게 만들며 더 나아가 강의내용에 취미를 잃게 되어 어렵게 결심하고 나온 취업교실에서 낙오되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일반여성 대상 취·창업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참여시보다 이러한 어려움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교재를 봐도 잘 모를 때도 있고요.” (결혼이민여성 B)

“교수님들, 우리 같은 외국사람 생각 안 해요. 한국 사람한테 가르치는 것처럼 막 얘기하고, 대학생한테 가르치는 것처럼 해요. 우리는 어려운 단어 쓰면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그냥 고개만 끄떡끄떡하고.. 마지막에 ‘누구, 질문 있어요?’ 하시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냐면 모르니까요. 강의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외국인인 것을 잘 이해하고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결혼이민여성 K)

“선생님이 너무 말이 많고 빠르세요. 그에 비해 우리는 빨리 못 알아들어서 힘들어요.” (결혼이민여성 Q)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취·창업 지원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기관과 강사는 그 참여자가 한국어 활용에 능숙하지 않은 결혼이민여성임을 인식하고 강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강의내용과 교재를 준비하고 강의 속도 등을 조절하며 수강생들과의 피드백을 중요시하는 등 일반 한국여성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매우 세심한 주의와 배려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는 일반 성인들이나 고학력 학생 수준에 맞춰 프로그램이 진행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결혼이민여성들의 자존감내지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좋지 못한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의자는 무엇보다도 다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 결혼이민여성들이 ‘그들이’ 아닌 ‘우리’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한다. 또한, 취업교육이나 직업훈련과 같은 취·창업 지원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어 활용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프로그램 내에 일정 시간 한국어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한국어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식의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도 있으며, 강의 내용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결혼이민여성들을 보조강사로 활용하거나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 수업을 도와주는 등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한편, 프로그램 교재 활용 및 개발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자격증 준비과정의 경우 일반 성인들조차 처음 접하는 어려운 전문용어들을 결혼이민여성들에게 별다른 이해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었으며, 결혼이민여성들에게 맞는 교재가 없고 체계

적인 취업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어교육 교재도 다양하지 않아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전문적이고 맞춤형인 다양한 교재 개발이 시급하며, 취업을 위해서는 일상 회화를 넘어 고급반이나 취업대비반이 개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대부분 초·중급 수준의 반이 개설되므로 보다 심화된 교육을 위한 강의개설이 필요하다.

“교재가 너무 두껍고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전문용어들이 영어로 되어 있어서 힘들어요. 또 우리는 피부를 잘 모르거든요. 피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안 배웠으니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결혼이민여성 R)

“선생님이 말하는 것은 조금 알아듣겠는데, 글씨로 된 것은 더 못 알아듣겠어요. 교재가 나오긴 하는데 부족해요. 그래서 교수님이 준비한 자료를 복사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하지만 그건 교재가 아니라 그냥 종이일 뿐이에요.” (결혼이민여성 J)

나) 수업료 등 비용부담

일반적으로 열악한 경제상황에 처해 있는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드는 소요비용이 아무리 소액이라고 해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한국어교실 등 몇몇 프로그램의 경우 무료로 운영되는 사업이 있긴 하지만, 경제활동을 준비하는 취업교육이나 직업훈련과정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일정 부분 참여자의 비용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비용의 전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이 전문적인 직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차등을 두어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이 무료로만 진행되는 경우 책임감 있게 끝까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소위 서비스쇼핑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무료보다는 실비를 받고 수업참여율이 80% 되면 다시 결혼이민여성에게 돌려주는 등의 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네일아트를 배우는 경우 비용이 제일 문제예요. 처음에도 가방이나 도구 구입비로 돈이 많이 드는데, 매번 필요로 하는 재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비용이 점점 더 많이 들어요.” (결혼이민여성 B)

다) 가사와 양육 부담

가정 내에서 가사와 양육을 주로 책임져야 하는 결혼이민여성의 특성상 ‘가사와 양육의 부담’은 역시 클 수밖에 없으며, 이는 취·창업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한국의 맞벌이 주부가 경험하는 이상으로 결혼이민여성들의 경제생활 참여에는 가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우선 결혼이민여성들과 결혼한 남성들은 보다 가부장적 사고를 가진 경우가 많으며 연

령차가 많다 보니까 결혼이민여성들이 도망갈까 봐 우려하여 외출을 제한하기도 하며 교육 참여 시 시어머니가 동행하는 등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다. 결혼이민여성들이 경제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교육기간이 필요하고 이후에도 취업과 연계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이해나 협조가 없다면 결혼이민여성들은 이중의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결혼이민여성 역시 경제활동을 준비하고 원활한 사회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의 지지와 지원, 보육 현실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창업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가족들이 이해와 협조를 하도록 하는 교육도 필요하므로 쌍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제가 통·번역사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교육받는 동안 남편이 아이를 돌보면서 가사일 하는 것을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또 합숙을 하면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니까 벌써부터 남편의 기분이 안 좋아요. 그만 두라는 말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애들이 방과 후 방치된다는 점도 문제예요. 마음 놓고 일할 수가 없어요.” (결혼이민여성 H)

“애들이 어리다보니 일을 할 때마다 애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데, 직장에서 퇴근한 후 애들을 데리러 가면 너무 늦어서 곤란해요” (결혼이민여성 G)

“저는 육아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지금 3살, 6살이기 때문에 한창 유치원을 다니고, 어린이집을 다녀야 해요. 그런데 저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집은 인천이다 보니 가는데 2시간쯤 걸려 도착하면 8시가 넘으니까 그때까지 애들을 봐주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부모님이 오셔서 애들을 봐주시는데 걱정이예요.” (결혼이민여성 E)

2) 직장생활에 따른 어려움

가) 차별문제

결혼이민여성이 언어, 정보, 문화 등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렵게 얻은 직장생활에 함에 있어서 차별을 당하지는 않았는가에 대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과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차별을 당하기도 있음이 나타났다. 따라서 직장생활에서의 차별을 당하지 않고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친구들이 일하고 싶어서 찾아가면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인니까 안 된다고 한대요. 한국말 못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외국인인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피부색이나 억양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주의해야 할 것들을 모른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외국인들을 채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결혼이민여성 K, L)

“(과거) 임신 출산으로 회사를 그만 두야했기 때문에 그게 불만이었어요. 간단한 수출입 업무와 통·번역 업무를 했는데, 임신한 사람이 있으면 이미지에 안 좋다고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결혼이민여성 E)

“아이가 없는 결혼이민자가 일을 하고 싶다고 해도, 몽골사람들 중에 불법체류자들이 이미 그 공장에 들어가서 나쁜 짓을 했다든지 해서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들어 같은 몽골사람이니까 일을 못 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결혼이민여성 I)

정부는 외국인의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정책내용을 차별화하고 있는데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인구의 재생산을 위한 사회통합에 주력하고 있어서 고용차별, 환경개선 등에 대해서는 이주노동자와는 달리 중점을 두지 않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결혼이민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리 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역량강화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직장생활에서의 고용차별이나 성희롱 등 폭력문제, 안전도 문제 등 노동환경문제 등에 대해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 한국의 직장문화 이해부족

한국에 와서 살게 되는 결혼이민여성의 대부분은 중국이나 베트남, 몽골 등과 같은 사회주의국가 출신으로 한국사회와는 다른 직장생활과 문화, 동료관계를 경험해왔다. 이러한 이유로 직장생활을 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은 자신이 맡은 직무에서 뿐 아니라 직장 내 규율이나 환경, 대인관계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경제활동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직장문화와 규율에 관련된 이러한 정보들을 사전에 접할 기회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취·창업 지원프로그램에 한국의 직장생활이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을 포함하여 취업을 준비하는 결혼이민여성의 이해를 돕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취업 후에도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 등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사후관리 부분도 고려해 주는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결혼이민자들의 대부분이 중국이나 베트남, 몽골 등 사회주의국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념상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시간관념이 한국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적응을 해야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회식자리의 경우 한국문화는 모두 참석해야 하고, 술을 마셔야 하는 것 같아서 좀 힘들었어요.” (결혼이민여성 E)
 “직장문화요, 나라마다 약간씩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대인관계나 행동요령이나... 그런 걸 하나도 모르겠어요. 물어보기도 그렇고...” (결혼이민여성 H)

라. 직장생활에서 제 문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번역사가 일할 수 있는 범위는 센터 자체의 자료 번역, 센터 내 상담통역,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통역 봉사 등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통·번역이라는 고유한 업무 외에 센터의 다양한 사업과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업무를 배우기는 하나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번역사의 경우 50시간의 기초 양성교육 외에 일 년에 2~3차례에 걸쳐 보수교육을 받는데, 통·번역의 특성상 이것이 더 자주 실시되어 통·번역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전문 인력으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더불어 상담통역 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매뉴얼이나 가이드북 등을 발간하여 이들의 적응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센터 내 결혼이민자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통역 상담도 해드리고... 가정방문도 동행해서 도와드리고... 센터로 전화가 오면 수시로 상담도 하고... 그래서 사실 힘들어요...” (결혼이민여성 H)

“통·번역사의 경우 50시간의 양성교육 외에, 통·번역에 대한 교육을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두 번씩 지속적으로 받아야지, 일 년에 몇 번 보수교육을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3월, 6월, 12월에 보수교육을 받는데 그 사이에 하루나 반나절 정도 추가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혼이민자지 전문 통·번역가는 아니잖아요.” (결혼이민여성 E)

“나라별로 국제통역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번역할 때 어려운 전문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그런 분들과 쉽게 연결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혼이민여성 G)

“저희 통·번역사들도 정보를 많이 알아야 도움을 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교육도 필요한 거 같아요.” (결혼이민여성 H)

본 인터뷰에 참여한 다문화강사의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이해교육의 시간이 해당 나라의 다양한 정보를 아이들에게 전달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어린이들의 학습 집중시간이 30분 정도인 것을 고려할 때, 한, 두 번의 학습기회 만으로는 한 나라의 의복과 생활습관, 음식, 세시풍속 등을 익히고 의상체험과 전통음식 등을 체험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이해교육이 단지 일회성 행사로 끝나기 보다는 장기적인 다문화교육플랜 속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육현장에 나갔을 때 기관장이나 종사자들의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편견과 다문화이해교육의 물이해를 어려움으로 꼽는 경우도 있었다. 결혼이민여성들은 교육대상자인 어린이들에게 ‘옆집 아줌마’로서 다문화를 이해시키고 싶지만, 일부 기관장들은 결혼이민 여성을 ‘외국인’으로 비취지길 바라는 것이 그 한 예라고 하겠다. 또한, 일부 기관장의 경우, 결혼이민여성들이 진행하는 교육시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결혼이민여성들의 교육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결혼이민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이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 결과적으로 이들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30분 안에 몽골의 위치, 전통의상, 먹는 거, 생활, 날씨 이런 거 다 얘기하려다 보니 시간이 부족했어요. 애들이 그냥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주고받고, 질문에 답변해주고 하면 시간이 안 맞아요...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회, 3회, 한 곳에 여러 번 방문해야 다양하게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이민여성 I)

“원장선생님의 생각도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준비한 거 있어요. 그런데 원장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우리한테 해요. 그날 원장선생님한테 우리의 입장은 그냥 ‘비행기 타고 온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아니예요. 우리는 ‘이웃 아줌마’ 같은 입장으로 간 거였어요. 서로 다르게 이해해요. 원장선생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외국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곳에 가서 원하는 것은 결혼이민자로 여기고 살고 있으니까 ‘옆집 아줌마’ 처럼 생각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결혼이민여성 K)

“TV보면 몽골은 양 키우고, 손 씻는 물로 얼굴 씻고 그러잖아요? 시골모습만 보여요. 하지만 몽골도 한국처럼 도시도 있고 시골도 있어요. 어린이집도 가고, 회사도 나가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설명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장선생님은 아예 양 키우고 그러는 곳이라고 가르치길 원하는 거예요.” (결혼이민여성 I)

결혼이민여성들은 강의 교안과 교구 만드는데도 어려움을 느끼는데, 일단 관련 정보나 재료들을 어디서 수집해야 할지도 알 수 없을 뿐더러 이것을 도와주는 지원체도 역시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다문화이해교육 시 활용되는 컴퓨터나 관련 전자기계 등에 대한 교육을 못 받거나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여 교육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에 필요한 교안과 교구 제작 지원은 물론 컴퓨터 활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다문화강사 양성 프로그램에서 보다 심도있게 교육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짜고 매뉴얼을 제작·보급하는 일도 필요하다.

“교안 만드는 게 진짜 어려웠어요. 기관에서 하나도 안줬어요. 저는 새벽 3시, 4시까지 인터넷에서 사진을 직접 찾았어요. 몽골에 있는 친구들한테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구하기도 했구요. 노력 많이 했어요. 기관에서는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필요하다고만 하시고, 우리가 직접 찾아야했어요. 컴퓨터 잘 모르는 사람은 더 힘들었어요.” (결혼이민여성 I)

“저는 베트남에서 컴퓨터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강사양성과정을 할 때 컴퓨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강의 자료 준비할 때 PPT 작업도 해야 하고, 어린이집에 가서도 컴퓨터나 VCR 같은 기계도 다룰 줄 알아야 해요” (결혼이민여성 K)

“할 거 많은데요, 전 컴퓨터를 못하니까 손으로 직접 다 썼어요. 5, 6장정도 써야 했는데 그럼 하루 종일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잘못 쓰거나 고치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결혼이민여성 J)

한편, 다문화 교육 시장이 확대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문화강사만이 여기저기서 배출되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고용이 불안정해졌을 뿐 아니라, 물가상승 및 다문화이해교육에 드는 비용이 점차 높아져 가는데 비해 다문화강사의 보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현재는 직업이라기보다 ‘봉사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게 현실이다. 인터뷰에 참여한 다문화강사들 중에도 1회에 2명이 기관으로 파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보수가 3-5만원이므로 일인에게 돌아가는 경비는 1~2만원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다문화이해교육을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거나 권고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다문화강사교육도 체계적 전문적으로 행해 그 수준에 맞는 다문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 다문화강사가 결혼이민여성들의 특화직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몇 년 전에 비해 다문화강사료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1시간당) 15,000원 받고 일하기 힘들어요... 한 4만원, 4만 5천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혼이민여성 I, K)

“저는 5만원~7만원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가는 차비도 있고 준비물도 있고 하니까요.” (결혼이민여성 L)

마. 한국인과의 교육 경험

결혼이민여성에게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인과 함께 하는 취·창업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결혼이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경험을 토대로 장·단점을 물어본 결과, 본 인터뷰에 참여했던 결혼이민여성들의 대부분은 한국인과의 교육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람하고 같이 공부하면 좋긴 하지만 좀 어색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 혹시 내 얘기를 하지 않는지... 하지만 우리끼리 공부하면 편해요.” (결혼이민여성 C)

“저는 결혼이민자만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단 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어를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프로그램 자체도 중요하지만, 한국어, 예를 들어 요리를 배운다면 요리뿐만 아니라 한국어도 하고 서로 교류를 하기 위해 결혼이민자가 참여하는데, 만약 그곳에 한국분들이 계신다면 서로 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혼이민여성 E)

“한국분들과 프로그램을 함께 들으면 내가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좀 힘들고 자신감이 떨어질 것 같아요. 자존심도 상하고요. 한국분과 1년 6개월 동안 함께 운동 다니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결혼이민여성 F)

대부분의 경우, 한국어로 하는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기 전까지는 결혼이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전문 지원프로그램이 결혼이민여성들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한국사회에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결혼이민여성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편안한 정보교류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과, 한국인들과 함께 교육받음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정서적·심리적 불이익과 자존감 저하 등이 그 이유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보면 결혼이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의 교육수요율이 일반여성과 함께 한 교육수요율보다 높았다.

한편, 결혼이민자로서 한국에 정착해 살아야 하고, 그러려면 한국생활에 적응하면서 한국인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이때 한국인과의 교육경험이 한국인과의 교류는 물론, 각종 생활정보와 도움 등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결혼이민여성에게 더 유익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 외국인들끼리만 같이 있으면 도움 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과 같이 하면 한국 사람들은 정보 많이 알아요. 얘기도 하고 생활정보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끼리만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요. (결혼이민여성 K)

그러나 결혼이민여성들이 취·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이 사회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수료를 못한 경우는 여성들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교육내용이나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가능한 한 결혼이민여성만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공간 확보 등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바. 경제활동을 위한 필요 지원

1) 한국어교육 및 자녀양육 지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자녀양육의 부담은 결혼이민여성이 경제활동을 준비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본 인터뷰에 참여한 결혼이민여성 대다수는 한국어교육과 자녀양육 지원을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꼽을 수밖에 없었다.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취·창업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대개 취업에 필요한 기술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때 한국어교육은 개인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취·창업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해당 과정 안에, 혹은 별도의 과정으로 관련 분야의 한국어 교육을 편성하여 함께 습득하게 한다면 한국어 실력의 향상은 물론 관련 분야의 이해를 돕는데도 바람직할 것이다. 실제로 본 인터뷰에 도움을 준 몇몇 기관에서는 취업교육과 한국어교육을 병행하거나, 한국인을 해당 지원프로그램에 참여시킴으로써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어 실력을 증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한국어 수업도 있어요. 여기서 다 같이 배워요. 일주일에 한, 두 번 두 시간씩 하는데, 다 같이 한국말을 하니깐 더 빨리 배워요.” (결혼이민여성 B)

“...실기는 기술적으로 너무 잘하세요. 그런데 이론이 한글로 되어 있고, 게다가 한국 사람이 보는 시험을 보는 거니까 어렵죠.(중략)그래서 저희가 과정(네일아트자격증) 중간에 한국인분들을 참여시켰던 이유는 어차피 한국인분들도 시험공부는 해야 하니까 이분들과 연계해서 한국어 공부할 때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려고요.” (기관종사자)

자녀양육에 따른 지원으로는 아이돌보미와 같은 보육지원서비스 혜택이 더 많이 확대 되길 바랐으며, 취·창업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프로그램 실시기관이나 직장 내에 있는 것을 선호하였다. 또한 결혼이민여성의 현실상 가사와 양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간범위 내에서의 경제활동을 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요구는 한국의 맞벌이 주부에게서도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지자체와 사업장, 지역사회 차원에서 서울형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의 확충은 물론 보육도우미사업의 확대 실시, 보육시설의 연장 및 탄력운영제, 직장 내 탄력근무제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공부할 때는 잠깐 아이를 맡겨두면 되지만, 계속 이곳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애를 돌봐주는 도우미가 있으면 좋겠어요. 마음 편하게 배울 수 있도록 자주 도우미가 왔으면 좋겠어요.” (결혼이민여성 B)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아이 데리고 출근했다가 여기에(아이 놀이방) 맡기고 퇴근할 때 데리고 집에 가니까 걱정 많이 안 해요.” (결혼이민여성 M, N)

“여기는 일단 근무시간이 9시부터 3시까지라서 좋아요. 집에 가서도 집안일을 해야 하니까요.” (결혼이민여성 P)

2) 맞춤형 교육 지원 및 정보제공

인터뷰에 참여한 결혼이민여성들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교육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관련 정보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즉 다양한 욕구와 필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현할만한 정보력과 경제력, 사회적 지지망 등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본 재단에서 실시한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어 실력이나 거주기간과는 무관하게 취업욕구가 강한 것을 고려할 때, 취·창업교육이나 구인정보 등에 대한 관련정보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결혼이민여성들도 적극적으로 정보입수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은 하고 싶은데, 애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싶어요. 그런 (부업이나 아르바이트)정보를 좀 소개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결혼이민여성 A)

“한국국적이 없어도 취업할 수 있는 직업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 양재자격증을 따려면 국적을 취득해야 하는데, 피부관리사 자격증은 한국국적이 없어도 괜찮거든요.” (결혼이민여성 S, Q, R)

또한, 결혼이민여성들은 각자가 처한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한국어교육이나 한국문화이해 등을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최근에서야 기초적인 수준의 취업교육이 실시되는 등 한정적인 분야에서 의 제한적 지원만이 이루어지고 있어 결혼이민여성들의 욕구를 못 쫓아가는 실정이다. 일례로, 본 인터뷰에 참여한 결혼이민여성들 가운데 몇몇 경우는 모국에서 직업으로 삼았던 일을 한국에서도 계속하고 싶지만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없거나 아예 해당 지원서비스 및 정책적 방안이 없어 아예 포기하고 있었다. 결혼이민여성 각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다양한 경제활동 지원서비스와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모국에서 했던) 컴퓨터프로그래머를 하려면 한국에서 다시 공부를 해야 하는데 돈도 들고 어려워요. 전문대학 같은 곳에서 비용을 면제해주거나 지원해준다면 컴퓨터프로그래밍 강사로 일해보고 싶어요.” (결혼이민여성 D)
 “일본에서 (치위생사 자격증) 딴 것은 일본 내에서만 해당하고, 한국에서는 다시 자격증을 따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시험에 맞게 공부를 하려고 해도 어디서 공부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안 된다고 하는 얘기밖에 못 들어서... 정보가 있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쪽(치위생사)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결혼이민여성 S)

3) 사회적 처우개선

[표 IV-25]의 ‘참여 프로그램 일반현황 및 취업자 근무조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취업한 상태에 있는 결혼이민여성의 근무조건은 좋은 편이 아니다.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형태가 아니고는 4대 보험 혜택조차 없는 ‘봉사활동’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노동 강도가 매우 높은 반면 저임금 형태의 비정규직 공장근로자로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현재 취업을 한 결혼이민여성들 대부분의 모습이다. 생활비 보조 수준의 급여보다는 생계비 수준의 현실성 있는 임금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4대 보험은 물론 보수교육 확대 실시, 합리적인 업무분장,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등과 관련한 처우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개선안들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규의 제정 및 기존 법규의 개정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몇 년 전에 비해 다문화강사료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1시간당) 15,000원 받고 일하기 힘들어요... 한 4만원, 4만 5천원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오가는 차비도 있고 준비물도 있고 하니까요.” (결혼이민여성 I, K, L)

4) 사회적 지지망 확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매체는 ‘사람’, 특히 배우자인 한국인 남편과 가족으로 그 역할과 영향력이 매우 크고, 이는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이민여성이 취업준비와

직장생활 등 경제활동을 하는데 가족의 지지와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저희 센터가 외국인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모도우미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작 신청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대부분 가족들의 반대가 심해서였어요. 일단 나가서 외부를 접한다는 게... 나가서 일을 하면 돈을 벌게 되니까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막더라고요. 저희 센터도 처음에는 이거 너무 좋은 일이다, 취업 정말 잘 되겠다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아이가 어려서 못한다고 해요. 사실 저도 아이가 어리지만 괜찮거든요. 그래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취업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의 지지가 없고 가족을 설득하지 못하면 안돼요.” (결혼이민여성 E)

“가족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일할 때 가족의 지지가 없는 사람은 못해요.” (결혼이민여성 H)

“여기 한국에 와서 2년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한국어)학교나 지원센터도 모르고, 외국 사람들을 도와주는 곳도 몰랐어요... 남편한테 (한국어)학교에 데려가 달라고 하니깐 ‘나도 몰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한국어는 책 사와서 혼자 공부했어요. 문제는 남편이 안 찾아준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한국어)학교에 보내야 하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이런 것(취업교육)을 찾아줘야 해요. 제가 (한국어)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저런 것도 알게 되고, 친구도 많이 만나고 소풍도 갔는데, 그때 남편한테 자랑했어요. ‘나는 학교에 가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 전에 2년 동안은 집에만 있어서 아무것도 몰랐어’ 라고 말했더니 남편이 가만히 있었어요.” (결혼이민여성 R)

한 가정의 동등한 생활주체이자 사회·경제적으로 개인적 역량을 발휘하고 기여해야 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결혼이민여성들은 일정한 한국생활 적응기를 거치면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진출을 기대하게 된다. 하지만 이에 반해 한국인 남편과 가족은 이를 반대하거나 무관심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취하곤 한다. 이는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부장성과 성역할 분리, 그리고 젠더와 관련한 보수성에서 기인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인 남편은 결혼이민여성인 아내가 한국문화,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가부장적 남성문화에 동화되길 바라고, 가장인 남편이 아내보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기를 바라는 편견에서 비롯된다.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와 건강한 가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가정 내 성평등은 물론 경제적 힘의 균형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문화이해교육 및 성평등 교육 등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경제적 필요에 의한 ‘등떠밀리기식’ 사회 진출이 아닌 가족의 지지와 지원이 전제된 결혼이민여성의 사회·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다문화가정의 지원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사회적 지지도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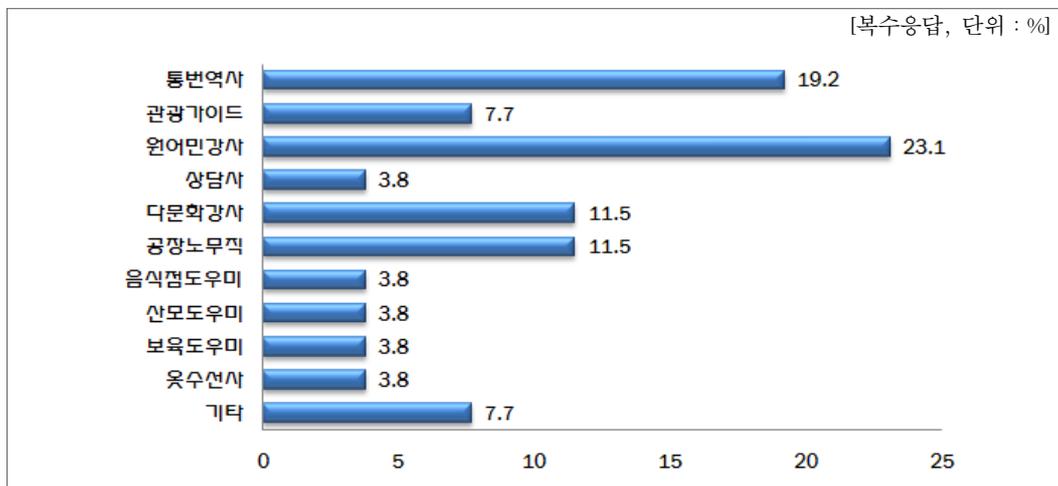
이미 많은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기관들이 실시하고 있는 자조모임과 멘토링 지원프로그램 등이 그러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결혼이민여성의 초기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제공과 지지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사회 지지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처음 저를 만나셔서 저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무엇을 알고 싶은지를 물으셨어요. ‘러빙 맘’ 라고 하는 분인데 반찬 만드는 거나 애기 키우는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신 살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물어보라고 하셨어요. (중략) 취업준비를 하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결혼이민여성 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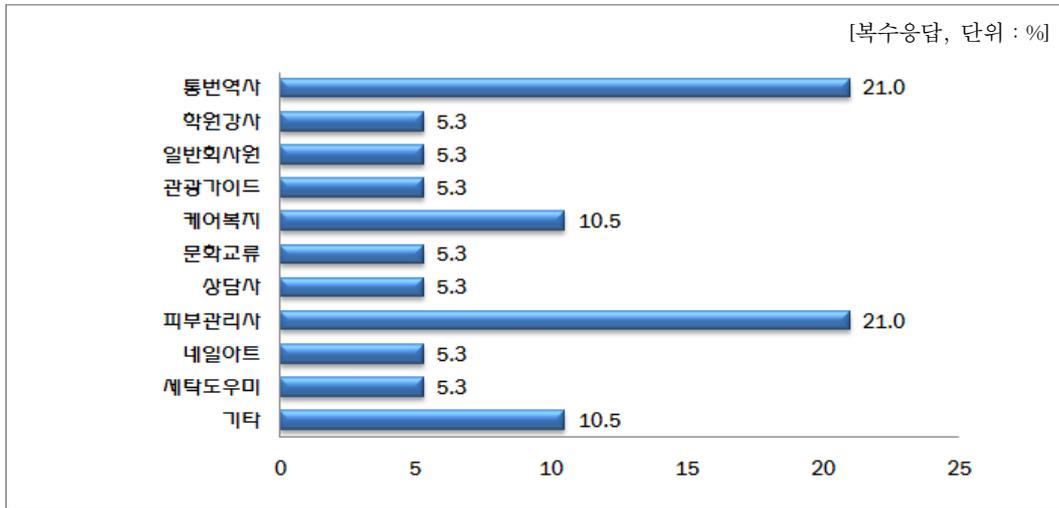
사. 적합 직종 및 창업아이템

1) 결혼이민여성 적합 직종

본 인터뷰에 참여한 결혼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여성에게 적합한 취업 직종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현재 우선 취업가능한 직종과 향후 취업가능한 직종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우선 취업가능한 직종으로는 원어민강사가 23.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통·번역사 19.2%, 다문화강사와 공장노무직이 각각 11.5%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취업가능한 직종으로는 통·번역사와 피부관리사가 각각 21.0%로 가장 많았으며, 산모도우미와 보육도우미, 노인요양보호사 등과 같은 케어복지 관련 직종이 10.5%로 그 뒤를 이었다.



■ 그림 IV-28 ■ 결혼이민여성 적합 직종(우선 취업가능 직종)



■ 그림 IV-29 ■ 결혼이민여성 적합 직종(향후 취업가능 직종)

지난해 본 재단에서 실시한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여성들(842명)의 직종 가운데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것은 전업주부(무직 포함)를 제외하고는 공장노동자와 같은 기술/생산직(3.9%)과, 외국어강사 혹은 다문화강사 등과 같은 강사/교사직(3.9%)이었다. 그리고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들(533명)이 가장 선호하는 직종으로는 강사/교사직(18.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종의 선호는 본 인터뷰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즉 경제활동 초기에는 공장노동자와 같이, 저임금에 노동 강도는 높지만 한국어 사용이 적고 특별한 자격이나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직종을 현실적으로 선호할 수밖에 없지만, 자신의 모국어나 모국문화를 활용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외국어강사나 다문화강사, 통·번역사와 같은 직종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 본 인터뷰에 참여한 결혼이민여성들은 자신의 모국어와 모국문화를 활용할 수 있고, 가사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으며, 같은 처지에 있는 결혼이민자를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물론 자녀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직종들을 선호했고,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적합한 직종이라고 판단했다.

“한국말을 하는 건 답답하지만, 영어는 편하니까 영어 강사 일을 하고 싶어요.” (결혼이민여성 A)

“... 우리들은 공장에서 일하고 싶어도 아이들, 집안 살림 때문에 안 되고... 이런 다문화강사 일, 통·번역 일이 더 나아요.” (결혼이민여성 I)

“우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말 배우면 강사하거나 자기 나라 문화를 외국인한테 가르쳐주거나, 같은 베트남 사람에게 상담해주거나 통·번역해 주는 일이 제일 좋아요. 그런 것으로 센터에서 일할 수 있잖아요.” (결혼이민여성 J)

“다문화강사나 통·번역사 같은 직업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도 선생님이고 전문직처럼 보이니까 좋을 것 같아요.” (결혼이민여성 R)

“강사로는 많지 않지만, 다문화강사 괜찮아요. 자기 나라 문화를 가르치니까요.” (결혼이민여성 P)

“엄마가 외국인인 우리 아이가 나중에 학교에 가면 친구들한테 부끄럽지 않고 우리 엄마도 (다문화강사)선생님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해서 시작했어요.” (결혼이민여성 J)

한편, 네일아트나 피부관리사와 같은 이/미용 관련 직종은 결혼이민여성들의 선호도와 취업가능성이 높은 직종인데 특히 네일아트의 경우 미적요소에 호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기술습득과정 등 비교적 취업준비기간이 짧고 향후 한국이나 모국에서 개인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직종을 선호하고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적합한 직종이라고 판단했다.

“관심이 있어서 배우게 됐는데, 혹시라도 잘 배우면 한국에서 사는 동안 취업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 한국에서 일하기 힘들어지면 중국에 가서 강사로 네일아트를 가르치려고요.” (결혼이민여성 B)

“원래 이 (네일아트)자격증과정은 3개월이면 끝나요. 시험을 치른 후 2급 자격증이 나오면 그 후 3개월 동안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쓸 수 있는 고급기술을 배우고요.” (결혼이민여성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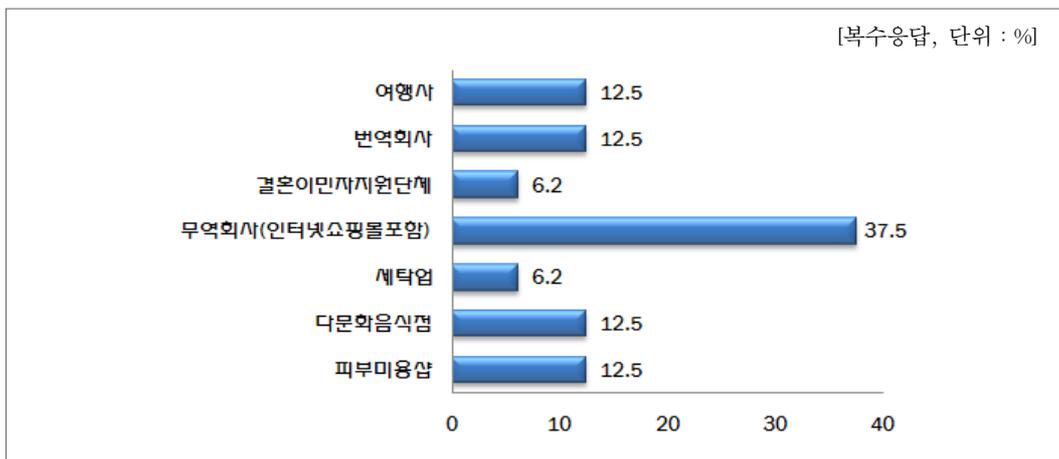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미용일을 좀 배웠는데, 지금 여기서 배우면 앞으로 미용사도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금은 한국말도 잘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배워서 그냥 취직하고요, 앞으로 돈 벌면 나중에 미용샵이나 마사 지샵 같은 것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이민여성 T)

2) 결혼이민여성 창업아이템

본 인터뷰에 참여한 결혼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여성에게 적합한 창업아이템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현재 우선 창업가능한 아이템과 향후 창업가능한 아이템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우선 창업가능한 아이템으로는 무역회사(인터넷 쇼핑몰 포함)와 모국음식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음식점이 각각 22.2%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무역회사(인터넷 쇼핑몰 포함)의 경우는 향후 창업가능한 아이템에서도 37.5%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 그림 IV-30 ■ 결혼이민여성 창업아이템(우선 창업가능 아이템)



■ 그림 IV-31 ■ 결혼이민여성 창업아이템(향후 창업가능 아이템)

본 인터뷰에 참여한 결혼이민여성들은 무역회사, 특히 인터넷쇼핑몰을 가장 선호하는 창업아이템으로 꼽았는데, 이는 한국과 모국에서 희소성 있는 상품을 거래품목으로 선정해 사업을 할 수 있고, 적은 자본과 인력으로 창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운영방법도 비교적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인터넷에 태국 물건을 파는 홈쇼핑몰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태국 전통옷 같은 것을 찾기 힘들어요. 전통의상이나 부채, 우산 같은 것을 멋지게 꾸며 놓고 팔고 싶어요. 가게를 차리려면 돈 많이 들어요. 하지만 인터넷 쇼핑몰은 웹사이트에 사진만 올려놓으면 가능해요.” (결혼이민여성 K)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택배로 물품을 보낼 수 있으니까 (인터넷 쇼핑몰이) 가능한 것 같아요. 자기 집에서 앉아서도 사업을 할 수 있고요. 물론 아이템을 잘 잡아야하겠지만요.” (결혼이민여성 E)

“요즘 자기 나라에서 한국 옷이나 물건 같은 거 인기 많아요. 만약 사업을 한다면 한국 옷이나 약세서리, 기념품 같은 거를 태국이나 중국 같은 곳에 같이 일을 하는 사람한테 파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는 친구도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돈도 좀 되는 것 같고 좋더라고요.” (결혼이민여성 L)

반면, 모국음식을 중심으로 하는 다문화음식점 창업과 관련해서는 모국음식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선호도가 높았지만, 한국인의 입맛과 기호에 맞는 요리아이템을 개발해야 하고 한국시장에 맞는 사업운영방식을 배워야 한다는 한계 또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할 생각은 있는데요, 한국 음식이랑 베트남 음식은 완전히 달라요. 베트남 국수를 먹어보면 냄새도 나고 기름기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인 식당에 가보면 기름도 없고 깔끔해요. 그래서인지 베트남 주인이 하는 베트남 음식점보다 한국인 주인이 하는 베트남 음식점이 더 잘되는 것 같아요. 베트남 주인이 하는 베트남 음식점에는 베트남 사람들만 와서 먹어요. 한국 주인이 하는 음식점에는 한국 사람만 오고요. 사업하는 방법도 다른 거 같아요.” (결혼이민여성 F)

“베트남 쌀국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베트남 사람들은 향이 강한 야채를 많이 쓰는데 한국인들 입맛에는 너무 강해서 안 맞아요. 하지만 튀김만두 같은 것은 한국인의 입맛에도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와서 많이 만들어봤는데 시택식구나 이웃들이 맛있다고 하세요.” (결혼이민여성 J)

그러나 결혼이민여성의 창업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되는 점은 아직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방향이 한국어교육이나 한국문화이해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고, 몇몇 기관에서만 선도적으로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취업 관련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결혼이민여성의 창업은 우리사회에서 담론화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구를 추진하면서 결혼이민여성의 창업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난 창업자금 관련 지원기관의 사업담당자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창업지원 모델 발굴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결혼이민여성의 취업도 어려운데, 창업까지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엄두도 못 내고들 있어요. 창업이라고 해봤자 요리, 음식, 학원시장 뭐 이런 정도로 제한적이고... 저희도 처음엔 쉽게 발견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절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창업지원 예산이 2천 만원 정도 남아있는데요, 풀려고 해도 안 풀립니다. 적격자가 안 나타나서요. 한국인 개인 창업 기준으로 찾으려면 하나도 못 찾아요. 저희는 '서류심사→현장실사→직무능력평가→최종면접' 과정을 두고 있는데, 대부분 2단계를 못 넘어서 선정된 창업대상자가 없습니다.” (기관종사자)

이와 관련하여, 본 인터뷰에 참여한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창업 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 결과, 결혼이민여성들은 자본은 물론, 창업에 필요한 정보와 지원교육, 창업관련 규제와 법률지식 제공 등을 시급하게 충족될 필요조건으로 꼽았다. 더

불어 결혼이민여성 일개인의 힘으로는 창업을 시작할 수 없으므로 공공기관이나, 직장인의 경우는 소속된 기관의 신원보증 및 상담, 동행 등과 같은 지원도 필요로 한다. 즉 창업을 위한 사전상담부터 창업교육, 창업보육, 창업경영지원 등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처리해 주는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One-Stop 창업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사업을 하려면 돈하고 정보가 필요해요. 사업정보요. 그리고 한국에서 세금 내는 법이나 제한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교육을 어디서 하는지,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혼이민여성 L)

“사업을 하려면 솔직히 혼자서는 하기 힘들어요. 한국인과 함께 하든지, 같은 나라 친구들과 함께 하든지... 창업자금 같은 것을 지원받을 때 공공기관을 끼고 가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예를 들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들이나 회사 측에서 상담을 해주거나 같이 가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결혼이민여성 E)

앞서 취·창업 지원프로그램 현황조사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창업이 취업보다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이 많고, 개인적 사업 역량과 경험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여건 등에 따른 변수와 영향도 큰 만큼, 결혼이민여성이 창업을 할 경우 한국어 활용과 자본 확보는 물론, 사업적 역량과 사회·경제 관련 정보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들은 취업에 치중된 현재의 지원시스템에서 한걸음 나아가 결혼이민여성에게 적합한 창업아이템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제3절 시사점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여성인적자원개발 관련기관에서 결혼이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결혼이민여성들이 얼마나 참여하였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결혼이민여성만을 대상으로 취·창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 또는 지원하고 있는 여성인적자원개발 관련기관들 중 90개 기관 중 최근 3년간 결혼이민여성만을 대상으로 취·창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관은 16.2%에 지나지 않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그램의 직종내용은 다문화강사양성프로그램, 요리/제과, 제빵, 정보화교육, 진로/직업탐색, 네일아트와 원어민강사, 통역/번역사, 바리스타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여성의 교육프로그램 수료율은 97.6%로 높았으나 취업률은 18.7%에 그쳤는데, 이는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일반 교육프로그램 수료자 취업률 37.35%,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취업률

67.4%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결혼이민여성들이 많이 참여한 프로그램으로는 다문화강사, 정보화교육, 원어민강사, 요리/제과, 제빵 등의 순이며 프로그램의 내용구성은 기술교육과 현장실습, 직업의식교육, 자격증취득 등에 대한 내용 순으로 나타났는데 직업의식교육이 일반여성대상 프로그램과는 달리 강조되고 있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결혼이민여성들이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교육 후 어렵게 취업한 후 직장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해 그만두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직무기초소양 등 직업의식교육에 강조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

일반 여성 대상 교육프로그램에 결혼이민여성들이 참여한 경우는 14.5%로 매우 낮았으며 교육직종으로는 이/미용, 요리/제과, 제빵, 양재, 네일아트, 홈패션, 케어복지 순으로 나타나 결혼이민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보다 기술부분에 중점을 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프로그램 수료율도 74.5%로 낮았는데 그 이유로는 수업진행속도가 빠른 점, 언어소통상의 어려움 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선 실무담당자들이 프로그램 운영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결혼이민여성들의 모집, 예산확보, 공간 확보 등으로 아주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참여 결혼이민여성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프로그램 내용의 난이도, 가사양육문제, 수강료 부담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된다.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창업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체제 구축은 거의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는 정보부족, 업무부담, 구심기관이 없어서 등으로 나타났다. 취·창업지원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협력체제가 이루어질 때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구심기관을 정하든 컨소시엄 형태를 취하든 협력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된다. 설문조사 결과 구심기관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기관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컨소시엄 형태를 취하는 것도 좋은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한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있느냐의 질문에 35.5%만이 운영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련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이 제시가 필요하며, 취·창업 중 어느 내용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취업부분 63.6%, 취·창업부분 27.3%로 나타났으며 창업부분은 운영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민자의 창업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프로그램 실시에 필요한 지원으로는 예산확보 48.7%, 취업가능한 수요처 발굴 35.2%,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35.2% 등으로 나타났다.

기관 담당자들이 판단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적합 직종으로는 원어민강사, 다문화강사, 산모도우미, 보육도우미와 같은 케어복지 관련 직종, 통·번역사 9.7% 등으로 드러났으며³³⁾, 향후 유망직종으로는 외국어/다문화강사, 통·번역사, 상담사, 관광가이드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능한 창업업종으로는 다문화음식점, 네일아트샵, 외국어 다문화강사 파견 사업, 이/미용샵 등으로 나타났으며, 향후에는 다문화음식점, 네일아트샵, 케어복지사업, 인터넷몰 등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프로그램개발이 요구된다.

결혼이민여성들 중 취·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20명을 심층면접한 결과 취·창업교육 참여의 일반적 현황과 이것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결혼이민여성들이 취·창업교육에 참여하는 경로는 대부분 지인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혹은 지역사회복지관의 종사자의 소개이며, 참여동기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취업필요성에 의한 것이며, 직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일정부분은 일상생활이나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기 위해 또는 향후 모국으로 돌아가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계획 하에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참여시 한국어 미숙, 자녀돌봄 문제, 수업료 등 비용부담 등의 어려움이 있으나 자신의 자긍심이나 자존감 내지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자긍심을 키워주는 부분도 컸다. 직장생활에서는 인종이나 성차별문제, 직장문화에 대한 이해부족, 가족의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체로 결혼이민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한 수업참여도가 높고 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일부분 일반여성들과의 수업도 한국문화이해를 돕는 차원에서의 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여성들은 현재 취업가능한 직업으로 원어민 강사, 통·번역사, 다문화강사, 공장노무직, 의류수선사 등을 꼽았으며 향후도 거의 비슷했으나 피부관리사, 케어복지 등의 서비스직이 포함되었다. 적합한 창업아이템으로는 다문화음식점, 인터넷몰 등이었으며 향후 창업업종으로는 인터넷몰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창업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취·창업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는 주로 지인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혹은 지역사회복지관의 종사자 소개인 것으로 드러나 사회연결망이 없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정보제공 내지 기관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한국어교육, 자녀돌봄문제, 가족의 이해, 수업료 등 비용 문제 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즉 한국어 취업반 등을 개설하고 아이돌보미 제도를 이용하여 자녀문제를 해결하고, 가족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교육 실시, 수업료 내지 재료비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 참여동

33) 제5장에서 다문화강사와 산모도우미의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가 경제적 어려움의 해결이므로 교육 후 취·창업으로의 연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맞춤형 교육이 기본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수요처를 발굴하고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동기부여를 위해 결혼이민여성들을 취업시키는 사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넷째, 성평등한 직장환경의 조성이 요구된다. 직장생활의 어려움으로 차별편견문제, 직장문화이해부족 등을 들고 있으므로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창업지원정책과 더불어 일반시민에 대한 다문화이해교육이 쌍방향으로 지원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섯째, 결혼이민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다양한 교육운영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교육운영방법으로 결혼이민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수료율도 매우 높았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한국여성과 같이 참여하는 것이 각종정보제공 및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어 이는 수업내용에 따라, 참여자의 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바람직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섯째, 취업과 마찬가지로 창업에 대한 욕구도에 매우 높으므로 창업에 대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관련기관 실무담당자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향후 창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결혼이민여성들은 창업에 대한 욕구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창업아이템 발굴과 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W

결혼이민여성 적합 직종과
교육프로그램개발



제1절 결혼이민여성의 적합 직종 개발

1. 적합 직종 개발의 필요성

결혼이민여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경제사회적 역량강화는 필요하므로 정부나 지자체가 전문적이고 체계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취·창업 교육후 취업으로의 연계를 위해서는 이들에게 적합한 직종이나 업종을 발굴한 후 이에 대한 단계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여성들의 적합 직종이나 업종을 발굴하는 것은 국적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개인적인 능력, 성향, 지역적 특색, 기업체 수요, 문화, 모국에서의 직업, 성격, 희망욕구 등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적합 직종을 발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결혼이민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기존 문헌과 선행연구, 결혼이민여성 취·창업관련기관들이 시행했던 프로그램을 조사 분석하고, 결혼이민여성의 심층면접, 관련 기관담당자들의 인터뷰 등의 의견을 고려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가능한 한 단기의 직업훈련 뒤에 취업으로의 연계가 가능한 직종을 고려하여 적합 직종을 알아보았다.

결혼이민여성의 적합 취업직종으로는 다문화강사, 통·번역사, 원어민강사, 산모도우미, 계약직 공무원, 네일아트, 바리스타, 이/미용사, 관광가이드 등이 있으며 적합한 창업업종으로는 다문화음식점, 인터넷몰, 다문화강사 파견업, 이/미용아트샵, 수공예품점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적합 직종에 대한 취·창업교육 후 취·창업으로의 연계를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연계를 통해 체계적,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이 경우 가정의 협조, 일반시민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 등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지원 정책은 쌍방향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 적합 직종으로 나타난 것은 개인들의 학력, 능력이나 자격증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결혼이민여성들의 현재 상황만을 고려하여 결혼이민여성들과 전문가들이 꼽은 직종이다. 따라서 고학력의 결혼이민여성들이 전문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과 결혼이민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인정해 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표 V-1 | 결혼이민여성들의 적합 직종 및 업종

구 분	내 용
결혼이민여성 취업 유망직종	간병인, 산모도우미 , 검침원, 가사도우미, 방과 후교사 , 아이돌보미, 장기노인요양보호사, 바리스타 , 급식도우미, 조리사, 제과제빵사, 캐디, 매장판매원, 피부관리사, 네일아트, 의류수선사 ,
결혼이민여성 특화직종	원어민강사, 다문화강사, 다문화가정상담원, 한국어보조강사, 통·번역사, 공공기관 및 지자체 이주민 관련 업무 사무직, 다문화음식 , 디자인 형태의 직종, 국제결혼정보회사원, 발마사지요원, 다산콜센터 요원, 지역문화 유적해설사 및 관광가이드, 지역문화 문화예술 상품 제조, 지역특산물 제조 및 판매
결혼이민자 창업 업종	다문화음식점 , 슈퍼마켓, 의류판매, 식품야채판매, 외국어교육학원, 미용실, 피부관리실, 관광서비스업, 수공예품약세사리 판매점, 다문화상품 무역업, 인터넷몰

* 볼드체가 다른 직종보다 더 적합한 직종임

2. 적합 직종과 업종에 대한 예시

가. 다문화 강사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결과 결혼이민여성의 적합 직종으로 다문화강사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결혼이민여성의 인적자원 중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가 가장 경쟁력이 있으며 우리 사회에 다문화인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하므로 실질적인 다문화사회를 위해서는 매우 필요한 직종이다. 또한 결혼이민여성이 그 핵심주체로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 직종에 대한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적극적인 성격과 의사소통 능력 등을 겸비한 결혼이민여성들에게 특화될 수 있는 적합한 직종이며, 학부모 대상 및 기업체 관련 사업으로도 이러한 사업이 확산될 수 있으므로 준비된 다문화강사로서 양성교육을 받아 소정의 자격증을 소지한다면 전망 있는 경쟁력 있는 직종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시설 나아가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필수적으로 다문화강의가 개설되어야 하고, 일반시민 교양강좌, 평생교육원 등에서도 다문화강의를 하도록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방과 후 교실에서 다문화강사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강사는 자국의 언어와 동요, 요리, 간단한 놀이 등을 통한 문화와 풍습 등을 소개하는 교육활동을 펼치게 되는데, 다문화이해 수업을 위해서는 비용이나 준비물품 등이

많은 보수는 적은 편이다. 보통은 1회 강의에 결혼이민여성 2명이 파견되는 경우가 많아 한사람에게 돌아가는 보수가 너무 적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강의는 일회성으로 이루어져 직업으로 갖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으며 강의 내용도 좀 더 심화된 내용으로 다루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가 요구된다.

나. 통·번역사

정부는 결혼이민자를 통·번역 전문인력으로 채용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들에게 통·번역서비스 제공하고 있는데 전국 88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160명이 12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다.³⁴⁾

서비스 이용방법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이메일 신청,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파견서비스를 제공한다.³⁵⁾ 한국체류기간이 2년 이상, 고졸이상 학력을 갖춘 결혼이민자 중에서 한국어와 출신국 언어로 통·번역이 가능한 한국어능력시험 기준 4급 이상의 수준을 갖춘 결혼이민자는 일정기간 교육 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치되는데 월 80만원과 교통비 15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국적별 통·번역사 분포가 중국과 베트남에 몰려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제일 다양한 분포는 7개국으로서 서울, 전북 등이며 6개국은 충북, 충남, 5개국 강원, 경북 등으로 5개 국가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6개 지역으로 전체 지역의 1/3정도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에 사는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민여성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국적별 통·번역사 배치가 필요하고 결혼이민여성들의 적극적 참여유도와 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³⁶⁾

34) 지원언어명: 중국(50), 베트남(60), 필리핀(16), 몽골(10), 태국(8), 우즈베키스탄(1), 캄보디아(3), 인도네시아(3), 러시아(6), 일본(2), 네팔(1) 등임

35) • 가족생활 및 국가간 문화차이 등 입국초기 상담
 •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국적 체류 관련 정보제공 및 사업안내
 • 임신 출산 양육 등 생활정보 안내 상담 및 교육과정 통역
 • 가족간 의사소통 지원 및 위기 대응을 위한 통역파견
 •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알림장 번역, 학교 상담시 통역파견
 • 행정·사법기관, 병원 진료 등에 필요한 통역 파견
 • 기타 위기상황 발생시 및 전화이메일 통·번역 업무 처리 등

다. 원어민 외국어 강사

중국과 필리핀, 일본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으로, 이는 언어영역이 전문직임과 동시에 비교적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직종이기 때문이다.

이 직종은 도시와 농어촌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직종이지만, 도시의 경우 수요자의 기대 수준이 높고 인적자원도 풍부해 대도시 지역보다는 농어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원어민 강사나 외국어 학습보조자로의 취업률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한 자들은 방과후 교실 영어지도사나 영어독서지도사, 학원강사, 외국어 학습보조교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방과후 아동지도사나 영어독서지도사 등은 자격시험이 있어 이에 대비시킬 수 있다.

다만 이들은 한국어 실력부족으로 인해 학생들과의 의사소통 한계, 리더십 부족으로 인한 학생통솔력 부족 등이 문제되며, 개별적으로 취업을 하고 근무조건도 다양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즉 지역내 원어민 강사수요를 파악하고 강사풀을 만들어 교육청에서 관리하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보수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처우를 개선하며 원어민

36)

지역 (명수)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인도 네시아	러시 아	캄보 디아	태국	몽골	우즈벡	네팔	비고(분포국 적별수)
서울(12)	4	1	3	1	1	1	1					7
부산(4)	1		3									2
대구(8)	4		3	1								3
인천(6)	2		2					1	1			4
광주(7)	2		2	2				1				4
대전(3)	1		1			1						3
울산(3)			2						1			2
경기(12)	5		6						1			3
강원(15)	4		5	3		2				1		5
충북(13)	3		5	1		1		1	2			6
충남(15)	3		4	2	1			2	3			6
전북(21)	6		7	2		1	1	2	2			7
전남(12)	5		5	2								3
경북(15)	6	1	6		1		1					5
경남(10)	3		5	1							1	4
제주(4)	1		1	1				1				3
합계	50	2	60	16	3	6	3	8	10	1	1	160

민감사육성을 위한 매뉴얼 개발을 함으로서 체계적인 강사양성과 취업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라. 산모도우미

낮선 한국에서 친정부의 도움없이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은 시집식구들에게 돌봄을 받거나 비싼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정서적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는다. 또한 국가에 따라 산후 문화가 다르므로 같은 출신국가의 결혼이민여성들이 산후도우미를 해 주면 친정식구가 도와주는 것처럼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생활에 적응하여 생활을 유지하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교육을 시킨 후 산모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게 한다. 후에 산모도우미에 대한 경험을 쌓으면 한국인 대상으로 나갈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 좋은 직종이라 생각된다.

현재 동작구에서는 현재 결혼이민여성들을 산모도우미로 파견하고 있는데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2010년부터 한울타리 플랜에 의해 산모도우미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산모도우미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마. 의류수선사

동남아시아 국가의 결혼이민여성들은 손재주가 탁월하므로 섬세하면서도 노동집약적인 일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여성들이 재봉, 의류제작과 봉제인형제작 등을 구체적인 선호직종으로 선택하고 있다.

의류수선직종은 여성 전통적 직업으로 결혼이민여성의 접근이 용이하며 거주지역 내 세탁소, 의류판매점 등과 계약을 맺어 하청을 받아 자영업 형태로도 운영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으며, 결혼이민여성 중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의 결혼이민여성들은 저연령이므로 여성특유의 섬세함을 살려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서울의 경우 베트남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북권에는 의류봉제업이 특화되어 있는 지역이므로 지역적 특색을 살려 이 업종을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바. 한국어 보조강사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강좌에서 모국어로 함께 적절히 설명해 줄 수 있는 동료 강사가 있다면 효과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 강사의 경우 적절한 양성교육을 받아 자격을 갖춘 후에는 결혼이민여성 뿐만 아니라 모국의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전일제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일이 자원봉사적인 일로서 치부되어서는 안 되고 일정부분 노동에 대한 대가는 주어져야 하므로 일정한 액수의 급여는 보장받아야 한다.

사. 계약직 공무원

지역마다 결혼이민여성의 증가로 인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됨에 따라 행정기관, 사법기관 등에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통역업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상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³⁷⁾ 일부 자치구에서는 결혼이민여성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해 결혼이주자들의 행정업무를 담당시키고 있다. 고학력의 결혼이민여성들이 많으므로 이들을 일정기간 교육을 시킨 후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충분히 책임감 있게 잘 해 낼 것이다. 또한 공무원이 가지는 상징성이 있으므로 결혼이민여성들에게 롤 모델로서의 역할도 가능하다.

아. 커피전문점 바리스타

커피전문점의 사원이 되는데 학력, 면허, 자격 등 특별한 것은 필요 없으며 기본적으로 고객의 주문내용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었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서비스 분야에 대한 결혼이민여성의 선호가 높고, 기업의 홍보마케팅의 일환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프로젝트를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를 추진하며 이에 따른 전략으로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초급 바리스타 교육과정과 취업을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한 직종이라고 본다.

커피는 외국 식음료 문화라는 이미지가 있어 외국인 바리스타라는 점이 고객들에게 신선한 이미지를 전달해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 특히 베트남은 커피산지이기도 하므

37) 서울가정법원도 이혼하려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결혼이민여성을 통역자로 쓰고 있다. 통역대상 언어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태국어, 인도어 등이 있다

로 베트남 출신들에게 더욱 유망한 직종으로 여겨진다.

자. 제과제빵사

필리핀과 베트남의 경우 서양문화와 음식에 익숙하여 같은 식품제조에 있어 한국 전통 식품 제조보다는 제과제빵에 대한 적응이 빠를 것으로 예측되며,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고졸 학력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과제빵사 직종이 가능하다고 본다. 빵류 제조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 수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고 제조업분야에서 고용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이 있지만 한국어 능력 수준을 고려할 때 결혼이민여성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기란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또한 용어의 어려움, 노동강도 등으로 처음에는 쉽게 참여했으나 직업으로의 연계는 쉽지 않은 상태이다.

차.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최근 인터넷 쇼핑몰이 활성화 되면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장점과 소비성향이 홈쇼핑, 인터넷 등을 이용한 간접구매가 늘고 있으므로 매우 유력한 창업아이템으로 결혼이민여성들의 선호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여성이 사업초기에는 혼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기는 어렵지만 몇몇이 동업형식으로 각자 업무 분야를 나누어 운영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거주하는 지역 특산물과 출신 국가의 특산물 등을 주력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시와 농촌, 한국과 결혼이민여성의 모국을 연결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학력과 연령에 제한이 없다는 점과 온라인상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언어적인 문제가 발생할 일이 적으며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 특산물과 출신국가의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도 환영받을 수 있을 것이다.

타. 지역 특산물 제조사

결혼이민여성에게 맞는 농어촌 직종이 없다는 것에서 기인한 특화 직종으로서의 지역 특산물제조사는 기존의 전통음식을 제조하는 대규모 식품회사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공장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과 달리 지역별 특성을 살린 품목을 생산하는 것과 이를 공동

작업장에서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떡, 한과, 장류 등의 전통음식을 제조하는 데 특별한 학력이나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으며, 모든 공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숙련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공동 작업장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품목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타 제조업체의 생산품과 차별화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비영리단체의 매장이나 바자회 등을 통해 전국적인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제2절 적합 직종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결과 결혼이민여성들이 현재 취업이 가능하고 그들이 원하는 적합 직종으로 꼽은 직종에서 가장 유력하다고 보이는 다문화강사와 산모도우미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한다. 서울시도 2010년부터 산모도우미와 다문화강사지원 사업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 프로그램을 연구하여 제시하는 것은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본다.³⁸⁾ 특히 다문화강사사업은 여러 관련기관들이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행함으로써 모범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졌으며, 산모도우미 교육프로그램은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 많고 결혼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산모도우미 프로그램은 없는 편이므로 이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교육프로그램은 앞으로 다문화강사나 산모도우미 교육프로그램 진행시 참고가 될 것이다.

1. 결혼이민여성 다문화 강사 양성 프로그램

가. 직종 선정배경 및 이유

- 다국적 및 다문화 거주자의 증가로 문화소통 필요성

국내 들어온 장기체류 외국인이 2009년 5월을 기준으로 110만이 넘어섰다. 이는 이주노동자, 새터민, 국제결혼가정의 증가에서 기인되는 것이며, 이로써 우리의 일상에서 이주민을 만나는 상황은 매우 빈번해졌다. 이것은 단순히 만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나타낸

38) 본 장에서는 가장 적합한 직종으로 나타난 다문화강사와 산모도우미 양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서울시의 다문화 한울다리 플랜에 의하면 다문화강사와 산모도우미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므로 이에 대한 양성프로그램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기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YWCA 등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시킨 실무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다. 사람이 다른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고, 각자의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이 때문에 사람 사이의 갈등과 오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문화적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문화교육은 필요하다.

- 이주민 당사자로서의 문화전달자 역량 개발 및 성장 가능성

이주민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문화적 갈등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자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화갈등 체험은 문화의 전달자로서 중요한 자원이 된다. 특히 이주민의 상황은 한국사회에서 아주 세밀하고 생생한 문화교육의 실체가 되며, 이로 인해서 이주민은 다문화 교육에 매우 적합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주민이 한국의 어려운 취업상황에서도 보다 유리한 장점은 두 문화의 경험자로 일상적인 문화소통의 중재자 역할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자기 주체성을 가진 이주여성의 역할 모델 개발

이주여성에게는 자기 주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모국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문화란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는 역사성, 생명력을 갖는다. 특히 디아스포라로 이주의 경험은 이주여성이 새로운 주체성과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데에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이며, 특히 이러한 역할은 사회적인 의미를 만들어 가면서 새로운 이주민의 역할 모델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프로그램의 목적 및 취지

- 결혼이민여성의 인적자원개발과 전문성 함양
- 다문화강사로 활동가능한 전문성 있는 강사양성
- 결혼이민여성의 적합한 일자리 창출모델로 파일럿 효과 극대화
- 다문화인식개선으로 사회통합에 기여

다. 교육시간(월/주 단위)

- 신규자 기본교육 : 60 시간
- 경력자 보수교육 : 20 시간

라. 교육대상 : 결혼이민여성

마. 자격요건

- 자국 고교이상 학력 소유자
- 한국어 중급이상 활용자
- 강사로서의 자질과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 자

바. 교육내용

1) 신규자의 기본교육과정 개요

- 신규자의 기본과정을 총 60시간으로 하며 이중 강의 40시간, 실기 20시간으로 구성한다.

2) 경력자의 보수교육과정 개요

- 경력자의 기본과정을 총 20시간으로 하며 이중 강의 10시간, 실기 10시간으로 구성한다.

표 V-2-1 신규자의 기본과정 (60시간) 개요

교육 내용	총교육시간 (60 시간)		
	강의 (40시간)	실기 (20시간)	중요도
1. 다문화의 이해란 무엇인가.	9		
1) 문화의 구성과 개념	3		☆
2) 문화의 일반성과 독특성 (종교, 인종, 민족, 성별 등)	3		☆☆
3) 일상생활영역에서 문화적 갈등과 소통		3	☆☆☆
2. 다문화의 차이 및 다양성 (아시아를 중심으로)	27		
1) 여러 나라의 역사, 환경, 생활풍습, 언어 등 (중앙아시아 : 몽골, 우즈베크 키스탄, 키르기스탄 등)	6		☆☆
2) 여러 나라의 역사, 환경, 생활풍습, 언어 등 (동남아시아 :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등)	6		☆☆
3) 여러 나라의 역사, 환경, 생활풍습, 언어 등 (서남아시아 : 파키스탄, 인도, 네팔, 이란 등)	6		☆☆
4) 여러 나라의 역사, 환경, 생활풍습, 언어 등 (동아시아 : 중국, 대만, 일본 등)	6		☆☆
5) 기타 독특한 문화와 생활풍습	3		☆☆
3. 문화전달 방법론	20		
1) 유아와 아동의 발달 특징	3		☆
2) 대표적인 교구만들기(가면, 음식 등)		6	☆☆☆
3) 문화체험 교구사용 사례 및 워크샵(놀이, 춤, 의복 등)		3	☆☆☆
4) 교육안 만들기(PPT 자료만들기, 주요사이트 검색)		3	☆☆☆
5) 강의 시연		5	☆☆☆
4. 다문화 감수성 강화	4		
1)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태도 형성	2		☆☆
2) 다문화적 인지능력 향상 및 다문화 정체성, 감수성 강화	2		☆☆

【 표 V-2-2 】 교과목 - 1. 다문화 이해

교과목 : 1. 다문화 이해				
교육목표		1. 다양한 문화적 감수성을 높인다. 2. 문화차이와 갈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3. 성, 인종 등에 대한 차별적 문화를 인식한다.		
교육내용		교육시간 [총 시간]	교육 방법	교육 매체
대단원	중단원			
1. 문화의 구성 문화의 개념	가.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란? 나. 다른 나라, 다른 문화의 개요	3	강의	원고 ppt
2. 문화의 보편성과 차이 성(종교, 인종, 민족, 성별 등)	가. 종교에서 파생된 문화 나. 민족, 지역에서 전해져오는 설화 다. 가부장적 문화의 보편성과 차이성	3	강의	원고 ppt
3. 생활에서의 문화적 갈등과 소통	가. 생활에서의 문화적 갈등 나. 문화차이, 갈등, 소통	3	사례 실기	OHP 전지

표 V-2-3 교과목- 2. 다문화의 차이 및 다양성

교과목 : 2. 다문화의 차이 및 다양성 (아시아를 중심으로)				
교육목표	1. 아시아 국가별 다양한 문화를 체험한다. 2. 아시아의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지한다. 3. 문화에 대한 무조건적 존중과 강요를 극복한다.			
교육내용		교육시간 [총 시간]	교육 방법	교육 매체
대단원	중단원			
1. 중앙아시아	가. 중앙아시아의 개요 나. 몽골에 대한 문화와 풍습 다.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문화와 풍습 라.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문화와 풍습 마. 기타 중앙아시아권 국가	6	강의 사례 발표	원고 ppt
2. 동남아시아	가. 동남아시아의 개요 나. 베트남에 대한 문화와 풍습 다. 캄보디아에 대한 문화와 풍습 라. 태국에 대한 문화와 풍습 마. 필리핀에 대한 문화와 풍습 바. 기타 동남아시아권 국가	6	강의 사례 발표	원고 ppt
3. 서남아시아	가. 서남아시아의 개요 나. 파키스탄에 대한 문화와 풍습 다. 인도에 대한 문화와 풍습 라. 네팔에 대한 문화와 풍습 마. 기타 서남아시아권 국가	6	강의 사례 발표	원고 ppt
4. 동아시아	가. 동아시아의 개요 나. 중국에 대한 문화와 풍습 다. 일본에 대한 문화와 풍습 라. 한국에 대한 문화와 풍습 마. 기타 동아시아권 국가	6	강의 사례 발표	원고 ppt
5. 기타 아시아	가. 아시아의 공통점과 차이점 나. 소수민족의 독특한 문화와 풍습	3	강의	원고 ppt

【 표 V-2-4 】 교과목- 3. 문화교육방법론

교과목 : 3. 문화교육 방법론				
교육목표	1. 연령별 아동의 발달특징 및 지도요령을 터득한다. 2. 아동 눈높이에 맞는 문화체험 교구를 제작			
교육내용		교육시간 [총 시간]	교육 방법	교육 매체
대단원	중단원			
1. 유아와 아동의 발달 특징	가. 5-6세 유아의 발달 특징 나. 7-8세 초등저학년의 발달 특징 다. 연령별 놀이지도 요령	3	강의	원고 교구 활용
2. 대표적인 교구 만들기	가. 재미있는 가면 만들기 나. 색종이로 나라별 국기 모자이크 다. 닭고기를 활용한 나라별 음식만들기 라. 쌀을 이용한 음식 알아보기 마. 간단한 월남쌈 만들어 보기	6	실기	색종이 교구 자료
3. 문화체험 교구 사례 및 워크샵	가. 전통놀이 배워보기 나. 전통악기 배워보기 다. 나라별 옷을 입는 방법 익히기 라. 동화와 동요 배워보기	3	실기	교구 자료
4. 교육안 만들기	가. 나라별 모범 교안 만들기 나. ppt 프로로글매 활용법 익히기 다. 주요 사이트 및 정보공유하기	3	실기	개인별 PC
5. 강의시연	가. 강의 시연 나. 개인별 강의 시연 모니터링	5	실기	캠코더

표 V-2-5 교과목- 4. 다문화감수성 강화

교과목 : 4. 다문화 감수성 강화				
교육목표	1. 차별과 편견에 대해 성찰하기 2. 다문화적 인지능력을 향상한다. 3. 다문화 정체성과 감수성을 강화한다.			
교육내용		교육시간 [총 시간]	교육 방법	교육 매체
대단원	중단원			
1. 세계화와 이주자 정체성	가. 세계화시대와 문화 정체성 나. 문화전달자, 초국적 행위자로서의 다문화 창조자의 역할	2	강의	
2. 다문화 감수성의 높여라	가. 편견과 고정관념의 재발견(인권지수, 성편견 지수 등) 나. 다문화 감수성 훈련방법	2	강의	

사. 기타

1) 매 차수에 대한 설명(특징, 목적, 매뉴얼, 기존 커리큘럼과의 차별성 등)

가) 다문화의 이해

- 다른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이런 문화가 일상생활, 관계 속에서 어떤 과정과 맥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접근한다.
- 구체적인 문화적 갈등에 대해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한다. (다문화 소통의 현장성 강화)

나) 다문화의 차이와 다양성

- 단순히 나라별 차이를 가르치기 보다는 아시아라는 큰 틀에서 서로 차이가 있지만 같이 살아가고 소통할 수 있도록 역사, 환경, 생활풍습, 언어 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문화는 단순히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며, 문화에도 수많은 편견과 고정관념이 존재하기도 하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태도의 필요성을 공감한다.

다) 문화교육 방법론

- 눈높이에 맞는 문화전달 방법론을 익히고, 다른 문화에 대한 친근감을 높일 수 있도록 체험과 실습의 과정을 개발한다.
- 구체적인 문화전달자로서의 기술과 독창적인 교육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라) 다문화 감수성 강화

- 국적이거나 성별, 연령, 인종, 종교 등의 환경이 세계화와 이주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문화전달자, 초국적 행위자, 다문화 생산자로 다문화 감수성을 개발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한다.

2) 전체 과정(차수) 중에서 필수과정과 선택과정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구별설의 설명

필수과정 : 다문화의 이해와 다문화 감수성 강화 (10시간)

선택과정 : 다문화의 차이와 다양성, 문화전달 방법론

(다문화의 차이와 다양성 : 국제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는 아주 광범위한 내용이다. 따라서 무엇을 초점에 두고 강의를 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의 범위가 달라질 것이다.

문화교육 방법론 : 학습자가 누구냐에 따라 문화교육 방법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학습자 대상을 고려하고,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화교육 방법론의 개발이 시급하다)

3) 해당 커리큘럼 및 보수교육 등에 대한 고려사항, 정책제언, 향후 발전방안 등 제시

현재 다문화이해 교육 혹은 국제사회 이해교육 등으로 다문화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 전달자로서 한국인 일반인 혹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더욱이 기존 다문화 강사양성 교육프로그램 내용은 아주 차이가 심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대부분의 경우 단순히 나라별 특이한 문화를 전달하는 방식이거나 혹은 외국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다문화강사가 양성되고 있다. 이는 다문화 이해 교육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본적 틀조차도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다. 따라서 위에 제시된 다문화강사 양성과정도 이와 크게 다르

지 않고,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

다만 최근 다문화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사회에 노동이나 결혼을 통해서 이주해 온 외국인을 접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국제결혼은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문화 차이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음으로 소통되지 못하고, 긴장과 갈등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쉽게 문화적 차이를 알게 하기 위해 나라별 문화가 소개되고 있으며, 여기서도 아시아 위주로 국가별 소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커리큘럼도 학습 중심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문화에 대한 생생하고 구체적인 체험과 전달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욱 깊이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주민 당사자가 하는 문화교육을 모색해 보고 있지만 이것에도 한계가 있다.

또한 문화라는 속성에도 기본적으로 형성되어온 과정에서 편견과 차별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순한 문화전달이 아니라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한다. 즉 사회 구성원이 다른 문화나 시각 차이를 갖는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일깨워 주는 것이고, 이것을 자연스럽게 다문화 감수성으로 체화되어야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과 내용을 무엇을 어떻게 담아내야 하는지 광범위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2.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교육프로그램

가. 직종 선정 배경 및 이유

10년 가까운 한국 결혼이주여성의 역사 동안에 결혼이민여성의 생활·문화적 정착을 돕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었다. 하지만 전체 결혼이민여성 가구 중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52.9%,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는 57.7%에 이르러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통한 가정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절실한 형편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이주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경우 취업 및 초기 투자비용 마련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본없는 개인사업형 모델이 접근하기에 유리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기혼여성이 공동으로 갖게 되는 임신, 출산, 육아 그리고 가사의 경험을 자산으로 근로할 수 있는 경제활동 분야로 생활도우미가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그 중에서도 다른 서비스에 비해 이용율이 높은 산모도우미로 활동하되 출신국가의 다른 이주여성을 위한 산후서비스를 한다면 거부감이 적으며 만족도도 높을 수 있어 서비스 직업인으로 정착하기에 더욱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나. 목적

-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교육으로 결혼이민여성의 출산 후 회복과 건강,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이주여성 산모도우미를 배출함으로써 같은 출신국가의 다른 결혼이민여성의 다문화가정 내에서의 안정적인 산후조리와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 생활·문화의 안정화, 다문화여성의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화, 그리고 출산이후 여성 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으로 활동함으로써 결혼이민여성의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한다.

다. 교육시간

- 신규자 기본교육 : 80시간
- 경력자 보수교육 : 월 3시간
 - ※ 신규자 기본교육은 일 8시간, 총 10일간(월급) 진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안하나 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일 최소 4시간 이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라. 교육대상 : 결혼이민여성

마. 자격요건

- 한국거주경력 3년 이상의 여성(의사소통 원활한 자)
-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

바. 교육내용

1) 결혼이민여성 산후조리사 신규자의 기본과정 개요

- 신규자의 기본과정을 총 80시간으로 하며 이중 강의 42시간, 실기 38시간으로 구성한다.
 - ※ 본 교육과정은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으로서 진행 시,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언어·문화적 이해의 한계성이 있어 천천히 말하고 쉽게 풀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해진 시간 내에 반복하는 효과를 내는 교수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전체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모색하여야 한다.
- 결혼이주여성 가정에서의 서비스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에 따른 입장차, 견해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표 V-3-1 】 신규자의 기본과정 (80시간) 개요

교육 내용	총교육시간 (80시간)		
	강의 (42시간)	실기 (38시간)	중요도
1. 산후조리의 이해	3		
1) 한국의 산후조리의 이해	1		☆☆☆
2)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봄 서비스의 이해	1		☆
3) 한국의 사회복지정책과 활용 - 임산부, 산모, 영유아 등에 관한 정책을 중심으로	1		☆
2. 서비스 직업교육	13		
1) 서비스직의 이해	1		☆
2) 서비스 기본자세 및 친절교육	1	3	☆☆
3) 이미지 메이킹	1	1	☆
4) 의사소통의 이해와 기술	1	3	☆☆☆
5) 돌봄서비스직 산재예방법		2	☆
3. 산후조리사의 역할과 직업윤리	8		
1) 산후조리사 역할과 직업윤리	3		☆☆☆
2) 산모·신생아의 권리와 인권	1		☆
3) 현장 실무 사례별 문제 인식 및 해결 (선배도우미 활동 사례 및 워크샵)	2	2	☆☆
4.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	4		
1) 다문화 사회와 가정에 대한 이해	1		☆☆
2) 아시아여성과 문화에 대한 이해(국가별 워크샵)		2	☆☆
3) 이주여성지원 체계에 대한 이해	1		☆
5. 산모, 신생아 및 가족에 대한 이해	6		

교육 내용	총교육시간 (80시간)		
	강의 (42시간)	실기 (38시간)	중요도
1) 산후 산모의 심리적 이해	3		☆☆☆
2) 신생아의 발달특성과 이해	1		☆
3) 가족의 이해	1		☆☆
4) 장애 산모·신생아 가족에 대한 이해	1		☆
6. 산모 돌보기	21		
1) 산모의 영양관리	3	2	☆☆☆
2) 산후 체조		3	☆☆
3) 산욕기 관리	2	1	☆☆
4) 모유수유 성공법	3	1	☆☆☆
5) 모유수유를 위한 가슴마사지	1	3	☆☆☆
6) 정서 지원	1	1	☆☆
7. 신생아 돌보기	13		
1) 신생아 돌보기 및 위생관리	3	5	☆☆☆
2) 신생아 및 영유아 질환과 예방		5	☆☆
8.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5		
1) 가사 및 일상 생활 지원의 이해	1		☆
2) 의류손질 및 올바른 세탁법	2		☆
3) 위생관리	1		☆☆☆
4) 쾌적한 신체 및 주거 환경 유지하기	1		☆
5) 외출돕기	0.5		☆☆
6) 휴식과 수면	0.5		☆
9. 안전	5		
1)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	3		☆☆
2) 응급처지에 대한 기본 기술		2	☆
10. 업무 기록 및 보고	1		
1) 기록과 보고	1		☆

【 표 V-3-2 】 교과목 - 1. 산후조리의 이해

교과목 : 1. 산후조리의 이해				
교육목표		1. 여성의 생애주기 중 출산 직후의 산후조리기가 이후 여성의 일생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게 한다. 2. 한국 전통의 산후조리방식과 의미를 알게 한다. 3. 결혼이민여성과 가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자원을 알게 한다.		
교육내용		교육시간 [총3시간]	교육 방법	교육 매체
대단원	중단원			
1. 한국의 산후 조리 이해	가. 산후조리의 의미 나. 한국 전통의 산후조리	1	강의	원고 ppt
2.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봄 서비스의 이해	가. 돌봄서비스의 이해 나. 산후조리사의 이해 다. 서울YWCA와 돌봄서비스의 이해	1	강의	원고 ppt
3. 한국의 사회 복지 정책과 활용	가.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나. 이주여성지원 기관, 시설, 단체	1	강의	원고 ppt
비고	1. 한국 전통의 산후조리방식을 고집하는 남편과 시부모 등의 욕구를 반영한 산후조리에 대한 이해 과정이 필요하다. 2. 이주여성의 한국 생활에서 여성, 육아, 가족형태에 따른 다양한 복지 정책과 혜택을 알고 활용할 수 있게 도우며 특히 병원, 보건소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이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출산, 육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표 V-3-3 】 교과목 - 2. 서비스 직업 교육

교과목 : 2. 서비스 직업 교육				
교육목표	서비스직업인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과 기본자세를 갖게 한다.			
교육내용		교육시간 [총 13시간]	교육 방법	교육 매체
대단원	중단원			
1. 서비스직의 이해	가. 서비스직의 이해 나. 재가서비스의 이해	1	강의	원고 ppt
2. 서비스 기본 자세 및 친절 교육	가. 서비스의 기본 나. 유형별 고객 이해 다. 친절 및 불만고객응대 라. 서비스 롤플레이	4	강의 실기	원고 ppt
3. 이미지메이킹	가. 자세 나. 복장과 헤어연출 다. 화법 라. 매너	2	강의 실기	원고 ppt
4. 의사소통의 이해와 기술	가.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이해 나.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실기	4	강의 실기	원고 ppt
5. 돌봄서비스직 산재 예방법	가. 중장년 근로여성의 산재예방법	2	강의 실기	원고 ppt
비 고	1. 서비스의식 부족이 현장 불만족의 첫 번째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서비스직업에 대한 이해와 의식화는 서비스 직업인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이다. 2. 친절, 응대법 및 화법, 특별상황에 대한 교육을 워크샵이나 실기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기본자세 형성에 해당하는 과목으로서 반복의 효과를 내는 교수법 적용이 필요하다.			

표 V-3-4 교과목 - 3. 산모도우미의 역할과 직업윤리

교과목 : 3. 산모도우미의 역할과 직업윤리				
교육목표	산모신생아도우미의 역할을 이해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기본 인권을 이해하고 보호하는 직업적 윤리 형성을 돕는다.			
교육내용		교육시간 [총 8시간]	교육 방법	교육 매체
대단원	중단원			
1. 산후조리사의 역할과 직업윤리	가. 산모도우미의 직무와 역할 나. 산모도우미의 직업윤리	3	강의	원고 ppt
2. 산모·신생아의 권리와 인권	가. 인간의 기본 권리 나. 산모의 권리 다. 산모신생아도우미의 권리 라. 법적 문제(학대, 구타, 성폭력 등)	1	강의	원고 ppt
3. 현장 실무사례 문제인식 및 해결을 위한 워크샵		4	강의 실기	원고 ppt
비고	1. 산후조리사로서의 윤리를 갖고 직무를 파악하여 현장에서 제대로 역할하는 도우미가 되기 위하여 스스로 다짐하고 설계해보는 시간으로서 사명감을 역설하는 강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표 V-3-5 교과목 - 4.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

교과목 : 4.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				
교육목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아시아 국가의 다양한 문화와 산후조리방식을 이해한다.			
교육내용		교육시간 [총 4시간]	교육 방법	교육 매체
대단원	중단원			
1. 다문화 사회와 가정에 대한 이해	가. 다문화(이주) 가족의 산모에 대한 이해 나. 다문화(이주) 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이해 다. 다문화(이주) 가족의 문화적 갈등에 대한 이해	1	강의	원고 ppt
2. 아시아 여성과 문화에 대한 이해	가. 아시아 각국의 문화와 산후 조리방식 이해	2	실기	원고 ppt
3. 결혼이민여성지원 체계에 대한 이해	가. 결혼이민여성지원 정책, 기관, 시설, 단체 등 정보	1	강의	원고 ppt
비고	1. 결혼이민여성의 가정 내의 여러 상황과 환경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도록 돕고 그 안에서 산모의 안정적인 산후조리를 위하여 도움이 적절하게 역할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출신국의 음식, 문화, 정서, 산후조리방식 등을 통해 보다 산모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한다. 3. 출신국가별 워크샵 자료는 보완하여 자료집으로 만들어 배부 및 비치하는 것이 좋겠다.			

표 V-3-6 교과목 - 5. 산모·신생아 및 가족에 대한 이해

교과목 : 5. 산모·신생아 및 가족에 대한 이해				
교육목표	산모, 신생아 및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 요구를 설명하고, 스트레스 관리 능력을 기른다.			
교육내용		교육시간 [총 6시간]	교육 방법	교육 매체
대단원	중단원			
1. 산후 산모의 심리적 이해	가. 모성역할의 이행단계 나. 부모-자녀의 애착과 결속 다. 산후우울 라. 가족적응	3	강의	원고 ppt
2. 신생아의 발달특성과 이해	가. 신체적 특성 나. 생리적 특성 다. 감각기능 라. 반사기능	1	강의	원고 ppt
3. 가족의 이해	가. 가족의 이해	1	강의	원고 ppt
4. 장애 산모, 신생아 가족에 대한 이해	가. 여성장애인의 실태와 인권 나.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다. 장애인의 이해와 에티켓	1	강의	원고 ppt
비고	1. 산모를 수발하고 산후조리를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산후 산모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한 기본 요소 2.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산모의 상황을 이해하고 안쓰러움을 갖고 돕고 싶어하는 심정적 지원을 갖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			

표 V-3-7 | 교과목 - 6. 산모 돌보기

교과목 : 6. 산모 돌보기				
교육목표	산후조리 실무 기초가 되는 위생, 식사관리, 배설 돕기, 환경관리, 자세 변경 및 운동 지원 등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교육내용		교육시간 [총 21시간]	교육 방법	교육 매체
대단원	중단원			
1. 산모의 영양관리	가. 수유부의 영양 필요량 나. 수유부의 식생활 관리 다. 산모 식단 작성	5	강의 실기	원고 ppt
2. 산후체조	가. 산후체조의 효과 나. 산후 일자별 체조지도	3	실기	원고 ppt
3. 산욕기 관리	가. 인체의 구조와 생리 나. 산욕기의 정의 다. 산욕기 관리 라. 배(자궁저부)마사지법 마. 회음관리(좌욕법) 바. 부인과 질환의 종류	3	강의 실기	원고 ppt
4. 모유수유 성공법	가. 모유수유 권장사항 나. 모유수유 방해 요인 다. 수유자세 라. 수유 전 준비 마. 수유 후 트림 바. 모유 양 조절하기 사. 직장인 산모와 모유수유 아. 혼합수유의 문제점 자. 유방 마사지와 유두관리	4	강의 실기	원고 ppt 교구 자료
5. 모유수유를 위한 가슴마사지	가. 모유수유 마사지법	4	강의 실기	원고 ppt
6. 정서 지원	가. 산모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워크샵)	2	강의 실기	원고 ppt
비고	1. 산모의 식단은 한국식을 주로 하되 출신국가 의 음식을 특식으로 구성하면 적절하다. 2. 모유수유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부터 진행하 여 모유수유 실천 의지를 확고하게 정착시 킨다. 3. 모유수유 마사지법은 2명씩 짝을 지어 실기 위주로 진행하고 테스트를 거치는 것이 효 과적이다. 4. 평소에 산모를 지지, 격려하는 표현과 야기 에 덕담하는 다양한 표현을 자주할 수 있도 록 구체적인 표현 사례를 익히는 것이 필요 하다.			

【 표 V-3-8 】 교과목 - 7. 신생아 돌보기

교과목 : 7. 신생아 돌보기				
교육목표	신생아의 기본적인 건강상태를 사정하고 신생아 돌봄의 실무 기술을 습득한다.			
교육내용		교육시간 [총 13시간]	교육 방법	교육 매체
대단원	중단원			
1. 신생아 돌보기 및 위생관리	가. 신생아의 상태와 관리 나. 신생아 영양 다. 신생아의 기저귀 라. 예방접종 마. 신생아 외출 바. 신생아 목욕법(테스트)	8	강의 실기	원고 ppt 교구 자료
2. 신생아 및 영유아 질환과 예방	가. 신생아 질환과 예방 나. 신생아 질환에 대한 예방 다.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 처치 라. 기타 질환 및 증상에 대한 응급처치	5	실기	원고 ppt 교구 자료
비고				

【 표 V-3-9 】 교과목 - 8.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교과목 : 8.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교육목표	가정의 일상생활 지원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가정환경을 관리할 수 있다.			
교육내용		교육시간 [총 4시간]	교육 방법	교육 매체
대단원	중단원			
1. 가사 및 일상 생활 지원의 이해	가. 필요성 및 목적 나. 기능 다. 기본 원칙	1	강의	원고 ppt
2. 의류손질 및 올바른 세탁법	가. 세탁의 종류와 세탁법 나. 세제의 종류와 사용법 다. 세탁기 올바른 사용법 라. 의류분류 및 관리법	2	강의	원고 ppt
3. 위생관리	가. 위생의 개념과 필요성 나. 위생의 범위와 적용	1	강의	원고 ppt
4. 쾌적한 신체 및 주거 환경 유지하기	가. 산모 의복 및 침상 청결 관리 나. 아기 의류, 천기저귀 세탁 다. 온도 라. 환기 마. 냄새 라. 소음	1	강의	원고 ppt
5. 외출 돕기	가. 병원방문 돕기 나. 아기 외출 준비	0.5	강의	원고 ppt
6. 휴식과 수면	가. 휴식 나. 수면	0.5	강의	원고 ppt
비고				

표 V-3-10 교과목 - 9. 안전

교과목 : 9. 안전				
교육목표	안전사고 위험 요인을 알고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를 도우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교육내용		교육시간 [총 5시간]	교육 방법	교육 매체
대단원	중단원			
1.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	가. 대상자 안전관리 a. 위험요인 b. 예방 나. 산모신생아도우미 안전관리 a. 위험요인 b. 예방	3	강의	원고 ppt
2. 응급처치에 대한 기본 기술	가. 낙상, 중독, 화상, 질식 등에 대한 응급 처치법 및 예방	2	실기	원고 ppt
비고				

표 V-3-11 교과목 - 10. 업무 기록 및 보고

교과목 : 10. 업무 기록 및 보고				
교육목표	산모, 신생아도우미 업무 기록과 보고 방법을 습득한다.			
교육내용		교육시간 [총 1시간]	교육 방법	교육 매체
대단원	중단원			
1. 기록과 보고	가. 업무일지 기록 a. 목적 및 중요성 b. 방법 나. 업무보고 a. 목적 및 중요성 b. 방법	1	강의	원고 ppt
비고				

2) 보수교육

보수교육은 신규자 기본 과정 80시간 수료 후 매월 3시간씩 교육하며 교육내용은 분야별 심화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영역을 확대하도록 하고 현장 경험사례를 공유하며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한다.

사. 기타

1. 수료식에는 가족을 초대함으로써 가족의 참여와 지지를 유도하여 산후조리사로 활동할 경우 가족 지원 체계화 하는데 기반이 되는 기회로 삼는다. (특히 남편에게 부인의 활동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되는 기회로 활용)
2. 같은 국가 출신 결혼이민여성들의 워크숍을 통해 발표되는 내용을 전문가의 도움으로 보완한 후 기본 매뉴얼 복으로 제작하면 차기 신입교육에 부속교재로 활용할 수 있다.
3. 결혼이민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가정 경제 안정 향상을 도모하는 활동을 전제로 하는 교육으로서 교육 이수 직후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바로 일자리를 연결할 수 있는 일거리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일거리 확보 방안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제3절 시사점

결혼이민여성 취·창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기관의 실무담당자 설문조사, 결혼이민여성들의 심층조사 결과 가장 취업하기에 적합한 직종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한울타리 플랜의 취·창업지원 사업직종인 다문화강사와 산모도우미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다문화강사는 특화될 수 있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관에서 각각의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아르바이트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산모도우미는 각 국가마다 출산문화의 차이에서 수요는 많으나 결혼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모범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얻고자 한다. 본 프로그램은 교육을 진행시켜 실무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개발한 것이므로 충분히 참고가 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으나 교육프로그램 완성이라 할 수는 없으며 프로그램개발 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 역시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보완하여야 한다. 향후 이 부분을 보다 발전시켜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는 것도 하나의 과제로 남는다.

W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을 위한
정책 제언

VI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을 위한 정책 제언

서울시의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능력개발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는 것은 결혼이민자 자신들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취·창업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특히 지자체, 교육훈련기관, 기업체 등 관련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긴밀한 연계가 요구된다. 또한 결혼이민여성 가족들의 이해 및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가 요구되며 무엇보다도 서울시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결혼이민여성들에 대한 시민들의 깊은 이해와 다문화사회로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을 때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1절 취·창업지원정책의 현황과 지향점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요구되는 취·창업지원정책은 중앙부처나 서울시나 이제 시작단계라 미미한 상태이다.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체육부, 여성부, 노동부, 농수산식품부 등이 기능별로 결혼이민여성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초기적응지원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부터 국가브랜드위원회가 다문화가족지원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따뜻한 다문화사회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09년도부터 기본사업으로 이를 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수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자치구가 자체별로 일정부분 취·창업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예산이나 내용면에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그러나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취·창업사업 지원이 필수적이거나 이 경우에도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차별화하여 추진시켜야 할 것이다.

우선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창업지원 현황을 보면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한 취·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인력개발기관의 비율이 매우 낮으며, 사업진행에 있어서 어려움으로 는 결혼이민여성의 모집, 예산확보, 공간부족 등으로 나타나 기본적인 문제부터 지원되어야 할 형편이다. 또한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에 맞는 직종이나 아이템개발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여러 면에서 연구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제 시작단계라 할 수 있는 취·창업지원

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지향점을 가지고 정책이 수립되고 전문적이고 단계별로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수립 시 이들을 단순히 가부장주의적 관점에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자녀출산, 양육 등이 강조된 동화정책 대상이 아니라 성인 지적 관점에서 그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주체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결혼이민여성이 취·창업을 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인 동시에 사회 일원으로서 참여의 문제이므로 단순히 한 영역에서의 지원정책만으로는 부족하고 생활전반에서의 정착지원이라는 통합적인 시각에서의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서비스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정책입안에서부터 프로그램 개발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유지,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지원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서울시 다문화가정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다양한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인 전망과 비전에 근거했다기보다는 문제해결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정책이 체계적이지 못하며 이로 인한 예산낭비,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의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취·창업지원정책은 지역적 특색과, 노동시장의 수요 및 환경변화, 개인환경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계획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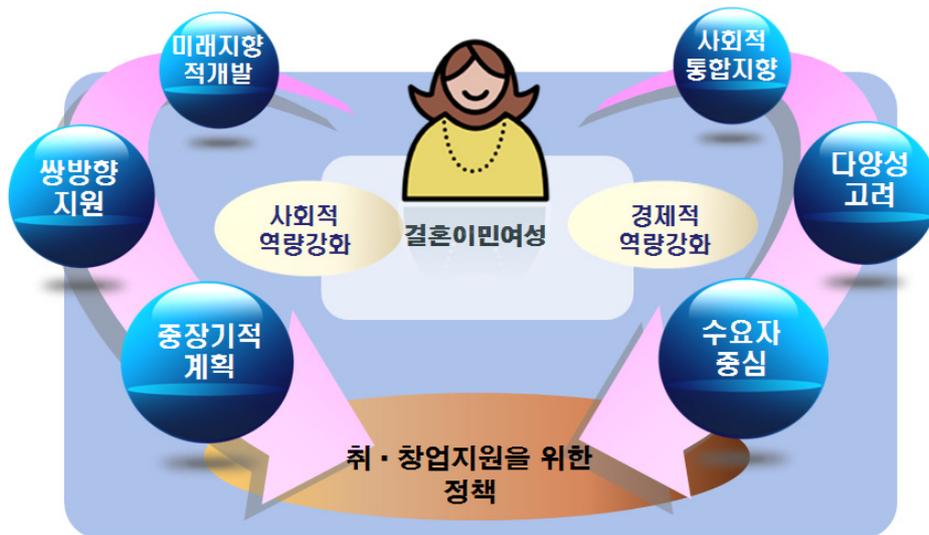
셋째,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창업능력개발을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지원을 단계별로 전문적, 다각적, 체계적, 복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업지원정책은 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 즉 언어상의 어려움, 문화차이, 정보부족 등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욕구도가 다양하므로 결혼이민여성들을 한 집단으로 취급해서 일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결혼이민여성들이 직업훈련 후 취업으로 연계되는 것은 더욱 어려우므로 그들의 적성과 조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터 이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요구에 맞추어 교육을 하는 맞춤형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맞춤형교육은 기업이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을 통해 교육관련 당사자들의 이해와 관심의 공통분모를 최대화하므로 취업률제고와 훈련비용이 절감되기는 하나 통신 및 기술환경의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는 교육내용의 효율성의 지속기간이 짧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맞춤형교육의 본래 취지를 살리되 기술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취업 후 개인 경쟁력 강화도 꾀하는 방향으로 교육내용의 변화도 꾀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능력개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적합 직종을 개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결혼이민자의 국적, 거주지역, 가족유형 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결혼이민여성의 국적에 따라 적합 직종에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나 특화될 수 있는 직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러 제반여건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원어민강사는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언어에 따라 필리핀, 중국, 일본 출신의 결혼이민자에게 상대적으로 적합하다. 따라서 취·창업지원사업을 하는 기관들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이민여성들의 국적과 욕구도 등 여러 다양한 환경요건을 고려하여 지원 적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도 다양성을 존중하여 수립하여야 하고 관련기관들과의 긴밀한 연계강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기술변화의 가속화, 경쟁의 심화, 소비자 기호의 빠른 변화 등과 같은 사회변화에 따라 결혼이민여성들의 인적자원개발은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창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정책은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니즈조사 및 분석을 전제로 하되 단순히 현재 니즈분석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기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근거로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즉 인적자원개발의 정책방향을 단기적인 취업률 향상도 추구하지만 이보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력 있는 업종 및 직종에 대한 전문가를 육성하여야 한다.



Ⅰ 그림 VI-1 Ⅰ 정책지향점

여섯째, 결혼이민여성들이 취·창업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만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다문화사회로의 인식변화가 요구되므로 경제적 활동지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변화를 수반하는 사회활동도 지원하는 등의 쌍방향 지원이 필요하다. 즉 결혼이민여성들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취·창업에 대한 지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인식의 변화 등이 뒤따라야 하므로 결혼이민여성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쌍방향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직장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이해, 협조 등은 매우 중요하므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도 요망된다.

제2절 정책 추진전략

1.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 관련 조례 개정

서울시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결혼이민자 취·창업지원 관련 조례가 제·개정되어야 한다.

첫째,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2호는 시장은 결혼이민자의 기본적인 사회적응, 정보제공과 교육, 직업훈련 사업 등에 대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이므로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해야 한다’로 강제규정화하여 시장의 의무조항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경제적 역량강화 및 자립은 필수적이므로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지원사업 중 하나이기 보다는 독립적인 조항으로 규정할 필요도 있다.³⁹⁾

28) 제4조(지원사업)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 사업
2.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본적 사회적응 정보 제공과 교육, 직업훈련 사업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6.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 사업
7.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
8. 결혼이민자 가족의 고국방문 및 초청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9) 제5조(입학자격 등)(개정 2002.03.20)

- ① 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입학하게 할 수 있다.(본항 개정 2005.12.29, 2007.12.26, 2008.07.30)

둘째,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을 위해서는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호 직업전문학교 입학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내용에 다문화가족지원법상 결혼이민여성으로서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도 포함시켜 직업훈련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하여야 한다.⁴⁰⁾

셋째,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을 위해 ‘서울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제2항 제7호에 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 결혼이민여성도 규정하여 여성능력개발원 등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이 우선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⁴¹⁾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08.07.3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개정 2008.07.30)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08.07.30)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거주자 (개정 2008.07.30)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개정 2008.05.29, 2008.07.30)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다 (개정 2002.03.20, 2007.12.26, 2008.07.30)
1. 외국인·재외동포 (개정 2002.03.20)
 2. 제4조제2호의 취업촉진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에서 위탁하는 교육훈련생 (개정 2002.03.20)
 3. 서울특별시립엘림직업전문학교에 경기도가 위탁하는 교육훈련생 (개정 2002.03.20)
 4. 56세 이상의 고령자 (개정 2002.03.20, 2007.12.26)
- 30) 제11조(교육이용)①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직업교육·생활문화교육·특별교육·창업보육 및 아동교실교육 과정으로 각각 구분하여 운영하되, 시장은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이용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 장에서 “이용자”라 한다)은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우선적으로 해당 교육과정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③ 시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업교육과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습재료비 및 교재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31) 제11조(융자지원 등) ①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시 관할지역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2.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4. 시장이 재난·재해,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5. 제2조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관련단체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자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기금의 자금을 융자 지원할

넷째, 결혼이민여성의 창업자금 지원을 위해서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용자지원 내용 중 다문화가족지원법상 결혼이민여성으로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도 기금의 용자대상자로 규정하여 창업 시 기금을 용자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2)

다섯째, 여성정책시행계획에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 ‘서울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5조의 여성정책시행계획의 주요 정책 내용에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지원’의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 제14조 제6항에 ‘시장은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 제4의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결혼이민여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준공업지역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지구별 권장업종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 ③ 기금의 용자절차, 용자조건, 용자상환 및 연체에 관한 조치기준 등 기금용자지원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32) 제5조(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30)
1.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 가. 남녀평등의 촉진
 -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다. 여성의 복지증진
 3. 주요 정책
 - 가. 남녀평등의 촉진
 -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 다.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예방 및 지원
 - 마. 맞벌이 부부·편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
 - 바. 여성 단체·법인에 대한 지원
 - 사. 그 밖의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08.09.30)
 4. 제4조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04.06.21, 2008.09.30)
 5. 여성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치구·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4.06.21, 2008.09.30)
- 43) 제14조(경제활동 지원)① 시장은 여성의 취업·창업·기업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30)
 - ③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30)
 - ④ 시장은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여성이 특별히 보호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6.03.16, 2008.09.30)

성들을 위한 취·창업능력개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⁴³⁾

또한 제15조 복지증진의 제4항 내용에 결혼이민여성을 포함시켜 ‘시장은 여성노인 및 여성장애인, 결혼이민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여성장애인, 결혼이민여성의 교육 직업훈련 및 재활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도 ‘시장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맞벌이 부부, 저소득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에 대한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결혼이민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2. 추진체계 구축

가. 서울시, 자치구에 다문화가족 전담팀 신설

최근에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밝혔듯이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여성복지 중의 하나의 업무로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업무가 주어져서는 안 되고 결혼이민자가 많은 지역은 우선적으로 다문화전담팀이 만들어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즉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수행할 전담부서 내지 전담팀이 있어야 하며 이 팀내에 취·창업능력개발을 담당할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안산시의 경우 다문화전담부서를 신설해 다문화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주민 1만 여명 이상 되는 지자체에서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본다.

결혼이민여성 32,558명이 거주하는 서울에는 다문화전담팀 신설이 필요하며 팀내에 취·창업지원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현재는 저출산대책 담당관내 1명이 다문화가족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여 다른 업무를 하기에다 벅차므로 취·창업지원업무에 주력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의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전담

44) 제15조(복지증진)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혼모·가출여성 등 요보호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4.06.21)

③ 시장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여성노인 및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여성장애인의 교육·직업훈련 및 재활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성매매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 및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직업훈련 등 재활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03.06.16)

⑥ 시장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맞벌이부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4.06.21, 개정 2008.09.30)

팀 신설과 업무담당자를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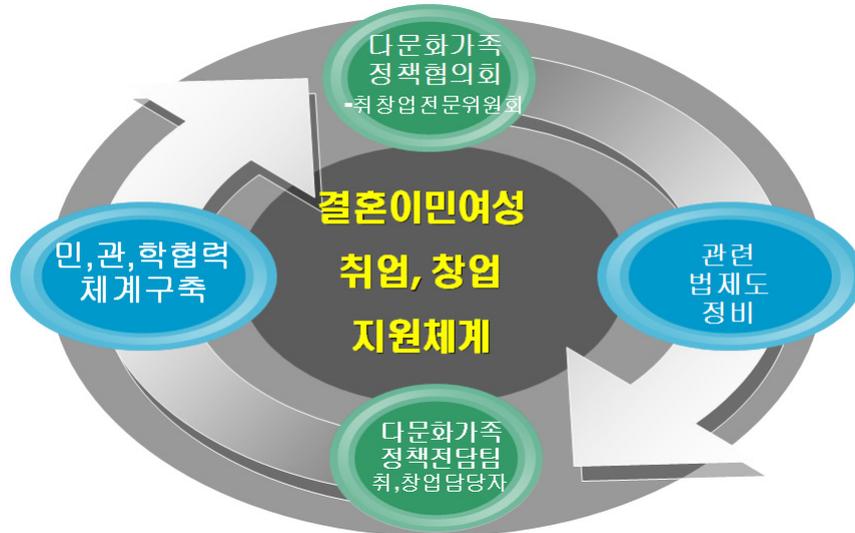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도 현재 다문화가족 전담자가 거의 없고 여성복지 내지 가정복지 담당자가 업무 중의 하나로 다문화가족업무를 맡고 있으므로 취·창업지원에 대해서는 업무에 못 낼 지경이다. 그러나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여성들의 경제적 역량강화가 가장 중요하므로 취·창업지원 전담자를 두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결혼이민여성 수가 3,000명이 넘는 영등포구, 2,000명이 넘는 구로구, 1,500명이 넘는 관악구, 금천구, 강서구, 중랑구 등 자치구에 다문화팀을 신설하고 그 팀 내에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을 담당할 담당자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나. 서울시 다문화가족정책 협의회 신설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지원사업은 대표적인 휴먼서비스로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체계적, 전문적, 다각적으로 운영될 때만이 효과성을 나타낸다.

결혼이민자의 증가로 인한 다문화가족정책의 폭발적 증가, 거주외국인의 유형의 다양화로 인한 정책지원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단기적 필요성에 대응하여 중앙부처, 광역시, 자치구 등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부서 간, 광역시-자치구간에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중복사업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예산낭비가 초래되는 경우가 생겨 종종 비난을 받는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 대상 정책의 일관성과 종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관·학이 참여하여 다각적인 의견수렴과 최적의 정책제시, 광역시-자치구간의 정책조정기능 등을 행하는 다문화가족정책협의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즉 행정부시장을 의장으로 하고 다문화가족정책전문가, 유관기관 단체장, 실무자, 활동가 등 15-20인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협의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다문화가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이상의 실국에 관련되는 다문화가족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족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추진사항에 대한 자문, 그 밖에 다문화가족정책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심의 조정하도록 한다. 이 협의회 내 전문분과 중 경제역량강화 분과를 두고 이 분과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창업에 대한 지원정책들을 제시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Ⅱ 그림 VI-2 Ⅱ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지원체계

3. 취·창업관련 기관들의 연계강화

가. 취·창업관련기관의 연계방안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관련기관들의 연계가 필연적이다. 그러나 관련기관 담당자들의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거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는 ‘협력할만한 기관의 정보 부족’, ‘기관 자체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바빠서’, ‘지역 내 사업을 공유할만한 기관이 없어서’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 내부에 원인이 있기도 하나 우선 적극적으로 연계를 하려는 태도가 부족한 상태로 기관들 간의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으나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기관들 간의 연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면 우선, 취·창업관련기관의 연계강화를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회관,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중소기업청, 서울 교육청, 직업학교 및 전문대학, 고용지원센터 등과의 연계강화를 꾀한다. 즉 결혼이민여성들의 접근이 용이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거점이 되어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각 기관 간 역할분담을 통해 전문성에 기초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정례화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서울시, 자치구간, 자치구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 사업을 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직업기초소양교육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술교육은 여성인력개발기관, 여성회관 등에서 하고, 구인처 발굴은 소상공인지원센터, 중소기업청, 고용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즉 다문화강사교육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하며, 교육청과 서울시가 학교나 어린이집 등에서 다문화교육을 하도록 지침 등을 내리는 등으로 연계하면 된다.

둘째, 결혼이민여성 취·창업능력개발과 관련된 기관들이 수평적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컨소시엄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관련담당자 설문조사 결과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하는 방안이 가장 높게 나왔으나 관련기관 간 컨소시엄 형태를 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각 직종에 따라 컨소시엄을 꾸리는 관련기관들을 달리하면서 연계가 활성화되면 정보공유와 협력의 단계를 넘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자원을 공유하면서 서비스 통합을 이루기 위한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교육후 취·창업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과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결혼이민여성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체를 발굴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이는 서울시가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든, 비용을 지원하든 다양하게 제도적 지원을 하여야 하므로 공·사의 연계는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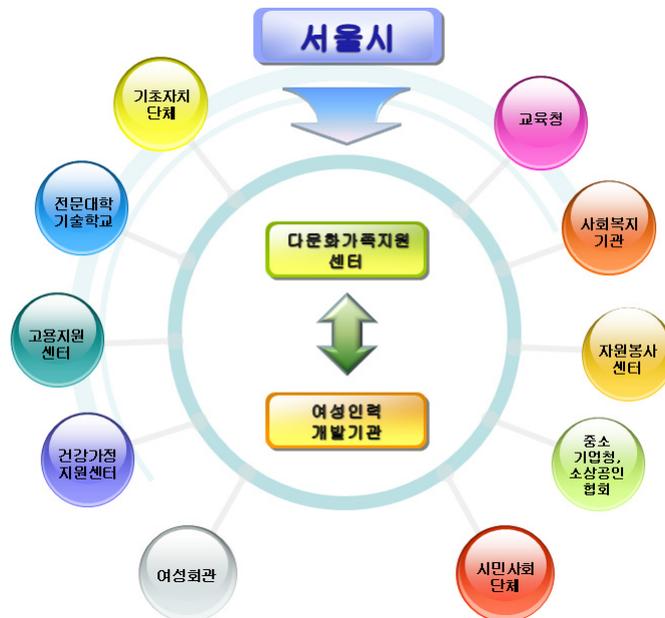


그림 VI-3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관련기관들의 연계

나.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 강화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연계 및 경제사회적 역량강화 등 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네트워크가 강화되어야 한다. 취·창업교육 후 실질적으로 취·창업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과 공공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통·번역사가 취업을 하려면 병원 등 의료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 등이, 의류수선사 등은 세탁협회와 인력개발기관과의 연계, 다문화강사는 서울시 교육청, 어린이집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민·관·학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과 행정력을 가진 관의 혁신과 변화가 요구되며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인식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수평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한 담당자의 교육이 필요하고 컨소시엄 방식 등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네트워크 구성 시 기획 단계부터 민·관·학의 목소리가 다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제3절 취·창업지원을 위한 정책제언

1.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개선점

가. 한국어 교육 고급반 내지 취업반 개설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창업능력개발을 위해서는 한국어교육, 생활문화교육 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교육을 기초, 초급, 중급, 고급, 한국어능력시험대비반, 회화반 등을 개설하고 있다.

‘08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개설된 총 463강좌 중에 초급반이 31.3%로 가장 많이 개설되고 기초(25.56%), 중급(25%) 순이며 고급은 9.1% 한국어능력 대비반은 3.5% 이며 회화반은 4% 정도에 그치고 있다. 서울지역 4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영등포, 성북, 동대문구, 동작)는 총 29개 강좌를 개설하였는데 그 중 초급 12개(41%), 중급 8개(28%), 기초 4개(14%), 고급 4개(14%), 회화 1개(3%)로 전국보다는 중급반 비율이 높으나 여전히 고급반과 회화반 비율이 낮다. 그러나 취·창업을 위해서는 고급이나 한국어능력대비반, 회화반 더 나아가 취업준비반 등 보다 수준 높은 반의 개설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교육을 초급, 중급과정만이 아니라 고급과정을 적극적으로 개설하고 더 나아가 취업반, 한국어능력시험반 등을 개설하여 취·창업을 준비하여야 한다.

고급과정의 수요자가 적어서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접지역끼리 묶어서 공동으로 개설하거나 인근지역의 대학과 연계하여 개설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또한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장에서 한국어능력시험 대비 교재를 각각 다른 것을 사용하므로 결혼이민여성들이 이사를 가는 경우 또 다른 교재를 사서 강의를 들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으므로 지금까지 나온 교재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교재를 선택해서 하든가 아니면 알맞은 교재를 개발해서 통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교육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도입

결혼이민여성들의 한국어교육, 문화이해교육 등 대부분의 프로그램, 강의 등이 무료로 진행된다 보니 결혼이민여성들이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 보다는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기관, 저 기관을 순회함으로써 일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비효율적이며 지원정책을 펼치는 주체 쪽에서 보면 사업의 효과성이 낮게 나와 다음에 사업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결혼이민여성들은 수강료에 부담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일종의 책임감은 느끼게 하면서 부담이 되지 않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수강료를 실비로 받고 출석율이 80% 이상일 경우 납부한 수강료를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 있으며, 둘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강료의 20%만을 받고 재료비가 일정액을 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방법이다. 셋째, 수강료가 저렴하고 무료이므로 일정 기간 배운 실력을 가지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노인정, 노인병원, 어린이집 등에서 자원봉사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면 제과제빵 기술을 배운 경우 고아원이나 노인정에 가서 제과제빵 자원봉사를 한다거나 이/미용기술을 익힌 경우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방문해 무료로 이/미용을 해 준다거나 하는 것이다. 이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사회참여도를 높이고 자긍심, 자신감 등을 키울 수 있어 취·창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 지역적 특색을 살린 교육프로그램 특화

현재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창업 교육프로그램들의 내용이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지 않고 대동소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에 접할 수 없다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취업교육 관련기관들이 취·창업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내용들은 다문화강사, 네일아트, 원어민

강사 등 거의 같은 내용들이 모든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아직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창업에 대한 관심이 적어서 프로그램 내용이 다양하게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제약도 있으므로, 그 지역에 사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창업에 대한 실질적 수요조사를 하고 이에 근거해 지역적 특색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기획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베트남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등에 있는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는 베트남 여성들이 다른 국적을 가진 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의류수선사, 바리스타, 수공예품, 네일아트 등의 강좌를 개설하고, 필리핀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강서구, 성북구, 도봉구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원어민 강사, 통·번역사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일본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서초, 강남 등의 지역에서는 원어민 강사, 통·번역사 등에 대한 강좌를 개설하는 것도 필요하다. 창업으로는 각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의 국적에 따라 다문화음식을 개발하는 등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 개설이 필요하다. 이는 또한 그 지역에서 수요가 많은 취·창업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수업보조인력의 활용

결혼이민여성들은 아직 한국어가 능통하지 않으므로 직업교육 수강 시 결혼이민여성들로 구성되거나 외국어에 능통한 자원봉사자를 교육보조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문조사나 심층면접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이 일반여성들 대상 교육프로그램에 참여시 강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위해 교육을 도와줄 보조인력을 활용하여 강의내용의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업보조인력의 활용방안은 다음 2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수업내용에 따라 국적별로 결혼이민여성을 교육시켜 활용하는 방법이다. 기본적으로 거주기간이 일정기간 지나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문화 등에 익숙한 사람들을 교육시켜 활용한다. 현재는 기관에서 한국어보조강사 교육을 시켜 한국어 교육 시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수고비를 줄 수 있으므로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며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둘째는 외국에서 오래 살아 외국어에 능통한 한국인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결혼이민여성의 강의 이해도를 높일 뿐 아니라 결혼이민여성과 한국인간의 상호 교류로 인해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므로 이중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다. 보육문제 해결 - 아이돌보미 제도 활용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결과가 보여주듯 결혼이민여성이 직업교육프로그램 참여시 가장 커다란 장애가 되는 것은 자녀보육문제이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들이 직업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취업하는 데는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결혼이민여성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동안에도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서 일부 기관에서는 토요일, 일요일에만 강의를 하거나 교육기관 종사자들이 동반 아동들을 보살펴 주는 등의 방법이 동원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임시방편적인 해결방법이므로 본질적으로 문제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업교육 시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관내에 보육실을 마련하고 보육교사 내지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동반아동을 보살펴 주든가, 보육시설 설치가 어려우면 아이돌보미 제도를 이용하여 이에 대한 경비를 서울시가 일부 보조해 주거나, 자원봉사자들이 수업을 듣는 동안 방문하여 아이를 돌보아 주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 직무소양교육 내지 의식교육 강화

결혼이민여성들은 언어소통상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 정보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노동시장과 같은 경쟁시장에서 정착하는 데는 커다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직업에 대한 의식이 틀릴 수 있으므로 직업교육프로그램에서 직무소양교육 내지 의식교육을 강화하여 자신감을 회복하고 직장인으로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여야 한다. 결혼이민여성은 취업교육 후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 적응을 하지 못해 그만두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직종훈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리 사회의 직업관에 대한 이해 없이 막연히 취업에 대한 기대가 직장생활이라는 현실에 부딪치면서 자신감을 잃고 두려움으로 인해 절박한 상황이 아니면 포기하게 되므로 교육 시 기초소양교육에 중점을 두어 조직생활에 적응하는 기초단계를 단단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즉 적극적 동기유발 및 자신감을 회복시키고 진로적성 재설계, 경제관념, 직업의식, 직장예절, 관련자들과의 업무상 소통방법, 다양한 문화의 이해, 미래직업사회의 이해, 지역별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이해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 결혼이민여성 가족의 이해와 협조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결혼이민여성들이 취·창업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자녀돌봄문제부터 가사지원까지 가족들의 협조와 이해가 없으면 한국어에 미숙한 여성들은 정보접근도 어려우며 교육에 참여하기 위한 외출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들의 이해와 협조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여성들과 가족 간의 상호이해와 협조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교육으로 배우자 교육, 부부교육, 시부모교육, 자녀교육, 가족통합교육 등을 하고 있으나 이용자 현황을 보면 배우자 32%, 시부모 6% 등으로 참여율이 낮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즉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어교육을 받는 동안 시부모나 배우자 등은 결혼이민여성의 문화, 언어 등을 교육받아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2. 적극적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

가.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 결혼이민여성들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이에 많은 결혼이민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현재 여성인력개발기관 평가에서 취업률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인력개발기관들이 교육 후 취·창업이 어려운 결혼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거의 진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 개설강의 중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취·창업교육프로그램을 일정비율 개설하여, 일정수의 결혼이민여성 취·창업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기관에는 평가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둘째, 여성인력개발기관 평가 시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업률은 평가에서 제외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여성인력개발기관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수요나 국적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이를 특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폭력피해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가 들어설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는 결혼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창업프로그램을 특화하여 다양한 교육을 행하고 서울시는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여성발전기금 중 일정부분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지원 사업에 할당

서울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남녀평등 촉진 등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여성단체에 성장기회 제공을 위해 1998년부터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총 587개 단체 701개 사업을 선정 지원하였으며 전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2003년부터 지정공모사업과 자유공모사업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총 55개 사업에 총 916백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중 결혼이민자 경제적 역량강화에 관련된 사업은 지정공모사업 1건, 자유공모사업 1건이며 지원금액은 모두 27,000천원으로 너무 미미한 상태이다.⁴⁴⁾ 따라서 결혼이민여성들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취·창업능력개발 사업에 여성발전기금의 일정부분을 할당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실무담당자들의 설문조사결과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한 취·창업교육을 위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관련기관들의 취·창업프로그램 개설을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결혼이민여성 가정의 생애주기별로 보아도 현 시점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사업은 취·창업지원사업이므로 이를 계획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성발전기금 사업 지정공모사업인 여행프로젝트, 일자리 갖기, 저출산 극복,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등의 사업 중 일자리 갖기 사업에 결혼이민여성의 일자리 갖기 사업에, 자유공모사업에는 다문화가정지원, 건강가정육성, 문화·복지·건강증진, 사회참여확대에서 다문화가정지원 내지 사회참여확대 영역에서 여성발전기금의 5-10% 정도는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과 관련된 사업에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활용

현재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결혼이민여성들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노동부의 지원정책에 의해 국적 미취득자나 고용보험 가입경력이 없는 외국인인 정부의 직업훈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생활정착을 위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도 실업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10만 여명이 다양한 정부지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⁴⁵⁾ 그러나 이보다 대상을 더 확대하여 국적취득여부와 직업경험에 상관없이 취·창업

44) 지정공모사업으로 여성결혼이민자 행복나눔, 희망플러스 사업(17,000천원), 자유공모사업으로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강사 양성프로그램(10,000천원) 등이다.

45) 노동부는 2009년 현재까지 전국 726개 훈련기관에 3,692 실업자 훈련과정을 승인하여 실업자의 다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은 우선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취업설계상담사와 희망 직종 내지 훈련직종에 대해 상담을 하고 협의를 통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별 훈련이력관리 등을 종합지원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즉, 결혼이민여성의 취업에 대한 상담을 통해 훈련직종(취업희망분야)를 협의선정하고 계좌발급을 하며 1인당 100만원까지 실훈련비를 지원하고 교통비, 식비를 별도 지원한다. 취·창업능력직업능력 훈련비의 20%는 훈련생이 부담토록 하여 신중한 훈련선택 및 성실한 훈련수강을 유도하고 책임있게 한다. 계좌형태는 신용 / 체크카드 방식을 도입 결제 및 출결관리 기능을 부여하며, 산업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훈련과정 내용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적합훈련 과정 목록을 제공한다. 정보제공은 직업훈련정보망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훈련과정 내용, 시설, 장비, 교사 취업률, 훈련생 만족도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며 사전규제완화를 통해 우수한 민간훈련기관의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도록 한다.

라. 자격취득장려금제 도입

경제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은 지속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없어서 저임금의 일당 노무직이나 3D 업종에 종사하게 되며 남편 등 가족의 동의여부에 따라 교육지속여부가 결정되므로 취업에 있어서 중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직업교육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육참여율이 80% 이상 되고 일정기간 내에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여성에게 자격취득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즉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관련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자격기본법에 의한 공인자격을 취득한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한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있고 실업자 개인이 교육훈련비의 20%를 부담하면 1년간 200만원 범위 내에서 필요한 훈련을 자율적으로 선택수강 할 수 있는 직업능력계좌제도 시행하고 있다. 실업자 훈련기간은 훈련과정에 따라 다양하나 훈련생에게 월 11만원 상당의 수당(교통비, 식비)가 지급된다.

마. 취·창업설계상담과 교육훈련수첩제도 활용

결혼이민여성들은 일반여성들과는 달리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 정보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며 한국문화 해의 어려움으로 인해 어떤 부문에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상담이나 설계를 해 줄 취·창업설계상담사가 필요하다. 경력단절여성들에게도 직업설계사가 필요하나 이보다 더 특수한 집단인 결혼이민여성들에게는 취·창업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이들의 학력, 적성, 생활여건, 환경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설계를 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결혼이민여성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취업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상담, 인적관리, 대화 및 갈등관리기술 등이 강화되고 질적 수준을 제고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취·창업설계상담사는 결혼이민여성의 적성검사, 직업교육 이수현황, 경력사항 등을 토대로 개인별 맞춤형 취업을 알선하고, 구인업체를 발굴하며 상담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피드백한다. 취·창업상담설계사는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인력개발기관 등에 배치하며 취업상담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 선발하여 배치한다. 취·창업설계상담사는 취업지원 및 상담 기법, 고용관련 법률, 고용보험 등만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이해 등의 교육을 받는다. 또한 취업 후 사후관리를 위해 취업연계 후 취업자의 직장 적응 지원을 위해 정기적으로 업체를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여성친화기업 조성 및 여성근로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업대표 등과 면담을 실시한다.

취·창업설계상담사의 활성화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 현재의 계약직형태의 고용이 어려우나 결혼이민여성에게 안정된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규직 형태의 고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취업생활에서 오는 성차별이나 고충처리 등 문제해결을 위해서 취업경험이 있고 거주기간이 길어 한국어에 능통하며 성품이나 인화가 잘 되는 결혼이민여성들을 국적별로 취·창업설계상담사로 교육 양성하여 활용하면 결혼이민여성들의 일자리 창출도 될 것이다.

그리고 교육훈련수첩을 발급하여 각자의 취업교육훈련을 받은 내용을 기록하여 취·창업 설계나 상담시 이를 고려하도록 한다. 보통 저학력, 저숙련 결혼이민여성들은 경제활동경험도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이들을 단기간 교육해서는 성과를 나타내기 힘들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창업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교육내용 결정시부터 취·창업설계상담사와 협의를 거쳐 교육훈련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받는 것이 필요하다.

바. 자격증 취득 시험의 보완

취·창업을 하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결혼이민여성들의 심층면접에서 나타났듯이 자격증 취득시 어려운 점은 실기시험보다는 한국어 미숙으로 인해 필기시험에 합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필기시험의 일정부분 면제라든지 아니면 모국어로의 번역된 시험지 제공이라든지 등의 자격시험제도에서의 보완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결혼이민자들이 많이 응하는 운전면허자격증, 이/미용사 자격증 시험 등에서 모국어로 번역된 시험지를 제공하거나 일정영역에서는 실기시험의 비율을 높이는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3. 교육과 훈련의 현장성 강화

가. 인턴제도 도입

결혼이민여성들은 언어소통상의 어려움, 한국문화이해 부족, 직장 생활경험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전업주부 등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되었던 경력단절여성보다도 취·창업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직장생활을 일정기간 경험해 보는 현장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취·창업교육 후 여성인력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체는 구직등록한 결혼이민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결혼이민여성들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결혼이민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과 이들에게 직장체험 및 직무기술 습득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여성들을 인턴으로 사용할 기업체를 발굴하기가 어려우므로 기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서울시가 일정 기간 인턴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턴기간은 3-6개월로 하여 경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1인당 월 50만원의 인턴채용 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인턴채용 기업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의 일정한 규모를 갖추고 있는 기업체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여성인력개발기관은 인턴기간 중 사후관리를 통해 고충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취업을 포기한 경우도 상담 등을 통해 꾸준히 의견을 조율하고 사례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액션러닝의 도입

결혼이민여성들이 취·창업시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취·창업을 할 만큼 충분한 수준의 기술과 경험을 습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다른 기관에서의 반복교육을 받기도 한다. 취·창업을 위해서는 지식전달위주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문제해결방식의 학습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학습도 필요하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것이 액션러닝(Action Learning)이다.⁴⁶⁾ 즉, 새로운 영역의 개척과 도전을 위해 문제해결식 학습방법을 통한 상황대처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본다. 특히 결혼이민여성들은 언어상의 어려움이나 문화의 차이 등 일반여성보다 훨씬 더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대처능력도 부족하므로 이런 문제해결식 학습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인턴으로 노동시장에서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나 이런 기회를 갖는 것도 쉽지는 않으므로 취·창업교육과정 중 액션러닝방법을 도입해서 교육의 현장성을 높이는 방법도 제고하여야 한다.

다. 창업보육 및 창업부스 등 인큐베이팅 활성화

창업교육 후 일정기간 업종맞춤형 창업에 대한 경영지원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시장의 경쟁력확보와 단계별로 현황분석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가능한 한 빨리 창업을 하여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창업보육, 창업부스 등 창업에 대한 인큐베이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수료생들이 비정기적인 창업부스를 운영함으로써 점포운영의 체험과 소비자의 반응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여성능력개발원에서 개발한 창업인큐베이팅 매뉴얼에 따라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기관 등이 중심이 되어 창업인큐베이팅을 활발히 실시함으로써 창업성공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46) 액션러닝의 특징은 첫째, 액션러닝은 실시간 학습경험으로, 중요한 두 가지 목적, 즉 조직의 경영상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과 개인 및 팀을 개발시키는 것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다. 둘째, 액션러닝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학습방법이다. 즉, 액션러닝을 통해서 조직은 심각한 경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경영상의 기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핵심인재를 개발하여 역량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조직을 전략상 가장 이상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할 수 있다. 셋째, 액션러닝은 실제 비즈니스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하는데 있다. 넷째, 액션러닝은 그룹구성원인 학습자에 의해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 팀 활동을 통해 상이한 경험과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으로부터 다양한 관점을 공유함으로써 최적의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4. 지속발전 가능한 적합 직종·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가.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적별, 지역별로 차별화하여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이 정책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프로그램은 국적에 따라 약간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필리핀, 중국, 일본 출신국의 결혼이민여성들은 원어민강사의 직종이 다른 출신국의 여성들보다 상대적으로 우세한 입장에 있으며, 베트남 출신의 경우 바리스타에 더 맞는단지, 동남아출신의 여성들은 손재주가 좋은 편이라 전통품 제조, 의류수선사, 수공예품 제조 등의 교육이 더 적합하다. 그러나 국적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으며 상대적인 것이므로 개인적인 욕구나 차이에 따라 차별화 정책이 가능하다고 본다.

둘째, 결혼이민여성들은 각 개인의 환경요건이 다양하므로 각자의 학력, 가정환경요건, 개인의 욕구 등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교육프로그램은 개인의 특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나 결혼이민여성들의 교육을 전문화시켜 자격증을 인정해주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즉 고학력 여성들은 대학이나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은 후 자격증을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 전문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나. 적합한 직종개발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업이 가능한 특화되고 적합한 직종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시킨 후 취업으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강사

모든 결혼이민여성들에게 다문화강사는 특화될 수 있는 직종이다. 다문화강사는 자신들의 모국의 문화를 한국인들에게 소개시킬 수 있으므로 자신의 자존감을 키울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 특히 자녀들에게는 자신의 어머니가 강의를 하므로 자랑스러울 것이며 자신의 어머니 나라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 내지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줄 것이다.

다문화가족 아동이 언어 및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 사전예방 및 일반 아동과 사회적인 편견없이 통합될 수 있는 교육 실시, 다문화가정의 아동은 정체성의 혼란 및 또래와의 불안정한 관계 등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기 영·유아기 아동부터 다

문화가정에 대한 시민인식개선 교육 실시가 필요하다. 현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관할 교육청을 통해 다문화이해교육을 확보하도록 권유(다문화가정 학생교육지원계획, 2008.6. 교과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기당 1회성이므로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다문화사회를 위한 상호 소통하는 쌍방향 시민교육이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더 나아가 대학교 및 평생교육원 등에서 다문화이해에 대한 교육을 필수로 하면 다문화강사의 수요는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2) 원어민 강사

결혼이민여성의 국적이 필리핀, 중국, 일본 등인 경우 외국어 원어민 강사로서 활동이 가능하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에 대한 외국어 수요는 있으므로 방과후 교실에서 외국어를 강의하든가 아니면 외국어 학원에 취업하여 강의를 할 수도 있다. 현재 많은 교육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영어지도사와 한자지도사가 그 예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인력자원이 풍부해 결혼이민여성들이 원어민강사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지방보다 제약적이므로 이들을 재교육시켜서 원어민강사나 방과후 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3) 통·번역사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구청,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 보건소, 병원 등의 의료기관, 법원이나 경찰서 등의 사법기관 등에서 통·번역을 수행할 인력이 요구되므로 통·번역사도 특화직종에 속한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양성한 통·번역사는 88개소에 160명 정도가 12개 언어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이혼율 증가에 따라 서울가정법원도 결혼이민여성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이주자들에게 통·번역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통·번역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이 아니라 행정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매우 필요하므로 더 많은 인력양성이 필요할 것이다.

4) 아이돌보미

결혼이민여성들을 아이돌보미로 양성교육시킨 후 다문화가정으로 파견한다.

서울의 다문화가정의 자녀수는 '08년도 7,500명에서 '09년도 12,664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육문제가 가장 커다란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결혼이민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나 생계유지 등으로 자녀양육의 부재 발생시 양육지원서비스가 필요하기도 하고, 결혼이민여성 본인이 자녀양육문제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이돌보미로 활동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여성 중 적정한 이민자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추천하여 활동하도록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이 아이돌보미 제도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사용료의 일부를 서울시가 부담하여 이 제도를 활발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5) 산모도우미

결혼이민여성을 다문화가정의 산모도우미로 활동하도록 한다. 결혼이민여성들이 자신들의 국적과 같은 결혼이민여성의 산후도우미로 활동하게 되면 각 나라의 산후문화에 맞추어 모국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고 친정엄마처럼 편안하게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⁴⁷⁾ 결혼이민여성들은 결혼 1-2년 안에 출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에 대한 출산지원이 미비하여 결혼이민여성들의 산후조리와 신생아 양육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경험이 있는 결혼이민여성을 일정기간 교육 후 산모도우미로 활용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한울타리 플랜’에서 산모도우미를 양성하여 저소득층인 다문화가정 등에 무료로 파견하는 지원을 할 예정이다.

6) 계약직 공무원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인해 행정업무가 많아짐에 따라 결혼이민여성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결혼이민여성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우선적으로 서울시청이나, 자치구에 1-2명의 공무원을 채용하면 결혼이민여성들에게 롤모델로서 작용하여 보다 많은 여성들이 취·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사기업이 결혼이민여성을 채용하는데 있어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다산콜센터나 서울 일자리플러스 센터에 결혼이민여성을 상담원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다산콜은 결혼이민여성이 상담시 9번 코드를 배정하여 글로벌센터로 연결하여 5개 국어로(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전문상담원이 아니므로 한계가 있다. 다산콜은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나 글로벌센터로 연결시 일과 시간에만 이용가능하므로 일과 후에는 메시지로 남겨 익일처리 있는 실정으므로 불편하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이해, 한국어 구사능력 등 일정수준의 실력을 갖춘 결혼이민여성을 다산콜에 우선 채용하여 소정의 교양 및 시정에 대한 교육과정과 적응훈련 후에는 배치하도록 한다.

47) 산모도우미 대표적인 사업인 삼성 비추미 사업은 6월에 종료되었으며, YWCA은 일반가정 대상 유료다.

【 표 VI-1 】 결혼이민여성 적합 직종 및 업종

구 분	내 용	비 고
결혼이민여성취업 유망직종	간병인, 산모도우미, 방과후교사, 아이돌보미, 바리스타, 의류수선사, 네일아트	
결혼이민여성 특화직종	원어민강사, 다문화강사, 다문화가정상담원, 한국어보조강사, 통·번역사, 공공기관 및 지자체 이주민 관련 업무 사무직	서울시나 구청에서 우선적으로 채용 필요함
결혼이민자 창업 업종	다문화음식점, 수공예품악세사리 판매점, 다문화상품 무역업, 인터넷몰	

다. 전문가 수준의 직업군 취업연계

결혼이민여성들의 적합직종 개발시 자신들의 언어 문화적 배경과 학력, 자격증 등을 감안하여 보다 전문적인 직종개발과 취업연계가 필요하다. 예로 들면 통·번역사에 대한 보다 수준 높은 교육훈련을 통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근무를 넘어 공공기관, 기업, 각종 학술제, 문화공연 등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도를 한다. 다문화강사도 어린이 집, 유치원, 보육시설에서의 강의를 넘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일반인 등을 상대로 다문화강의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훈련을 시키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 인적자원 등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결혼이민여성들의 학력을 인정하여 대학교 내지 전문대학 등에 편·입학이 가능하게 하며 사립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기능대학 등에 입학시 학비를 일정부분 지원하고 사립대학이나 시립직업훈련기관에서는 학비를 면제해 주어 전문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5. 체계적, 전문적 창업지원 구축

가. 체계적인 창업지원 시스템

결혼이민여성들은 언어소통의 어려움, 이전 가능한 기술과 학력의 부족, 우리 사회 문화에 대한 지식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보다는 창업에 대한 더 큰 관심과 욕구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취업시에는 한국인보다 취업 및 소득,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창업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⁴⁸⁾ 그러나 창업이란 취업보다 위험이 더 커서 사전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단계적인 교육과 전문가의 상담내지 지원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결혼이민여성은 인적자본, 금융자본, 사회적 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창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본, 기술, 사회경험이 크게 필요하지 않고 자신들의 다문화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통 여러 가지 제한점으로 인해 노동집약적인 업종이 많아 창업으로 경제적 효과를 거두는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나 생계유지는 가능한 업종을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업종으로는 다문화음식점, 에스닉 음식 판매하는 식품점, 이/미용샵, 인터넷몰, 네일아트샵, 전통수공예점, 외국어학원 등이 있다. 따라서 창업으로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교육훈련기관의 R&D 지원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창업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 훈련, 지도,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창업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창업교육, 창업보육, 사후경영 까지 One-Stop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여성인력개발기관과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연계를 통해 결혼이민자에게 적합한 업종의 창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창업일반교육, 업종별/계층별/ 부문별 창업 강좌를 개설하며, 창업경영교육을 소상공인 창업 자금 특별보증 컨설팅, 여성부 자금, 근로복지 소상공인지원센터, 현재의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창업교육과정을 벤치마킹하여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한 창업 교육 및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및 교육개발 적극 모색해야 한다.

셋째, 결혼이민여성의 성공적인 창업사례를 발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네트워크의 취약성으로 인해 정보, 지식, 기술, 재원 등에서 부족한 결혼이민여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예비 또는 기존 결혼이민여성 사업가들로 하여금 창업과 경영개선에 관련해 상담, 기술지도, 정보제공, 훈련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제도와 프로그램 개발하고 성공적인 창업사례를 발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48) 이민자의 창업에 대해서는 문화이론, 중간소수자이론, 불리이론, 기회구조이론 등이 있으나 어느 이론이나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이론이 맞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각 이론에서 장점을 뽑아 그것들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통합이론을 개발해야 한다. 이 통합이론에 따르면 일반노동시장에서의 고용기회구조, 사업기회구조, 개인 또는 민족집단이 자원을 동원하는 능력들이 창업에 영향을 미친다.

각각 요인은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이 되지 못하며 각 요인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자영업 참여율의 개인간, 집단간 차이가 발생한다.

나. 창업자금의 지원

여성창업시 가장 어려운 점의 하나가 창업자금 마련이다. 특히 결혼이민여성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고, 창업지원자금이 있다 해도 사회활동의 경험, 정보접근성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와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소상공인지원센터⁴⁹⁾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금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최소한 점포계약을 한 상태의 창업준비자 이상이 지원대상이 되므로 예비창업자들이 자금지원을 받을 창구가 거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이크로크레딧을 통한 창업자금 대출사업의 실시가 필요하다. 즉 지역밀착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모델을 확립하여 초기 자금확보 방법, 운영주체 등의 구체적인 사업운영에 대한 합의 도출이 요구되며 이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과 및 관련부서가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금지원관련 특강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예비창업자의 창업자금지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며, 서울일자리 플러스 센터내에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해 다국어로 상담을 해 줄 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다. 자활공동체 운영

결혼이민여성들은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므로 개개인이 창업하기보다는 집합적으로 창업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활공동체를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자활공동체는 자활후견기관이 운영하는 자활사업 중 수익이 높은 사업의 경우 참여자들이 출자, 사업자 등록을 낸 뒤 독립채산체로 운영에 직접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자활후견기관이 산하 자활근로사업단을 자활공동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창업능력이나 기술을 전수해 주고 자금지원도 해 줄 수 있다.

시장형 자활공동체로는 제과제빵, 세차, 청소, 간병, 도시락제조 등이 있으므로 결혼이민여성들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고 개개인의 예비 창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때도 업소 전세금이나 권리금을 지원해서 위험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6.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을 위한 One - Stop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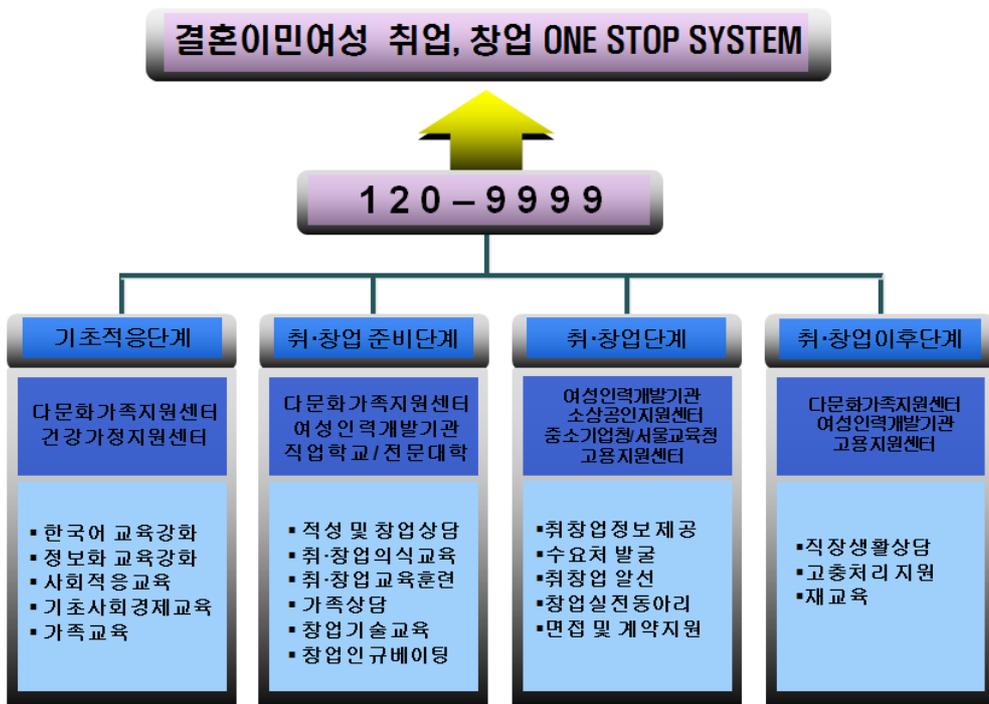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취·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초적응단계부터 취·창업준비단계, 취·창업단계, 취·창업 이후의 단계까지 상담, 정보제공, 교육, 기관연계 등 필요한

49) 이에 관련된 법령은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이 있는데 여기서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다.

모든 부분을 해결해 줄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여성인력개발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업학교, 전문대학, 고용지원센터, 서울교육청, 금융기관 등과의 연계강화 내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직업적성 진단 서비스, 취·창업상담, 교육연계, 취·창업상담 및 개인별 취·창업준비 컨설팅, 보수교육, 지속적인 상담 및 자문 등 실시하며 취·창업 후에도 이를 관리해 줄 시스템을 One- Stop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결혼이민여성이 다산콜센터, 서울일자리 플러스 센터를 이용시 언어적 제한으로 인해 글로벌센터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서 취·창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기는 힘들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상담을 위한 One- Stop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을 위해 서울일자리 플러스 센터나 다산콜에(예시; 120-9999) 상담전화번호를 따로 마련하여 전화를 걸면 바로 취·창업설계상담사와 연결이 되어 협의를 거쳐 결혼이민여성의 상황과 원하는 교육에 맞추어 이와 관련된 정보제공 및 기관으로 연결시키는, 전화 한 통화로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그림 VI-4 ■ 결혼이민여성 취·창업 One-Stop 추진 체계

7.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 연계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 사업은 노동과 다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끌어내는 사회서비스의 달성이라는 목적을 가진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근로능력은 있으나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벌게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선 사회적 일자리 내지 사회적 사업으로서 실천가능한 방안은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지닌 교육분야이다. 따라서 외국어강사로 필리핀, 중국, 일본 여성들이 가능하며, 다른 국적의 여성들도 자신들의 모국어와 모국문화를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사업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사회로 전환되면서 다문화강사가 요구되는데 결혼이민여성들은 충분한 역량이 있으므로 다문화강사, 원어민 강사, 산모도우미, 다문화요리사, 의류수선사 등을 양성하는 것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며 더 나아가 사회적 기업화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을 위해 핵심센터를 지정하거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등이 별도 사업단을 만들어 공동 브랜드를 런칭하고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인 여성들을 선별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창업하여 어느 정도의 고용 안정과 일정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운영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우선 예비 사회적 기업을 인큐베이팅하고 전담인력을 두며 관련기관과의 협력모델을 만들어가고 이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과가 참여한 여성사회적기업연구회를 결성하고 여성사회적기업 모형발굴 및 활성화를 꾀하며 향후 여성사회적기업센터 설치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8. 다문화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

가. 인식전환을 위한 시민홍보

현재 우리의 다문화정책은 결혼이민여성을 정책의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의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나 부족한 부분을 보충시켜 우리와 같게 하려는 동화주의에 가깝다. 그러나 다문화사회란 서로 다른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주체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역량배양과 관계의 활성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대상이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다문화가족만이 아니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정책이 이루어져 서로간의 상호교육,

상호교류, 공동활동 등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과 역동성을 확인함으로써 각자가 사회의 주체로서의 역량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러므로 결혼이민여성들이 직업교육훈련을 받고도 취업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결혼이민여성들에 대한 인식변화가 일어나야 하며 특히 사업주의 의식이 변화되어 이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결혼이민여성, 다문화가족들,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며 전문기관에서는 시민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보급하며 일선에서 활용가능한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시민들은 자신들의 다문화사회 시민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과 역량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자발적 실천노력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기존 개발된 다문화지수를 활용하여 다문화친화적인 기업을 발굴해 내고 이를 평가하여 다문화가족기업으로 인증하며, 결혼이민여성들을 고용한 기업의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의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창업을 독려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유관업종 취·창업자간의 네트워크 구축지원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창업율은 매우 낮은 상태이므로 이미 이 분야에서 활동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간 지지와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혼이민자간,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사이에 유관업종 취·창업자간의 네트워크는 취·창업자간의 상호지원 및 관계증진, 정보공유 뿐 아니라 기관의 측면에서는 다각적으로 활용가능한 유용한 단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인이나 선배 결혼이민여성들이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결혼이민여성의 생활코디네이터로서 직장생활에 있어서 멘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는 서울시 결혼이민자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다. 취·창업 성공사례 발굴

결혼이민여성의 심층면접시 취·창업에 대한 성공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적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창업에 대한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 취·창업의 성공요소 중 하나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자신감이다. 따라서

이들의 자신들의 취·창업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기부여를 위해서도 모범적인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홍보하여 보다 안정적인 사회정착의 롤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강일규, 고혜원(200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강일규 외(2007),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협력망 구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고숙희(2008), “한국의 다문화사회 진행에 따른 접근방안 모색”,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제 19권 제1호, 서울행정학회
- 고혜원 외(2005), 「서울지역 중·장기적 인력·직업훈련 수요조사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_____ (2009a), 「지역의 학습·고용·복지 서비스의 연계실태와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_____ (2008b), 「성남시 여성 직종 및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곽선화(2009), “여성일자리 창출방안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고용평등정책 세미나 자료집
- 교육인적자원부(2007), 「다문화교육 네트워크 기반구축 및 사이버상담실 운영연구」
- 국가인권위원회(2008), 「인권관점에서 다문화교육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연구」
- _____ (2009a), 「이주노동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심포지움」
- _____ (2009b), 「이주인권분야 결정례집」
- 국회인권정책연구회(200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국회인권정책연구회
- 국회인권포럼(2008), 「이주여성의 인권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인권포럼 자료집
- 권 승(2009),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과제”, 사회복지정책 36(1)
- 김갑성(2009),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청소년 문화포럼
- 김경희, 황정임, 류연규(2008), “빈곤여성의 자영창업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 경제적 및 비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여성연구」통권 74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남국(2005), “다문화 시대의 시민 : 한국사회에 대한 시론”, 「한국정치논총」제45집 4호, 한국국제정치학회
- 김민정 외(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딜레마와 선택 :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제39권 1호

- 김복래(2009) “프랑스, 영국, 미국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교고찰: 삼국의 이민통합정책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27(1), 유럽학회
- 김승권 외(2004),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양희 외(2008), “결혼이민자가족 관련기관의 프로그램운영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 자원경영학회지」 제12권 제2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 김원섭(2008), “여성결혼이민자 문제와 한국의 다문화정책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민족연구」 제36권
- 김영란(2007), “이주여성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관한 경험적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제46권 제1호, 숙명여자대학교
- 김영임(2007), “이주여성의 자녀양육과 다문화 가족 2세의 다문화 교육”, 「지구지역 시대 지식생산과 여성연구의 도전」, 한국여성연구원 설립 3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 김유경 외(2008),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복지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미 외(2009), 「다문화 사회」, 한국, 나남출판
- 김종숙 외(2008), 「새 정부의 여성인력개발과 활용을 위한 비전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 김주섭(2008), “평생직업능력개발 정책방향과 과제”, 「노동리뷰」통권 40호, 한국노동연구원
- 김학실, 송수진(2008), 「2008 충청북도 여성결혼이민자 실태조사」,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 김현미 외(2008), 「생활세계의 다문화교육프로그램 사례연구 및 적용방안」,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 김현미(2007),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몽골과 베트남의 이주 및 국제결혼과정에 나타난 인권침해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김혜순(2008),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한국사회학」제42집 제2호, 한국사회학회
- 김혜영(2008), “한국가족의 다양성 증가와 그 이중적 함의”, 「아시아여성연구」제47권 제2호,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소
- 노대명(2001), “서구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의 검토와 전망”, 「보건사회연구」제21권 제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대명(2006), 「한국마이크로크레딧의 발전방향과 해결과제, 한국마이크로크레딧 확대발전 방안」, 사회연대은행
- 노동부(2008), 「서울지역 고용 인적자원개발사업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노동부(2009), 「여성일자리 실태와 창출방안」
- 니콜라 파이퍼(2007), “젠더 관점에서 이주-발전 연계 재고하기 : 아시아로부터의 통찰”, 「지구지역시대 지식생산과 여성연구의 도전」, 한국여성연구원 설립 3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 마르코 마르티니엘로(2002) 윤진 역,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다르게, 평등하게 살.기」, 한울아카데미
- 문경희(2008), “호주 다문화주의의 정치적 동학: 민족 정체성 형성과 인종·문화 갈등”, 「국제정치논총」, 제48권 제1호
- 문순영(2007), “현행법(안)을 통해 본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여성연구」통권 제72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문영석(2005), “캐나다 이민정책에 대한 분석과 전망”, 「국제지역연구」제14권 1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문현아(2009), 「세계화의 하인들」, 여이연
- 문화체육관광부(2008a), 「다문화포럼」,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정책팀
 _____(2008b),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정책」 대토론회 자료집
- 문지영(2009),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사이에서: 프랑스의 이민자 통합정책”, 「다문화사회연구」 제2권 제1호,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 민경자 외(2008), 「민관협력 여성취업모델 연구보고서」, 일하는 공동체 실업극복연대
- 민현주(2009), “여성 일자리 실태와 창출방안-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평등정책세미나 자료집
- 박명선(2007), “독일 이민법과 통합정책의 외국인 차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41집 제2호, 한국사회학회
- 박성재, 김화순(2008), “탈북이주민 직업훈련의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제11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성혁 외(2007),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정책 추진현황, 과제 및 성과 분석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_____(2009), “다문화교육정책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다문화 교육정책의 방향 모색”, 「시민교육연구」 제41권 제2호
- 박정란, 강동완(2008), “새터민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개선 방안”, 「직업능력개발연구」제11권 1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법무부(2007), 「다문화사회 기반 구축을 위한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_____(2008a),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 _____ (2008b),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설명회」 자료집
-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가족부(2009a), 「2009 가족사업안내」
- _____ (2009b), 「200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 부산진구여성인력개발센터(2007), “여성결혼이민자 자활능력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GROW”, 부산인적자원개발원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5), 「일본의 국제결혼중개회사 관리체계 및 결혼이민자 정착지원정책연구」
- _____ (200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 쟁점과 전망」,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 서종남(2003), 「우리는 이제 모두 다문화인이다」,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 설동훈(2006),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소라미(2007), 「한국 사회의 현실 : 다문화사회로의 이행과 걸림돌」, 다문화사회정책포럼 자료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소라미(2009), “한국의 다문화사회 정책: 현재와 미래”, 제2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 포럼, 법무부
- _____ (2007a), “국제결혼 가정의 이주여성에 대한 법률지원 현황 및 과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홈페이지 자료실(<http://www.wmigrant.org>)
- _____ (2007b), “유입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주여성의 인권실태 및 법·제도적 문제점”, 「지구지역 시대 지식생산과 여성연구의 도전」, 한국여성연구원 설립 3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 손기영, 정형욱, 김승택(2009), 「경기도 여성창업지원 정책점검 및 개선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손병돈(외)(2008), “사회복지와 인권” :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편, 양서원
- 송수진 외(2007), “프랑스 이민통합 모델의 위기와 이민문제의 정치화 : 2005년 ‘프랑스 도시 외곽지역 소요사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1권 제3호, 한국사회학회
- 신은종(2008), 「서울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 심인선(2006), 「경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자원개발방안」, 경남발전연구원
- _____ (2008), 「경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 방안」, 경남발전연구원
- 안경식 외(2008),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과제」, 학지사
- 양애경(2007),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양옥경 외(2006), 「다문화가족 지역 정착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양옥경(2007), “서울거주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지원방안”, 「서울정책포커스」 제27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양혜우(2005),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사회 릴레이 토론회 : 참여정부 2년, 사회통합정책 평가와 과제 - 종합 자료집,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 엄한진(2006), “전지구적 맥락에서 본 한국의 다문화주의 이민논의”, 「동북아 다문화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한국사회학회
- 여성부(2007), 「비전통적 여성진출분야 유망직종 발굴 및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 _____ (2007a), 「여성정책연차보고서」
- _____ (2007b),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서비스 효율화 방안 연구」
- _____ (2008), 「여성직업교육훈련기관의 기능 합리화 방안 연구」
- _____ (2009), 「여성인력개발 사업안내」
- 여의도 연구소(2008), “제한외국인정책현황과 개선과제”, 여의도 연구소
- 오경석 외(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한올아카데미
- 오경석(2007),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 다문화 사회 논의에 관한 비판적 조망”,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 현실과 쟁점」, (사)국경없는 마을
- 오은순(2008), 「다문화교육을 위한 범교과 교수 학습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 윌 킴리카(2008),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장동진 역, 동명사
- 유길상 외(2005), 「이민정책에 관한 연구」, 대통령자문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 _____ (2007), 「외국인고용허가제시행 3주년 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노동부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2008), 「다문화사회의 이해」, 동녘
- 유평준, 김수경, 백민숙(2008), “여성인적자원개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요구 분석”, 「아시아여성연구」제47권 1호, 아시아여성연구소
- 윤인진(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제42집 2호, 한국사회학회
- 윤인진 외(2008), “여성 결혼이민자의 자활모델로서의 창업·‘시민자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14권 제1호
- 유현숙(2005), “여성자본의 실태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여성의 인적자본·사회자본·심리적 자본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44집 2호, 아시아여성연구소
- 유정석(2008), “캐나다의 인구이동 현황과 전망: 다문화주의 헌법에 반영된 다양성의 원리, 「민

족연구」

- 윤형숙(2005), “지구화, 여성이주, 한국사회의 성적·인종적 위계 만들기”, 「지구화 시대의 한국 여성주의」, 한국여성학회
- 이규용, 허재준(2008), 「이민정책의 환경변화와 아태지역 인력이동 협력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이금연(2003), “국내 국제결혼과 그 이해-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제언을 위한 원탁토론회, 안양전진상복지관 이주여성쉼터
- 이동임, 김현수(2006),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숙련수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상화 외(2009), 「지구화시대의 현장 여성주의」, 이화여대 출판부
- 이선주(2008),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소영(2008),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재의 분석과 과제”, 「우리말 교육현장연구」 제2집 제1호
- 이수경 외(2008), 「외국인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원격교육훈련 활용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수자(2004),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 국제성별분업, 문화혼성성, 타자화와 섹슈얼리티”, 「한국사회학」, 제38집 제2호, 한국사회학회
- 이순형(2006), “국제결혼 농촌 이주여성 가족의 정착지원 방안”, 농촌국제결혼 정착방안세미나 자료집, 농촌진흥청·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이영주(200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31집, 한국법학회
- 이주여성국제포럼준비위원회(2005), “이주의 여성화와 이주여성인권”, 「아시아이주노동자포럼」, 외국인이주노동자대 협의회
- 이주여성활동단체(2008), “법무부의 사회통합이수제를 다시 묻다”, 토론회자료집
- 이진숙(2005), “사회통합과 외국인 가족복지정책-독일 사민당 정부 하에서의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2호, 한국사회복지학회
- 이태주(2007), 「다민족 다문화사회 진전에 있어서의 사회 갈등 양상과 극복과정 : 호주와 일본의 사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현재(2009), 「여성주의적 정체성 개념」, 여이연
- 이현정(2009), 「우리의 미래 다문화에 달려있다」, 서울메이트
- 이혜경(2006), “이주의 여성화와 초국가적 가족-조선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0집 5호, 한국사회학회
- _____(2007), “결혼이민여성과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 조성”, 차기정부 여성가족정책 10대 과제 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_____ (2008), “한국 이민정책의 수렴현상 : 확대와 포섭의 방향으로”, 『한국사회학』 제42집 제2호, 한국사회학회
- 임형백(2009), “한국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다문화사회의 차이와 정책 차별화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제21(1)권
- 장동진 외(2009),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동명사
- 장명선(2007), “한국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과제”, 한일 연속심포지움 자료집
- _____ (2008), 『서울시 다문화가족실태 및 지원체계구축방안 연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장미영(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자기정체성 형성을 위한 한국문화교육방안”, 『한국언어문학』 제64집, 한국언어문화회
- 장미혜(2008), “다문화사회의 미래와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장형수, 김태완(2007), “여성경제활동참가자 성장과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제27권 제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경옥(2007), “젠더관점에서 본 다문화 사회의 사회통합”, 『아시아 여성연구』 제46권 제1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 전광희(2006), “외국인 관련 공공정책의 구조와 향후 전망”, 『동북아 다문화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동북아시대위원회
- 전국다문화가족지원사업단(200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 _____ (2009a),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가이드북』
- _____ (2009b), 『방문교육 사업 운영가이드북』
- 전정애, 표갑수(2007),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여성결혼이민자 생활실태 및 지원대책 :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21집,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 정기선 외(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정미영, 이수라, 고은미(2008), “다문화사회 바로서기 :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적응교육프로그램 연구”, 글솟대
- 정상우(2007),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 제34호
- 정일선 외(2004),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의 적응을 위한 정책과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조석주(2007), “다문화공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강화 방안 :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21권 제2호 통권 70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조영달(2006), 『다문화과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조혜영(2007),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실태와 교사·학생의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정

- 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소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8), 「2007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운영결과보고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 지방행정국(2009),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행정안전부
- 지중화 외(2009), “다문화 정책 이론 확립을 위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36(2)
- 채미화(2007), “재한 중국조선족 이주노동여성의 자녀조사연구”, 「지구지역 시대 지식생산과 여성 연구의 도전」, 한국여성연구원 설립 30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 채옥희, 홍달아기(2007),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사례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6권 제1호, 한국생활과학회
- 최무혁(2008), “다문화시대의 소수자정책 수단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42권 제3호
- 최순애(2008), “전남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사업 현황”, 「교육전남」 제111호, 전라남도 교육과학연구원
- 최승희(2008),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실천 및 정책제언”, 「복지동향」 통권 제117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최종렬 외(2008),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패러다임과 국가별 유형비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청락, 안미숙, 김영애(2006), “빈곤의 여성화 측면에서 본 마이크로크레딧의 지역적 의의에 관한 연구” 「여성경제 조사연구」, 부산발전연구원
- 최현(2008), 「다문화적 권리와 한국사회에서의 그 증진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현미(2008),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바람직한 다문화 가정 정책 모색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8), 「다문화 사회통합프로그램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2006), 「충남 국제결혼가족 실태 및 지원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태혜숙(2009), 「대항지구화와 아시아 여성주의」, 울력
- 하영호(2007) “외국인배우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부산지방변호사회
- 한건수(2003), “타자만들기 : 한국사회의 이주노동자의 이미지”, 「비교문화연구」 9권 제2호
- _____ (2005), “다민족·다문화 사회의 도래와 한국 교육의 방향”, 한국교원대학교·교육혁신위원회 심포지움 자료집
- _____ (2006), “농촌 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회」 제39권 1호, 한국문화인류학회

한건수, 설동훈(2006), 「결혼중개업체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_____(2007), 「이주자가 본 한국의 정책과 제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9), “함께해요 다문화가정”, 법의 날 기념 심포지움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7),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방안 탐색 세미나”, 한국교육과
 정평가원
 한국다문화학회(2008),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 한국다문화학회 창립총회 기념학술대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출산 행태와 정책방향”,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_____(2008),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다문화가족을 중심으
 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07), “다문화가족, 선택 아닌 필수 : 다문화 사회, 발상의 전환필요하
 다”, 「사회복지」 통권 제17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학회(2006), 「동북아 “다문화” 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동북아시아위원회
 용역과제
 한국여성연구원(2007), 「아시아 여성 이주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 한국여성학 30년
 의 경험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 「이주자가 본 한국의 정책과 태도 : 다민족·다문화 사회를 향
 한 한국사회의 도전과 전망」, 포럼자료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_____(2008), 「다문화사회를 위한 전망과 정책적 대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_____(2009), 「아시아 지역의 이주와 사회통합」 국제심포지움 자료집
 한국염(2004),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3주년 심포지움 :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자료집,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2007), “이주여성 정책과 운동, 어디로 갈 것인가”, 자료집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2008), 21세기 다문화시대를 향한 바람직한 내향적 국제화
 발전전략 워크샵 자료집
 한민족유립연대(2007), 「한국과 독일의 이주정책과 이주운동」, 미래를 향한 연대 자료집
 한승준(2008a), 「프랑스 동화주의 다문화정책의 위기와 재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
 42권 제3호
 _____(2008b),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호남대학교 다문화교육센터(2008), 「창조적 다문화 시민사회 조성방안 연구」, 호남대학교 다
 문화교육센터
 홍성필(2007), “국제인권과 결혼이주”, 「저스티스」 통권 제96호, 한국법학원

황정미 외(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황정임, 송치선(2006), “자활공동체 유형별 빈곤여성의 자활경험에 관한 연구-자활공동체가
갖는 대안적 일자리로서의 가능성 탐색”, 「여성연구」 통권 제70호, 한국여성개발원

〈외국문헌〉

- Anne Phillips(2007), “Multiculturalism without Cultur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erry, J. W.(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
- Castle, S. & Miller, M. j.(2003), “The Age of Migration”(Third Edition), New York &
London : The Guilford Press
- Chatani, K.(2001), “Creating Comfort : Social Support Communication and Cross-cultural
Adaptation of Sojourner Women”, The Ohio State University
- Choe, Hyun(2003), “National Identity and Citizenship in China and Korea”,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 Chrysochoou, Xenia(2004), “Cultural Diversity : Its Social Psychology”, Ox-ford : Blackwell
- European Migration Network(2006), “Policy Analysis Report on Asylum and Migration :
Belgium”, European Migration Network, Brussels(March)
- Edna Erez, Madelaine Adelman and Carol Gregory(2008), Intersections of Immigration
and Domestic Violence : Voices of Battered Immigran Women, *Feminist
Criminology* 4(1)
- Federal Ministry of the Interior(Germany)(2007), Immigration Law and Policy,
www.bmi.bund.de
- Gwyn Kirk, Margo Okazawa-Rey(2001), “Women's lives : Multicultural Perspectives”,
Mayfield Pub. Co.
- Gordon Mathews (2009), Multiculturalism in the New Japan: Crossing the Boundaries
Within, *The Asia Pacific Journal of Anthropology* 10(1)
- Hsia, Hsiao-Chuan(2006), “Globalization and Resistance : The case of Empowering
'Foreign Brides' in Taiwan”, 『다문화사회 아시아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과 삶 :
한국, 대만, 베트남, 일본에서의 경험』,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주최 2006 국제여성정
책심포지엄 자료집
- Hong-zen Wang, Shu-ming Chang(2002), “The Commodific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s :

- Cross-border Marriage Business in Taiwan And Viet Na”, *International Migration*, Vol. 40(6)
- Joshua Cohen, Matthew Howard, and Martha C. Nussbaum(1999), “Is multiculturalism Bad for Wome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ymlicka, Will(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2),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 An Introd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4), “Multicultural States and Intercultural Citizens”, *Theory and Research in Education* 1(2)
- Li-jung Wang(2004), Multiculturalism in Taiwan Contradictions and Challenges in Cultural Policy,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10(3)
- Monique Daveaux(2006), “Gender and Justice in Multicultural Liberal States”, Oxford University Press
- Nakamatsu, T.(2005), “Faces of “Asian Brides”; Gender, Race and Class in The Representations of Immigrant Women in Japan”,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28
- N. Diez Guardia & K. Pichelman(2007), “Labour Migration Patterns in Europe : Recent Trends, Future Challenges”, *European Economy, European Commission, Economic Papers*
- OECD(2000), “Globalization, Migration and Development”
- Pedace, R.(2006), “Immigration, Labor Market, Mobility, and the Earnings of Native-Born Workers. An Occupational Segmentation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Volume 65 Issue 2
- Robert Holzmann & Rainer Munz(2004),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for the EU, Its Member States, Neighboring Countries and Regions : A Policy Note”, Institute for Futures Studies, Swedish Futures Studies(June, 12)
- R. Scott Wilson(2009), Making Hakka Spaces: Resisting Multicultural Nationalism in Taiwan, *Identities: Global Studies in Culture and Power* Vol 16
- SaSarah Song(2007), “Justice, Gender, and the Politics of Multicultura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rgio Carrera & Marco Formisano(2005), “An EU Approach to Labour Migration What

- is the Added Value and the Way Ahead?”, Thinking ahead for Europe, CEPS Working Document
- Sergio Carrera(2006), “Legal Migration Law and Policy trends in a Selection of EU Member States”, Directorate-General Internal Policies, Policy Department C, Citizens Rights and Constitutional Affairs
- _____ (2006), “A Comparison of Integration Programmes in the EU Trends and Weaknesses”, The Changing Landscape of European Liberty and Security, Challenge Papers(March, No.1)
- _____ (2007), “Building a Common Policy on Labour Immigration Towards a Comprehensive and Global Approach in the EU?”, Thinking ahead for Europe, CEPS Working Document(February, No. 256)
- Smolicz, Jerzy J.(2001), “Globalization and Cultural Dynamics in a Multicultural State : Australian Multiculturalism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Dialogue and Universalism 11-12
- Sumi Kim(2009), Politics of Representation in the Era of globalization: Discourse about Marriage Migrant Women in Two South Korean Films,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19(2)
- Uma Narayan & Sandra Harding(2000), “Decentering the Center : Philosophy for a Multicultural, Postcolonial, and Feminist World”, Indiana University Press

부 록

1. 기관담당자 대상 설문지
2. 결혼이민여성 대상 설문지

부록1 **기관담당자 대상 설문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프로그램 현황조사	ID			
<p>안녕하십니까?</p> <p>저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는 『서울시 결혼이민여성의 취·창업능력개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프로그램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p> <p>본 조사는 서울시 결혼이민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위 향상에 관한 서울시의 정책수립과 실행을 위해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귀 기관의 응답내용은 연구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p> <p>바쁘시더라도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모든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나 설문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9. 5.</p>					
연구자	장명선, 이옥경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연락처	Tel : 02-810-5013, 5026 E-mail : freedom1109@seoulwomen.or.kr		Fax : 02-810-5003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한숲길 22번지		

[기초정보 기재사항]

기관명	소재지	구
기관 구분 (√)	① 구청, 주민자치센터 등 지자체 () ②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지자체 산하기관 () ③ 보건복지가족부 지정(또는 지자체 자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 ⑤ 사회복지관, NGO, 법인, 종교단체 등 사회단체 및 학교 () ⑥ 기타()	
응답자명	직책	
응답일시	2009년 월 일 시	연락처

문 1) 귀 기관에서는 결혼이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취·창업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거나 또는 과거(지난 3년간 기준)에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

- ① 현재 운영하고 있다
- ② 운영했던 적이 있다
- ③ 운영한 적이 없다 (☑ 문7로 이동)

문2) 결혼이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취·창업프로그램이 있다면(위 ①, ②번 보기 선택), 그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 자세히 기재해 주십시오. (작성기준 기간 : 2006년~현재까지)

[프로그램 운영 현황]

연번	프로그램명	운영시기 (기간)	참여자수 (명)	수료자수 (명)	취·창업자수 (명)	예산 (사업비) 지원기관
1						
2						
3						
4						

문3) 결혼이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취·창업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에 해당하는 보기의 번호를 모두 기재해 주십시오. ()

- ① 진로탐색교육
- ② 직업의식(기초소양)교육
- ③ 기술교육
- ④ 노동관련 법률교육
- ⑤ 현장실습, 직장체험
- ⑥ 자격증 취득
- ⑦ 구직기술(이력서작성, 면접교육 등)
- ⑧ 기타(구체적으로 :)

문4) 귀 기관이 결혼이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취·창업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웠던 점 두 가지를 보기에서 골라 우선순위대로 기재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프로그램에 참가할만한 결혼이민여성의 모집
- ② 결혼이민여성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 ③ 전문 강사, 진행요원 등 인력 자원의 확보
- ④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
- ⑤ 프로그램을 운영할만한 공간의 확보
- ⑥ 취업 가능한 수요처 및 창업 아이템 발굴
- ⑦ 결혼이민여성과의 의사소통
- ⑧ 결혼이민여성의 학습의욕 및 직업의식 고취
- ⑨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문5) 결혼이민여성이 취·창업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느끼는 애로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귀 기관에서 인지한 결혼이민여성의 가장 큰 애로사항 두 가지를 보기에서 골라 우선순위대로 기재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수강료 등 비용 부담
- ② 가사와 양육 부담
- ③ 의사소통의 어려움
- ④ 동료학습자간, 강사와의 관계
- ⑤ 프로그램 내용의 난이도
- ⑥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의 부재
- ⑦ 가족의 반대
- ⑧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문6) 귀 기관에서는 결혼이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취·창업프로그램(교육, 알선 등)을 운영함에 있어 다른 기관과 협력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기관과 협력했는지 보기에서 골라 모두 기재해 주십시오. ()

- ① 협력한 적이 없다
- ② 시청, 구청, 주민자치센터 등 지자체
- ③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지자체 산하기관
- ④ 보건복지가족부 지정(또는 지자체 자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⑤ 정부 및 지자체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 ⑥ 사회복지관, NGO, 종교단체 등 사회단체
- ⑦ 학교, 지방교육청, 평생학습센터 등 교육관련 기관
- ⑧ 고용지원센터, 취업정보센터 등 노동관련 기관
- ⑨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문6.1) 귀 기관에서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프로그램(교육, 알선 등)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했지만 그것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 두 가지를 보기에서 골라 우선순위대로 기재해 주십시오.

(이 질문에 응답하신 후, 문9로 이동)

1순위		2순위	
-----	--	-----	--

- ① 협력할만한 기관의 정보가 부족해서
- ② 협력을 주도할 구심기관이 없어서
- ③ 기관 자체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도 바빠서
- ④ 유사한 사업을 하다 보니 기관 간에 경쟁이 되어서
- ⑤ 지역 내에 비전이나 사업목표를 공유할만한 기관이 없어서
- ⑥ 협력에 따른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 ⑦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문7) 결혼이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취·창업프로그램이 없다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취·창업프로그램에 결혼이민여성이 참여한 적은 있습니까? ()

- ① 있다
- ② 없다 (☑ **문8로 이동**)

문7.1)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취·창업프로그램에 결혼이민여성이 참여한 적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 자세히 기재해 주십시오. (**작성기준 기간 : 2006년~현재까지**)

[프로그램 운영 현황]

(단위 : 명)

연번	프로그램명	운영시기 (기간)	참여자수 (해당인원/ 전체인원)	수료자수 (해당인원/ 전체인원)	취·창업자수 (해당인원/ 전체인원)	예산 (사업비) 지원기관
1			/	/	/	
2			/	/	/	
3			/	/	/	
4			/	/	/	

문7.2)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취·창업프로그램에 결혼이민여성이 참여한 경우, 결혼이민여성이 느끼는 애로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귀 기관에서 인지한 결혼이민여성의 가장 큰 애로사항 두 가지를 보기에서 골라 우선순위대로 기재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수강료 등 비용 부담
- ② 가사와 양육 부담
- ③ 의사소통의 어려움
- ④ 동료학습자간, 강사와의 관계
- ⑤ 프로그램 내용의 난이도
- ⑥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의 부재
- ⑦ 가족의 반대
- ⑧ 기타(구체적으로 :)

문8) 결혼이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취·창업프로그램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를 보기에서 골라 우선순위로 기재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프로그램에 참가할만한 결혼이민여성의 확보가 어려워서
- ② 결혼이민여성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어려워서
- ③ 전문 강사, 진행요원 등 인력 자원의 확보가 어려워서
- ④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 ⑤ 프로그램을 운영할만한 건물, 시설 등 공간이 부족해서
- ⑥ 취업이 가능한 수요처나 창업 아이템 발굴이 어려워서
- ⑦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문8.1) 귀 기관에서는 올해 또는 향후 결혼이민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취·창업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 **(운영 계획이 있을 경우, 해당 분야에도 √ 할 것)**

- ① 있다 (취업: _____ / 창업: _____)
- ② 없다

문9) 귀 기관이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또는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것 두 가지를 보기에서 골라 우선순위로 기재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해당 결혼이민자 모집
- ② 전문 인력 확보
- ③ 지자체 지원
- ④ 예산 확보
- ⑤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 ⑥ 취업 가능한 수요처 및 창업 아이템 발굴
- ⑦ 구인·구직 DB 구축
- ⑧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문10) 결혼이민여성 대상 취·창업프로그램(교육, 알선 등)을 추진함에 있어 주축(또는 거점)이 되어야 할 기관이 있다면 어느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보기에서 가장 적합한 곳을 하나만 골라 기재해 주십시오. ()

- ① 시청, 구청, 주민자치센터 등 지자체
- ②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지자체 산하기관
- ③ 보건복지가족부 지정(또는 지자체 자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 ⑤ 사회복지관, NGO, 종교단체 등 사회단체
- ⑥ 학교, 지방교육청, 평생학습센터 등 교육관련 기관
- ⑦ 고용지원센터, 취업정보센터 등 노동관련 기관
- ⑧ 상기 기관들의 연계를 통한 컨소시엄 기관(또는 방식)
- ⑨ 기타(구체적으로 :)

문11) 결혼이민여성이 취·창업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어떤 태도 및 자격, 기초 지식 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국어 실력, 한국국적 취득, 학력, 자격기술, 직업 기초 소양 등을 중심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문12) 결혼이민여성이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사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주요 성공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결혼이민여성은 물론 이들을 둘러싼 인적·물적 자원을 중심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문13) 서울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에게 적합한 취업 직종이나 창업 아이템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추천할만한 직종 및 창업 아이템에 대해 기재해 주십시오. **(3가지 이상씩)**

[추천 직종 및 창업 아이템]

구분	취업부문	창업부문
현재 우선 취업 가능한 직종 및 창업 아이템		
향후 유망한 특화 직종 및 창업 아이템		
선정이유		

♠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감사의 마음으로 소정의 사례품을 증정하고자 하오니
받으실 분 성함과 수령가능한 주소지를 기재해 주십시오 -

성명	수령지 주소
	(-)

※ 결혼이민여성 대상 인터뷰 조사(F.G.I) 질문내용

- 문1) **[개별질문]** 과거 또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취업(또는 창업)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타기관의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프로그램명, 구성, 주요내용, 결혼이민여성의 참여율 및 취업률 등).
- 문2) **[개별질문]** 귀하가 여러 취업(또는 창업) 프로그램들 중 특정 프로그램과정을 선택해 참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해당 취·창업 프로그램을 선택한 이유, 나아가 특정 직업을 선택한 동기)
- 문3) 귀하가 취업(또는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경험했던 어려움이나 문제점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비용, 가사·양육, 의사소통, 강사의 자질 및 이해도, 프로그램 내용(난이도), 프로그램 운영방식, 교재의 내용, 가족의 반대 등)
- 문4) 한국인과 함께 하는 취업(또는 창업)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한 취업(또는 창업)프로그램의 경우와 비교하여 그 장·단점을 말씀해주십시오.
- 문5) 결혼이민여성의 필요에 맞는 취업(또는 창업)프로그램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프로그램 구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취업자의 경우, 보장되어야 할 프로그램 내용)
- 문6) **[개별질문]** 취업자(또는 창업자)의 경우, 직장생활(사업운영)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또한, 취업(또는 창업) 후 필요한 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7) 서울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으로서 현재 우선 취업 가능한 직종이나 창업 아이템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선정이유 포함)

- 우선 취업 가능한 직종
- 우선 창업 가능한 아이템

문8) 현재 또는 향후에 종사하고 싶은 직종이나 창업 아이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합니까?

09-정책개발-015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취·창업능력개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연구

발행인 박현경
연구자 장명선, 이옥경
발행일 2009년 11월
발행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주 소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한숲길 22번지
전 화 02. 810. 5101(代)
www.seoulwomen.or.kr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인쇄처: 경성문화사 02 786 2999

